

#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 Ⅱ 동남아시아 Ⅱ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IV 홍콩

제1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5
제3절 자료출처	45
제2장 검역제도	47
제1절 검역제도 일반	47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48
제3절 자료출처	63
제3장 라벨링제도	65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65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66
제3절 라벨링 사례	75
제4절 기타사항	78
제5절 자료출처	79
제4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81
제1절 對 한국 수입규제 동향	81
제2절 수출품 선적 시 유의사항(소량 수화물)	84

## V 대만

제1장 통관제도	89
제1절 일반사항	89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16
제3절 통관사례	127
제2장 검역제도	129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29
제2절 동·식물 검역	139
제3절 품목별 검역제도	147
제4절 검역사례	169
제3장 라벨링제도	185
제1절 일반사항	185
제2절 품목별 표기 방법	236
제3절 라벨링 이슈사례	243
제4절 자료출처	246
제4장 통관 보류 및 억류사례	249
제1절 한국산 통관 거부사례	249

VI

인도네시아

제1장 통관제도	253
제1절 통관 일반사항	253
제2절 통관 서류	259
제3절 통관 절차	261
제4절 통관 제도 특이사항	275
제5절 기타 관련 법규	282
제6절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285
제7절 통관실무 우수사례	291
제8절 자료 출처	292
제2장 검역 제도	295
제1절 검역 일반사항	295
제2절 품목별 검역정보	297
제3절 자료 출처	302
제3장 관세제도	307
제1절 제품별 관세율	307
제2절 수입관세 인상	310
제3절 자료 출처	311
제4장 라벨링제도	313
제1절 일반사항	313
제2절 표시방법 유의점	314
제3절 포장	319
제4절 자료 출처	320

제5장 통관보류, 역류 등 부적합 사례	321
제1절 과실류 수입 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제출 요구	321
제2절 전통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학약품 함유 적발	321
제6장 수출현안	323
제1절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및 실험실 등록	323
제2절 소고기 수입관련 법규	324
제3절 자료 출처	326
부 록	327

**VII** 베트남

제1장 통관제도	357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57
제2절 원산지 규정	369
제3절 통관부서 연락처	372
제2장 관세정책 및 제도	375
제1절 관세정책	375
제2절 관세제도	378
제3절 분쟁해결제도	380
제3장 검역제도	383
제1절 품목별 검역제도	383
제4장 라벨링제도	387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387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391
제3절 자료출처	397

## VIII 태국

제1장 통관제도	411
제1절 통관제도 일반	411
제2절 원산지 규정	422
제3절 LPI 등록제도	426
제2장 관세제도	427
제1절 관세정책	427
제2절 비관세장벽	430
제3장 검역제도	431
제1절 식물검역 규정	431
제2절 동물검역 규정	433
제4장 라벨링제도	437
제1절 관련 법 및 규정	437
제2절 식품분류	437
제3절 라벨링 표기사항	440

# 주요국 변경사항 요약

## I 홍콩

### □ 통관제도

- 전염병과 상호 협정 미체결로 인한 수입 규제 품목(78~79페이지)
  - 한국산 돼지고기 의 경우 2014년 일부지역(전라도 및 제주산) 돈육의 대 홍콩 수출이 재개되었음.
  - 또한 상호 협정이 계속 미루어졌던 한국산 쇠고기의 경우 2015년11월19일자로 한국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검역·위생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되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홍콩의 과거 수입 규제 사례

품목	사유	비고
생굴	바이러스 창궐	2006년 규제
달걀 및 가금류	조류 독감	2008년,2014년 규제
돼지고기(生)	구제역 발생	2010년 일부지역수입허가
쇠고기(生)	상호협정 미체결	2015년11월19일 수입 승인

## I 대만

### 〈검역제도〉

- 2015.10.5~2016.4.4 한국산 수입 배추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 \* 5대(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카현, 쿤마, 치바) 방사능 오염 지역 식품 수입금지
  - \* 방사능 검측 결과(일부특정지역) 및 일본 식품 원산지 증명 의무화

## 〈라벨링〉

- 유전자변형식품 원료표기 준수사항 실시(2015.7.1)

## Ⅰ 인도네시아

### □ 통관제도

- 2015년 7월 23일부로 커피, 가공육, 주류 등 수입관세 인상
- 2016년 1월 17일부터 인스턴트 커피 SNI 의무항목으로 적용

### □ 검역제도

- 2016년 2월 17일까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실험실을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 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이 가능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홍콩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라벨링제도

제4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 제1장 통관제도

##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1. 관리 법률체계

#### □ 관련법 및 규정일반

- 사회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홍콩 입법 제어에 의한 불법 통관 예방 및 밀수품 밀수 금지 검출을 통해 공공의 건강을 유지하고 세계 각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음
- 홍콩은 일반 상품수입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펴고 있어 일반 수출입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절차가 없음
- 그러나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홍콩 수출의 경우 수출 후 14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를 내면 통관절차가 끝나게 됨
- 수입물품 중 일부는 통관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검사물품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홍콩세관의 지시사항을 따라 진행하면 되고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선사나 운송사, 관할세관 등에 문의하면 됨
- 홍콩의 통관 및 검역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수출입 일반 : Import and Export(Registration) Regulations(Chapter 60)
  - 관세 일반 :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Cap. 109)
  - 식품검역 일반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 □ 관세관련 주요 내용

-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Cap. 10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관세품목인 4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신고 및 수출입시 취급방

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구성	주요내용	관세여부
PART I	서론(preliminary)	-
PART II	일반 제품(general)	비관세
PART III	주류(liquors)	일부 관세
PART IV	담배(tobacco)	관세
PART V	하이드로카본 오일(hydrocarbon oil)	관세
PART VI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관세

- 홍콩은 수입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관세제도를 따르나, 담배, 주류, 메틸알코올, 하이드론 카본오일의 경우에만 품목과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여됨
  - 주류의 경우에는 '08년 2월부터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관세가 변경되어, 30% 미만의 주류와 와인, 맥주류 등은 비관세임

■ 주요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

1. 탄화수소	관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중국 제조	HK\$ 468/kg
수입 시가	HK\$ 2,455/kg
수입 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된 그 외 모든 담배	HK\$2,309/kg
3. 주세	
와인	0%
알코올 30%이하 주류 (맥주 등)	0%
알코올 30%이상 주류 (위스키 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자료 : 홍콩 세관

■ 자동차 등록세율 ■

구분	세율
HK\$150,000 이하	차값*40%
HK\$150,000 ~HK\$300,000 이하	HK\$150,000*40% + HK\$150,000제외한 잔액*75%
HK\$300,000~ HK\$500,000이하	HK\$150,000*35% + HK\$150,000*65%+ K\$300,000를 제외한 잔액*100%
HK\$500,000 초과	HK\$150,000*35% + HK\$150,000*65%+ HK\$200,000*85%+ K\$500,000을 초과한 잔액*115%

자료 : 교통부

※ 관련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HK Customs and Excise)의 세관 관리부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 주소: 7/F, Harbour Building, 38 Pier Road, Central, Hong Kong
- 전화: (852) 2852 3275 / 팩스: (852) 2581 0218

※ 수입 규제 담당기관

- 기관명: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전화: 852) 2815 7711 / E-메일: customs enquiry@customs.gov.hk
- 홈페이지: www.customs.gov.hk
- 주요업무
- 수출입 통관, 소비자 보호, 관세부과 물품 확인, 라이선스와 허가신청, 수출입신고,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검사

□ 와인 관세 폐지

- 홍콩정부는 2007년 80%에서 40%로 반감한 와인세율을 2008년에는 0%로 조정하였음. 이로써 홍콩은 세계에서 부가가치세와 와인세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음. 와인세 감면으로 인해 홍콩은 2012년까지 10억 홍콩달러, 2017년까지 30억 홍콩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수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 통관수속

### □ 수출입 신고관련 주요내용

- 홍콩은 수출입 자유방임정책으로 수입된 물품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나 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해당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공식 보건 인증서를 제공해야 함
- 수입상품에 대한 통관관리는 송장(manifests)과 같은 서류검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에는 선택적 기준의 실질적인 조사(physical examination)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된 적송품은 관세청 담당자에 의해 조사를 목적으로 보관 될 수 있음

### ■ 선적 절차 ■

순서	절차
1	선적
2	수출입 신고서 제출 (수출 후 14일 이내)
3	화물 도착 통지
4	관세사나 통관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통관 대행 (필요 시)
5	수출완료

- 통관 시에는 Bill of Entry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상업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필요 시), 화물검사 증명서(필요 시)가 기본적으로 요구됨
- 수출입 물품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 HK\$ 4,000(약 US\$ 513)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목적의 HK\$ 1,000(약 US\$ 128)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공컨테이너, 인가된 배에 의한 포획어류 등이 있음
- 기본적으로 홍콩의 특성상 97%이상이 비과세물품으로 B/L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화주의 직접 화물 수취가 가능한데 그 중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의 경우는 각각 수출입규정, 비축 물자 규정 등에 의해 홍콩 도착 7일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 대부분 상품은 신청 후 3-7일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은 자유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함
- 수입 허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는 화물도착 4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수출입절차는 홍콩무역의 장점이며, 편리한 인프라시설로 수출입은 비교적 용이한 편임
- 어떤 품목이든 수입 또는 수출을 하려는 사람은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HK Customs and Excise)의 감독관에게 해당품목의 수입 및 수출이 있을 후 14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함
  - 신고는 크게 도착신고(arrival declaration) 및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로 붙임의 양식에 의해 작성해야 함.
  - 홈페이지를 통한 “e-form” 신고도 가능함  
[http://www.info.gov.hk/digital21/eform/english/about\\_e\\_form\\_01.html](http://www.info.gov.hk/digital21/eform/english/about_e_form_01.html)
- 만약 면제품목에 대하여 서류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품목의 관련 카테고리(카테고리)를 적하목록(cargo manifest)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운송자(carriers/forwarders)에게 고지하여야 함
- 수입과 관련된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음
  - 송장(manifests)
  -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그 외 유사한 서류
  -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
  - 기타 수입 라이선스와 같은 서류

**□ 수출입 관련 라이선스 비용**

- 홍콩으로 수입시에는 “The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Cap 403)”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특히 수입 시 검역이 까다로운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라이선스(license)와 함께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증명서(certificate) 등을 갖추어야 함

- 라이선스는 연간단위로 부여되며, 수출입과 관련된 라이선스 수수료는 HK\$1,200임

No.	항 목
1	위험 약물(Dangerous Drugs)
2	화학물(Controlled Chemicals)
3	의약품(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ines)
4	중국 한약(Chinese Herbal Medicines and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5	가축(Live Animals)
6	식물과 식물해충(Plants & Plant Pests)
7	쌀,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육(Rice, Frozen or Chilled Meat and Poultry)
8	게임, 육류 및 가금육(Game, Meat and Poultry)
9	기타 금지품목(Other Prohibited Goods)

-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발급되며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되며, 라이선스 종류와 각각의 규정 된 비용은 아래 참조

▣ 라이선스 종류와 비용 ▣

구분	세부내역	비용
제조자의 라이선스	○ 탄화수소 오일 제조 라이선스	24,650HKD
	○ 담배제조 라이선스	22,700HKD
	○ 주류제조 라이선스	22,700HKD
	○ 주류취급라이선스	22,700HKD
	○ 증류기(재정국이 승인한 교육, 과학, 자선단체 목적)	무료
창고 라이선스	○ 일반 보세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 공공 보세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 허가 받은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수출입 라이선스	○ 수출입 라이선스	1,200HKD
	○ 특별수입 라이선스	1,200HKD
라이선스의 개정	○ 라이선스 개정 및 내용 변경	515HKD
및 대체	○ 대체수령	200HKD

※ 자료 : 홍콩세관



○ 라이선스 신청 관련 문의

- 기관명 :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담당부서 :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Licence Unit
- 주소 : 3/F, Customs Headquarters Building 222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전화 : (852) 3759 2374 / Fax : (852) 2542 4660

## | 수출입 신고서 양식 |

### 香港海關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HONG KONG

#### 船隻抵港申報表 Vessel Arrival Declaration

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

船名 Name of Vessel ..... 船隻呼號 Call Sign .....  
 航行次數 Voyage No. .... 泊位 Buoy No. ....  
 到港日期及時間 Date & Time of Arrival .....

#### (1) 船舶資料 Shipping Particulars

船東名稱  
Name of owner .....

國籍 ..... 註冊港口  
Nationality ..... Port of Registry .....

噸位 — 毛重 ..... 註冊長度  
Tonnage Gross ..... Registered Length .....

— 淨重 ..... 載客量  
Net ..... Passenger Capacity .....

建造年份  
Construction Year .....

代理名稱  
Name of Agent .....

地址 ..... 電話  
Address ..... Tel. No. ....

#### (2) 航程表 Voyage Itinerary

本船抵達香港前三個月內曾沿途停泊之港口。  
 Ports has been called by the vessel during the 3 months before the date of its arrival in Hong Kong.

所經埠 Name of Port called	到達日期 Date of Arrival	離開日期 Date of Depar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貨單 Cargo Manifests

茲證明所附的貨物貨單其所載為在本船上輸入或輸出香港的貨物詳情。  
 I hereby certify that the attached manifests contain full particulars of the cargo being imported or exported in or on the vessel.

港口名稱 Name of Port	提單號數 Bill of Lading No.	頁數 No. of Pages
.....	..... 至 to .....	.....
.....	..... 至 to .....	.....
.....	..... 至 to .....	.....
.....	..... 至 to .....	.....

茲證明本船並無貨物由 ..... 埠運來香港卸下。  
 I hereby certify that there is no cargo from ..... being discharged in Hong Kong.  
 (港口名稱 Name of Port)

#### 只供海關填寫 For Official Only

已核對航海日誌，證實資料真實 Ship log verified and certified correct by

..... 簽署 Signature .....

(海關人員姓名、職銜及所屬組別)  
 Name/Rank/No./Unit/Division of attending officer

時間 Time/日期 Date: ..... hrs. on ..... l. .... l. ....  
 (時間 Time) H D M A P

CEB 114 (Rev. 01/98)

簽署  
Signature .....

姓名及職位  
Name & Rank .....

日期  
Date .....

### 3. 화물의 통관

####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품목 수입에는 수입을 위한 수입자 자격증 및 유통을 위한 도소매 자격증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인삼 등의 한약재 역시 허가받은 수입자만이 취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li> <li>○ 의약품</li> <li>○ 동물</li> <li>○ 살충제</li> <li>○ 폭발물</li> <li>○ 쌀</li> <li>○ 냉동육</li> <li>○ 오존파괴물질</li> <li>○ 좌측 운전용 차량</li> <li>○ 엔진(111.9kw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학디스크기기</li> <li>○ 복사기</li> <li>○ 화학약품</li> <li>○ 멸종위기 동식물</li> <li>○ 무기</li> <li>○ 섬유</li> <li>○ 가금류</li> <li>○ 라디오운송장비</li> <li>○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li> <li>○ 전략물자(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물질 등)</li> </ul>
---	--

※ 자료 출처 : 홍콩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hk) 인용

#### □ 항구와 공항 - 항구

- 홍콩의 항구를 이용한 화물 통관은 카이청(KWAI CHUNG)항과 빅토리아(VICTORIA)항이 있으며, 카이청(KWAI CHUNG)은 신계(新界, NEW TERRITORIES)에 소재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홍콩 전체 물동량의 약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빅토리아항은 홍콩섬과 홍콩반도(九龍半島)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만 양쪽 해안의 크고 작은 부두를 통칭하며 홍콩 전체 물동량의 30~40%를 담당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물동량이 정체상태로 아시아 물류허브로서의 지위를 상하이항과 심천항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양안관계 개선으로 홍콩 경유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콩 물류업은 긴장하고 있음
- 하지만 간단한 조세제도, 첨단 항구 인프라, 우수한 인력 등으로 당분간은 홍콩의 물류허브 지위는 지속될 것임

-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반드시 환적에 따르는 비용과 추가 소요기간(약 1~2일)을 감안해야 하며, 2014년 기준 컨테이너 비용(부산, 인천 →홍콩)은 일반 컨테이너는 20ft USD 200~350불, 40ft USD350~550불 이며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20ft USD 600~750불, 40ft USD700~850불임

### ■ 홍콩항 화물 물동량 ■

(단위: 천Ton)

구분	2012	2013	2014
홍콩하역	154,699	162,275	184,185
홍콩적재	114,583	113,780	113,552
총계	269,282	276,055	297,737

※ 자료 : 홍콩통계청

### □ 항구와 공항 - 국제공항

-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홍콩국제공항 또는 첵랍콕 공항)는 홍콩 섬과 구룡 반도 서쪽에 위치한 “란타우”섬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1998년 7월 6일에 개항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함
- 홍콩 국제공항에는 전 세계 약 90여개 항공사가 입주해 있으며,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공항(the Best Airport Worldwide)으로 선정
  - 홍콩공항 웹사이트: <http://www.Hongkongairport.com/eng/index.jsp>
- 홍콩 공항의 전체면적은 런던 히드로 공항과 비슷한 378만 평(1,255ha)으로 홍콩의 구 카이탁 공항의 4배 이며 인천국제공항(335만 평)보다 약간 더 큼
- 1차 개항으로 매시간 49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세계 3위 규모이며 연간 평균 4,500만 명의 여객(공항처리가능 최대 여객수: 8,700만 명)이 있으며 360여 만 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함
- 홍콩국제공항은 매일 약 900회 이상의 비행기가 중국 대륙의 45개 지역을 포함하여 160개 도착지로 연결됨

- 홍콩 공항의 여객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년 2월 제2호 여객 터미널을 신규 개장하였으며 신속한 제2청사로 인해 홍콩 공항은 여객운송 능력을 향상 시켰으며, 쇼핑몰, 국제전시센터, 골프코스, 스카이프어, 호텔, 오피스타워 등의 시설을 갖춰 공항에서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국제공항으로 성장하고 있음
- 홍콩 첵랍콕 공항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홍콩으로 오는 항공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비롯, 캐세이 퍼시픽, 타이 항공, 진에어, 홍콩익스프레스등이 있으며, 타이 및 진에어등 저가항공의 경우 공항 도착 후 공항 내 셔틀열차를 타고 들어와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됨
- 홍콩 공항 일반 문의 : (852) 2815 7711 - 근무 시간: 24시간

■ 운송방법별 문의처 ■

운송방법	연락처	팩스
항공 (By air)	(852) 2116 4130 / 2286 0157 (24 hours)	(852) 2116 4201
해상 (By sea)	(852) 2410 8045	(852) 2420 2429
해상화물 (By sea cargo)	(852) 2534 7188 (24 hours)	(852) 2854 1280
육류 (By land)	(852) 2482 8758	(852) 2482 2552
열차 (By train)	(852) 2954 0219/2774 3494	(852) 2363 8242

4. 원산지 규정

- 홍콩의 기본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홍콩 보건위생법에 의거하여 수입 해당 당국의 식품 의약 안전청에서 발급받은 식품 허가 증명서와 생산국가의 법령에 이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이 규정

## 5. 구비서류

- 적하 목록
- 수입/수출 라이선스
- 식품의약품안전청 통보서
-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유사한 서류
- 화물 선적서류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

〈선박 도착신고서〉	〈수입 신고서〉
<p style="text-align: center;"><b>香港海關</b>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HONG KONG 船隻抵達申報表 Vessel Arrival Declaration</p> <p style="text-align: right;">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p> <p>船名 Name of Vessel ..... 船隻呼號 Call Sign ..... 航行次數 Voyage No. .... 船務編號 Boat No. .... 到達日期及時間 Date &amp; Time of Arrival .....</p> <p><b>(1) 船隻資料 Shipping Particulars</b> 船東名稱 Name of owner ..... 註冊港口 Port of Registry ..... 國籍 Nationality ..... 註冊日期 Date of Registration ..... 噸位 Tonnage ..... 淨重 Net ..... 淨重 Net ..... 乘客容量 Passenger Capacity .....</p> <p>船務代理 Corporation Year ..... 代理人名稱 Name of Agent ..... 地址 Address ..... 電話 Tel. No. ....</p> <p><b>(2) 航程表 Voyage Itinerary</b> 本報抵達香港後三個月內曾泊過何處之港口 - There has been called by the vessel during the 3 months before the date of its arrival in Hong Kong. 所泊埠 Name of Port called ..... 到達日期 Date of Arrival ..... 離埠日期 Date of Departure .....</p> <p><b>(3) 貨單 Cargo Manifest</b> 本報附帶之貨物清單或載貨單上輸入或輸出之貨物詳情 - I hereby certify that the attached manifests contain full particulars of the cargo being imported or exported in or on the vessel. 進口名稱 Name of Port ..... 貨單號數 Bill of Lading No. .... 頁數 No. of Pages .....</p> <p>本報附帶之貨物清單或載貨單上輸入或輸出之貨物詳情 - I hereby certify that there is no cargo from ..... being discharged in Hong Kong.</p> <p>只供海關職員 For Official Use Only 已核實海單方法 - 運貨物有貨單 Ship log verified and certified correct by 海關人員簽署 - 海關及海關經理 Name of Customs Officer/Inspector of Landing Office 日期 Date</p> <p>簽署 Signature 姓名及職位 Name &amp; Rank 日期 Date</p>	<p style="text-align: center;"><b>香港特別行政區政府</b>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香港海關第一〇九章貨物進口申報表 DUTYABLE COMMODITIES ORDINANCE, CHAPTER 109 匯報稅品進口匯報書 IMPORT STATEMENT</p> <p style="text-align: right;">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p> <p>貨名貨號 Name of Goods 及貨號 &amp; Mark Description of Goods 及貨號 &amp; Mark Quantity 貨名貨號 Name of Goods 及貨號 &amp; Mark Description of Goods 及貨號 &amp; Mark Quantity</p> <p>申報日期 Date of Declaration</p> <p>申報人 Name of Declarant 代理人 Agent 公司名稱 Company Name 地址 Address</p> <p>申報日期 Date of Declaration</p> <p>申報人 Name of Declarant 代理人 Agent 公司名稱 Company Name 地址 Address</p>

- 수출입 통관 기본 규정 참조 아래 :
  - [http://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_2.pdf](http://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_2.pdf)
- 수출입 신고 데이터 요구 참조 아래 :
  - Completion of Import/Export Declarations and Data Requirement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 일반 포장제품**

수입통제 및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

- 우유, 유제품, 냉동 당과류, 육류 그리고 가금류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식품들은 보건과 지자체 조례 (cap 132)의 법적용을 받으며 야생 동물류, 육류, 가금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위생청에서 인정한 공급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국한되어 있음

- 홍콩 법령 : 홍콩세관 - Chapter 132AK, Laws of Hong Kong

- 수입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따라 수입국 식품청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없거나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공식적인 사전 허가가 없을시, 어떠한 육류 및 가금류도 홍콩 수입이 불가하며 위반시 HK\$50,000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해짐

- 특히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타국의 식품청은 식품거래상들에게만 사업상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야생 동물류, 육류 또는 가금류를 홍콩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증서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관련 기관 확인 및 개인에 공식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수입/수출 등록처 및 연락처

- 전화: (852) 2158-3041 및 2156-3042 / FAX: (852) 2521-4784

## □ 품목별 수입가이드 구분

No.	항 목
I	중국산 냉동 닭의 수입 가이드
II	냉동 당과류 및 식품 수입 가이드
III	게임, 육류 및 가금류 수입 가이드
IV	우유와 우유 음료 수입 가이드
V	해산물 수입 가이드
VI	냉동 육류, 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와 냉장 가금류의 수입 허가 신청 가이드
VII	식품 리콜 가이드

## □ 중국산 냉장 닭고기 수입 가이드

- 홍콩은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관례로 중국산 냉동 닭고기와 같은 식품의 수입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못한 그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명시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홍콩 세관 Chapter 132 관련 법령 및 조례 제 54에 규정
- “냉장”식품은 0℃에서 4℃사이에서 저장하면서 냉장 전 처리과정을 거치는 식품들을 의미함
- 중국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수입 채소들은 식별 태그와 살충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살충제 잔류량 검사를 위해 대형화물 트럭에서 채소 샘플을 채취, 홍콩 식품관리국 만감토(Man Kam To)에서 검사를 실시함
- 도매시장과 도축장에서의 살아있는 가축류들도 홍콩 식품관리국 만감토(Man Kam To)에서 검사와 테스트를 거쳐야 함
- 수입업자 관련사항
  - 중국에서 냉장 닭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식품 환경 위생청으로부터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함
  - 냉동 닭고기관련 위생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는 6개월 동안 유효함
  - 식품 환경위생청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그 조건을

- 준수하지 못한 수입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조건에 준수되지 못한 제품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수입된 냉장 닭고기는 불량처리 되어 처분됨

○ 수입라이선스

- 홍콩 식품위생청은 이러한 식품의 수입 라이선스 발급 책임에 책임을 지며 중국 냉장 닭고기 수입업자는 각 냉장 닭고기 수하물에 대해서 위생청에 수입허가를 신청해야 함

○ 냉장 닭고기 수입 허가 신청은 (별첨 I)에 있는 양식을 따르며 모든 관련 세부 사항들은 신청서 함께 제출해야 함

- 별첨 I : [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iles/fehb161.pdf](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iles/fehb161.pdf)

■ 별첨 I - 식품환경위생청 냉장 닭고기 수입허가 신청서 양식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b>食物環境衛生部</b>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p> <p><b>食環安全中心</b> Centre for Food Safety</p> </div> <div style="font-size: small;"> <p><i>Application form to be sent to:-</i> Centre for Food Safe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42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Tel. No. : 2867 5560 Fax No. : 2521 4784</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b>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Fresh/Chilled* Meat/Poultry/Game Meat *</b></p> <p><b>Particulars of Application</b></p> <p>I. Particulars of Importer:</p> <p>(i) Company Name : _____</p> <p>(ii)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No. : _____</p> <p>(iii) Contact Person : _____</p> <p>(iv) Address : _____</p> <p>(v) Telephone No. : _____ Fax No. : _____</p> <p>II. Description of Meat : (1) _____ (2) _____</p> <p>Poultry/Game Meat (3) _____ (4) _____</p> <p>III. Quantity (Kg./Tonnes)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p> <p>IV. Place of Origin : Country _____</p> <p>Province/State/County _____ City _____</p> <p>V. Name and Address of Slaughtering and Processing Plant in Place of Origin : _____</p> <p>VI. Transportant : Yes/No* (If yes, please state transit country/place) _____</p> <p>VII. Means of Transportation to the HKSAR : By land/sea/air* _____</p> <p>VIII. Scientific Name in Latin (For game meat only) : _____</p> <p>Name of Applicant : _____ Signature in _____ (IN BLOCK LETTERS) Company Chop</p> <p>Date : _____</p> <p style="font-size: x-small;">Note: (a) Please refer to the "Statement of Purpose" attached about Personal Data. (b) * Please tick where appropriate.</p> <p style="font-size: x-small;">FEHD 161 (REV 2008)</p>	<p style="text-align: center;"><b>Statement of Purpose</b> (under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to be displayed or provided to data subjects)</p> <p><b>Purpose of Collection</b></p> <p>1. The personal data are provided by individuals with whom 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interests in controlling food safety. The personal data provided will be used by this Department for controlling food safety.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is voluntary. If you do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we may not be able to provide assistance to you.</p> <p><b>Classes of Transferees</b></p> <p>2. The personal data you provide are mainly for use within this Department but they may also be disclosed to other Government branches and departments or relevant parties for the purposes mentioned in para. 1 above, if required. Apart from this, the data may only be disclosed to parties where you have given consent to such disclosure or where such disclosure is allowed under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p> <p><b>Access to Personal Data</b></p> <p>3. You have a right of access and correction with respect to personal data as provided for in Sections 18 and 22 and Principle 6 of Schedule 1 of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Your right of access included the right to obtain a copy of your personal data. A fee may be imposed for complying with a data access request.</p> <p><b>Enquiries</b></p> <p>4. Enquiries concerning the personal data provided, including making access and correction, should be addressed to:</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Senior Executive Officer (Centre for Food Safety) Centre for Food Safe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42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Tel. No. : 2867 5500</p>
--	--

※ 수입 허가 신청기관 우편발송 주소 또는 방문신청 주소 :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Centre for Food Safety
- Food Surveillance & Control Division 43rd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Telephone Enquiry Number : 852) 2867 5560 / Fax No : 852) 2521 4784

- 냉장 닭고기는 반드시 위생청에서 허가받은 공장에서 가공처리 되어야 하며 허가 받은 공장의 목록은 (별첨 II)에 첨부되어 있음

■ 별첨 II - 식품환경위생청 냉장 닭고기 수입허가 받은 중국공장 ■

	허가 받은 공장 이름	공장 주소
1	廣州市大鵬家禽養殖有限公司 (旱禽加工廠)	廣州市白雲區神山鎮大石崗村 (土名) 基下黃泥堆
2	廣州市江豐實業有限公司卓味家禽加工廠	廣州市白雲區江高鎮江村村塔山
3	廣州市火村家禽深加工廠	廣州是蘿崗區火村黃崗坑蝦公山
4	廣東溫氏佳潤食品集團有限公司 (新興肉食品加工廠)	廣東省新興縣勒竹鎮
5	惠州順興食品有限公司	中國惠州市福田鎮福中路
6	虎門聯歡家禽加工廠	東莞市虎門白沙三村
7	佛山市高明海達高科技孵化養殖基地有限公司加工廠	佛山市高明區高明大道中 6號
8	廣州市榮利家禽有限公司	廣東省廣州花都區新華?九塘林科所西則
9	河源市匯先豐食品有限公司	河源市東源縣潯湖鎮楊坑村 205國道邊
10	五豐食品深洲有限公司家禽加工廠 (旱禽加工廠)	深州市羅湖區清水河一路
11	深州市光明華僑食品有限公司 (旱禽加工廠)	深州市寶安區光明華僑畜牧場光明大街
12	深州市寶安公明華馬山頭三鳥加工廠 (旱/水禽加工廠)	深州市公明鎮馬山頭
13	深州市龍崗區邢記綜合農場 (旱禽加工廠)	深洲龍崗區同樂唛屋坑莊內
14	珠海經濟特區科泰有限公司畜禽食品廠 (旱/水禽加工廠)	珠海市唐家灣鎮會同社區
15	海南 (潭牛)文昌鷄股份有限公司	海南省海口市美蘭區三江鎮蘇尋三村委會樓前坡

- 중국 냉장 닭고기의 수입은 별첨 III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함
  - 별첨 III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1a.html#3](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1a.html#3)

▣ 별첨 III : 중국산 냉장 닭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준수 조건 ▣

- a. 냉장 닭고기 수화물은 중화 인민공화국의 출입국 검역국이 발행하는 공식 보건 인증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
- b. 수입 라이선스는 검역국의 수입 등록부서에서 사전에 취득해야 하고, 확인을 위해서 제출해야 함
- c. 냉장 닭고기는 (허가받은 공장의 이름과 주소)에서 도축되고 포장되어야 함
- d. 각 냉장 닭고기 표면에 식별 스탬프를 표시하며, 식별 스탬프가 없는 경우는 압류하거나 폐기 처분함
- e. 냉장 닭고기는 0 °C에서 4 °C 사이에서 저장되어야 하고, 공장에서의 가공단계에서부터, 수입된 냉장 닭고기가 홍콩의 소매상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8 °C를 넘어서는 안됨
- f. 냉장 닭고기는 식품 및 환경위생청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고, 그 차량은 별첨 IV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함
- g. 냉장 닭고기는 식품의약품 규정, Cap 132 Schedule 3에 따라 레이블된 밀봉 용기에 개별적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각 용기의 겉에는 “CIQ 中國檢驗檢疫”의 홀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가공 공장의 등록번호와 생산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h. 도착당일, 모든 냉동 닭고기의 수하물은 홍콩 식품관리국 만감토 검역소/홍콩 국제공항의 공항식품 검역소/청샤완 도매 식품시장의 해안 사무소/ 웨스턴 도매 식품 시장의 해안 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통관되기 전에 위생청은 지정한 곳에서 보건 검사 및 검역을 할 수도 있으며, 수입업자나 그 대리점은 냉장 닭고기 수화물이 보건 검역조사관이 지정하는 날짜에 검역과 조사를 위해서 지정장소로 위탁해야 함
- i. 닭고기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용기, 포장 재료, 얼음 등은 반드시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깨지거나 결함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닭고기는 폐기해야 함
- j. 수입된 냉장 닭고기는 조작하지 않고 위생청에서 허가받은 식품판매점이나 노점상 그리고 그러한 상품을 팔도록 허가받은 상점에 본래의 포장 그대로 배송되어야 함
- k. 각 수하물이 홍콩과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허가받은 식품 판매점과 중국 냉장 닭고기를 공급받는 모든 노점상들의 이름과 주소의 목록, 그리고 각 상점에 공급되는 공급량을 위생부에 보고해야 하며 부적절한 경우 폐기해도 됨

■ 별첨 IV : 수입 냉장 닭고기 및 부산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 차량이 준수해야 할 사항 ■

- a. 수송차량은 수입된 냉장 닭고기와 /및 부산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밀폐된 형태의 0℃에서 4℃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장치와 어떠한 경우에도 8℃를 넘지 않는 운송 칸을 구비해야 함
- b. 차량의 운송 칸 내부표면은 매끄럽고, 청결이 잘 유지되어야 함
- c. 수입된 냉동 닭고기나 부산물을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배송차량의 운송 칸에서는 행거 레일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야 함
- d. 수송차량은 운송기간 동안 운송 칸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온도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함
- e. 운전자가 쉽게 운송 칸 내부의 온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계는 차량 외부에 배치함
- f. 수입된 닭고기와 부산물을 수송하기 위해 허가받은 차량의 운송 칸은 반드시 깨끗하고, 먼지 또는 다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고 하역하기 전에 또는 관찰 보건 검사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함
- g. 수송차량의 운송칸은 수입된 냉장 닭고기나 부산물의 운반에만 사용되며, 살아있는 닭이나 다른 상품을 운송해선 안됨
- h. 수입 냉장 닭고기 및/또는 부산물은 차량의 운송칸에서 0℃에서 4℃사이의 냉장온도에서 위생적으로 저장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8℃를 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온도 요구사항은 닭고기의 어떤 부위에 대해서도 적용됨
- i. 수입 냉장 닭고기 및/또는 부산물 수송차량의 운송칸의 모든 문과 창문은 식품의 선적과 하역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있어야 하며, 운송칸의 냉장장치는 선적 또는 하역 때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야 함
- j. 수송차량의 운송 칸에는 식품의 선적과 하역, 세척, 소독 그리고 운송 칸의 유지보수의 목적 이외에 어떤 인원도 탑승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운송 칸의 냉장장치와 온도계는 항상 제대로 작동해야함



○ 수하물의 도착

- 수입된 육류 그리고 가금류는 규정에 따라 육류배송인 경우 홍콩 식품관리국 만감토(Man Kam To), 항공 배송의 경우 홍콩 국제 공항, 또는 해운 운송인 경우 청샤완 도매시장이나 웨스턴 도매 시장으로 지정된 국경을 통해 들어와야 하며, 해당 위생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 식품 환경 위생청은 미생물 및 화학 검사등 다양한 식품안전 분석을 위해 각 검사소에서 식품 샘플을 모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과 지사체 관례 62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식품환경 위생청은 계약 이행 수입업자를 필요한 공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5일안에 냉장 닭고기 수입업자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함
- 식품환경 위생청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된 샘플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며, 수입시점에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으므로 위생청은 샘플이 수집된 시점에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함

- 통지에는 식품 샘플로 수집된 정확한 물품과 수량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에 대금 지불을 위해서 수입업자는 위생청에 청구서를 보낼 수 있음
- 가이드의 “냉장 닭고기”는 도축 후 바로 냉동전 과정을 거치고, 0℃~ 4℃에서 보관되는 닭고기를 의미함

#### □ 냉동 과당류 수입 가이드

- 냉동 당과류를 홍콩에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에게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짐
- 홍콩은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은 공공보건과 지자체 관례, 관련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부 법 조항들은 별첨을 참조
  - 법령 참조자료 : Chapter 132AK, Laws of Hong Kong
- 조례 제 54에 규정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못한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수 없음, 특히 냉동 당과류 관례의 규제는 냉동 당과류에 대한 법적 요건과 표준을 명시
- 수입업자는 다음의 주소에서 주요 조례 및 관련 법안 책자를 구매할 수 있음
-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은 식품 안전관리 영역 전반에 걸쳐 정책을 구현하고, 식품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음
- 공공 보건과 지자체 규범 62항에 따라 각 국경 검사소에서 미생물적 그리고 화학적 실험을 포함한 분석을 위해 식품의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

【 식품 수입 및 유통 신청서 】

[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drs/files/FEHB245.pdf](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drs/files/FEHB245.pdf)



請將申請書交回：  
 香港灣仔皇后大道東 258 號 1 樓 119 室  
 食物進口商／分銷商登記及進口簽證辦事處  
 食物進口商／分銷商登記及進口簽證辦事處  
 電話號碼：2156 3017 / 2156 3034 傳真號碼：2156 1015  
 電郵地址：fso\_enquiry@fehhd.gov.hk

申請可以電子表格提交，但須加上數碼簽署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by e-form which must be digitally signed

Application form to be sent to：  
 Food Importer/Distributor Registration  
 and Import Licensing Office  
 Food Import & Export Section  
 Room 119, 1/F, 258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Tel. No.: 2156 3017/2156 3034 Fax No.: 2156 1015  
 E-mail address: fso\_enquiry@fehhd.gov.hk

食物安全條例  
 FOOD SAFETY ORDINANCE  
 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登記申請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填寫此表格前，請參閱第 30 頁的「填表須知」)  
 (Please read the 'Guide to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at page 30 before completing this form)

甲部 Part A

請根據食物業務的法律地位選擇填寫 甲部(1)、甲部(2) 或 甲部(3)  
 Please base on status of the food business and fill in either Part A(1), Part A(2) OR Part A(3)

<b>甲部(1) Part A(1)</b>  (如屬公司申請，請填寫甲部(1)) (Please fill in Part A(1) if applicant is a Body Corporate)	公司名稱： Name of Corporation:
	業務名稱#： Name of Business#:
	獲授權人姓名： Name of Authorised Person:
	商業登記／其他登記*號碼(請註明)(附註 1)： Business Registration/Other Registration* No. (please specify) (Note 1):
	FEHB 245

	註冊辦事處地址#： Registered Office Address#:
	聯絡地址： Correspondence Address:
	電話號碼#： Tel.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b>甲部(2) Part A(2)</b>  (如屬個人申請，請填寫甲部(2)) (Please fill in Part A(2) if applicant is an Individual)	申請人姓名： Name of Applicant:
	香港身分證／其他身分證明文件*號碼(請註明)(附註 2 及 3)： Hong Kong Identity Card/Other Proof of Identity* No. (please specify) (Note 2 & 3):
	業務名稱#： Name of Business#:
	商業登記號碼(附註 1)： Business Registration No. (Note 1):
	業務地址#： Business Address#:
	聯絡地址： Correspondence Address:
	電話號碼#： Tel.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FEHB 245

## ■ 식품 수입 / 식품 유통 등의 등록 갱신 신청 ■

[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drs/files/FEHB248.pdf](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drs/files/FEHB248.pdf)



續期申請亦可經網上辦理，請瀏覽網頁 <https://www.fics.gov.hk>  
Application for renewal can also be made online. Please visit <https://www.fics.gov.hk>

請將申請書交回：  
香港灣仔皇后大道東 258 號 1 樓 119 室  
食物進口商/出口商  
食物進口商/分銷商登記及進口審證辦事處  
電話號碼：2156 3017 / 2156 3034 傳真號碼：2156 1015  
電郵地址：fso\_enquiry@fcd.gov.hk

Application form to be sent to：  
Food Importer/Distributor Registration  
and Import Licensing Office  
Food Import & Export Section  
Room 119, 1/F, 258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Tel. No. : 2156 3017/2156 3034 Fax No. : 2156 1015  
E-mail address : fso\_enquiry@fcd.gov.hk

**食物安全條例**  
**FOOD SAFETY ORDINANCE**  
**登記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續期申請**  
**Application for Renewal of Registration as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填寫此表格前，請參閱第 5 頁的「填表須知」)  
(Please read the 'Guide to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at page 5 before completing this form)

### 甲部 Part A

<b>登記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資料 Particulars of Registered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b>
姓名/公司名稱*(中文)： Name/Company Name* in English:
香港身分證/商業登記/其他身分證明文件*號碼(請註明)： Hong Kong Identity Card/Business Registration/Other Proof of Identity* No. (please specify):
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登記號碼：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Registration No.:

FEHB 248

1

### 乙部(1) Part B(1)

請注意：乙部(1)只適用於公司及合夥申請，如屬個人申請，請填寫乙部(2)  
Attention: Part B(1) is applicable to body corporate and partnership. If the applicant is an individual, please complete Part B(2).

#### 聲明 DECLARATION

本人 (請以正楷填寫姓名) (香港身分證/其他身分證明文件號碼) )  
I, (English Name in Block Letters) (HKID Card/Other Proof of Identity No. ) am

為上述業務的

<input type="checkbox"/> 東主 Proprietor	<input type="checkbox"/> 合夥人 Partner	<input type="checkbox"/> 董事 Director	<input type="checkbox"/> 獲正式授權的負責人 Responsible person duly authorised by the Company/Partnership
---	---	---	---

現謹此申請辦理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的續期登記，並作以下聲明：  
of the above business and hereby apply for renewal of registration as a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and declare that:

- (a) 本人獲正式授權代表上述公司/合夥提出此項申請並作出聲明，以辦理食物進口商及/或食物分銷商的續期登記，並完全明白夾附的《用途聲明》。  
I am duly authorised to make this application and declaration on behalf of the above-named company/partnership for renewal of registration as a food importer and/or food distributor and fully understand the "Statement of Purpose" as attached.
- (b) 本人證實較早前向食物環境衛生署署長(署長)申報作為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登記的資料並無修訂及正確無誤/於最近不多於 30 天內有所變更\*。本人明白有關的資料如有所變更，需根據法例於變更發生後 30 天內通知署長。  
I confirm that the particulars previously provided to the Director of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the Director) for registration as a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remain unchanged and are true and correct/have been changed recently within a period of not more than 30 days\*. I understand that according to the law, I need to notify the Director of any changes to the particulars within 30 days after the changes occurred.

簽署  
Signature: \_\_\_\_\_

職銜  
Position held: \_\_\_\_\_

日期  
Date: \_\_\_\_\_

公司印章  
Company chop: \_\_\_\_\_  
(適用於公司申請 Applicable to body corporate)

FEHB 248

2

- 위생청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된 샘플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며 수입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으므로, 위생청은 샘플이 수집된 시점에 수입자에게 통지함
- 통지에는 식품 샘플로 수집된 정확한 물품과 수량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에 대금 지불을 위해서 수입업자는 위생청에 청구서를 보낼 수 있음
- 식품 수입업자
  - 냉동 수입업자는 수출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냉동 당과류에 대해 홍콩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수입업자는 이러한 식품에 대해 특정한 수입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제조원의 승인 신청
  - 냉동 당과류는 그 중에서도 홍콩으로 수입되어 오는 모든 냉동 당과류 식품은 환경 위생청의 청장에 의해 승인 받은 제조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부청장은 청장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품을 홍콩으로 수입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부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 (a) 냉동 당과류 처리 공장의 이름과 주소
    - (b) 냉동 당과류 생산국의 법률
    - (c) 냉동 과당류의 레이블이 붙은 포장과 빈 용기
    - (d) 냉동 당과류의 열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와 처리되는 공장의 설비나 수자원 공급 등을 포함한 설비 정보
    - (e) 다음의 목적을 위해 생산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필요
      - 냉동 과당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열처리 방법을 통해 살균되었고, 상품이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처리되고 가공되었다는 증명
      - 상품의 화학적 그리고 미생물적 품질을 증명
    - (f) 착색 원료, 소독기와 당성분 등과 같은 재료 세부사항과 냉동 당과류 내에서의 각 재료들의 용량

○ 수하물의 도착

- 수입상은 먼저, 허가를 취득하고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부청장이 요구한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난 후에 당과류를 홍콩으로 수입할 수 있음
- 공공 보건 지자체 조례 제 59(1)(c)는 위생청이 수입된 식품 검사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 냉동 당과류의 수하물이 도착하고 판매되기 이전에, 상품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청에서 샘플링하게 되며, 위생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판매 허가서”가 발행됨

○ 계약 이행

-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은 수입상을 포함한 공공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냉동 당과류 수입과 관련하여 위생청은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함
  - (a) 제조원의 허가 신청을 받은 12일 이내로 진행해야 함
  - (b) 실제 배송물의 도착일과 도착 통지를 받은 일, 두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방출 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 신청과 문의

- ※ 냉동 당과류 수입과 샘플의 가격지불과 관련된 신청과 문의는 관련 :
  - 식품 안전과 와 식품 및 환경 위생청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전화 : 852) 2867 5990 또는 24시간 핫라인 852) 2868 0000



□ 야생 동물류, 육류 및 가금류 수입가이드

- 수입과 수출 조례 법령 (Chapter 60)에 따르면, 냉동 또는 냉장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가금류는 라이선스 관리를 받아야 함
-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 위생청에서 발간한 “냉동육류, 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 그리고 냉장 가금류의 수입 라이선스 신청 가이드”를 참조
  -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 수입조항 관련사항
  - 식품 수입업자들은 수출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수입하는 육류와 가금류가 홍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paragraphs 8-12에 정해진 대로 특정한 수입 절차가 제정됨
  - 수입된 육류 그리고 가금류 규정
  - 식품 및 환경 위생 안전청 청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관할 기관의 공인 인증서를 가진 육류 또는 가금류만 수입하도록 허가함, 만약 공식 인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관할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관련 기관이나 정부에 식품 및 환경 위생청에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관련 국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a) 동물 질병 상황이나 육류나 가금류의 위생 기준에 관한 법률;
    - (b) 육류나 가금류의 처리 공장의 위치, 처리 시설과 처리 과정, 생산, 저장 및 배송 정보
    - (c) 도축 전후 과정에서의 육류 및 가금류의 검사 상세내용과 그 검사 과정의 담당 책임자의 자격요건 ;
    - (d) 공식 수의과와 건강 인증서의 샘플
    - (f) 공식 수의과와 건강인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관할 기관의 공식적인 명칭
-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가 발급된 육류 및 가금류 수입은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음
- 수입 금지된 육류나 가금류 수입

- 수입된 육류 및 가금류 규정의 규정 4(1)(b)에 따르면 금지된 육류나 가금류의 위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함
- 허가 신청을 하려면, 수입업자는 paragraphs 8(a)에서 (f)에서 지정된 정보 뿐만 아니라 원산지 국가의 정부로부터 금지된 육류나 가금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육류나 가금류의 위탁물이 환적되기 전에 위생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a) 관할 기관에서 발급된 공인 인증서
  - (b) 육류나 가금류가 밀봉된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에서 발급된, 어떤 손상이나 퇴화가 없이 그 나라로 적절히 운송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환적 인증서

#### □ 수입 우유와 우유음료 수입가이드

- 우유와 우유 음료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홍콩은 식품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공공보건과 지자체 관리, 관련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음
  - ※ 관련 법령 : Chapter 132 관련법령, 조례 제54에 의거 규정
- 조례 제54에 규정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못한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없음, 특히 우유와 우유음료의 규정은 법적 요건과 표준을 명시
- 수입업자는 아래의 주소에서 주요 조례 및 관련 법안 책자를 구매할 수 있음
  - ※ 주소 : Room 626, 6/F, North Point Government Offices, 333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우유, 유제품 음료 수입업자들은 수출국가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의약청의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수입 시 품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수입업자는 우유, 유제품 음료의 수입 절차 및 제품의 특성에 주의해야 함

- 우유, 유제품 수입업자의 수입 관련 신청
  - 제조업체의 허가 승인 신청
  - 홍콩에 수입되는 모든 우유, 유제품 음료관련은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만 수입을 할 수 있음
  - 홍콩 식품 및 환경위생부서의 부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
  - 홍콩에 우유, 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함 함
    - a. 우유,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 b. 우유, 유제품 생산에 관련하여 생산 당국의 허가서
    - c. 라벨이 첨부된 우유, 유제품의 빈 용기
    - d. 우유, 유제품 및 가공 공장의 생산 설비와 물공급 시설, 편의 시설, 열처리 방법에 관련된 정보
    - e. 다음의 목적을 위해 생산국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필요
      - ①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우유, 유제품의 살균, 저온 살균의 효과적인 열처리 방법의 관리, 진행, 패키징에 관련된 인증서
      - ② 제품의 화학적, 세균학 질의 방영
    - f. 제품의 유통기한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 수하물의 도착
  - 우유와 유제품은 수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전에 홍콩 식품 환경위생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난 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야 홍콩에 수입이 가능
  - 공공 보건 지사체 조례 제 59(1)(c)에 의거 식품 환경 위생청이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 우유, 유제품의 수하물이 도착하여 출고, 판매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 수입 식품의 샘플을 제공, 위생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판매 허가서”를 발행함
- 계약 이행
  - 식품및 환경 위생청은 수입상을 포함한 공공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해야 하며, 우유, 유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a. 제조원의 허가 신청을 받은 12일 이내로 진행해야 함
  - b. 실제 배송물의 도착일과 도착 통지를 받은 일, 두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출 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 ※ 우유, 유제품 수입과 샘플의 가격지불과 관련된 신청과 문의
- 식품 안전과 와 식품 및 환경 위생청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전화 : 852) 2867 5990 또는 24시간 핫라인 852) 2868 0000.

## □ 수산물 수입가이드

- 홍콩에 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관련 식품안전 및 통제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홍콩은 공공 보건과 지사체 규정에 의거 식품 안전청 법령 (Cap 132 - 조례 제 54항)의 Part V와 그 부속 법률에 식품 안전 관리의 법적 틀을 두고 있으며, 부속 법률은 별첨을 참조
- 조례 54항에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식품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정
- 수입업자는 주요 규정과 부속 법률을 아래의 주소에서 간행물을 구매할 수 있음
  - 간행물 구매지 주소 : Room 626, 6/F, North Point Government Offices, 333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식품 및 환경 위생청 임무
  -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식품 및 환경 위생부는 식품 안전 관리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정책을 실현하고, 식품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음
  - 환경 위생부는 공공 보건 및 지사체 규제 62항에 의해 위임된 대로 미생물 및 화학 실험을 포함한 분석을 위해서 각 입국 지점에서 식품의 샘플을 수집할 수 있음
  - 식품 및 환경 위생부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져온 샘플에 대해 시장가격을 지불

하며, 입국시점에서 가격의 상승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위생부는 수입업자에게 샘플을 수집할 때 샘플 통지서를 발행해야 함

- 샘플 통지서에는 식품 샘플의 정확한 품목과 수량이 기재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대금 지불을 위해 위생부에 청구서와 통지서 사본을 보낼 수 있음

○ 수입업자 관련사항

- 식품수입업자는 수출국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그들이 수입하는 수산물이 홍콩 법률을 따르는데 보장할 책임을 지며, 해산물은 수확 구역이나 처리 과정에서 미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위험 식품군으로 간주됨
- 식품 및 환경 위생부는 수입되는 해산물이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생산국의 보건 당국으로부터 발행된 보건 인증서를 취득하도록 강하게 권장하고 있음

○ 수하물의 도착

- 공공 보건과 지자체 규제 59(1)(c)는 식품 및 환경 위생부에 수입된 식품을 검사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위임,
- 현재, 해산물 수하물이 홍콩의 입국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위생부에 의해 검역 또는 샘플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 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보건 인증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위생부는 이것이 판매되기 전에 검사를 위해 수하물에서 샘플을 가져갈 수 있음

※ 샘플에 관한 지불과 관련된 신청은 아래의 주소로 가능

- 주소 : 식품 및 환경 위생부 식품 안전과
- Centre for Food Safe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전화 : 852) 2867 5990 내선 6번 / 24시간 핫라인 : 852) 2868 0000.

## □ 냉동육류, 냉장육류, 냉동 가금류와 냉장 가금류의 수입허가 신청가이드

### ○ 신청 절차

- 냉동육류, 냉장육류, 냉동 가금류와 냉장 가금류의 수입업자는 다음 주소의 식품 및 환경 위생과의 식품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록과 수입 라이선스 사무소에서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함
- 주소 : Room 119, 1/F, 258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 냉동 육류, 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와 냉장 가금류의 각 수화물은 하나의 수입 라이선스로 처리 가능함
- 수입 라이선스의 신청은 수입라이선스 신청서를 3부 작성해야함
- 수입 라이선스 신청서는 수하물 수출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보건 인증서 또는 식품 및 환경 위생부의 부서장으로부터 받은 특정 허가서가 첨부 되어야 함
- 수입업자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신청서 수령 이후 식품 및 환경 위생과는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자는 식품 및 환경 위생과에서 라이선스를 받을 때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라이선스는 신청한 이후 24시간 뒤에 발급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청일과 발급일 제외)
- 수입 라이선스의 신청 절차는 무료이며 수입 라이선스 양식은 비용이 부과되며, 수입 라이선스 양식은 아래에서 구매할 수 있음
  - ※ 무역 및 산업국 발급과 양식판매 사무국에 직접 가서 구매
    - 주소 : 1/F,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wer, 700 Nathan Road, Kowloon
    - 전화 : 852) 2398 5325
  - ※ 정보 서비스국의 간행물 판매 사무국
    - 주소 : Room 626, 6/F, North Point Government Offices, 333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전화 : 852) 2537 1910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주문 :
      - <http://www.info.gov.hk/isd/form/order.htm>
      - <http://www.bookstore.gov.hk>

- 2012년 2월 1일부로 식품 안전 규제가 전체적으로 시작되면서, 냉동 육류, 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 및 냉장 가금류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는 식품 수입업자와 식품 유통업자의 등록제도 하에 등록된 수입업자 또는 식품 안전규제에서 면제된 식품 취급업자 (이미 등록하였거나 자격을 취득한 식품 수입업자 또는 식품 유통업자)에게만 발급할 것이라 발표
- 수입 업체가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 안전 조례에 따라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청장에게 먼저 등록해야 함
- 규정이나 등록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의 “식품 수입업자와 식품 유통업자를 위한 등록 절차 가이드”를 참조하면 됨
- ※ 참조 웹사이트 : [www.foodsafetyord.gov.hk](http://www.foodsafetyord.gov.hk)
- 개인적인 용도로 15Kg 이하의 개인 수하물을 홍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육류나 가금류의 수입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됨

○ 라이선스 유효기간

- 수입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한번의 선적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발급날짜로부터 6주간 유효함

○ 수입 라이선스의 배송

- 신청서 허가가 나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2부(원본과 복사본)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복사본은 수입업자가 보관함
- 육류나 가금류의 수입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식품을 수입한 14일 이내에 수입 라이선스의 원본을 목록와 함께 무역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함

○ 냉장 저장 창고 등록

- 식품 및 환경 위생부의 냉장 상점 라이선스는 수입된 육류 및 가금류를 냉장 보관 창고로 자동적으로 등록되며, 식품 사업을 위해 냉동 또는 냉장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는 등록된 수입업자는 자신의 허가받은 식품업체를 수입 육류나 가금류의 냉장 저장 창고로 등록해야 함
- 냉장 저장 창고에 대한 등록의 자세한 사항은 별첨II의 신청서에 나와 있음

## □ 식품 리콜 가이드

- 리콜 관련 제도 및 규정
- 식품에 대한 리콜은 식품업계, 정부 그리고 특히 소비자에게 있어 공통의 관심 분야이며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에 유해한 식품에 대한 판매, 유통 그리고 소비 행위를 금지하는 행동을 정의함
- 대부분의 경우에서 식품을 리콜하는 경우는 식품취급업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지며, 이 내용은 식품의 리콜을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제 공되었음
- 공공의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소비자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지를 설명해 줌
- Public Health & Municipal Services 조례에 의하면, 소비자의 소비를 위한 식품은 건강에 좋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으며, 오염되지 않고,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
- 이러한 규정들을 위배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대한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 업자에 대한 고소를 할 수도 있음
- 감독관이 소비자의 소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식품에 대한 검역이나 압 류를 할 수도 있음
- 또한, 식품안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환경위생청의 청장은 제30항에 따라 공공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명 령은 아래와 같음
  - (a)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 (b) 식품에 대한 공급을 금지함
  - (c) 식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함
  - (d) 식품에 대한 압류, 격리, 처분이나 처리를 명령함
  - (e) 식품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행 위가 가능하도록 허가함

- 자발적 리콜에 대한 정부의 주요 역할은 리콜의 절차를 모니터 하고 식품거래상들의 관점에서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고 있는냐를 평가하는 것임
- 리콜이 완료되고 나면 식품 환경 위생청은 상품이 적절히 처리되고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함
- 리콜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식품 환경 위생청은 소비자들이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일반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콜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음
  - 소비자 건강의 위급 상황시 식품 환경 위생청은 가능한 근거들을 기준으로 리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식품 환경 위생청 청장은 위의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리콜에 대한 식품업계의 역할
  - 기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기 위한 후속조치 그리고 리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을 포함한 다양한 규정 등의 리콜 과정에 대한 준수를 책임져야 함
  - 리콜은 식품 및 환경 위생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리콜 전략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리콜 과정에서는 기업의 직원은 최신 정보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리콜에 해외 수출 품목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해야 하고, 리콜 된 재고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함
- 리콜 개시
  - 리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거래상에 보고된 보고서와 불만들이 모여 시작되며, 그 보고서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 관계자, 정부 기관이나 소비자를 통해서 전달됨
  - 해외에서 제조된 식품에 관한 리콜은 해외 신문이나 보건 당국들의 유사 출간물 또는 당국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보고를 통해 시작될 수도 있음

-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리콜은 주로 가능한 짧은 시간에 수행됨
- 어떠한 비상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식품 거래상들에게 개별 리콜 규정을 만들기를 권고하며 그 절차는 유통과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와 식품 환경 위생청에 문제를 알리며,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식품을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함

○ 리콜 관련 식품 환경 위생청에 고지

- 투명하고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선책으로, 식품취급상들은 즉각적으로 리콜에 대한 원인과 공공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그 어떠한 의견이라도 함께 식품 환경 위생청에 보고해야 함
- 또한, “The Voluntary Food Recall Notification Form”을 신청, 이에 의한 적절한 조취도 함께 제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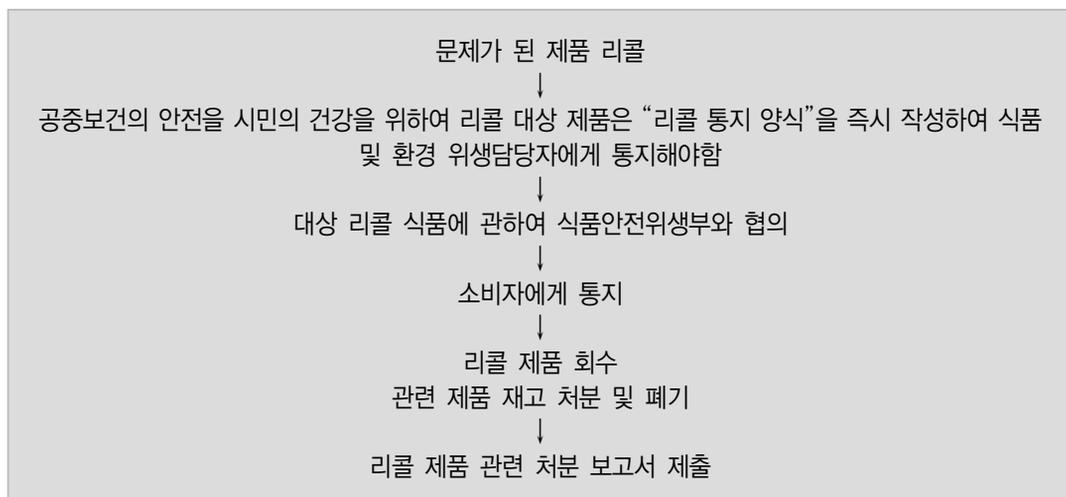
※ 리콜 신청서 양식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sg\\_08\\_recallform.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sg_08_recallform.html)

- 리콜 관련 문의 : [Food\\_Recall\\_Notification@fehd.gov.hk](mailto:Food_Recall_Notification@fehd.gov.hk)

- 전화 : 852) 2867 5567 / 팩스 : 8252) 2521 4784

■ 수입 관리 및 식품안전 가이드라인 ■

리콜관련 식품 진행 과정



○ 소비자 정보 제공

- 리콜 규모에 따라, 해당 취급업자는 가능한 초기단계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함
- 정보는 신문 기사나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미디어에 유료 광고, 공공 안내, 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 상점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질의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문의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리콜 평가

- 식품 환경 위생청은 다음을 포함해서 취급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 (a) 리콜에 대한 즉각적인 안내/ 미디어를 통한 공급이나 수입을 금지
  - (b) 고객 문의 서비스를 구축
  - (c) 수입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매업자들간의 리콜에 관해 동의/ 관련 식품의 회수를 위한 편리하고 적절한 장소등과 같은 공급과 수입 금지와 관련된 동의
  - (d) 최종 소매상으로부터 해당 식품의 즉각적인 철수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반품하는 물건을 저장할,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적절한 저장 장소
  - (e)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의 저장창고로 회수된 식품에 대한 즉각적인 반품과 적절한 폐기 처리
  - (f) 취급업자에 입장에서 리콜된 식품에 대한 기록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 (g) 결함의 원인과 후속조치에 대한 조사 (개선방법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식품 환경 위생청에 보고해야 함)

○ 회수 조치

- 소매상은 관련 식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반납이 유보되는 동안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식품들을 보관해야 함
- 생산업자는 그 식품들을 따로 보관해야 하고, 어떠한 다른 가공처리에도 사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소매상은 유통업자에게 반품하기 위해서 회수된 품목에 대한 수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상품 확인을 통해 리콜된 식품은 다른 식품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에 따로 저장되어야 하고, 배송실수 등을 막기 위해서 적절히 표시 해야 함

#### ○ 상품 회수

- 상품은 슈퍼마켓으로 회수 되거나 유통체인을 통해 또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회수될 수도 있음
- 상품은 중앙 지점으로 회수 되거나, 광범위하게 유통된 상품인 경우 주요 회수 지점으로 회수 됨
- 회수된 물품은 다른 식료품과 격리 보관되어야 하며, 회수된 물품의 수량과 일괄 처리 코드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 회수된 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시장에 나오기 전에 수정이나 재가공을 거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품은 폐기 됨

#### ○ 후속조치

- 리콜 사후 보고- 유통업자는 정기적으로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식품 환경 위생청의 요청) 그리고 리콜이 완료된 시점에서 한 달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포함해야 함
  - (a) 리콜을 시행하게 된 배경
  - (b) 취급업자가 취한 마스크림 홍보의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
  - (c) 홍콩과 해외의 관련 집단의 유통 규모
  - (d) 리콜 결과(회수 물품의 수량, 총계, 등)
  - (e) 폐기방법 또는 회수된 식품의 처리 기록 그리고
  - (f) 결함 사유와 미래에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조사 보고서
    - ① 보고서는 리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됨
    - ② 적절한 보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식품안전 위생청은 감사를 강화하기

나 리콜조치의 연장 또는 식품 안전 명령 등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리콜의 효율성

- 효율성을 위해서, 리콜 통지는 상품이 유통된 만큼 널리 알려져야 하며, 리콜의 효율성은 제조업체에 남아있는 수량의 비율과 회수된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의 소매상 회전률을 고려해서 측정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리콜제도는 세계적으로 식품취급업자와 규제기관간의 협력 간 시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식품을 가장 빠르고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해를 통해 증명해 왔음
-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의 리콜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의 기초가 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것은 취급업체와 지역사회에 입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이 됨

## 2. 건강 식품 - 인삼

- 홍콩은 담배, 술(30도 이상), 메틸알콜, 하이드로 카본오일 외에는 무관세이며 인삼제품 역시 무관세로 홍콩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으며 수입절차 또한 일반상품과 동일하고 원산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음
- 인삼은 일반식품이 아닌 중약으로 취급되어 도소매업자의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함
  - 인삼원자재 : Wholesaler License in Chinese Herbal Medicine.
  - 인삼제품 : Wholesaler License in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 인삼가공제품은 중성약으로 분류되어 중성약으로 등록 후 판매가능하며 사실상 등록없이 판매 가능
- 통관관련 법률 : 수출입 법률(홍콩특별행정부 법률 제 60장)
- 일반식품 취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입법률 중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의 적용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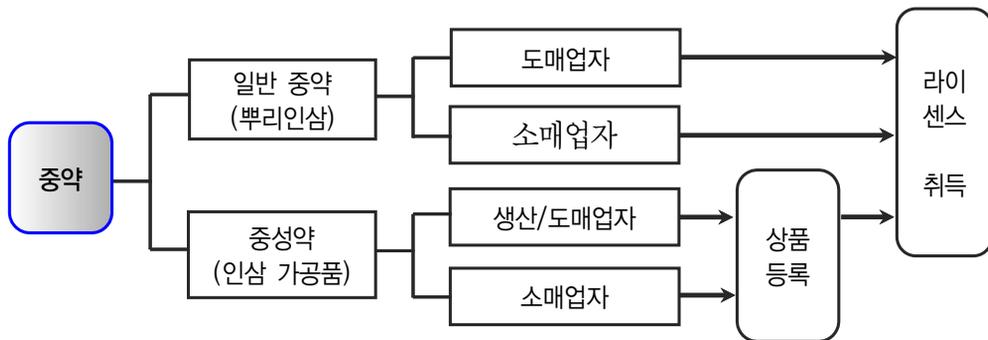
- 일반 식품 중 의약(Medicine) 성분이나 의학적 효과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 138)’ 법률을 따르며, 이중 중약(Chinese medicine) 성분으로 구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Chinese Medicine Ordinance(Cap. 549)’ 적용을 받음
- 중약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약은 크게 일반 약초(herbal)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일반 중약(Chinese herbal medicines)과 캡슐, 가루 등 가공 중약품에 해당하는 중성약(proprietary Chinese medicine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삼의 경우 백삼, 홍삼 등 뿌리인삼 제품은 일반 중약에, 인삼차, 농축액 등 기타 인삼 가공제품은 중성약으로 분류됨

■ 식품 및 중·의약품 구분 및 적용 법률 ■

종류	기준	적용 법률
일반식품	기타 모든식품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의약품	의약성분 포함, 의약효과 문구포함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 138)
중약품	중약성분 포함	Chinese Medicine Ordinance(Cap. 549)

- 중약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 중성약 생산·도매업자는 반드시 취급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중성약 소매업자는 홍콩 중약의 회(Chinese Medicines Council of HK)의 중약 이사회(Chinese Medicines Board)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판매가 가능함

■ 중약 종류 및 등록 절차 ■



- 인삼, 화기삼 등 대부분의 뿌리인삼 제품은 일반 중약(총 574종)으로 포함되어 있어 중약 법률인 Cap. 549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에 의해 중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뿌리인삼 종류는 아래와 같음
  - Radix Ginseng(人參), Root of Panax ginseng C.A.Mey
  - Radix Panacis Quinquefolii(西洋參), Root of Panax quinquefolium L
  - Radix Notoginseng(三七), Root of Panax notoginseng(Burk.)F.H.Chen
  - Rhizoma Panacis Japonici(竹節參), Rhizome of Panax japonicus C.A.Mey
- 상기 4종은 대부분의 뿌리인삼을 포함하는 것으로 뿌리인삼의 학명에 따른 일반 명칭 및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Ⅰ 중약적용 뿌리인삼의 보통명 및 기타특성 Ⅰ

학 명	보통명	기타명	분포지역	형태
Panax ginseng C.A.Meyer	인삼	고려인삼, 고려삼, Korean Ginseng	한국, 만주	사람모양
Panax quinquefolium L.	화기삼	미국삼, 캐나다삼, American Ginseng	북미 동부	원추형
Panax notoginseng Burkill	삼칠삼	전칠삼, 삼칠, Chinese Ginseng	중국운남, 광서	소형당근
Panax japonicum C.A. Meyer	죽절삼	소삼, 죽절삼칠, Japanese Ginseng	일본, 중국운남	대나무뿌리

- 뿌리인삼 중약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홍콩 중약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0년에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한 대상은 변경신청으로 가능함
  - 변경신청 : Transitional licensing of Chinese medicines traders
  - 소매업자 : Retailer Licence in Chinese herbal medicines
  - 도매업자 : Wholesaler Licence in Chinese herbal medicines

-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홍콩 중약의회의 건강부문 중약 섹션에 (Chinese Medicines Section of the Department of Health)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홍콩 중약의회의 “중약이사회”에 의해 평가되며, 모든 서류와 수수료 지급이 입증되면 중성약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proprietary Chinese medicine)가 최종 발급되어 5년간 유효기간이 인정됨

■ 중약 라이선스 취득 문의처 ■

구분	홍콩섬(HK Island)	구룡(Kowloon)
주소	Chinese Medicines Division, Department of Health, 32/F, Wu Chung House, 213 Queen's Road East, Wanchai, HK	Chinese Medicines Section, Department of Health, Chinese Medicine Council of HK, 2/F, Public Health Laboratory Centre, 382 Nam Cheong St., KL, HK
연락처	852-2574-9999	852-2319-5119

-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mchk.org.hk/pcm/eng/idx\\_reg03a.htm](http://www.cmchk.org.hk/pcm/eng/idx_reg03a.htm)
- 중약 라이선스 발급 및 중성약 등록 신청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비용 내역	금액
라이선스	일반 중약 도매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1,210
	일반 중약 소매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1,090
	중성약 도매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1,210
	중성약 생산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3,180
등록	단일성분(single ingredient) 중성약 등록 신청비	HK\$500
	복합성분(multiple ingredients) 중성약 등록 신청비	HK\$1,000

- ※ 중성약 제품등록 문의처
  - 주소 : Pharmaceutical Service, Department of Health, 3/F, Public Health Laboratory Centre, 382 Nam Cheong St., KL, HK
  - 연락처 : 852-2319-8460

【 중성약 등록시 필요한 서류종류 】

일반 서류(General documents)	범주 1	범주 2	범주 3
1. 일반 신청서 양식 및 체크리스트 (Application form & appropriate checklist)	P	P	P
2. 신청비(Application fee)	P	P	P
3. 신청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in-charge of the company)	P	P	P
4. 제품 생산업체 또는 판매연혁 관련 입증서류 (Documentary proofs of manufacture or sales history of the product)	P	P	P
5. 원산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생산허가증 사본 (Copy of manufacturing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untry of origin)	P	P	P
6. 원산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무료판매서류 사본 (Copy of free sale documentation of the product issued by the country of origin)	P	P	P
7. 제품샘플 및 판매포장 원본 (Product samples and prototype sales pack)	P	P	P
8. 법률에 준하는 라벨링 및 포장상품 삽입내용 (Label & package insert that have complied with the laws)	P	P	P
9. 소유주 제조법(Master formula)	P	P	P
제품 안전성 서류(Product safety documents)			
1. 중금속 및 독성 요소 테스트 결과보고서 (Heavy metals and toxic elements test report)	P	P	P
2. 살충제 잔여 테스트 결과보고서(Pesticide residues test report)	P	P	P
3. 세균 한도 테스트 결과보고서(Microbial limit test report)	P	P	P
4. 실제 유독성 테스트 결과보고서(Acute toxicity test report)	P	P	P
5. 장기간 유독성 테스트 보고서(Long-term toxicity test report)	X	P	P
6. 현지 유독성 테스트 보고서(Local toxicity test report)	P	P	P
7. 돌연변이 테스트 결과보고서(Mutagenicity test report)	X	P	P
8. 발암성 테스트 결과보고서(Carcinogenicity test report)	X	P	P
9. 번식 및 재발 유독성 테스트 결과보고서 (Reproductive and development toxicity test report)	X	P	P
10. 제품 안전성 서류 요약보고서 (Summary report on product safety documents)	P	P	P

제품 효용성 서류(Product efficacy documents)			
1. 처방 공식화 해석 및 원리 (Interpretation and principle of formulating a prescription)	P	P	P
2. 제품 효용관련 참고자료 (Reference materials on product efficacy)	P	P	P
3. 주요 약력학 연구보고서 (Principal pharmacodynamic studies report)	X	X	P
4. 일반 약력학 연구보고서 (General pharmacological studies report)	X	X	P
5. 임상시험 실험계획 및 요약보고서 (Clinical trial protocol and summary report)	X	X	P
6. 제품 효용성 서류관련 요약보고서 (Summary report on product efficacy documents)	P	P	P
제품 품질 서류(Product quality documents)			
1. 생산 방법(Manufacturing method)	P	P	P
2. 천연 약품의 물리화학적 소유권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rude drugs)	P	P	P
3. 제품 분류, 분석방식 및 증명서 (Product specification, method and certificate of analysis)	P	P	P
4. 촉진/일반 안정성 테스트 결과보고서 (Accelerated stability test report or general stability test report)	P	X	X
5. 실시간 안정성테스트 결과보고서(Real-time stability test report)	X	P	P

## 통관부서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무시간
항공 운송	852) 2116 4130	852) 2116 4201	24시간
해상 운송 Containerized Cargo	852) 2410 8045	852) 2420 2429	08:00~22:30(월-금) 09:00~17:00 (토)
해상 운송 -Sea Cargo	852) 2534 7188	852) 2854 1280	24시간
해상 운송 River Trade Vessels Cargo	852) 2180 8977	852) 2180 8976	08:15~18:15(월-금) 08:15~16:30 (토)
육상 운송 Lok Ma Chau Control Point	852) 2482 8758	852) 2482 2552	24시간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무시간
Lok Ma Chau Spur Line Control Point	852) 2486 0222	852) 3404 6066	06:30~22:30
Man Kam To Control Point	852) 2679 2000	852) 2679 5828	07:00~22:00
Sha Tau Kok Control Point	852) 2674 4384	852) 2674 9345	07:00~20:00
Shenzhen Bay Control Point	852) 3527 0069	852) 3527 0829	06:30~24:00
철도 운송	852) 2957 0219	852) 2363 8242	06:15~24:00

### 제3절 자료출처

#### ○ 웹사이트 및 관련법규

구분	웹 사이트
홍콩 세관	<a href="http://www.customs.gov.hk/en/home/index.html">http://www.customs.gov.hk/en/home/index.html</a>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a href="https://www.rocars.gov.hk/en/landing_page.html">https://www.rocars.gov.hk/en/landing_page.html</a>
세관 관리부	7/F, Harbour Building, 38 Pier Road, Central, Hong Kong
수입 규제 담당기관	customsenquiry@customs.gov.hk
홍콩 식약청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2.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2.html</a>
홍콩 세관 통관 라이선스 발급 안내	<a href="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a>
홍콩 식품 환경위생국	<a href="http://www.fehd.gov.hk/english/publications/code/code_index.htm">http://www.fehd.gov.hk/english/publications/code/code_index.htm</a>
홍콩세관 - 수입조례법령 60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a>
홍콩식품안전청 - 냉동과자류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a>
홍콩식품안전청 - 육류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a>
홍콩식품안전청 - 유제품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a>
수출입 통관 기본 규정	<a href="http://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2.pdf">http://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2.pdf</a>
수출입 신고 문서 요청	Completion of Import/Export Declarations and Data Requirement
수입/수출 등록처 및 연락처	전화: 852) 2158-3041 / 팩스: 852) 2521-4784
리콜 관련 문의	Food_Recall_Notification@fehd.gov.hk
중성약 제품등록 문의처	전화 : 852) 2319-8460



## 제2장 검역제도

### 제1절 검역제도 일반

- 식품관련 수입시에는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특히 엽수류(사냥한 짐승·새 등의 고기류)는 식품환경위생국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도 해당 부서에 의해서 원산지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 저산성 식품에 대한 무균처리 과정과 포장에 관한 위생 처리 규정
  - 품목별 검역제도 상세 내용 첨부
- 동물성 식품에 대한 보건 인증서 신청 안내
  - 품목별 검역제도 상세 내용 첨부
- 식품의 살충제 잔류 모니터링
  - 품목별 검역제도 상세 내용 첨부

##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 □ 저산성식품에 대한 무균처리 과정과 포장에 관한 위생 처리 규정

#### 〈 개 요 〉

- 저산성식품의 무균처리나 포장은 복잡한 식품 제조 공정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의 측면에서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주의 깊게 통제되어야 하며 이것은 내부적으로 연관된 많은 처리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위생 작업은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식품 안전청이 정한 것으로 여러 관련 기관과 조정하여 정하였으며 이것은 무균처리 되거나 포장된 저산성식품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수적인 안전성이나 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조언을 하기 위해 제공됨
- 이 규정과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있는 식품업자는 식품환경 위생청  
 ※ 공보자료부로 연락 : 연락 전화번호 - 852) 2381 6096
- 상업적으로 살균된 식품들을 공공건강을 중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고, 상온에서 저장되고 유통되는 상태에서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가공되며 이것은 살균 처리와 포장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살균처리와 포장은 식품이 상업적으로 살균, 냉각 그리고 기존에 살균된 포장재 질에 살균되어 채워지고, 진공 밀봉되는 기술을 참조하여 최종 제품은 살균된 식품을 밀봉 포장, 즉 일반 환경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될 수 있도록 형태임
- 산성화를 기준으로, 식품은 저산성 식품과 산성식품으로 나누어 짐
- 저산성식품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 즉 열처리 과정이후 산성농도가 4.6이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뜻하며 이러한 식품들은 산성농도 4.6이상의 환경에서 변질되기 쉽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같은 독성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식품으로 간주

- 좋은 제조공정은 이러한 식품들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저산성식품의 살균처리나 포장은 복잡한 식품 제조 과정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의 측면에서 식품가공, 충전 그리고 포장 시스템까지 주의 깊게 통제되어야 함
- 그리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연관된 많은 처리 단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은 무균처리 되거나 포장된 저산성식품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필수적인 안전성이나 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조언을 하기 위해 제공됨

#### 〈 범 위 〉

- 이 위생처리 규정은 밀봉된 용기에 살균된 저산성 식품을 포장하는 과정과, 저장 처리과정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위생 과정이며 이것은 전통적인 통조림 제조 공정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저산성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매우 다양한 상품들과 포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가공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식품 가공업자의 책임임

#### 〈 시설 설계와 설비 〉

- 살균 포장된 저산성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와 설비는 식품 환경 위생청이 제시한 조건들과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과 병행해야 함
- 시설간의 모든 냉장 공간은 온도 측정 시설과 기록 설비가 완비되어야 함

#### 〈 위생 가공 요건들 - 원자재 요건 〉

- 가공업자는 사용되는 원재료와 그 성분들을, 공급업자나 가공업자가 특정 요건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함
- 가공업자는 원재료와 성분들이 확인되고 검증되었다는 자료들을 만들고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원재료와 주성분들은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보관, 유지 그리고 다루어 져야하며 원재료와 주성분은 적절히 순환되도록 해야 함

#### 〈 위생가공 요건들 - 재료의 포장과 제품용기 〉

- 저산성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 재료들은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 시키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방법으로 보관되고 처리해야 하며 제품 용기의 소재는 상품이 적절하게 포장되고 처리과정과 지속적인 후처리 과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
- 선택된 밀봉 재료는 식품뿐 아니라 용기나 밀봉 시스템에도 적절한 것이어야 함
- 용기생산자와 식품 가공업자 양측은 용기와 내용물이 합의된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할 수 있는 검사방법과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만들어 수행해야 함

#### 〈 위생 가공 요건들 - 상품 멸균 〉

- 멸균 포장된 저산성 음식을 가공하기 위한 예약 과정들은 책임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정해야 하며, 생산 구성요소나 생산 공식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평가해야 함
- 예정된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경우, 열처리 과정은 반드시 다시 설정해야 함
- 예약 처리과정에서 명시된 모든 중요한 요소에 대해, 처리과정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주, 일정한 기간으로 측정, 통제하고 기록해야 함
- 각 제품 살균기는 온도 측정기구가 충분한 개수로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함
- 온도 측정 기구의 정확성을 위해, 설치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확성을 검사하고 조정해야 하고, 적어도 매년 확인해야 함
- 날짜, 사용된 기준, 방법의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수행도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각 제품 살균기는 충분한 수량으로 정확하고, 이미 보정을 거친, 신뢰할 만한 온도/시간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0.5℃이내 간격으로 기록해야 하고 멸균 소독하는 동안의 최고 온도는 설치 온도계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함
- 그 온도/시간 기록 장치는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 이후 적어도 매년 표준하고 보정해야 함
- 상품 대상품 재생기가 있는 장소는 열교환 장치를 통해 차가운 멸균되지 않는 상품을 소독기에 집어 넣는데 발생하는 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멸균되지 않은 상품의 압력보다 재생기안의 멸균된 상품의 압력이 더 크도록 설계, 운용, 그리고 제어 되어야 함
- 이것은 발생기안의 어떠한 누수도 멸균된 상품이 비 멸균된 상품 쪽으로 가도록 하며 이 압력은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기록해야 함
- 살균기의 보관 부분은, 계획된 공정의 최소 지주 기간에 부합해 상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설계된 공정에서 정해진 상품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멸균처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 소독기와 표면과 접촉하는 모든 상품이 후속 조치를 해야 하며, 전 생산 과정에 있어서 상업적인 멸균율을 유지해야 함
- 보관 부문이 예상 최소치를 하회하는 온도로 인해, 멸균율이 떨어진 경우, 보관 부문에 있는 상품과 후속조치에 들어있는 분량은 재가공 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상업적 멸균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된 이후에 공정을 다시 시작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멸균 포장 〉**

- 제품을 충전하기에 앞서, 충전과 포장 설비의 멸균 구역이 완비되어야 하고, 적절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전 생산 공정이 상업적인 수준에 맞는 멸균상태를 유지해야하며 멸균률이 떨어진 경우 멸균 구역은 다시 살균되어야 함
- 포장 재질, 사용되는 용기 그리고 봉합까지, 제품이 충전되기 전에 계획된 공정에서 명시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멸균해야 함

- 멸균지역 내의 포장기계의 멸균율을 유지하고 포장 재질의 멸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주,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절한 검사와 테스트를 행해야 함
- 용기에 충전되는 내용물은 예약 공정에서 명시된 공간 부문과 충전 내용물의 기준치를 확보하고 이를 제어해야 함
-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신뢰할 만 하고 지속적인 밀봉을 위해서 관할 직원은 충분히 자주 일정간격을 두고 적절한 시각적 검사와 용기의 봉합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만약 밀봉의 완전성에 관한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확인한 단계와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에 생산된 모든 상품은 찾아내서 다시 검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과 동시에 취한 모든 조치들은 반드시 기록해야 함
- 각 용기는 고유한 숫자 코드와 주요한 생산 자료, 즉 생산지, 날짜, 시간, 기계번호 등과 같은 자료들을 기록해야 한다. 이 코드는 미래에 리콜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완제품은 제품의 질적 저하나 용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처리, 저장되고 운송되어야 함



< 위생 관리 >

-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식품의 위생 취급과 개인 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지침과 필요한 주의사항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 설비와 화학 업체의 권고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절차는 모든 장비와 관련 구역을 철저하고도 적절하게 청소하도록 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청소가 되어야 하는지(수동 또는/그리고 CIP), 어떤 타입, 농도, 접촉 시간, 온도, 압력, 배송방법과 각 설비 부품에 대한 청소 화합물의 중요 요소 등을 기술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청소와 소독 절차는 문서로 기록해야 함

**< 품질 보증 >**

- 생산, 저장 그리고 운송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HACCP 시스템)은 예약 과정을 준수하여 상품이 완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보존 검사(예를 들어 35°C±3.0°C에서 10일)는 각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상품을 샘플로 수행해야 하며, 기타 시간/온도의 조합은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보존된 용기의 가스 발생 및 상품 외관 변형(예를 들어, 냄새, 산성도, 점도 등)을 관찰해야 함
- 상업적인 멸균율을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 분석은 보존에 따른 별도의 비멸균 표시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각 생산 라인에서 일정 개수의 용기를 선별 시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보관해야 함
- 영구적이고, 판독가능한 그리고 날짜가 적힌 기록들은 보관되어야 함
  - 유지 보수 기록, 원료 품질 기록, 사전 처리 절차 기록, 설비 운용자 그리고/또는 방비 살균, UHT 처리, 멸균 포장 등의 자동 기록 등
  - 처리 편차 기록, 완제품 검사 기록, 저장 기록(저장 폐기, 저장 관리), 청소 및 소독 기록 등
  - 기록의 각 항목들은 처리 시스템 운용자나 지정된 작업자가 특정 처리 시스템 상태나, 작업이 발생하였을 때 기록해야함

- 모든 기록들은 지정된 작업자가 적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확인해야 하며 어떠한 정해진 사항 이외의 관찰된 내용이나 결과들은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고, 그러한 조치들은 기록해야 함
- 모든 기록들은 참조가 가능한 형태로 기록 되어 있어야 함
- 상품이 배송되기 이전에 공장 경영층의 관찰 대표자가 모든 상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모든 공정 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어떠한 비정상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 가공업자는 유통 업자에게 상품의 저장, 취급 그리고 운송에 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취급자에게 상품을 부적절히 취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제조업자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나, 손상 또는 잠재적인 건강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처리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식품 환경 위생청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제품의 리콜(긴급) 계획은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양의 완제품도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함
- 리콜 계획은 그것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운영을 해 봐야 하며 식품 환경 위생국은 식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게 식품 리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 리콜 지침”을 제공함

무균처리 및 포장에 대한 적합성 체크리스트

< 저산성 식품 - 설치 >

- 설계와 시설은 식품환경 위생청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과 조건들을 준수해야 함
- 온도 표시 장치는 모든 냉장 구역에 설치되어야 함

< 저산성 식품 - 원재료 >

- 원재료는 규정을 준수함
- 원재료는 교차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저장되고 유지되어야 함

**< 포장 재료 및 제품 용기 >**

- 포장 재료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저장되고 처리해야 함
- 제품 용기와 밀봉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품 살균 >**

- 예측된 처리 과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져야 함
- 모든 중요 요소들에 관해서 충분히 자주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 관찰 그리고 기록 해야 함
- 온도 측정 장치는 살균소독기에 적절히 설치해야 하고, 멸균 공정 동안에 그 과정에서 적정 살균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생산자 소독기는 살균 온도를 기록하는 온도 기록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
- 만약 상품 대 상품 생성기의 살균제품의 압력이 있다면, 그것은 비살균 제품의 압력보다 큼
- 소독기에 유지튜브가 있다면, 그것은 제품에 예정된 절차에서 지정된 충분한 유지시간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모든 제품 소독기와 상품 접촉면들에 대한 살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함

**< 살균 포장 >**

- 살균 프로그램은 멸균 구역에 대해 구축하고 구현되어야 함
- 살균 프로그램은 포장 재질에 대해 구축하고 구현되어야 함
- 검사 프로그램은 포장 재질과 멸균 구역의 멸균율을 모니터하기 위해 구축하고 구현되어야 함
- 상품 충전은 사양을 따라야 함
- 검사 프로그램은 용기의 밀봉상태를 모니터 하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함
- 용기는 식별 코드를 표기해야 함
- 완성된 제품은 오염 및 손상을 막도록 주의 깊게 처리 저장 및 운송되어야 함

**< 개 요 >**

- 장비는 공급업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유지되어야 함
- 모든 일반 위생 관행은 공공건강과 지방자체 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법규를 지켜야 하고, 식품 환경 위생청에서 명시한 라이선스 요구사항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세우고, 구현해야 하며 그 절차는 구체적인 청소 방법 (예를 들어, 수동으로 그리고/또는 CIP)뿐만 아니라 청소 화합물의 모든 주요한 요소들(예를 들어, 유형, 농도, 접촉 시간, 온도 등)을 나타내고 있어야 함
- 모든 포장 재질과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장비는 생산 전과 후 깨끗이 살균 되어야 함
- 교육 프로그램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기술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만들어 져야 함

**< 품질보장 >**

- 품질보장 프로그램 구축되어야 함
- 각 영역에서 추출된 상품 샘플은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함 (예를 들어 미리 정해진 시간/온도의 조합으로 보존)
- 예정된 절차에 대한 영구 기록들은(준비, 가공, 포장, 보관, 유통, 운송, 교육, 유지 보수 등을 포함) 유지해야 함
- 리콜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함
- 리콜을 제안하고 협력하는 인원은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리콜 계획은 미리 테스트를 거쳐야 함
- 가공업자는 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준비, 가공, 포장, 저장, 운송 및 유통 포함) 모든 기본적인 위생 활동을 공공건강과 지방자체 조례 법령과 식품 환경 위생청에서 명시한 라이선스 요구사항 및 조건들에 따르도록 해야 함

□ 동물성 식품에 대한 건강 증명서 신청 안내

- 유럽 연합(EU)회원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홍콩 수출업자에게 일 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임
- 인증기관 -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식품 및 환경 위생청(FEHD)은 동물, 가 금류 또는 어류 성분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보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 한을 위임 받았음
  - EU 회원국 수입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보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지역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 및 환경 위생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임
  - “동물성 식품에 대한 보건 증명서”에 대한 신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그 증명서 가 반드시 발급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은 보건 증명 서를 발급하기 전에 EU 위원회의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들이 지 켜지고 있는지 식품 설비와 생산과정을 확인해야 함
  - 인증 조건 : 해당 사항 없음(수입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련 조례: 해당 사항 없음
  - EU 위원회 관련 지침 - 어류 제품- 지침 91/493/EEC
    - 육류 제품 - 지침 7/99/EEC 와 92/118/EEC
  - 인증서 효력: 지정 되지 않음(수입 회원국에 따름)
  - 인증서 신청절차
    - a) 보건 증명서 신청서는 아래 주소의 식품및 환경 위생청의 동물보건부문에 서 무료로 제공됨
      - ※ 주소 : 43rd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b) 신청자 또는 그 대리자는 수의 보건 부문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정의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함 (각 증명서당 HK\$7,165)
    - c)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함
      - ① 상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 가금류 또는 어류 재료의 정확한 설명
      - ② 포장 및 중량의 상세 설명

- ③ 식별 표시(들)
  - ④ 최종 국가
  - ⑤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 가금류 또는 어류 재료의 원산지
  - ⑥ 수탁자 및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
  - ⑦ 홍콩내의 식품 설비의 이름과 주소
  - ⑧ 출발 예상 날짜, 화물 선박이나 화물의 항공편 번호(해당되는 경우)의 이름 등의 정보
-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윤리에 비추어 보건 인증서에 포함된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야 함
  - 식품 및 환경 위생국에서 점검 할 때 모든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고, 신청시 신청서내에 또는 첨부로 제출해야 함
  - 식품의 설비나 제조 공정에 관한 점검은 신청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 지며, 점검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식품 및 환경 위생국에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인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음
  - 신청자가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이 점검한 후 30일 이내, 요구하는 모든 세부 자료와 문서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보건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식품 및 환경위생국이 지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보건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인증서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없음
  - 만약 점검 후,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이 지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된 경우, 신청자가 모든 문서를 제출하고, 2일 이내에 보건 인증서가 발급됨
  -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은 이미 최종 국가에 배송되었거나 배송을 위해 이미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만약 보건 인증서에 어떤 세부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제품의 검사 신청을 해서, 식품 및 환경 위생국에서 새로운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청자는 어떤 상품을 수출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가 바르게 보건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역이나 협의와 관련된 보건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음

- 2일의 처리 시간 이외에, 상품의 현장 점검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신청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것이 좋음

※ 자세한 문의 : 홍콩 식품 및 환경 위생국 수의 보건과

전화: 2867 5428 / 팩스 : 2521 8067 / 이메일 : vphadmin@fehd.gov.hk

#### □ 식품 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 살충제는 원하지 않는 곤충, 식물, 곰팡이, 설치류 또는 기타 해충을 죽이거나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로 살충제, 제초제, 살서제 그리고 곰팡이 방지제 등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농약임
- 살충제 사용은 사람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식품의 생산과 품질은 농약의 사용을 통해 개선되고 있음
- 질병을 옮기는 해충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살충제의 사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어떤 살충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영구적으로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어 플랑크톤이나 벌레, 새, 물고기, 동물 그리고 결국엔 사람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어떤 살충제는 상당한 양을 섭취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함
- 살충제의 남용은 식중독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가끔씩 발생하는 농약에 오염된 야채를 섭취해서 생긴 식중독이 가장 전형적인 예임
- 농수산 보존국은 살충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조례 Cap. 133를 제정하여, 조례에 따라 홍콩에서 사용이 허가된 등록된 살충제 목록을 매년 공보에 게시함, 이 목록은 농수산 보존국을 통해 참조할 수 있음

#### □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내용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CFS)에서는 홍콩의 식품 잔류 농약 허용 기준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Cap. 132CM) 관련 지난 2012년 6월에 초안을 마련하여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 '11년 CODEX에서 권장하는 표준을 주요 기반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수출 되는 기타주요 국가의 기준을 추가 보충하여 총 584개 농식품 중 360종류의 농약에 대해 7,083개 항목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마련 (78개의 제외대상 농약류 별도 규정)
- 관련 법규의 경우 적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외대상 및 허용기준의 경우 점차적인 조정 및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시 최고 레벨 5의 벌금 (5만 홍콩달러) 및 6개월의 구금형 부과

#### □ 잔류농약기준 검사 방법

- 수입시점 및 유통단계 (도매, 소매) 구분없이 동일 적용하며, 기존 수입통관 프로세스 외 필요시 랜덤으로 샘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송부
  - \* 일반식품: 24시간 이내 통관 완료, 특별 품목(유제품등): 48시간 이내
- 검사 진행 후 농약 등 함량이 해당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수입상에 관련 수입 식품 리콜 및 관련 법규 위반 따른 책임 통보

####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제재 여부 및 처리 방안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이 인체에 위험하지 않거나 유해하지 않을 경우 수입 혹은 판매 가능하며 위험 및 유해성 여부는 식품환경위생부의 위해성 평가로 결정함
  - \* 현지 식품섭취 양상 및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치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위해성 평가의 경우 소요시간은 각 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미등록 농약 검출 이후 추가 진행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그 위해성이 판단된 식품의 경우 판매 불가하며 전량 리콜조치 실시 및 관련 수입상에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와 동일한기준의 벌금형 및 구금형 부과 가능 (벌금 5만 홍콩달러 및 6개월의 구금형)

※ 자세한 내용 문의

- 홍콩 식품 안전센터 - Communication Resource Unit” 으로 연락

- 전화 : 852) 2381 6096

※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가이드라인

[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21\\_Pesticide.html](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21_Pesticide.html)

※ 홍콩 관보 홈페이지 - 잔류농약 규제법규

<http://www.gld.gov.hk/egazette/english/gazette/disclaimer.php>

※ 살충제 관련 법령 : Chapter 133

[http://www.legislation.gov.hk/blis\\_ind.nsf/WebView?OpenAgent&wpg=CurAllEngDoc\\*1](http://www.legislation.gov.hk/blis_ind.nsf/WebView?OpenAgent&wpg=CurAllEngDoc*1)

## □ 식품 미생물 가이드라인 개정안

- 홍콩식품안전센터(CFS) 2014년 8월 14일부로 식품 미생물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효. 금번 개정안은 '07년 발표된 즉석식품에 대한 미생물가이드라인 및 추가 정보를 대체하는것으로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과 영국 보건보호 에이전시에서 발표한 “시장 진열 즉석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평가 가이드라인 (UK HPA 가이드라인)” 및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 미생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완료됨
- 주요 수정내용
  - 일반 즉석식품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호기성 균락 산출, 위생표시기 유기체, 특정 식품매개 병원균)
  - 유아, 어린이 및 의학적 목적을 위한 가루제품과 즉석 향신료 가루제품 및 직접 섭취하는 날 것의 쌍각류 조개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
  - 천연 자연광천수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
- 미생물 함량 수준에 관한 명명법과 분류가 개정되었으며, 즉석식품의 경우에는 미생물 함량 수준에 따라 안전, 우려, 위협으로 분류되고 우려와 위협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예정

※ 식품안전센터 보도자료

[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4\\_08\\_14\\_1\\_e.html](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4_08_14_1_e.html)

#### □ 식품 검역관련 주요 내용

- 식품관련 수입시에는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음.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특히 엽수류(사냥한 짐승·새 등의 고기류)는 식품환경위생국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도 해당 부서에 의해서 원산지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 식품관련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건강관련 당국에 의해 발급된 위생검역 관련 증서를 제공해야 함
- 과일 및 채소의 샘플은 살충제 잔여 테스트를 위해서 홍콩의 “Man Kam To Food Control Office”에 의해 검역되며, 가축의 수입시에는 동일한 “Man Kam To”, 도매시장 및 도살장에서 검역되고 있음
- 특히 수입된 엽수류, 육류, 가금류와 관련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한 식품 당국(food authority)에 의해 발급된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식품환경위생국(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 의해 수여된 사전 서면 허가증(prior written permission)이 있어야 수입 가능

### 제3절 자료출처

홍콩 관세청 : [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

- 수출입 통관, 라이선스 발급 안내 등

홍콩 식품안전청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fc.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fc.html)

- 수입식품 검역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

주요 품목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 냉동 과자류(the frozen confections)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 육류 등(game, meat, poultry)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 유제품 등(milk, milk beverage)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관련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 위생 검역관 수출입 등록부: Health Inspector Import/Export Registration)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연락처 및 팩스 : (852) 2156 3041 / (852) 2521 4784

○ 담당자 이메일 : (852) 2156 3041 / (852) 2521 4784



## 제3장 라벨링제도

###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 □ 관련법 및 규정일반

- 홍콩은 식품관련 기본 법률은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의 ‘Part V’와 ‘Part VA’를 따름
- 법률은 기본적으로 식품 구매자를 부적당한 또는 불량식품의 판매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식품, 식품위생, 부적당한 음식의 압류 및 구제 등의 구성과 라벨링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식품관련 기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13개의 규정이 있으며, 특히 5번은 식품 및 의약품의 구성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임

No.	규정명
1	Colouring Matter in Food Regulations
2	Dried Milk Regulations
3	Sweeteners in Food Regulations
4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5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6	Food Business Regulation
7	Frozen Confections Regulation
8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9	Imported Game, Meat and Poultry Regulations
10	Milk Regulation
11	Mineral Oil in Food Regulations
12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13	Slaughterhouses Regulation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html](http://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html)

-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에는 크게 식품의약품 관련 라벨링과 포장식품(packaged food) 관련 라벨링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라벨링을 기술하고자 함.

##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 1. 라벨링 기본 표시사항 및 표기시 주의사항

#### 이름 또는 명칭(Name or designation)

- 포장식품(packaged food)은 식품의 이름 또는 명칭을 명료하게 표기
- 현란한 명칭을 포함한 브랜드명이나 트레이드 마크 등이 구매하는데 있어서 식품 본래의 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그 같은 이름이나 기호 뒤에 “Brand”(牌子) 또는 “TM”(商標)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글자 또는 기호가 읽기 쉽게 3mm이상이 되도록 표기
- 구매자가 다음과 같은 표시의 생략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식품명에 포함하거나 그러한 표기가 명시되어야 함
  - 식품이 분말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물리적 상태 또는
  - 건조, 냉동건조, 응집, 훈제 또는 기타 처리된 상태

#### 성분목록(List of ingredients)

- 포장된 식품은 성분목록을 읽기 쉽게 표기 또는 라벨링 하되, 안내 서두에 “ingredients”(配料), “composition”(成分組合), “contents”(內含物質)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표기
- 식품 내 함유된 각 성분(물은 식품전체 부피의 5%보다 적게 차지할 경우는 제외)은 식품 포장당시 무게 또는 부피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열거

- 식품에 사용된 성분이 응집 또는 탈수형태거나, 식품 조제과정에서 재구성될 경우 식품성분표기 순서는 응집 또는 탈수 이전의 무게 또는 부피기
  - 식품 내에 다음의 식품으로 구성 또는 함유될 경우 성분 표기 시 구체적으로 성분명 명시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산물)
    - 갑각류 및 그 산물
    - 난류 및 그 산물
    - 어류 및 그 산물
    - 땅콩, 대두 및 그 산물
    - 우유 및 그 산물(락토스 포함)
    - 견과류 및 그 산물
- ※ 식품에 아황산염이 최소 10ppm 이상 함유 될 시 아황산염의 기능 및 화학부류 명시

□ 유통기한 표기

- 포장식품은 적절한 유통기한을 지칭할 수 있는 읽기 쉬운 표기 또는 라벨링을 해야 함
- 보통의 경우에는 “best before(此日期前最佳)” 일자로 표기
  - 영문 “best before”와 중문 “此日期前最佳” 표기에 이어 유효날짜를 표기하되 날짜는 적절한 식품 저장을 전제로 무리 없이 뚜렷한 가치를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또한 그 기간까지 뚜렷한 가치를 존속하기 위한 저장조건에 대한 기술 필요
  - 식품이 본래의 뚜렷한 가치를 존속시키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일자 표기는 월, 일 단위로 표기
  - 식품이 본래의 뚜렷한 가치를 존속시키는 기간이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일 경우 일자앞에 영문 “end”와 중문 “底”을 표기한 후 년, 월 단위로 표기 가능 또는
  - 식품이 본래의 뚜렷한 가치를 존속시키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경우 일자 앞

- 에 영문 “end”와 중문 “底”을 표기 후 년, 월 단위 또는 년단위로 표기 가능
- 포장식품의 경우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상하기 쉬워 짧은 기간 사람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될 경우 “use by(此日期前食用)” 사용
    - 영문 “use by”와 중문 “此日期前食用” 표기에 이어 유효날짜를 표기하되 날짜는 식품을 바르게 저장한 것을 가정으로 사용가능한 권장일 의미
    - 유효날짜는 아라비아 숫자 또는 영문과 중문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일 경우 ‘일(day), 월(month), 년(year)’ 순서로 표기
    - 또한 그 기간까지 뚜렷한 가치를 존속하기 위한 저장조건에 대한 기술 필요
  - 유통기한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 일 표기는 영문 “DD”, “dd”, “D” 또는 “d”와 중문 “日” 사용
    - 월 표기는 영문 “MM”, “mm”, “M” 또는 “m”와 중문 “월” 사용
    - 년표기는 영문으로 “YY”, “yy”, “Y” 또는 “y” 중문으로 “년” 사용하며 일, 월, 년 순서는 정해지지 않음(L.N. 85 of 2004)
  - 유통기한은 라벨링이 아닌 다른 위치에 명시 가능하며, 그럴 경우에 라벨링에 유통기한이 명시된 위치 기술

#### □ 특별한 저장 조건 및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

- 포장된 식품에 특별한 저장 조건이 요구될 시 그같은 조건을 읽기 가능하게 표기하거나 라벨링에 기술해야 함
- 포장된 식품을 적절한 사용을 위해 특별 설명이 요구될 시 그같은 내용을 읽기 가능하게 표기하거나 라벨링에 기술

#### □ 제조업체명, 포장업체명, 주소 표기

- 포장식품은 표기 및 라벨링에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의 업체명, 사업명과 주소 또는 자세한 거주지 또는 주요 사무실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가능
  - 원산지 명시시

- 홍콩 내 유통 업체명 또는 브랜드 소유자명 명시시
- 원산지내 제조업체 및 포장업체가 홍콩 유통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에 대해 홍콩당국에 서면으로 알렸을 경우
- 식품원산지 및 생산국의 제조업체, 포장업체를 코드표기 또는 라벨링시
- 특별한 코드로 마킹 또는 홍콩 유통업체 및 브랜드명 소유자가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제조업체, 포장업체일 경우
- 공장 또는 식품이 제조 또는 포장된 장소가 원산지 정부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식품 표기 또는 라벨링에 정부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알릴 경우

**□ 수량, 무게, 부피**

- 포장식품에 명확하게 수량, 총무게 또는 총부피를 표기 또는 라벨링
- 총 무게와 총부피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Weights and Measures Ordinance (Cap. 68)와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et out in the First Schedule to the Metrication Ordinance (Cap. 214). 에 준함

**□ 적절한 언어**

- 포장식품의 표기 및 라벨링은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하거나 공용 가능
- 식품 표기 및 라벨링에 영문, 중문이 함께 사용 되었을 경우 성분목록 또한 영문, 중문으로 같이 표기
- 당국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제조국가의 국가적인 또는 전통적인 음식이거나, 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표기 및 라벨링은 동법령에 준하여 생산 원산지국가의 언어로 표기가능

## 2. 특수성분 관련 표기사항

### □ 알레르기(Allergens) 유발성분 관련

- 일부 특수 알레르기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food safety)을 위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라벨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판매되는 식품이 다음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라벨링 성분목록(list of ingredients)에 포함하여 표기해야 함
  - 글루텐(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이나 부산물)을 포함하는 곡류
  - 갑각류(crustacea) 및 갑각류 부산물
  - 계란 및 계란 부산물
  - 생선 및 생선 부산물
  - 땅콩, 콩 및 그들의 부산물
  - 우유 및 우유 부산물(락토스 포함)
  - 견과류 및 견과류 부산물
    - ※ 상기의 성분은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데 90%의 역할을 하는 리스트로, 최종 판매하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규정에 의해 라벨링에 표기해야함
- 표기방법은 각각의 재료명을 표기하고 괄호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첨부하여 표기함
  - ※ 표기사례 1) 밀가루(글루텐 포함 곡류), 계란, 새우(갑각류), 게살(갑각류 부산물)
  - ※ 표기사례 2) 고등어(생선), 소이소스(콩류 부산물), 유장 단백질(우유 부산물)

### □ 식품첨가물(Food Additive) 관련

- 일부 방부제,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의 남용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식품첨가물 종류를 라벨링 하도록 규정
- 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식품성분이 첨가물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능부류와 함께 특정이름이나,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ID 번호, 또는 접두사 “E”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ID번호로 성분을 표기해야 함

- ※ 표기사례 1) Preservative (Benzoic acid) → 기능부류(특정이름)
- ※ 표기사례 2) Preservative (210) → 기능부류(INS ID번호)
- ※ 표기사례 3) Preservative (E 210) → 기능부류(“E” +INS ID번호)

※ 식품 첨가물 종류

- 산미제 Acid (酸味劑)
- 산화방지제 Acidity regulator (酸度調節劑)
- 항결절제 Anti-caking agent (抗結劑)
- 소포제 Anti-foaming agent (消泡劑)
- 항산화제 Antioxidant (抗氧化劑)
- 증체제 Bulking agent (增體劑)
- 호색제 Colour retention agent (護色劑)
- 색소 Colour (色素)
- 유화제 Emulsifier (乳化劑)
- 유화염 Emulsifying salt (乳化鹽)
- 고화제 Firming agent (固化劑)
- 증미제 Flavour enhancer (增味劑)
- 면분처리제 Flour treatment agent (麵粉處理劑)
- 발포제 Foaming agent (發泡劑)
- 교응제 Gelling agent (膠凝劑)
- 상광제 Glazing agent (上光劑)
- 수분보지제 Humectant (水分保持劑)
- 방부제 Preservative (防腐劑)
- 추진제 Propellant (推進劑)
- 팽창제 Raising agent (膨脹劑)
- 온정제 Stabilizer (穩定劑)
- 첨미제 Sweetener (甜味劑)
- 증조제 Thickener (增稠劑) (L.N. 226 of 2003; L.N. 85 of 2004)

※ 참고 웹사이트 : [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13\\_ins.html](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13_ins.html)

### 3. 영양소 라벨링(The New Nutrition Labelling) 규정 관련

#### □ 규정 소개

- 홍콩의 식품 및 의약품 라벨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의 개정안인 “Requirements for Nutrition Labelling and Nutrition Claim”은 2008년 5월 28일 국회를 통과·발효되어 홍콩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적용되고 있음
- 영양소 라벨링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정보에 입각한 식품선택을 돕고, 식품 제조업체 들이 사용하는 표현상의 어구(formulation)에 있어서 적절한 영양소 상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라벨이나 선전 문구를 규제하는데 있음
- 영양소 라벨링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주요내용, 식품 포장에 표기되는 영양소 라벨링(nutrition labelling)과 영양소 선전문구(nutrition claims)의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주요 내용

- **영양소 라벨링(nutrition labelling)**
  - 영양소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홍콩에서 판매되는 홍콩 포장식품의 라벨상에 반드시 영양소 정보(nutrition information)를 표기해야 함
  -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칼로리(energy)와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protein), 탄수화물(carbohydrates), 지방(total fat),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s), 트랜스지방산(trans fatty acids), 염분(sodium), 당류(sugars)의 함유량임
  - 칼로리(energy)는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전체 영양소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에너지로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의한 계산방식을 따름
  - 칼로리를 포함한 7대 영양소 외에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자발적으로 추가 표

- 기할 수 있으며, 탄수화물이 식이섬유(dietary fibre)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함유량이라면, 식이섬유 함유량도 반드시 별도로 표기되어야 함
- 각 영양소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최댓값(maximum)과 최소값(minimum)과 같은 범위(Ranges)로는 표기되어서는 안됨
  - 영양소 정보는 표로 만든 형태(tabular format)로 포장식품상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공되어야 하며, 포장 표면적이 200cm<sup>2</sup>일 경우에는 선형(linear)으로 표기 가능
  - 영양소 라벨은 영어, 중국어 또는 병용으로 표기가능하나, 함유량은 아라비아숫자로 표현되어야 함

■ 영양소 라벨링 표기사례 ■

Nutrition Information(營養資料)	
Per 100g / 每100克	
Energy/能量	398kcal/千卡
Protein/蛋白質	7.5g/克
Total Fat /總脂肪	2.6g/克
- Saturated fat/飽和脂肪	0.2g/克
- Trans fat/反式脂肪	0g/克
Carbohydrates/碳水化合物	86.1g/克
- Sugars/糖	4.0g/克
Sodium/鈉	105mg/毫克

○ 영양소 선전문구(nutrition claims)

- 보통 포장식품상의 선전문구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기 위한 것으로 쉽게 'low fat', 'high fibre', 'lower cholesterol'의 영양소 관련 문구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음
- 신규 영양소 라벨링 규정에 따라 상기의 영양소 관련 모호한 선전문구나 표현들도 규제를 받게 되며, 식품 포장이나 관련 광고에도 모두 적용됨
- 규정에 맞게 라벨에 표시된 성분목록이나 영양소 및 함유량 언급은 가능

### ■ 주요 영양소 선전문구 표현조건 ■

- 표현상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대체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됨
- Low : Little, Low source, Few, Contains a small amount of
  - Very Low : Extremely low, Super low
  - Free : Zero, 0, No, Contains no, Without, Off, Does not contain
  - Source : Contains, Provides, Has, With
  - High : High source, Good source of, A valuable source of, Rich in, Plenty of

각 영양소 표현에 대한 조건사항		
구성성분	표현방법	조건
Energy (칼로리)	(1) Low	고체 식품(solid food)은 100g당 40kcal 이하 함유 액체 식품(liquid food)은 100ml당 20kcal 이하 함유
	(2) Free	액체 식품은 100ml당 4kcal 이하 함유
Protein (단백질)	(1) Low	어느 식품이든 단백질이 칼로리의 5%를 이하 함유
	(2) Source	고체 식품은 단백질 100g당 중국 NRV의 10%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단백질 100ml당 중국 NRV의 5%이하 함유
	(3) High	고체 식품은 단백질 100g당 중국 NRV의 20%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단백질 100ml당 중국 NRV의 10%이하 함유		
Total Fat (지방)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지방이 3g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지방이 1.5g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지방이 0.5g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지방이 0.5g이하 함유
Saturated Fat (포화지방)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포화지방산이 1.5g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포화지방산이 0.75g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포화지방산이 0.1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포화지방산이 0.1g이하 함유
Trans Fat (트랜스지방)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트랜스지방산이 0.3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트랜스지방산이 0.3g이하 함유
Cholesterol (콜레스테롤)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02g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콜레스테롤 0.01g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005g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콜레스테롤 0.005g이하 함유
Sugars (당류)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당성분이 5g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당성분이 5g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5g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콜레스테롤 0.5g이하 함유
Sodium (염분)	(1) Low	어느 식품이든 100g/ml당 염분 0.12g이하 함유
	(2) Very low	어느 식품이든 100g/ml당 염분 0.04g이하 함유
	(3) Free	어느 식품이든 100g/ml당 염분 0.005g이하 함유

## □ 규정적용 제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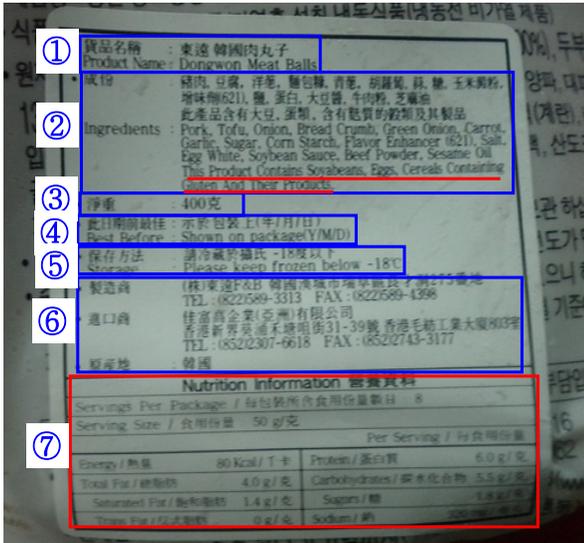
- 영양소 라벨링 규정은 모든 포장식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적용에서 제외됨
  - 포장 표면적이 100cm<sup>2</sup>일 경우
  - 차잎(Tea Leaves), 양념류(spices), 증류수(distilled water), 육류(raw meat), 신선과일 및 채소의 상품일 경우
- 포장식품의 상품의 연간 판매(annual sales)가 30,000기준 미만일 경우에도 영양소 라벨링 규정에 제외됨
- 영양소 라벨링 규정에 제외되는 제품은 제품에 규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표현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 예) Nutrition Labelling Exempted(營養標籤產品)

## 제3절 라벨링 사례

### 1. 표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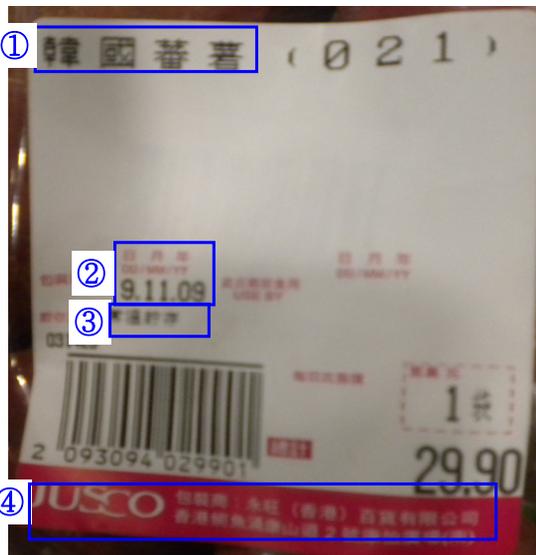
- 법률은 기본적으로 식품 구매자를 부적당한 또는 불량식품의 판매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식품, 식품위생, 부적당한 음식의 압류 및 구제 등의 구성과 라벨링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식품관련 기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13개의 규정이 있음

■ 한국식품(가공식품)의 라벨링 표기사례 및 부연설명 ■



구분	설명
①	상품 명칭(영어, 중문 병용)
②	성분 목록(영어, 중문 병용) 성분목록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은 별도 표기가 되어 있음
③	중량
④	유통기한(별도표기 가능)
⑤	저장방법
⑥	제조사 및 수입자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추가표시)
⑦	영양소 정보 영양소 라벨링규정 시행전('10.7.1) 부터 기 표기완료

■ 한국식품(신선농산물)의 라벨링 표기사례 및 부연설명 ■



구분	설명
①	상품 명칭 및 원산지(한국산 고구마)
②	포장날짜
③	저장방법
④	포장업체 및 유통업체 표기
-	과일 및 채소는 성분목록 및 영양소 라벨링 적용 제외 항목임

## 2. 라벨링 부착방법

- 수출 농수산품의 라벨링 부착은 한국 수출업체에서 부착하여 수출하거나, 수입업체에서 선적받은 상품에 현지에서 스티커를 이용하여 부착하기도 함
- 대규모 수출업체의 경우 필요한 라벨링을 포함한 수출용 포장용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수출하기도 함
- 현지 수입업체에서 라벨링시에는 수출업체로부터 성분 분석결과를 받아 스티커를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부착하고 있음

▮ 대상의 홍콩및동남아 수출용 포장 ▮



▮ 현지 수입업체의 스티커 ▮



### ※ 참고사항

- 규정관련 세부내용 : 홍콩 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 웹사이트  
 ➔ [http://www.cfs.gov.hk/english/programme/programme\\_nifl/programme\\_nifl.html](http://www.cfs.gov.hk/english/programme/programme_nifl/programme_nifl.html)
- 영양소 구성표 참조 : UN 식량농업기구(FAO) 웹사이트  
 ➔ [http://www.fao.org/infoods/tables\\_int\\_en.stm](http://www.fao.org/infoods/tables_int_en.stm)
- 영양소 함유량 계산방법 : 미국 농업부(USDA) 웹사이트  
 ➔ <http://www.ars.usda.gov/Services/docs.htm?docid=9448>

## 제4절 기타사항

### □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Trade Description Ordinance)

- 홍콩 관세청은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광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설명 관련 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을 개정함
  - 법무부 통과: 2012년 7월 17일, 발효: 2013년 7월 19일
- 본 법안의 위법사항은 크게 5가지임
  - 허위설명 기재, 혼동을 주는 생략, 강압적인 판매 행위, 허위 광고 및 예기치 않은 변경,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는 행위
- 최근 홍콩 시장에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본 법령 개정예에 대응하지 못해 리콜조치나 과징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
- 홍콩 정부가 광고 게재 시 단속하기보다는 광고 배포 이후에 무작위로 뽑아 단속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으로 판명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비용 손해를 볼 수 있음 (광고 회수, 벌금 조치 등)
  - \* (예) 10년 연속 한국 판매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위법으로 단속 당함

### □ 브롬화식물성기름(BVO)포함 식품, 홍콩 내 판매 불가

- 홍콩식품안전센터에서는 브롬화식물성기름(BVO)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실험결과에 따라 BVO가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함을 발표.
-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JEFCA)에서는 수크로오스 아세트산염 아이소부티레이트(INS번호 “444”)와 우드로진의 글리세롤 에스테르(INS번호 “445(iii)”)와 같은 성분을 안전성이 확인된 BVO의 대체재로 평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JEFCA의 연구 결과에 따라 BVO 첨가 식품 판매금지를

2005년에 발표하였고, 식품안전수출위원회에서도 2014년 6월 초 회의에서 이에 동의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14년 5월과 6월 북아메리카로부터 수입된 25개의 음료샘플을 수집하여 실험한 결과, 1개 제품이 0.9ppm수준의 BVO를 함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조치 취하였음

\*식품안전센터 보도자료

[http://www.cfs.gov.hk/english/multimedia/multimedia\\_pub/files/FSF96\\_2014\\_07\\_16.pdf](http://www.cfs.gov.hk/english/multimedia/multimedia_pub/files/FSF96_2014_07_16.pdf)

## 제5절 자료출처

### □ 참고 사이트 안내

홍콩 식품안전청	<a href="http://www.cfs.gov.hk">http://www.cfs.gov.hk</a>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a href="http://www.fehd.gov.hk">http://www.fehd.gov.hk</a>
홍콩 무역 산업국	<a href="http://www.tid.gov.hk">http://www.tid.gov.hk</a>
홍콩 무역협회	<a href="http://bso,hktdc.com">http://bso,hktdc.com</a>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a href="http://www.customs.gov.hk/">http://www.customs.gov.hk/</a>
홍콩 정부 물류통관	<a href="https://www.rocars.gov.hk">https://www.rocars.gov.hk</a>
홍콩 농수산 협회	<a href="http://www.afcd.gov.hk">http://www.afcd.gov.hk</a>
UN 식량 농업기구(FAO)	<a href="http://www.fao.org/">http://www.fao.org/</a>
미국 농업부(USDA)웹사이트	<a href="http://www.ars.usda.gov">http://www.ars.usda.gov</a>
홍콩식품안전청 - 냉동과자류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a>
홍콩식품안전청 - 육류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a>
홍콩식품안전청 - 유제품	<a href="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a>
위생검역관 수출입 등록부	Health Inspector Import/ExportRegistration



## 제4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 제1절 對 한국 수입규제 동향

- 홍콩과 한국은 상호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 규제 조치를 발효하지 않음. 특히 홍콩은 자유무역, 규제프리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로 수입 규제 품목은 기본적으로 매우 드물지만 한국산 분유의 요오드 함량이 부족하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롯데 초코파이 판매 중단 조치 가 내려진 적도 있었음. 최근에는 해태 EDO PACK 아몬드 크래커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라벨링 미표기로 인하여 판매중단 및 리콜조치가 되었음. ' 14년 5월경 한국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으로 인하여 한국 가금류의 수입은 금지조치 되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 14년 일부지역(전라도 및 제주도)의 돼지고기 수입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호 협정이 계속 미루어졌던 한국산 쇠고기의 경우 2015 년 11월19일자로 한국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검역·위생절차가 마무리 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되었음. 식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인증 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홍콩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타국가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가능한 준용해야 하며 육류 등의 경우 전염병에 발병에 따른 세계동물보 건기구(OIE)의 정보와 각국의 제한조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홍콩, 한국산 분유 두 가지 제품을 요오드 함량 부족으로 발표
  - 홍콩 식품환경위생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에 대한 성분테스트 결과 한국산 분 유업체의 2가지 제품의 요오드 함량 기준치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발표 (2012. 8. 8). 앞서 홍콩 당국은 일본산 분유 제품 2개에 대해 요오드 함량이 낮 다는 이유로 섭취 중단 권고를 내린 바 있음. 하지만 해당 한국산 제품의 요오드 함량 부족은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음

- 일본산 분유에 이어 한국산 분유까지 요오드 함량 기준치 미달이라는 발표에 홍콩 내 언론에서는 분유 공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는데, 홍콩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수출되고 있는 분유 제품이 당장 유통이 금지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나 한국 분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판매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산 분유에 대한 인지도와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자 현지에서 한국 유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 홍콩의 롯데 초코파이 판매 중단 조치

- 홍콩 식품환경위생성 식품안전센터는 롯데 초코파이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몬드 성분 포함 사실을 식품 성분 표시에 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홍콩 내 해당 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음. 국가마다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몬드 성분이 필수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각각 다른데, 이번 홍콩정부의 조치는 캐나다 식약청의 조치에 의거 한 것임
- 홍콩 현지 배급사와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 약 5,000박스 분량을 전량 리콜 조치했으며,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검사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됨. 롯데 초코파이는 홍콩 수출이 당분간 불가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국제조사들의 제과류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임

#### □ 홍콩 내 해태 EDO Pack 아몬드 크래커 판매 중단 조치

- 홍콩 식품 안전청에서는 2014년 4월 25일 한국산 아몬드 스낵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사실을 라벨 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홍콩내 "HAITAI" EDO Pack 아몬드 크래커 판매 중단 및 리콜 조치 실시함
- 시판 전 라벨링 과정에서 전성분에 대한 표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 및 약물 규정 제 132W장』에 의해 최고 HK\$5만(한화 약 6백만)까지의 벌금 및 징역 6개월 구형 가능함

□ **빙과류 색상 라벨상 미표기에 대한 판매 보류**

- 홍콩 식품 안정청에서는 2015년 5월 한국산 빙과류의 마켓 출하 전 진행된 사전 포장 검사에서 제품 내 사용된 색소에 대하여 라벨상 표기가 안 되어 있음을 적발 하였음. 동 건은 시장유통 전 단계에서 발견 되었으며 판매보류 및 관련 업계와 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지 하였음. 만약 시판 전 라벨링 과정에서 전성분에 대한 표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 및 약물 규정 제 132W장』에 의해 최고 HK\$5만(한화 약 6백만원)까지의 벌금 및 징역 6개월 구형 됨.

□ **전염병과 상호 협정 미체결로 인한 수입 규제 품목**

- 2006년에 한국산 생굴에 바이러스가 발생해 수입이 규제된 적이 있음. 또한 생닭 수출의 경우 한국은 2011년 9월에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 하였으나 2014년 5월 2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14년 5월 7일 한국산 달걀 및 가금류의 수입 금지조치 실시함. 홍콩의 기후는 습기가 많아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고 기승을 부리는 도시 구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이러스 침입 전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음. 돼지고기 의 경우 2014년 일부지역(전라도 및 제주산) 의 돈육 대 홍콩수출 재개되었음. 또한 상호 협정이 계속 미루어졌던 한국산 쇠고기의 경우 2015년11월19일자로 한국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검역·위생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되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홍콩의 과거 수입 규제 사례**

품목	사유	비고
생굴	바이러스 창궐	2006년 규제
달걀 및 가금류	조류 독감	2008년,2014년 규제
돼지고기(生)	구제역 발생	2010년 일부지역수입허가
쇠고기(生)	상호협정 미체결	2015년11월19일 수입 승인

자료 : 홍콩 세관

## 제2절 수출품 선적 시 유의사항(소량 수화물)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아져 홍콩 바이어들은 과거 일본에서 수입하던 식품류를 한국산으로 일부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홍콩 부두에서도 한국에서 발송한 화물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발송에 익숙치 않은 개인 수출자 화물이나 소량의 식품 등은 수취인 정보가 분명히 표기되지 않거나 내용물 소개가 한국어로만 쓰여진 경우가 있어 하역 시 분류 및 발송에 혼돈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산 물품에 표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소량 수화물 혼재 시이며, 컨테이너에 선적할 시 수입자(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박스에 회사명 및 트레이드마크 등을 표시하는데 이는 대량 물량일 때는 대부분 박스에 인쇄되어 나가게 됨
  - 소량의 물량일 경우 인쇄 이미지가 없는 보통 박스에 넣어 혼재(다른 물건 동시 혼합선적)를 하기도 하는데, 수취인을 분명히 표기 하지 않을 경우 하역장에서 목적지에 따른 분류가 매우 어려워지며 혼합 선적할 경우 컨테이너 별로 묶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박스 상의 표기는 매우 중요함
  - 또한 수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보통 수입자(수취인)의 요구에 의해 박스 표면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수출자의 요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보낼 경우에는 박스 상에 하역자가 알아볼 수 없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하역시 별도의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분류가 어려워짐
  - 일반적으로 수입사의 오더로 박스에 수입상(수취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붙지만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소량일 경우, 수입사와 상의하여 박스에 수입사의 이름 및 트레이드마크를 부착해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일반적으로 개별 박스로 포장된 소량 수화물에는 수취인(회사)의 정보를 A4사이에 출력하여 박스 양쪽에 부착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로고나 회사명은 수취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물류회사의 1)하역리스트와 일치하는 로고와 회사명을 2)영문으로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 이에 라벨의 정확성을 위해 수취인과 내용물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기입하고 만약 영어기입이 어렵다면 한국 포워딩 회사일 경우 해주기도 하니 반드시 포워딩 회사와 얘기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박스 내용물을 상세히 기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세 박스의 접시를 보낸다면 박스별로 정확하게 Dish 1, Dish 2, Dish 3처럼 내용물 소개를 써주어야 하며 선적한 박스들이 배송지가 다른 경우(10박스는 A지역, 10박스는 B지역 등)는 보낸 이만 알아볼 수 있는 애매한 표기는 하지 않도록 함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대 만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관세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 제1장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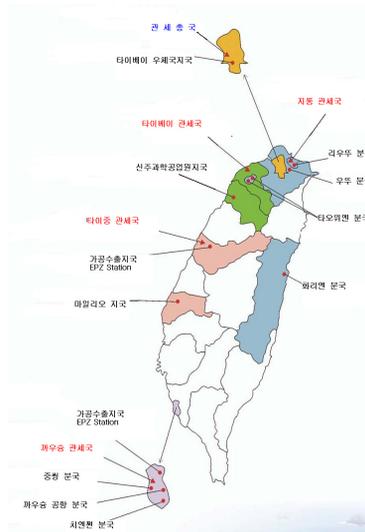
## 제1절 일반사항

### 1. 관리 및 법률체계

#### □ 관리체계

- 관무서(關務署) \*: 대만 수·출입 통관 업무는 “관무서(關務署)”에서 관할하며, 국가 재정부에 소속되어있음
- 관무서가 관리하는 직속 세관은 지룽(基隆) 관세국, 타이베이(台北) 관세국, 타이중(台中) 관세국, 까우슁(高雄) 관세국이 있고, 그 이하 10개 분국(分局) 및 지국(支局)으로 세부관할 함

■ 관무서 및 직속 세관 분포도 ■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 법률 체계

- 대만 수출입 업무는 1967년 8월 8일 전문 58개 조항 공포, 2014년 8월 20일 제 20차 수정 공포한 「관세법(關稅法)」을 기준으로 전체 102개 조항이 실행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관세법실행세칙(關稅法施行細則)」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화물 통관업무 관련 주요 상세 법률 및 규정은 아래와 같음
  -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貨物通關自動化實施方案)」
  - 「해상특송화물통관방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
  - 「관세쿼터제실시방법(關稅配額實施辦法)」
  - 「수입화물세칙심사실시방법(進口貨物稅則預先審核實施辦法)」
  - 「수입화물감정가예선심사실시방법(進口貨物估價預先審核實施辦法)」
  - 「수입화물감정가예선심사실시방법업무규정(進口貨物估價預先審核作業規定)」
  - 「평형세 및 반덤핑세 징수 실시방안(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 「세관징수비용규칙(海關徵收規費規則及特別監視費, 押運費之徵收標準, 繳費義務人及核准文件表)」
  - 「밀수단속조례(海關緝私條例)」
  - 「화물통관자동화수첩(貨物通關自動化報關手冊)」

## 2. 통관 수속

### □ 통관 수속 대상

- 해운 통관 :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물품에 대한 통관 방법
- 항공 통관 : 항공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물품에 대한 통관 방법
- 간이 통관 : 국제 택배 및 우체국 국제 소포 등 소량 물품에 대한 간이 통관 방법
  - \* 각종 선박, 항공기, 화물, 여객이 휴대한 수화물 등은 통관 수속 대상임

□ **통관 수속 방법**

- 해운, 항공 수출입 모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貨物通關自動化實施辦法)」을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업무가 진행됨

□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貨物通關自動化實施辦法)」

- 세관과 관련기관, 관련업체의 수출입 관련 업무가 모두 세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관세법 제10조 제1항 “모든 수출입 업무는 세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및 전송함. 수출입신청, 운수, 도급, 창고, 화물집산지 및 기타 통관 업무는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서류 전송 등의 방식으로 처리함”과 제3항 “자동화 시스템 연결 또는 등기, 신청절차, 관리, 통관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재정부의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을 기준으로 함”에 의거 실시
- 2015년 6월 9일 제 8차 수정된 조항에 따르면 무역통관 창구 단일화 작업 및 화물 사전 신고제 실시에 따라 기존 해상, 항공 수입 적하목록의 신고 기한을 “선박 또는 비행기 이륙 후 이후 대만 도착 전”까지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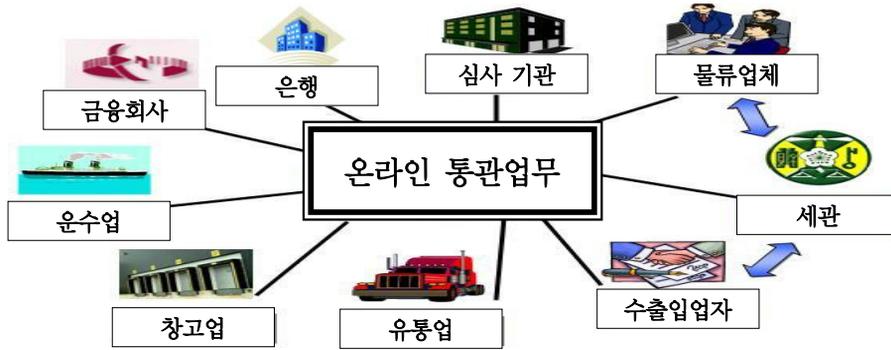
항 목	통관 자동화 개시일
항공화물 통관자동화	1992년 11월 개시
해운항공화물 통관자동화	1994년 11월 개시
국제 인터넷망 통관작업	2004년 4월(항공) 2005년 8월(해운) 개시
무역 통관 창구 단일화 작업	2013년 9월 개시

- 각 기관별 수입 협조 방식
  - 과학원, 민항국-기관 자체 시스템이 통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세관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자료 심사 비준이 진행되는 방식
  - 무역국, 표준 검역국 및 동·식물방역국-「便捷貿e網 (<http://www.universalec.com/>)」과 세관 단일 창구를 직접 연결하는 신설 작업 방식

- 일반적으로 정부 통관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시스템에 접속하고 검토 내용 결과가 일치 할 경우 수입신고일 익일부터 3일 이내 반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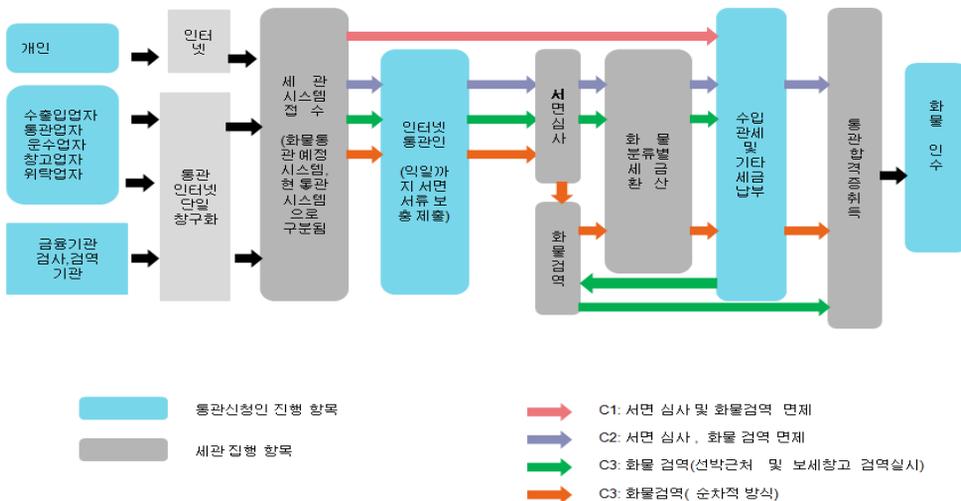
### 3. 화물의 통관

▣ 온라인 통관 업무 및 관련 기관의 관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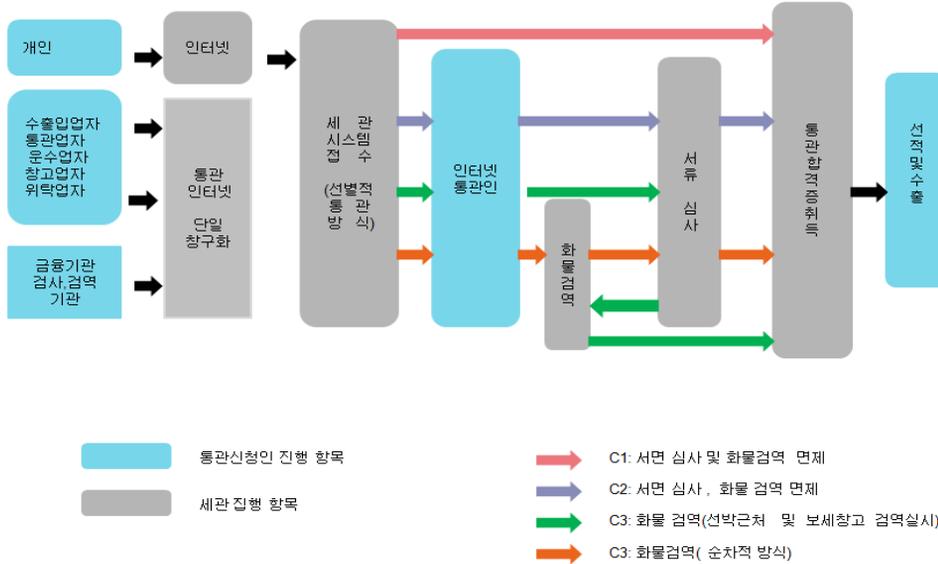


#### □ 일반 화물의 수·출입 통관 절차

▣ 화물 수입 통관 절차 ▣



Ⅰ 일반 화물 수출 통관 절차 Ⅰ



□ 일반 화물의 수입 통관 방식

- 통관 신청인 : 수입화물통관 신청 및 납세 의무자(수입업체 및 위탁 관세사)
- 통관 기한
  - 수입 화물 도착 후 15일 내 수입 통관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인터넷 연결방식의 통관 기한은 통관 인터넷 자료 전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미 연결 방식은 서면 수입 자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수출입화물 통관예행 처리준칙」에 의거하여 화물 운수업체는 화물도착신고 를 하고, 통관 신청인은 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선행(先行) 수입신고를 함

□ 세관 자동화 시스템 접속 방식

- 2013년 9월부터 통합화된 통관인터넷 접속 및 단일 창구 이용을 통한 보다 빠 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통관인터넷 이용(재정부 海關通關係通, 교통부 航港資訊網, 경제부 便捷e網 통합)
    - ▷ 재정부의 통관 전용 사이트에 연결하여 INVOICE, B/L(D/O)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세관 규정 방식에 따라 입력 후 전송함. 해당 수입품의 수입방식이 선별되며 C1, C2, C3 방식에 따라 수입납세통지서, 서면 및 자료수정 요청통지, 반출허가 통지 등을 회신 받으며 수입 통관 과정을 검색할 수 있음

▷ 업체 통합 인증서 취득한 후 인터넷상에서 통관 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면자료 직접 제출 방법 : 수입면장 및 수입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한 뒤 세관원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행 상신한 후 절차는 통관 인터넷 이용자와 동일함

#### ○ C1, C2, C3 방식

- C1 : 서면 서류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사 면제. 원칙상 서류 및 검역 면제이나, 제한적 상황인 경우 세관원의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 내 보완 자료를 발송해야 함
- C2 : 서면자료 심사
- C3 : 서면자료 및 화물 검사 후 통관
  - ※ C2, C3 : 세관 시스템 선별적 통관 방식에 따라 C2 또는 C3 방식 처리 시 통지 접수일 익일 정상 퇴근 전까지 서면 자료 발송

#### ○ 컨테이너화물 검사 및 반출 신청

- 컨테이너를 컨테이너터미널에 배치한 뒤, 「수출입 화물 검사 준칙」에 의해 선박근처 검사 및 선 반출을 신청함
- 신선제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긴급 뉴스 및 그 자료, 위험물, 방사선성 원소, 벌크 화물 등은 보세창고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선박근처에서 검역 후 반출 또는 검역 면제 후 반출함
-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금 납부 후 통관되며, 사후에 재심사 후 과납함.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 및 보증금을 이용하여 선 반출 할 수 있음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 현금 또는 정부 발행 공채
  - 은행 정기 예금
  - 신용협작사의 정기 예금

- 신탁투자업체의 1년 이상 보통 신탁증빙
- 여신금융기구의 보증
- 담보 가치로 변동 및 보관이 용이하며 재산권 분규가 없는 것

#### □ 「무역 통관 창구 단일화(關港貿單一窗口)」로 인한 인터넷통관시스템통합서비스

- 기존의 재정부 海關通關係通, 교통부 航港資訊網, 경제부 便捷e網) 등 3개 기관의 각각의 인터넷 통관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던 방식을 통합하여 창구 단일화를 시키고 보다 빠른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함
- 통관 항구 단일창구 서비스의 평가
  - 정부차원의 정보교환 시스템으로 대만의 공신력 및 공권력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빈틈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구현
  - 대만의 각종 무역 심사, 통관 및 항구신청업무를 통합하여 기업 및 일반 대중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업무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손쉽게 취득 할 수 있음
- 2013년 9월 4일 항구 무역 단일화 창구 운영을 위한 온라인 통관 작업절차 실시
  - 2015년 8월 13일 항구 무역 단일 창구 추진 및 화물정보 사전 온라인 신고 작업 인센티브 관련 발표

#### □ 해상 특송화물 통관 방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

- 제정 공표일 : 2013년 11월 29일
  - 2015년 3월 26일 해상 특송화물 서비스의 추진과 경영업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기 법안을 수정, 규제완화 함
- 근거 법률 :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 해당 업무 : 해상 특송화물 통관 담당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함
- 해당 화물(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함)

- 해외 경영의 특송화물 전문 구역 혹 쾌속 통관작업 전문구역 수출 기준을 얻은 화물이 아닌 경우 본 법에 의거한 통관 작업을 진행 할 수 없음
  - 관세법 규정에 의거해 수입이 제한된 물품,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신선 농축 수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야생보호 동식물 등의 수입을 금지함.
  - 화물의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이 각 70KG을 초과하는 물품은 금지함
- 해운 택배 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선박이 최종도착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함. 해운 택배 수출입 업자는 물품의 성질, 가격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제11조)
1. 수입 택배 서류
  2. 저가 면세 물품 수입 : 세금 포함가 NTD 3,000원 이하 물품
  3. 저가 납세 물품 수입 : 세금 포함가 NTD 3,001~50,000의 물품
  4. 고가 납세 물품 수입 : 세금 포함가 NTD 50,001이상의 물품
  5. 수출 택배 서류
  6. 저가 수출 물품 : FOB가격이 NTD 50,000이하의 물품
  7. 고가 수출 물품 : FOB가격이 NTD 50,000이상의 물품
- 해운 택배 수출입 업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 수출입 신고를 통해 통관
1. 앞 조항(동법 제11조)의 제 2항 제 4호에 정한 고가 해운 택배 물품 혹은 동항의 7호에서 정의 한 고가 해운 택배 물품
  2. 수출입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
  3. 세금환급 및 보세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 복사본 제공
  4. 반입, 반출 안건은 수출 원형 반출 및 수입 면장 요구
  5. 세법에서 정의한 감세 혜택 규정 범위내의 화물
  6. 수입코드 「G1」(외국 화물 수입 SHEET) 및 수출코드 「G5」(국내화물 수출 SHEET)범위 외의 수입 품목.
  7. 화물세 조항 및 특수 화물 및 노무세 조항(勞物稅條)규정의 화물
  8. 재정부 공고 한 특별 범위내의 화물
  9. 관세 대상 해당 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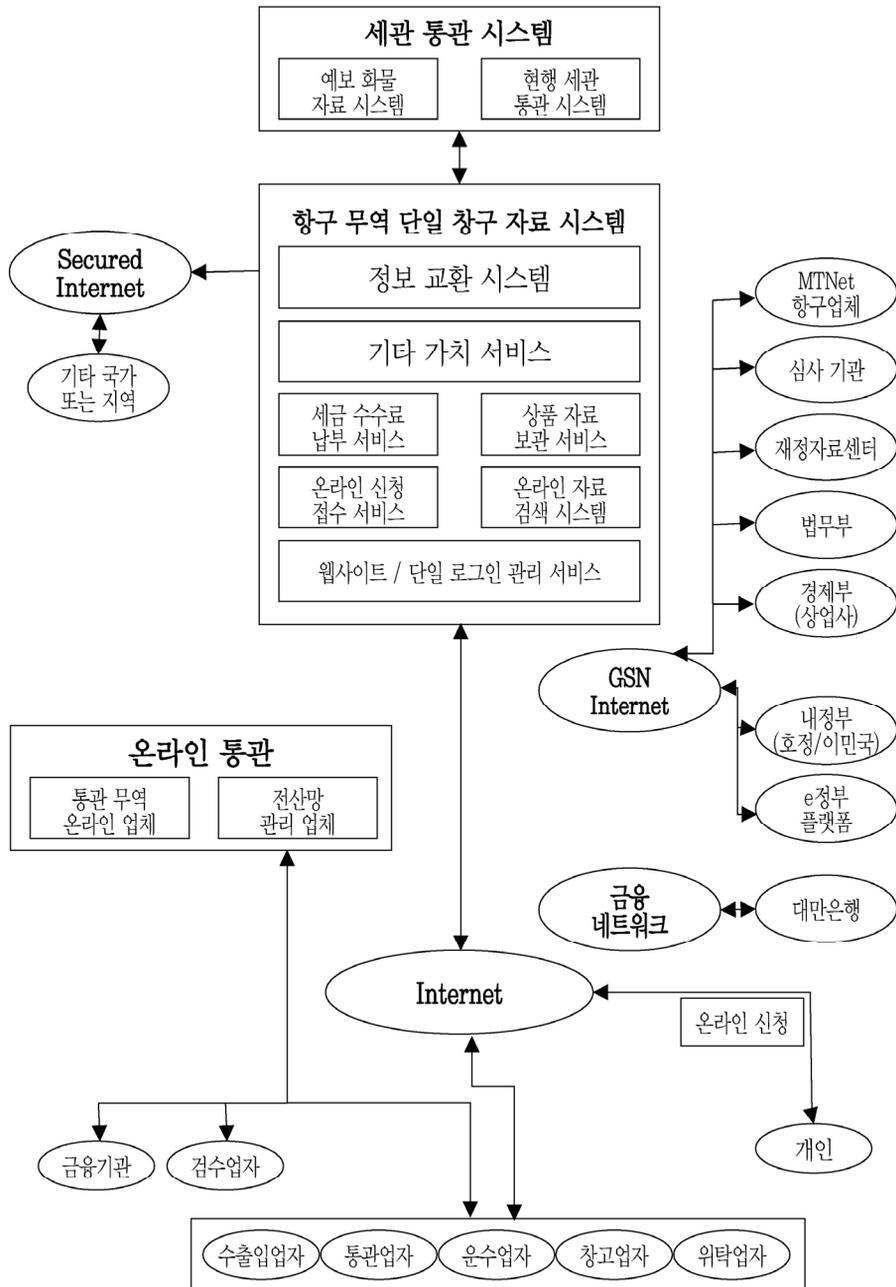
## □ 수출입 화물 예행 통관 처리 준칙(進出口貨物預行報關處理準則)

- 제정 공표일 : 1975년 2월 20일
  - 2015년 6월 9일 제 5차 수정 발표
- 수입 화물은 화물 운송의 책임자 또는 수탁인이 세관에 수입 목록을 작성 해 신청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각 목록의 증명서와 함께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함
- 2015년 6월 화물자동화통관 수정 조항에 따라 선박의 선장 혹은 수탁인은 수입 화물이 본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관에 수입 적하목록을 신청해야 함- 삭제
- 항공 기장 혹은 수탁인은 수입화물이 본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관에 수입 적하목록을 신청해야 함- 삭제
- 물, 전기, 석유 및 천연가스 등 미래형 무역 화물의 수입을 대비해, 선박, 비행기 등 운송과는 다른 파이프를 통한 글로벌 운송 고려. 시스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적하목록의 제출 없이 통관 신청 가능. 납세의무자는 화물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송장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실제 수입량에 의거해 세관에 신고, 환급 혹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짐
- 해운 및 항공의 수입 적하목록은 분할하여 다수의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운의 경우 각 목록 및 정식 수입 적하목록의 선박 번호가 동일해야 함
- 수입화물은 납세 의무인이 수입관세 혹은 보증금을 납입 한 후 수령이 가능하며, 화물 수령 시 규정상 검사 면제자 외 검사를 진행 한 후 문제가 없을 시 수령해야 함
- 화물 수출입 시, 선적 혹은 선하 전, 규정에 따라 랜덤 혹은 복수 검사 진행.
- 항공으로 수입되는 신선 제품, 부패되기 쉬운 화물, 생물, 식물, 시간적 효력 제한이 있는 신문 및 잡지, 위험물품, 방사능 원소, 뿔가루, 사체, LCL/FCL 화물, 혹은 기타 특수 화물은 통관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검열
- 수정된 「온라인 통관 작업절차(網際網路報關作業程序)」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세금 납부
  - 세금 납부 시스템

- 통합 로그인 시스템(인증서사용)
- 온라인 세관신청 시스템
- 온라인 세관신청 위탁시스템
- 온라인 신고서 사본발급 시스템
- 도서지방 면세점 시스템
- 컨테이너 자료 온라인 검열조사시스템
- 우수기업(AEO) 신청데스크
- 위탁가공화물 원재료 명세 시스템
- 화물 리스크 관리 시스템

○ 해당 웹사이트 : <http://portal.sw.nat.gov.tw/PPL/>

■ 무역 통관 창구 단일화 시스템 운영 개요 ■



자료 : CPT 무역통관창구단일화 홈페이지

#### 4. 수입 신고 구비 서류

- 관무서 화물 수입 신고 구비 서류(貨物進口報關應檢具之文件) 안내 참고
- INVOICE(Commercial invoice) 1부 (필수 구비 항목)
  - INVOICE 상에는 수취인 명칭, 주소, 화물 명칭, 브랜드, 수량, 품질, 규격, 형태, 시리얼넘버, 단가, 운송비, 보험비, 기타 각 추가요금 항목 및 수출입 감세 항목 등에 대해 명시되어야 함
- P/L(PACKING LIST) 1부 (필수 구비 항목)
  - 벌크 및 단일 box 포장일 경우 제출 불필요
- D/O 또는 AWB 1부 (필수 구비 항목)
  - D/O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AWB :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 통관 인터넷 미연결자는 수입 신고 시 D/O 또는 AWB 1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통관 인터넷 연결자는 운송업체에서 자동적으로 별도 제공함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위임서 1부
  - 서면 상 통관 대리인과 납세의무인의 공동 서명
  - 인터넷 이용 통관자에 한해 서면자료 보완 시 통관대리인 또는 관세사의 인장 날인의 면제를 허가함
- 카다로그, 설명서 또는 사진
  - 세관 심사시 필요한 경우 납세 의무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 I/P) : 수입통관 완료 후 받는 허가증

- 「수입제한 화물 목록표」 외 화물 중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대상
  - 경제부 국제 무역국에 등록된 수출입 업체
  - 정부기관 또는 공영사업
  - 사립 초등학교 이상 학교 기 입안 건(수출입 업체 소속)
  - 입국여행 및 선박 항공기 서비스 요원 휴대 수하물(세관규정 범위 내 수량 및 금액)
  - 해운, 항공, 국제택배 등 수입제한 품목 외 FOB조건 US\$20,000불 이하인 물품
  - 인도적 구제 물자
  -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 주 대만 재외기관 서명이 된 자료를 통해 공공·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면세 협조 요청
  - 증여용으로 소량 수입되는 경우
  - 기타 경제 무역국 허가품
- 무역국이 편성한 「세관협조검사수입품표(海關協助查核輸入貨品表)」의 면제품 품목일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 「便捷貿e網」을 통해 수입신고서 내용과 부합된 업체는 면제 처리됨
- 수입신고서 제출면제 적용불가 대상
  - 「수입제한 화물 목록표」 내의 화물
  - 중국산 물품 : 수입규정의 <MP1> 표기 화물, 「중국산 물품 조건적 수입허가 항목」, 「수입관리법규총회표」 내 “MXX” 코드 지정항목, 「중화민국수출입화물분류표」의 수입규정번호 “121” 표기 항목

자동차 수입의 경우 자동차 수입 신고 관련 사항 명세표 첨부

- 수입 허가증 관련 항목 : 원본 제출
- 기타 규정 상 농약제품은 농약 허가증 및 농약판매업자격증 필요
- 참고 자료 : <http://web.customs.gov.tw/ct.asp?xItem=19931&ctNode=13115>

## 5. 원산지 규정 사항

- 원산지증명 해당 규정은 「관세법」 「원산지인정표준」 「세관인정수입화물 원산지 작업요점」을 표준으로 함
- 수입제품 원산지 제출 구분
  - 일반 화물의 원산지 인정
  - 후진국의 원산지 인정(관세 우대국)
  -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관세 우대국)
- 화물 원래 포장 상 원산지 표기가 선적서류 내용과 비교했을 시 부합해야만 기타 원산지 증명자료 요청이 면제됨
- 원산지 인정 과정 중 의의가 있을 시 세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 증명 또는 샘플 제출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명 문건은 무역서류, 원자재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자료 등 기타 관련자료 모두를 포함함
- 수입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관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경제부 등의 기타 공공기관에 협조의뢰를 할 수 있고, 협조의뢰 후 20일 내 서면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현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함

- 원산지 인정 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물품 검역 기간도 2개월로 연장되지만 단 1회에 한하며, 검사기간의 연장을 수입자에게 통보함
  
- 원산지 인정 시 최종 실질성 변형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질성 변형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경제부 및 재정부가 별도 지정한 특정 원산지 인정기준 국가 수입품 제외)
  - 원자재 가공 또는 제조를 거쳐 생산된 화물과 그 원자재가 수입세칙코드 앞자리 6자리 수가 상이할 경우
  - 상기 사례와 같이 앞자리 6자리 수가 일치하나, 다른 중요 제조과정으로 완성되거나 부가가치율이 35% 이상일 경우[부가가가치율=화물수출가격(FOB)-직간접수입원료가격(CIF)/ 화물수출가격(FOB)]
  - 앞자리 6자리 수가 변경 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실질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운송 혹은 저장 기간에 필요한 보존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출하, 선적 시 분류, 등급, 분리포장, 별도 번호 표기 또는 라벨 재부착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조합 또는 혼합 작업을 통해 그 조합 및 혼합 전과 그 화물 특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경우
    - 간단한 절개 또는 봉합 조립 등의 가공 작업을 한 경우
    - 간단한 건조, 희석, 농축 작업으로 화물 자체를 미 변경한 경우
  
- 세칙분류표 제2란에 해당하는 관세 우대국 상품 판단기준
  -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인 경우
  - 한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생산된 광산품, 동식물 및 그 취득품, 어류 등
  -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신청 등기한 선박이 어획한 어류 및 그 제조품

- 한 국가 또는 지역의 해양 영역에서 발굴한 해양 상품
-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및 제조 후의 잉여분 또는 폐기분
-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상기 항목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
-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로 정함

**저개발국의 수입화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

-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인 경우
-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그 부가치세가 50%이상이어야 함
- 단, 대만의 원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후진국 화물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운송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원산지가 인정됨**

- 수출국에서 직접 대만으로 운송
- 제3국을 경유 시에는 화물 운송 기간 내 상품의 적재 외에 가공 및 기타 작업을 해서는 안 됨

## 6. 수입물품 품목분류

- 관세는 「중화민국 통관 수입세칙(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의거하여 품목이 분류되며 수입세칙이 정한 3가지 세율 방식으로 적용됨. 제1란 세율은 세계무역 조직 위원 또는 대만과 우혜 관계 국가의 수입품, 제2란 세율은 특정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서약한 국가의 수입품. 제3란은 제1란 및 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일 경우에 해당됨

- 한국 수입품은 제1란 관세율이 적용됨
- 대만은 자체적으로 총 11자리의 C.C.C CODE를 이용하며, 앞의 6자리는 국제적인 HS CODE와 동일함
- 관세 검색 : <http://web.customs.gov.tw/Rateweb/search1.aspx>

## 7. 통관관련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 수입화물 통관 비용 지불 방식
  - 인터넷 상에서 비용 자동 지불
  - 수입화물 선 방출 이후, 세금 후불 실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 후 지불 방식
  - 송금 방식으로 거래 은행이 지정한 금융기구를 통하여 세관전용 입금계좌 및 국고입금 계좌로 송금 대행을 함
  - 현금 지불 방식으로 세관의 세금 수납처에 직접 지불함
- 통관관련 비용은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수입품에 한해 관세 및 특별 관세를 제외하고 세관이 일괄로 대리 수납하고 있음
- 세금완납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 : 完稅價格
  - 수입 화물의 관세 및 기타 비용을 계산 시, 그 세금완납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정함(거래가격 : 수입화물이 수출국에서 대만까지 판매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되는 가격)
  - 세금완납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 수입자 부담의 수수료, 수속비, 용기 및 포장비
    - 수입자가 수출자와 사전 협의한 생산 및 판매단계 시 관련된 물품비 또는 용역비

- (원자재 조립 시 사용된 부품, 모형, 설비, 생산 시 사용되는 소모품, 용역비 등)
  - 교역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지불하는 권리금 및 대가
  - 수출자에게 실제 지불하는 물품 대금
  - 수입 항구까지의 운임비 : 선적 및 운반비
  - 보험비
- 세금완납가격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
  - 화물 수입 후 공장, 기계설비, 건축, 설치, 조립, 수리, 기술합작 등의 비용
  - 수입 후의 운임
  - 물품대금 연체 및 연체이자
  -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

**관세 : 관세법 및 관세법세칙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 적용 방식은 3가지로 나뉨**

- 종량세(從量稅) : 수입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정함. 그 각 수량 단위의 세금완납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가격)기준으로 계산함(종량세=세금완납가격×수량)
- 종가세(從價稅) : 수입화물의 가격 및 그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고, 일반 화물의 대부분이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됨(종가세=세금완납가격×세율)
- 복합세 : 동일 과세 코드 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여 과세 징수함

**특별관세**

- 평형세 : 정부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준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함
- 반덤핑세 : 수입물품이 정상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함

무역진흥 서비스 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 1993년 이후부터 실시한 무역법 제21조 무역법 세칙 17조에 근거함
- 세관 수출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완납가격(CIF가격)의 0.04%에 해당됨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단지, 과학공업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됨
- 수납방식
  - 수입품 : 수입 세금 수납 시 동시 수취
  - 수출품 : 수출 후 분기별로 세관에서 납세증 발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4일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세증 유실 시 재발부를 요청해야 함
- 미납 시 경제부 무역국의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및 세관처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

화물세 :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세금 적용이 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 수납해야함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 =세금완납가격(CIF가격)+수입세 세율
- 종가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화물세율표(화물세조례 참조)
- 종량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화물세(단위) 세액
- 화물세 조례에 기재된 화물세 면제 대상일 경우 수입 시 면제됨
  - 제조 후 화물세가 별도 지급되는 상품의 원료
  - 전시회 참가 등 국내 비매품일 경우
  - 군사 증여품
  - 국방부가 허가한 직접 군용 화물로 사용될 경우

영업세(Business Tax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 5%

- 영업세액=세금완납가격×영업세 세율

- 영업세는 가치형과 비가치형으로 영업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입 시 세관에서 대리 수납함

#### □ 담배·주류세

- 담배세 : 세금 징수 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 일반담배 : 1,000개 당 NTD590 징수
  - 담배가루 : 1 KG 당 NTD590 징수
  - 시가렛 : 1KG 당 NTD590 징수
  - 기타 담배 상품 : 1 KG당 NTD590 징수
- 주류세 : 세금 징수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 양조주류 : 맥주는 1 리터당 NTD26 징수, 기타 양조 주류는 1 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D7 징수
  - 증류주류 : 1 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D2.5 징수
  - 합성주류 : 알코올 성분이 용량 대비 20%이상인 경우 NTD185 징수
  - 요리용 주류 : 1리터당 NTD9 징수
  - 기타 주류 :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D7 징수
  - 알코올 : 1리터당 NTD15 징수

#### □ 담배 건강 복리세 : 담배 관련 품목에 대한 별도 추징세

- 일반담배 : 1,000개 당 NTD1,000 징수
- 담배가루 : 1 KG당 NTD1,000 징수
- 시가렛 : 1 KG당 NTD1,000 징수
- 기타 담배 상품 : 1 KG당 NTD1,000 징수

## 8. 수입화물 관련비용 지체금

### 관세 납입 과태료

- 납세기한은 납세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관세 과태료(1일당 0.05%씩 추가) = 관세×연체일수×0.05%

### 수입신고 지체상금

- 수입신고는 화물 도착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그 기한을 초과했을 시, 초과일 익일부터 일자별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부과함(NTD200×지체일수)

### 영업세, 화물세, 특종화물 및 노무세 기타 과태료

- 지체일 30일까지 2일마다 1%씩 추가
- 30일 이상은 일괄 과태료 이자율로 계산함

### 9. 통관규정 변동사항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3/10/11	部 授 食 字 第 1021350656號	<p><b>&lt;주요내용&gt;</b>                      중화민국수출입물품 코드 1905.90.10.00-3 「빈캡슐약(盛裝藥物用之空囊)」 등 6개 항목(아래 표 참고)에 대해 세칙에 따라 다음 열거 한 제품에 대해 「수입식품 및 상관 제품 검열방법」 규정에 따라 「F01」 규정을 적용 받아 본 식품약품관리서에 신청 해 검열 을 받아야 함</p> <p><b>&lt;근거조항&gt;</b>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p> <p><b>&lt;공고사항&gt;</b>                      중화민국수출입물품 코드 1905.90.10.00-3 「빈캡슐약」 외 6개 항목(아래표 참조) 세칙에 따라 다음 열거 한 제품에 대해 식품 공 급자는 수입 시 「F01」 규정에 따라야 함</p> <p>- 제품 분류 열거표 -</p> <table border="1" data-bbox="589 902 1243 1737"> <thead> <tr> <th data-bbox="589 902 700 970">CCC코드</th> <th data-bbox="700 902 1173 970">물품명</th> <th data-bbox="1173 902 1243 970">수입 규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89 970 700 1075">1905.90.10.00-3</td> <td data-bbox="700 970 1173 1075">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td> <td data-bbox="1173 970 1243 1075">821</td> </tr> <tr> <td data-bbox="589 1075 700 1143">9602.00.41.00-5</td> <td data-bbox="700 1075 1173 1143">의료용품을 위한 캡슐 Capsul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td> <td data-bbox="1173 1075 1243 1143">821</td> </tr> <tr> <td data-bbox="589 1143 700 1278">3001.90.40.90-7</td> <td data-bbox="700 1143 1173 1278">분말로 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불문한 건조되 는 기타 선과 기타 오르간 Other glands and other organ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td> <td data-bbox="1173 1143 1243 1278">821</td> </tr> <tr> <td data-bbox="589 1278 700 1345">3002.10.20.00-6</td> <td data-bbox="700 1278 1173 1345">플라즈마(혈장) Plasma</td> <td data-bbox="1173 1278 1243 1345">821</td> </tr> <tr> <td data-bbox="589 1345 700 1512">3002.10.90.00-1</td> <td data-bbox="700 1345 1173 1512">생물 공학적 처리에 의하여 얻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기타 혈액분획물과 변성한 면역물품 Other blood fractions and modifie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td> <td data-bbox="1173 1345 1243 1512">823</td> </tr> <tr> <td data-bbox="589 1512 700 1737">3002.90.90.90-5</td> <td data-bbox="700 1512 1173 1737">인혈 ; 치료, 예방하거나 진단상의 사용을 위해 조 제된 동물의 피 ; 독소, 미생물 배양체 (효모를 제 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s) and similar products</td> <td data-bbox="1173 1512 1243 1737">824</td> </tr> </tbody> </table>	CCC코드	물품명	수입 규정	1905.90.10.00-3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821	9602.00.41.00-5	의료용품을 위한 캡슐 Capsul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821	3001.90.40.90-7	분말로 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불문한 건조되 는 기타 선과 기타 오르간 Other glands and other organ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	821	3002.10.20.00-6	플라즈마(혈장) Plasma	821	3002.10.90.00-1	생물 공학적 처리에 의하여 얻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기타 혈액분획물과 변성한 면역물품 Other blood fractions and modifie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	823	3002.90.90.90-5	인혈 ; 치료, 예방하거나 진단상의 사용을 위해 조 제된 동물의 피 ; 독소, 미생물 배양체 (효모를 제 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s) and similar products	824
CCC코드	물품명	수입 규정																					
1905.90.10.00-3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821																					
9602.00.41.00-5	의료용품을 위한 캡슐 Capsul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821																					
3001.90.40.90-7	분말로 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불문한 건조되 는 기타 선과 기타 오르간 Other glands and other organ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	821																					
3002.10.20.00-6	플라즈마(혈장) Plasma	821																					
3002.10.90.00-1	생물 공학적 처리에 의하여 얻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기타 혈액분획물과 변성한 면역물품 Other blood fractions and modifie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	823																					
3002.90.90.90-5	인혈 ; 치료, 예방하거나 진단상의 사용을 위해 조 제된 동물의 피 ; 독소, 미생물 배양체 (효모를 제 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s) and similar products	824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3/02/11	部 授 食 字 第 1021351939 號	<p>2014년 2월 10일 위생복지부 部授食字第 1021351939 號령, 전문 8조; 공포일 자동 시행</p> <p><b>제1조</b> 본 령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p> <p><b>제2조</b> 본 방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스템검사 : 수출국(수출지)의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 및 정부기관의 감독 실시의 검사</li> <li>2. 검사기관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li> <li>3. 서면심사 : 수출국(수출지)정부에서 제공 한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검역 방법의 자료</li> <li>4. 실지검사(實地査核) : 심사기관인원을 수출국(수출지)로 파견해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 및 검사 현황을 검사</li> </ol> <p><b>제3조</b> 시스템검사 실시 제품 범위(아래 참고표 참조)</p> <p><b>제4조</b> 시스템검사 시 반드시 수출국(수출지) 정부기관에서 검사기관에 신청을 한 뒤, 검사기관에서 직접 화면심사, 부득이 한 경우 서면심사 후 실지검사를 실시 한 뒤, 위생안전관리 체계 및 정부기관의 감독 하 본국으로의 수출을 심사함. 심사기관에서 서면검사 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의 육안검사 등 필요한 문건을 수출국(수출지)정부기관에 요청해야 함</p> <p><b>제5조</b> 시스템 검사를 완료 한 수출국(수출지) 또는 제 7조의 시스템검사 면제자는 다음 사항의 하나에 해당 될 시 서면검사 및 실지검사를 재검사 받아 본국의 확인을 거쳐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국(수출지)의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 또는 정부기관 감독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li> <li>2. 수출국(수출지) 국내에서 중대한 식품위생안전과 관련 된 사건이 발생 했을 시</li> <li>3. 수출국(수출지)에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 시 심각한 위법 현상이 발생 했을 시</li> <li>4. 수출국(수출지)의 식품 및 유관 제품에서 위해(危害) 및 식품 안전의 우려가 있을 경우</li> </ol> <p><b>제6조</b> 실지검사 결과 불합격 시, 수출국(수출지)는 개선 보고서를 본 국 심사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필요 시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의 비용은 수출국(수출지)에서 부담 함</p>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p><b>제7조</b> 본 방법은 시스템검사가 필요 한 제품에 적용. 본 방법 적용 전 이미 수입 한 기록이 있는 자는 이미 수입 된 범위 내에서 시스템 검사 면제가 가능 함</p> <p><b>제8조</b>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p> <table border="1" data-bbox="594 485 1241 632"> <thead> <tr> <th>종류</th> <th>항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육류 제품</td> <td>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가 02' 0504' 1601' 1602' 1603 항목 이하의 제품</td> <td>좌측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 규정은 F01 또는 F02로 적용</td> </tr> </tbody> </table>	종류	항목	비고	육류 제품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가 02' 0504' 1601' 1602' 1603 항목 이하의 제품	좌측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 규정은 F01 또는 F02로 적용
종류	항목	비고						
육류 제품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가 02' 0504' 1601' 1602' 1603 항목 이하의 제품	좌측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 규정은 F01 또는 F02로 적용						
2014/6/24	部 授 食 字 第 1031301390號	<p><b>&lt;주요내용&gt;</b>                      「중화민국수출입화물분류 1301.90.40.00-7 『蟲漆』 등 220개 항목, 식품 첨가물(향료 포함)사용자는 『식품 및 유관제품 수입 검사 방법』 규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식품 검사 신청을 받아야 함. 본 조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함                      (표 1. 참고)</p> <p><b>&lt;근거조항&gt;</b>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1항</p> <p><b>&lt;공고사항&gt;</b>                      중화민국수출입화물분류 1301.90.40.00-7 『蟲漆』 등 220개 항목 (표 1.참고)에 해당하는 제품의 공급업자는 수출규정 「F01」에 따름. 그 중 중화민국 수출입 화물 분류 코드 번호 3203.00.19.00-8 「기타 동물성 색료」 ´ 3203.00.29.00-6 「기타 식물성 색료」 ´ 3501.10.00.00-6 「건락소」 ´ 3501.90.12.00-5 「건락소 산염(에스테르)」 ´ 3504.00.19.00-4 「기타 단백질 및 연관식품」 및 3505.10.20.00-8 「에테르 및 녹말」 등 6개 항목의 제품은 「F02」에서 제외 함</p>						
2015/6/30	台 關 業 字 第 1041014231號	<p>「환적화물통관 및 관리작업요점」 수정, 공포일 자동 시행</p> <p><b>제2조</b> 본 요점의 통관작업은 다음 항목을 포함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환적화물통관작업</li> <li>2. 선용품환적통관작업</li> <li>3. 해상, 항공복합화물환적통관작업/ 항공해상복합화물환적</li> <li>4. 항공, 내륙운송환적통관작업</li> <li>5. 경외배송센터환적화물통관작업</li> <li>6. 다국간컨테이너콘솔통관작업(MCC)</li> </ol> <p><b>제3조</b> 운수업자는 수입화물의 적하목록 내 환적화물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화물의 상세사항을 기재해야함(담배, 주류, 무기, 탄약, 독약품, 중국원산농축산식품, 선용품, 유해폐기물, 방사능물질, 북</p>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p>한, 이란 등 특정지역으로 향하는 전략성 하이테크놀러지 화물 등 품목)</p> <p><b>제10조</b> 환적화물의 재 수출 시 환적 신청서를 작성, 세관에 신청해야 하며, 그 종류는 T2 일반 환적, T3 다국간컨테이너 콘솔, T4 선용품, T6 해상항공복합, T7항공, 해상 복합으로 나뉨</p>
2015/8/21	台 關 業 字 第 1041006629號	<p>「전시용품 수출입 통관작업 요점」을 「수입 전시용품 통관작업 요점」으로 명칭 변경 및 수정, 전문 8조; 공포일 자동 시행</p> <p><b>제2조</b> 본 작업요점의 전시용품은 공개 전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유관기관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전시용품의 재 수출을 원할 경우 관세법 제 52조 규정에 의거해 처리함</p> <p><b>제3조</b> 수입 전시용품의 면세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세관에 신청함. 전시용품 수입 신청서, 수입인의 공개 전시회, 발표회, 연구검토회 및 기타 활동의 전시 주관 기관의 증명 문서(내용: 전시회 명칭, 일자, 지점, 초대업체명칭 및 부스 개수), 수입자가 공개전시회, 발표회 연구 검토회 및 기타 활동 주최의 경우 전시회 명칭, 수입인 명칭, 일자, 장소 등 증명 및 전시품 카달로그 등 문서제출</p> <p><b>제4조</b> 수입지 세관은 전시용품 수입 면세 신청 익일부터 일주일 내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p> <p><b>제6조</b> 비 보세구역 주최 전시회의 경우 그 전시물품 수입 시 잠정적으로 세칙 및 완세가격으로 신청, 수입세보증금 혹은 담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함. 수입 통관수속 및 세금 담보는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함</p> <p><b>제7조</b> 수입 전시용품이 기한 내 재 수출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 되거나, 증여 혹은 판매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입세금을 즉납하여야함. 세관 규정 세칙 및 완세가격으로 수입세를 부과하며, 원 수입자가 납세의무인이 됨. 단, 수입 전시용품의 판매 및 증여가 관세법 및 관세 수입 세칙 면세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를 보유 한자는 세금이 면제됨</p> <p><b>제8조</b> 전시기간 내 세관은 전시회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수입물품이 전시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함</p>
2015/11/5	部 授 食 字 第 1041303341號	<p>&lt;근거조항&gt;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3항</p> <p>&lt;공고사항&gt;</p> <p>수입규정511(수입 캡슐형, 알약 제품은 위생복리부 승인 문서를 제출해야함.)에 해당하는 식품은 수입자가 개인용(각 상품은 12병(합, 캔, 포, 대), 총 36병(합, 캔, 포, 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으로 소비할 경우 세관을 통해 통관완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판매용 변경 및 용도, 수량이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상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함</p>

자료 : 대만 재정부 법규 검색 사이트(<http://law-out.mof.gov.tw>)

## 10. 대만 국제무역협정 체결 현황

### □ 대만 국제무역협정 내역

협정 체결 or 실시 일자	체결 국가	체결협정명칭
2004.1.1	파나마	대만 파나마 FTA
2005.2.4	파라과이	대만 파라과이 FTA
2005.7.27	과테말라	대만 과테말라 FTA
2007.11.24	혼두라스	대만 혼두라스 FTA
2009.1.1	중국	대만 중국 ECFA
2011.9.22	일본	대만 일본 투자협약
2013..7.10	뉴질랜드	대만 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NZTEC)
2014.1.22	싱가폴	대만 싱가포르 경제파트너협정(ASRTEP)
2012~	유럽동맹	대만 유럽동맹 FTA 추진중

### □ 대만-싱가폴 경제파트너협정(ASRTEP)

- 협정 체결일 : 2014년 1월 22일  
재정부 관무서는, 대만-싱가폴 경제파트너협정(ASRTEP)의 관세 인하 협정이행을 위해 「세관수입세칙(海關進口稅則)」의 부분 수정안 공포
- 본 세칙은 대만이 싱가포르에 고지 한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 함
- 관무서는 동 관세 세칙 수정으로 농산품 1,813항목, 공산품 7,115항목으로 총 8,928항목의 제품이 적용 되고, 그 중 40개 항목은 녹용, 마늘, 표고버섯, 팔, 땅콩 등 민감한 제품으로 이번 관세 세칙의 항목에서 제외 되며, 7414항목의 제품은 바로 면세가 적용됨
- 5년 후 421항목의 제품 면세 적용, 5년 후 1/5 세금 인하 제품 6개 항목, 10년 후 1,006개 항목 면세, 15년 후 약 41개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면세 될 예정임
- 그 중 분유, 커피, 코코아분말, 피스타치오, 카레, 백후추, 냉장소고기, 로브스터 등은 바로 면세 가 될 예정임

## □ 대·뉴 경제협력협정(ANZTEC) 정식 체결

- 협정 체결일: 2013.7.10.
- 주 뉴질랜드 대만대표와 주 대만 뉴질랜드대표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톤 (Wellington)에서 서명 및 서약서 교환
- 본 협정의 체결 의의
  - 대만 최초 비수교국과 경제협력협정을 맺은 것으로 상호간 관세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인하
  -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이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창시국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으로 대·뉴 경제협력협정을 통하여 관련 경제 협력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여 대만 산업의 구조 조정과 경쟁력을 도모함
- 시행 예정일 : 201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 1. 수입규정

#### □ 수입규정

- 대만의 품목별 통관은 각 CCC코드별 해당 수입규정에 의해서 통관 진행

#### □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 방법(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개황

- 2001년 12월 14일 행정원 위생서에서 제24조 공포 → 2007년 7월 1일 개정법 적용 → 2011년 1월 1일 최신 개정법 <수입식품 및 관련상품 검역방법>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4월 8일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의 부분 조항 수정 署授食字第1021300813호 → 2014년 1월 27일 署授食字第1022051463號令 28개 조항 전문 수정 발표 → 2015년 6월 24일 部授食字第 1042000518號, 제1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수정에 의거함) 및 제17조(수입업자의 임의적 제조지 변경의 사건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검사기관지정 실시구역에서 검역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수정 발표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또는 식품용 세정제 등 상품을 수입할 시 적용되는 위생안전 및 품질 검사임
-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5일 이내에 수입 항공 소재 담당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함
- 수입업체는 아래의 서류 및 전자문서를 구비하여 검역기관에 신청함(제4조)
  - 검역 신청서
  - 수입식품 관련 자료
  - 수입신고서 복사본
  -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지정 문건

- 수입신고상품이 동일 Lot의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서, 물품 분류 코드, 품명, 성분, 브랜드, 제조상 및 생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함. 수입 제품이 신선어류 또는 냉동어류, 새우, 게, 어패 및 연체류 4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 Lot로 동시 검역을 신청(제6조)
- 검역기관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 접수 받지 않음(제7조)
  - 본 규정대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검역 신청서, 수입식품 관련 자료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이 미비하여 검역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충 통지를 받았으나 그 기간 내에 추가 보충하지 않은 경우
- 검역 방법의 종류는 아래의 방법을 단일 또는 혼용(제8조)
  - 전수검사 : 해당 품목의 전수 물량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 외관 및 라벨 심사, 샘플링 하여 지정 실험실 분석검사 실시 등을 모두 실시함(제9조 참조)
  - 발취검사 : 수입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 품목별 국가별로 지정됨
    - 일반 발취검사 : 2%~10%(제11조 참조)
    - 강화 발취검사 : 20%~50% (제10조 참조)
  - 현장 심사 : 발취 검역품의 미 발취 상품에 대해 불시 현장 심사 (제12조 참조)
  - 인증 검사 : 중앙기관 및 수출국 수출제품의 위생 안전 관리 주관 기관과 협의서 또는 협의한 합격 증서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검역과 부합되는 협정서 또는 규정 협약된 규정의 문건을 검사함
  - 감시 검역 : 검사를 신청한 특정 제품에 대해, 매 LOT에 대해 임시검사 혹은 비정기 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 방법에 한계를 두지 않음
- 검역 성적 우수 수입업자 식품 검사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상호간 검사면제 우대 수출국 정부가 발부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주 대만 각국 대사관 혹은 외교 면제 특권자가 자가 사용을 위한 상품
  - 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自家) 사용품, 상업용 샘플, 전시회 용품 또는 연구개발 실험 물품 등은 금액 및 수량 검사 면제 규정에 부합할 것

Ⅰ 수입규정 설명 Ⅰ

규정 번호	규정 내용
B01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 식물 검역국이 정한 「동·식물 검역 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함
F01	수입상품은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의 규정에 따라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수입 검사를 신청함
F02	이에 속한 식품 또는 함유된 식품은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의 규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함
MW0	중국 상품은 수입 불가
W01	수입산 주류는 재정부 및 행정부 위생서가 발포한 「수입주류검험방법(進口酒類查驗辦法)」규정에 따라 통관되며, 재정부에 수입검사를 신청함
MP1	(1) 중국산 상품의 조건적 수입허가 규정 <대륙상품조건적수입허가 항목, 수입관리법규정표>에 따라 실시함 (2) <중국산상품 조건적 허가항목, 수입관리 법규정법>내에 M xx의 조건이 붙은 것은 국제무역국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함 (3) 한국산은 이 항목 제한을 받지 않음
463	재정부가 허가한 담배 주류 수입업체 허가 자격증 복사본 및 재정부 동의 문건을 첨부 제출할 것. 자가용 담배 주류를 수입함에 있어 그 수량이 제한 한도 이내인 물품은 제출 면제함 (一) 일반 담배 : 1000개, 시가렛125개, 담배가루 5파운드 (二) 주류 : 5리터° 벌크 또는 그 용도가 불문명할 경우 수입업체는 생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해야
502	건품 수입(뿌리삼 일 경우): (1) 약재상 판매 자격증 or 한의사 자격증(또는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약품 제조 허가증) 복사본을 구비하여 첨부 제출함 (2) 화물명칭은 서류상 한약재 및 중문 약초명을 기재함 건품이 아닌 것은 상기 전술된 제한을 받지 않음
511	타블렛형(알약형) 캡슐형 식물 제조품은 식품위생서에 “검사등록” 허가인증을 받은 후에 식품 명의로 수입됨(이 허가 서류는 수입업체가 본인에 한해 신청하고 기타업자 사용 권한이 없음) 샘플 증정품일 경우 위생서가 발부한 「식품(첨가물) 샘플 수입 심사 통지서」를 제출함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2. 품목별 통관제도

### 가. 일반포장 식품

#### 라면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23010107	인스턴트 면류 (고기 포함)	20%	F01 MW0
19023010205	인스턴트 면류 (고기 불포함)	20%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稅總局)

#### 과자류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52000000	생강 과자 및 그와 비슷한 과자류	21%	F01 MW0
19053100007	단맛 과자류	25%	F01 MW0
19053200006	와플 및 얇은 과자류	17,50%	F01 MW0
19059030009	전용 영유아 과자류	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稅總局)

### 나. 인삼 등 건강보조식품

#### 건강식품 수입통관

##### ○ 관련 법규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查驗作業要點)」에 의거하여 통관 검역이 이루어지며,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 수입허가인증

- 특수영양식품, 타블렛, 캡슐 등의 건강식품 수입은 식품위생서의 수입 허가인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검사 등록신청을 함

- 수입허가인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수입 신고서복사본, 기타 위생안전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수입허가 인증은 5년의 기한이며 만기 3개월 전에 식품위생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매년 연장 시 5년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만기 기간 내 연장 미완료 시 그 허가증은 자동 소멸됨
- 한국 백/홍삼(건삼) 1.5%, 가공제품은 그 첨가 성분, 가공 방법에 따라 C.C.C CODE로 분류되며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주로 수입되는 인삼조제품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수입 코드로 수입되고 있음
- 인삼/ 홍삼의 수입품목 분류
  - 뿌리건조인삼/홍삼 : 약재류로 분류(건삼). 약재상 판매자격증 및 한의사 자격증 첨부를 통해 약재판매 및 수입자격이 주어짐
  - 수삼 : 중국산 수입 규제 품목이며, 일반 농산품 수입방식으로 처리됨
  - 가공식품 : 수입식품검역방법(輸入食品查驗辦法)에 따라 수입됨
  - 캡슐 알약류 : 건강식품류로 분류되어, 식품위생서에 검사등록, 샘플 송부 및 필요서류를 송부하여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함. 수입허가인증은 5년에 한 번씩 재신청해야함

■ 한국 인삼의 관세율표 ■

C.C.C CODE	해당 항목	해당 품명	관세율	수입 규정
12112021004	고려인삼(건삼류) 머리 뿌리부분, 분말)	뿌리인삼 및 100%분말	1.5%	B01 502
12112090000	기타 인삼근	기타 인삼근	5%	B01 502
12119091914	기타 약용 신선 식물 및 재배용 식물 (종자/과실 포함.)	수 삼	면세	B01, F02
13021990003	기타 식물즙액 및 추출액(기름 추출 제외)	인삼/홍삼 농축액	5%	F01
17049000909	기타 당류(백색 초코렛 포함, 코코아 불포함)	인삼 캔디류	27.5%	MP1 F01

C.C.C CODE	해당 항목	해당 품명	관세율	수입 규정
20089991901	기재되지 않은 기타 방식으로 조제 혹은 보관되는 과실 및 기타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의 부분. (가당 무가당 구별하지 않음)	홍삼/인삼 절편, 정과	20%	MP1 F01
21069099903	기재되지 않은 기타 식품 및 조제품.	홍삼/인삼차	30%	MP1 F01
22029090308	인삼성분의 음료, 알코올 불포함	홍삼톤, 인삼/홍삼 음료, 홍삼액	10%	F01
21069099208	캡슐 및 알약형 제품	홍삼 캡슐, 홍삼정환, 홍삼타블렛	30%	F01 51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다. 사과, 배 과일류

### 사과

CCC CODE	품명	관세율	수입 규정
08081000002	신선 사과	20%	B01, F01, MW0
08133000001	건조 및 탈수 사과	26%	F01
08119031003	무가당 냉동 사과	15%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배

CCC CODE	품명	관세율	수입 규정
8083090009	기타 신선배	NTD49 /KGM	B01 F01 MW0
98180000004	제808309000호의 기타 신선배	18%	B01 F01 MW0
20084000000	기타방식 제조 혹은 저장한 배	2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라. 배추, 김치 채소류

 배추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049010008	배추 신선 및 냉장	20%	B01,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마늘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032090007	기타 마늘, 신선 냉장	27원/kg	114, B01, F01, MW0
07129040002	건조마늘(전체, 절개, 분말, 다진 마늘 포함)	27원/kg	114, B01, F01, MW0
20019011101	식초, 식초산 조제 혹은 저장한 마늘	25.5%	F01, MW0
20019011904	식초 식초산 조제 혹은 저장한 마늘, 캔	25.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파프리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096000001	고추류 및 단고추류의 과실, 신선 냉장	20%	B01,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김치

CCC CODE	품 명	관 세 율	수입규정
20059990996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함(냉동 제품 제외))	25%	F01, MP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마. 건조 표고버섯 등 버섯류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123920.00-0	건조 표고	NTD369/KGM	F01, MW0
07095190.00-3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200.00-1	송로,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10.00-2	표고,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20.00-0	플 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90.10-3	새송이,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90.90-6	기타 식용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123110.00-0	건조 양송이	30%	F01
07123190.00-3	건조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30%	F01
07123200.00-1	건조 목이류	30%	F01, MW0
07123300.00-0	건조 백목이	30%	F01
07123910.00-2	건조 플 버섯	30%	F01
07095110.00-0	양송이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123990.00-5	건조 기타 건조 버섯류 및 송로	3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바. 가금육류

### 삼계탕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1602.32.20.20-4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캔	20%	F01, MW0
1602.32.20.90-9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20%	B01, F01, MW0
2104.10.11.00-6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 (육류 20%이하)	10%	B01, F01
2104.10.19.00-8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 20%이하)	1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사. 수산식품

### □ 고등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3024400003	고등어 신선, 냉장	NTD9.3/KGM 또는 30% 중 높은 관세	F01,MW0
03028985007	기타 고등어 신선, 냉장	30%	F01,MW0
03056940002	염장 고등어류	30%	F01,MW0
16041510009	이미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 (갈린 것 제외) 냉동된 것	30%	F01,MW0
16041590100	이미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같은 것 제외), 캔	25%	F01
03035400900	기타 냉동 고등어 (대서양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고등어)	NTD7.3/KGM 또는 25% 중 높은 관세	F01,MW0
16041510009	건조 염장 혹은 침장 고등어 절편 단, 훈제되지 않음	30%	F01,MW0
16041590100	이미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같은 것 제외), 캔	25%	F01
16041590903	기타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갈린 것 제외)	25%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 석반어 사료용 고등어 관세 인하 정책 실시(2013.5.16. 실시)

-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 양식업 지원 정책으로 미끼용 고등어 및 전갱이에 대한 단독 CCC CODE가 신규 제정되고 해당 신청자에 한해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2%~50%에서 6%로 인하
- 수입업체 및 양식업자가 어업서에 신청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관세율인하 동의서 및 자격증을 부여받고 그 자격증 소지 업체의 수입 건에 한해 인하 관세율을 적용

■ 석반어 사료용 수입세칙코드 신규 제정 ■

CCC CODE	품 명	일반 관세율	관세율 인하 적용 시	수입 규정
3035400107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NTD75/KG or 25%	6%	442 MW0
03038984203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고등어	50%	6%	442 MW0
03038985104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고등어류	30%	6%	442 MW0
5119199102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및 냉동 전갱이 (대서양 죽현어, 병치매가리는 제외함)	12%	6%	442

자료 : 대만 농업위원회 어업서(漁業署),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오징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3074120908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	NTD15/Kg	F01
03074912900	냉동오징어	NTD15/Kg	F01
03074922105	건조오징어	NTD219/Kg 또는 50% 중 높은 관세	F01
03074922203	염장 오징어(훈제 제외)	NTD219/Kg 또는 50% 중 높은 관세	F01
03074932005	훈제 오징어	40%	F01, MW0
16055410108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냉동오징어	40%	F01, MW0
16055410206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통조림	40%	F01
16055410901	기타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40%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김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12122021101	신선·냉장·건조된 김	10%	F01
12122022002	냉동 김	15%	F01
20089950009	구이·조미된 김	2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 원양어선 어획 수산품에 대한 규정

- 대만 원양어선에서 어획한 수산품이 대만 내로 회수되거나 판매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면제됨. 상선 및 항공편으로 회수하여 내수 판매할 시 국외 대사관 및 국가 대표기관을 통해 중앙 관련기관의 수입신고 면제 동의 문건 수속을 거쳐야 함

## 아. 유제품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11000104	영아 분유(유아분유) 영아 액체 유제품	5%	501 F01
19011000907	기타 여아 조제품	5%	F01
19019021004	조제분유, 5파운드 이하 포장품,	12%	F01
19019022003	기타조제분유	12%	F01
19019025000	조제 액체 유제품, 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함유	NTD15.6/KG	F01 MW0
19019026009	조제 액체 유제품, 미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미함유	26%	F01 MW0
19019027008	조제유	NTD15.6/KG	F01 MW0
19019029006	기타 유제품	25%	F01 MP1
19019030003	우유기초로 한 아이스크림용 혼합료	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稅總局)

## 자. 주류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22030000001	맥주, 기타맥아양조주	免稅	463 W01
22042100005	기타포도주, 2리터이하 용기포장	10%	463 MW0 W01
22060010006	곡류주	40%	463 MW0 W01
22060020004	과일주	20%	463 MW0 W01
22089090115	미주, 미주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키거나 액화, 당화, 발효 증류 등으로 제작한 증류주	40%	463 MW0 W01
22089090197	기타곡류주	40%	463 MW0 W01
22089090204	기타과일주	40%	463 MW0 W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稅總局)

### 제3절 통관사례

## 1. 최근 통관이슈

### □ 일본 수입 식품 방사능 관리 방법 추가

- 일본에서 수입하는 8대 식품(신선 냉장 야채, 신선 냉장 과일, 냉동 야채, 냉동 과일, 냉장 수산물, 냉동수산물, 유제품, 영유아식품, 광천수 및 음용수, 해초류)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
- 2015년 4월 15일 FDA食字第1041300613호 「일본 특정지역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식품수입 검사 신청 규정」, 「일본 수입식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식품수입검사 신청 규정」 공표, 30일 후 실효. 상기 규정은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제 4조에 의거함
  - 일본의 宮城(미야기), 岩手(이와테), 東京(도쿄), 愛媛(에히메)에서 생산된 수산식품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식품수입 검역신청
  - 일본의 東京(도쿄), 静岡(시즈오카), 愛知(아이치), 大阪(오사카)에서 생산된 차 제품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식품수입 검역신청
  - 일본의 宮城(미야기), 埼玉(사이타마), 東京(도쿄)에서 생산된 유제품, 유아용 식품, 사탕, 과자, 곡류 조제품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식품수입 검역신청
  - 검사 보고서는 일본 정부 지정 또는 대만식품약물관리서의 승인을 거친 전문 방사능 검사기관의 보고서를 포함함
  - 일본 정부 발행 원산지 증명서(원산지의 도, 부, 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제출
  - 일본 정부 혹은 위탁기관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대만식품약물관리서의 승인을 거친 원산지 증명서(원산지의 도, 부, 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제출

## 2. 밀수 억류사례

### □ 단오절, 대만 신주항에서 표고버섯 및 햄 밀수 적발

- 2015년 5월 7일 행정원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단오절을 맞아 신주항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및 햄 밀수를 적발함
- 얼음과 수산물품으로 상부를 덮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었으며, 興達六號 선창에서 발견된 밀수품은 총 3톤의 표고버섯과 400kg의 햄으로, 시가 약 NTD1,000만원에 해당함
-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대만-중국 간 양안의 정식 무역왕래가 시작되고, 편리한 교역방식에 따라 양안의 밀수는 감소되던 추세였으나, 단오절을 맞이하여, 시장 내 표고버섯 등 건어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번 밀수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함(2015/5/7 중앙통신사 CNA 보도)

### □ 대만 지룽 관세국 시가 NTD2,000만원 상당 밀수 담배 적발

- 지룽 관세국은 비밀 제보 하에, 40피트 컨테이너를 수상히 여겨 X-Ray검사 및 컨테이너 디베이닝 작업 후 검사를 실시, 실재 적하화물이 담배임을 발견함. 적발된 물건은 KING 브랜드의 담배 400여 상자로, 시가 NTD 2,000만원에 상당하는 양임. 당국에 따르면 기 위반 업체는 적하목록 신고화물과 실재 적하화물이 부합하지 않아 이미 세관조례 및 담배 주류 관리법 등 상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지룽 관세국은 담배 수입관세가 비교적 높아(관세 27%, 영업세 5%, 담뱃세 천가치당 NTD590원, 담배제품 건강복리기증금 한 갑 당 NTD20원, 총 한 갑 당 세금 대략 NTD40원),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수를 시도하는 업자가 많으며, 일반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시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2015/11/12 대만신생보)

## 제2장 검역제도

### 제1절 검역제도 일반

#### 1. 관리 및 법률 체계

##### □ 관리체계

- 행정원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 행정원 위생서 소속 식품약품관리국은 대만 내 식의약품 및 관련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수입식품들의 검험은 표준검역국에 위임
- 경제부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
  - 경제부 소속 국가 최고의 검험기관으로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 검사가 필요한 상품들은 표준검역국에서 실시하는 규격에 합격해야 수입, 수출 및 시장 판매가능
-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
  -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의 방역과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반입되는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의 역병충해를 감지하고 해외로부터의 전염병을 예방. 기륭(基隆), 신죽(新竹), 타이중(台中), 까우슁(高雄) 4개의 분국과 10개의 검역소에서 검역을 집행

##### □ 법률체계

- 법적근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동식물방역검역법(動植物防疫檢疫法)」,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담배주류관리법(菸酒管理法)」 등
  - 식품안전위생관리법(2015년 2월 4일 제 8조, 25조, 48조항 수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관리법으로 음용 식품과 그 식품의 재료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

○ 행정 법규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대만수입식물/식물제품 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隻五或中華民國植品檢驗規定)」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進口檢驗作業規定)」
- 「수입식품검사방법(輸入食品檢驗辦法)」
- 「수입식품검사작업규정(輸入食品檢驗作業規定)」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주요부분 ■

제15조	<p>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아래 해당 상황인 경우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항 : 변질 혹은 부패된 것</li> <li>- 제2항 : 덜 익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li> <li>- 제3항 : 유독성이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포함한 것</li> <li>- 제4항 : 전염병에 감염된 생물 혹은 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li> <li>- 제5항 : 농약 잔류 량이나 동물성 의약품 잔류 량이 전 기준을 초과한 것</li> <li>- 제6항 :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것이나 방사능 제한치를 초과한 것</li> <li>- 제7항 : 불량제품이나 위조제품</li> <li>- 제8항 : 유통기한이 지난 것</li> <li>- 제9항 : 과거 식용전례가 없거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li> </ul>
제16조	<p>식품기구, 용기, 포장, 식품용세정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사용 금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li> <li>- 불량 화학용품 사용</li> <li>- 기타 유해성 물질 사용</li> </ul>
제17조	<p>식품, 식품용 세정제,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은 중앙당국에 의해 규정된 위생, 안전, 품질기준에 따라야 함</p>
제35조	<p>중앙주관기관은 식품안전 위험성이 높은 식품의 관리에 있어, 수입전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함. 또한 원료관리 요구에 따라 또는 개별식품위생안전사건으로 인해 인력을 경외로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수입식품의 위생안전관리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식품업자가 수입한 식품첨가물이 다당류에 속할 경우, 원산국의 제조상 또는 책임있는 판매상이 발급한 상품 성분 보고 및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을 각급 주관기관에 제출, 조사를 받아야 함. 단 향료의 경우 제한 없음</p>

<p>제 44조</p>	<p>다음 행위에 해당할 경우 NTD 6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항이 중대한 경우 그 휴업, 일정기간 영업정지, 회사, 상업, 공장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등기 사항에 대하여 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또한 식품업자의 등록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을 통하여 신규 등록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항 : 제 8조 1항 또는 제 2항 규정을 위반, 일정 개선기간 명령을 거친 후 개선되지 않은 경우</li> <li>- 제2항 : 제 15조 제 1, 4항 또는 제 1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 제3항 : 주관기관의 제 52조 제 2항 규정에 의거한,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음에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 제4항 : 중앙주관기관이 제 54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수출의 공고를 위반한 경우</li> </ul> <p>전 항의 벌금형 기준은 중앙주관기관 규정에 따름</p>
<p>제 49조</p>	<p>제 15조 제1항 3, 7 목, 제 10항 또는 제 16조 제 1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 및 NTD 8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사항이 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 단기징역 또는 벌금, NTD 8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함</p> <p>제 44조에서 제 4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항이 중대해 인체건강을 해칠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 및 NTD 8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인체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 및 NTD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p> <p>전 항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NTD 2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함.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및 NTD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함</p> <p>과실로 인하여 제 1, 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 유기징역, 단기징역 또는 NTD 6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p> <p>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일반인의 대리인, 위탁고용인 또는 기타 종사인원은 집행업무에 있어 제 1항에서 3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자의 처벌 외에 법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 그 항목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함</p> <p>벌금형 선고 시 형법 제 58조 규정에 따름</p>

- 최근 개정 사항(2014년 2월 5일 공포, 2년 내 시행)

개정 조항	개정 전	추가 개정 후
제 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장소, 시설 위생 관리 및 품질보증 제도는 식품의 위생규범 준칙에 부합해야함</li> <li>- 중앙 당국의 공고를 거친 유형별, 규모별 식품업자는 식품안전제어 시스템 준칙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또한 중앙 혹은 관할시, 현 정부 주관기관에 신청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li> <li>- 식품위생규범준칙, 식품안전제어시스템준칙, 식품업자의 등록신청 조건, 절차, 신청변경, 등록 폐지, 폐업 등의 사항은 모두 중앙 당국에 의해 규정됨</li> <li>- 중앙당국은 위생안전관리 인증을 실시하며, 필요 시 기 사항을 상관인증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함. 인증의 절차, 인증방식, 위탁인증의 수탁자, 위탁절차 및 기타 사항은 중앙 당국에 의해 규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당국의 공고를 거친 유형별, 규모별 식품업자는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함. 인증은 중앙당국의 허가를 받은 인증기관(기구)를 통해 처리되며 관련 신청, 폐지, 인증의 조건, 사유, 집행 수수료, 절차, 방식 및 기타 사항은 중앙 당국에 의해 규정됨</li> </ul>
제 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당국은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공급되는 특정상품에 대하여 중문 원산지 표시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특정 벌크식품 판매자에 대하여, 판매의 지점, 방식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중문 품명 표기,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함유,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 표기를 명령할 수 있음</li> <li>- 특정식품의 품목, 표기사항, 방법 및 범위와 특정벌크식품의 품목 제한 방식 및 표기사항은 중앙 당국의 공고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농산품생산인증을 통과한 업자는 식품의 이력 추적 자료를 표기해야 하며, 중앙 농업주관기관 공고 생산시스템을 보유한 업자는 보유한 생산시스템을 표기해야 함</li> <li>- 식품의 이력추적 자료 및 생산시스템 규정의 표기는 2015년 1월 20일 수정 공표 후 6개월 후 실시함</li> </ul>
제 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기한을 거치며, 기한 후에도 개정되지 않을 경우 NTD 30,000원 이상 3,000,000원 벌금에 처함. 상황이 중차대한 자는 폐업, 일정기간 정지, 회사, 비즈니스, 공장의 전부 및 일부 등록사항을 폐지하거나 식품업의 등록을 폐지함. 등록이 폐지된 자는 일 년 내 재 신청을 통해 신규 등록할 수 없음</li> <li>1) 제 7조 제 3항의 규정 위반</li> <li>2) 제 8조 제 3항의 규정 위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7조 제 1항 규정 식품안전모니터링계획을 제정하지 않거나, 제 2항 및 3항 규정의 실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li> <li>2) 제 8조 3항의 규정을 위반, 등록하지 않거나 제 8조 5항 인증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li> <li>4) 제 9조 제 2항 규정 위반,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지</li> </ol>

개정 조항	개정 전	추가 개정 후
	3) 제 9조 제 1항 규정 위반, 식품의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4) 제 19조 표준 규정 위반 5) 식품업자가 판매한 상품이 제 18조 규정식품첨가물 규격 및 그 사용 범위 및 함량의 규정을 위반	5) 제 9조 3항 규정 위반, 전자 방식 혹은 중앙기관이 규정한 방식 및 규격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제 10조 제 3항 규정 위반 7) 제 17조 및 19조 규정 위반 9) 제 22조 4항 또는 제 24조 3항 규정 위반, 관할 주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 제35조 4항 규정 위반, 상품의 성분 보고 및 수출국 정부의 위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세관과의 관계

- 수입화물 통관 시 세관은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 징수 및 통관을 관리 감독함. 수입식품 중 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화물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동식물검역을 진행한 뒤,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 주관 하에 표준검역국에서 수입화물의 내용, 규격, 라벨링 등을 포함한 검역검사를 진행하고, 세관은 검역검험기관의 결과에 따라 통관을 결정함

## 3. 검험·검역범위

- 대만 행정원 위생서는 수입식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식품용 세정제 등이 검사 대상임
- 식품 중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 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그에 적용되는 행정법규에 따라 검역을 거쳐야 함

#### 4. 수입식품검험검역

**법률근거**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2015년 6월 24일 수정 발표(수입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제 1조 및 제 17조 규정을 수정, 검험검역 장소를 식품약품관리서 지정 특정장소로 제한함)

**검사내용** : 제품의 성분 및 규격이 해당 위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사방식**

검험의 종류	내용
서류검사	검사면제 제품의 식품기본 자료표 등 관련 문서 조사 (위생증명, 검역증, 성분과 라벨링 등)
일반검사	2~1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강화검사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일반검험	2~1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강화검험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전수검험	각 배치별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검사신고 의무인이 실험실 검사비용 지불)

**검험검역비용**

○ 「規費法(지불비용법)」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검험비용 표준」 규정에 따라 검사비용 산출

- 2015년 6월 11일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검험비용표준」 규정 전문 5조 수정 발표

○ 검험비용의 종류는 조사비, 현장 검사비, 연장조사 작업비, 통지서 발급비, 온라인 전송 자료 수정비, 검사비로 구성

- 조사비 : 서류 검사비용

• 밀, 보리 옥수수, 대두의 조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05% 비율로 책정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재, 식품용 세정제의

- 조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15%비율로 책정. 최소 검사비는 NTD300이고 조사비가 NTD10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현장 검사비용 : 1인 1장소를 검사하는 기준으로 회당 NTD500 근무시간 외와 공휴일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
  - 연장조사 작업비용 : 평일 6:00~8:30 혹은 17:30~22:00 작업 시 1인 당 NTD400, 휴일 6:00~22:00 작업 시 1인 당 NTD1000, 매일 22:00~익일 6:00 작업시 1인 당 NTD2000 비용 발생
  - 통지서 발급비 : 수입식품 및 상관제품의 허가통지서 발급비용으로 그와 관련한 재발급, 정정발급, 추가발급, 또는 변경사항 등 제비용을 포함. 매 부당 NTD100
  - 온라인 전송자료 수정비용 : 수정 내용 변경 등재 및 수입식품 및 관련상품 허가 통지서 1통 발급비용, 건당 NTD100
  - 검험 검역비: 검험 해당제품의 실험실 검역 항목비, 재검, 혹은 배치별 검험비용. 일반 검험비(외관, 평균중량, 중량차이, 분해, 산도)는 NTD2,300이고, 감별비 NTD3,800, 순도측정비 NTD4,900, 함량측정비 15,100임.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 비용 책정

#### □ 검험신청 제출서류

- 검험신청서
- 식품의 기본정보 신고
- 수입신고서 복사본
- 기타 중앙위생당국이 요청한 서류(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수입검역신청서, 검역증명서 제출)

#### □ 검역·검험대상의 범위

-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재, 식품용 세정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중앙위생기관에 의해 수입식품 검사 대상으로 정해짐

## □ 조사 과정

- 같은 신고품목 명단에 있는 식품은 한 개의 배치로 검사를 실시(중앙위생기관의 관제관리 하에 있거나 불합격 기록자는 제외)
  - 포장재질이나 용량이 달라도 제품분류범주, 품명, 브랜드, 제조공장, 원산지, 성분이 같은 제품
  - 어패류의 활(活) 제품, 신선제품, 냉장제품 및 연체류 등의 4종은 1가지로 간주함

## □ 전수검사의 과정

-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5일 이내에 수입항 소재 담당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함
- 집행기관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을 채취하여 당국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
- 실험보고서의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면 수입식품 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불합격자는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받음

## □ 샘플링 검사, 등록

- 수입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 품목별 국가별로 지정됨
  - 일반 샘플링 검사 : 2%~10%
  - 강화 샘플링 검사 : 20%~50%

## □ 신청 접수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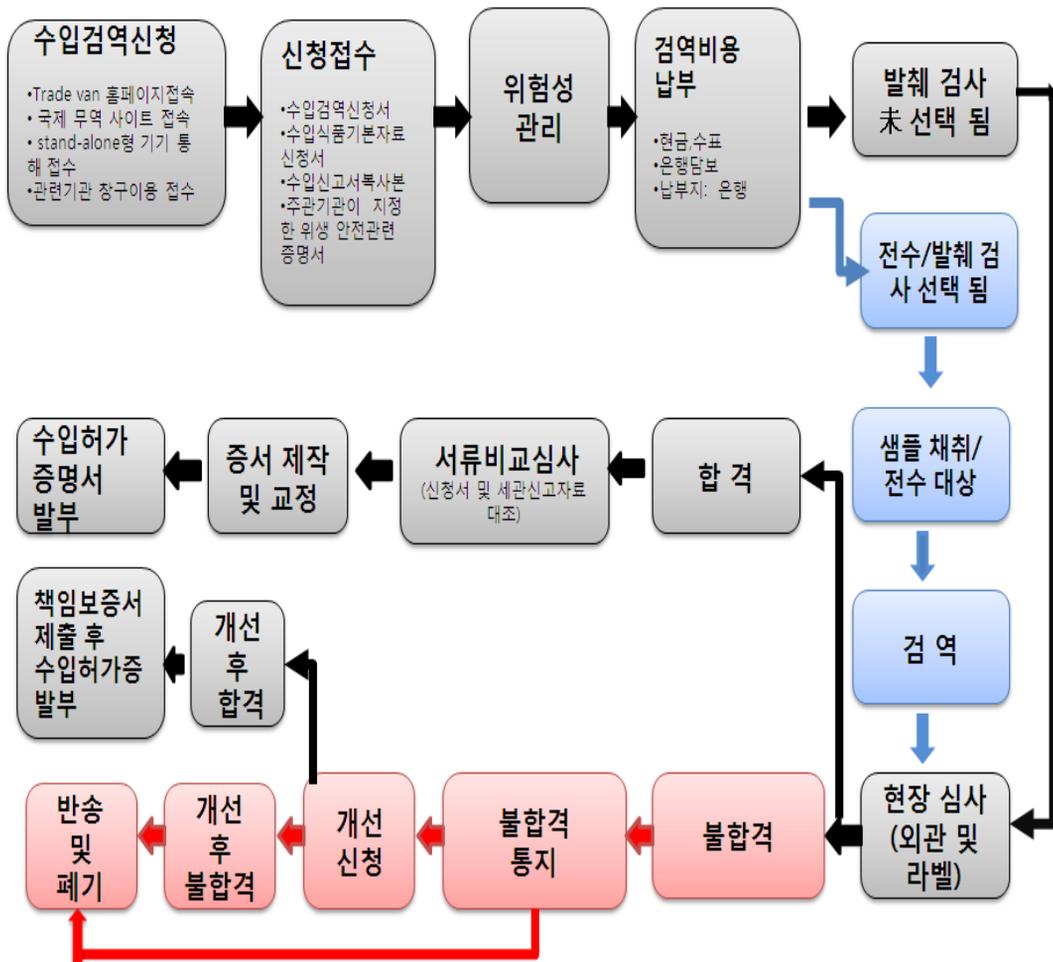
- 검역기관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 접수 받지 않음
  - 본 규정대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검역 신청서, 수입식품 관련 자료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이 미비하여 검역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충 통지를 받았으나 그 기간 내에 추가 보충하지 않은 경우

□ 개선 후 재검사과정

- 검험 불합격의 원인과 개선조건을 확인한 후 15일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1회로 제한함. 재검사는 동일 실험실에서 남은 표본으로 실시

□ 수입식품검사절차

Ⅱ 수입검역 절차 Ⅱ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Ⅰ 수입 검역 작업 절차에 대한 보충 설명 Ⅰ

작업 절차	중요 작업	작업 중점 설명
검역 접수 작업	(1) 검역 접수 작업	접수 인원이 상세하게 검사 신청서 및 국경 검사 자동화 관리 시스템의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 했는지 확인 함(검사 의무인, 품명, 화물 분류 번호, 수입가격 CIF, 유효일자, 생산국 등) 각 항목의 자료를 확인 한 후, 오류가 없으면 리스크 관리 도장을 찍음
	(2) 국경 검역 자동화 관리 시스템 상황	통관 검사의 리스크 관리는 검사 의무인의 역대 기록에 따라, 수출국의 관리 조치에 대해 관리 함(자동판정- 일반 랜덤검사, 강력 랜덤 검사등, 일반 인원은 수정에 개입할 수 없음) 자료 시스템 상의 모든 자료를 수정 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하며 후에 검색할 수 있어야 함
문서 심사 작업	문서 심사 작업 상황	서면 검사는 각 검사 항목의 성분, 첨가물, 내용물, 유효일자, 생산국, 수입상 자료, 영양표기 등의 내용을 검사함.
샘플 처리 작업	(1) 라벨 프린터로 라벨링	샘플 라벨은 신청서 번호에서 취득하여, 검사인원이 제품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방지함 샘플 라벨에는 샘플 코드번호, 품명, 검사기관, 샘플발송일자, 검사항목 등의 자료를 표기하여 검사실의 샘플 관리 인원이 식별하기 편하게 함
	(2) 샘플 분류 - 송부 샘플과 유의 샘플로 구분	샘플 채취 인원은 송부샘플과 유의 샘플을 분류 해 보관; 각 실험기관 및 인원은 매일 고정된 시간에 샘플을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당일 진행 한 실험 결과에 분쟁이 생길 시, 차일 유의 샘플로 다시 테스트 진행 함
샘플링 작업	(1) 수량 검사 및 검사 자료	샘플 채취 인원이 창고에서 제품을 취득할 시, 먼저 바깥 상자의 코드 번호, 수량이 검사 자료와 동일한지 살펴봄.
	(2) 규정 한 수량의 박스 개봉 후 검사	샘플 채취 인원이 박스 개봉 전 육안검사를 통해 포장상태 및 내용물 누출, 부패 현상 등을 외관검사로 확인 함.
	(3) 불특정 샘플링 필요 수량	샘플채취 인원은 검역 항목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임의로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검역 실시 후 데이터 시스템에 등록, 송부샘플, 유의 샘플 분류 등 관련 작업을 함.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제2절 동·식물 검역

### 1. 개요

#### 법률근거

-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검역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수입 식물 및 식물제품 방역검역방법(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고기를 포함한 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含肉加工產品之輸入檢疫條件)」

#### 검역내용

- 제조국/생산국의 이슈 전염병 유무, 제조공장의 적합성, 가공제품의 가열처리 및 포장방법 등

#### 식물검역 신청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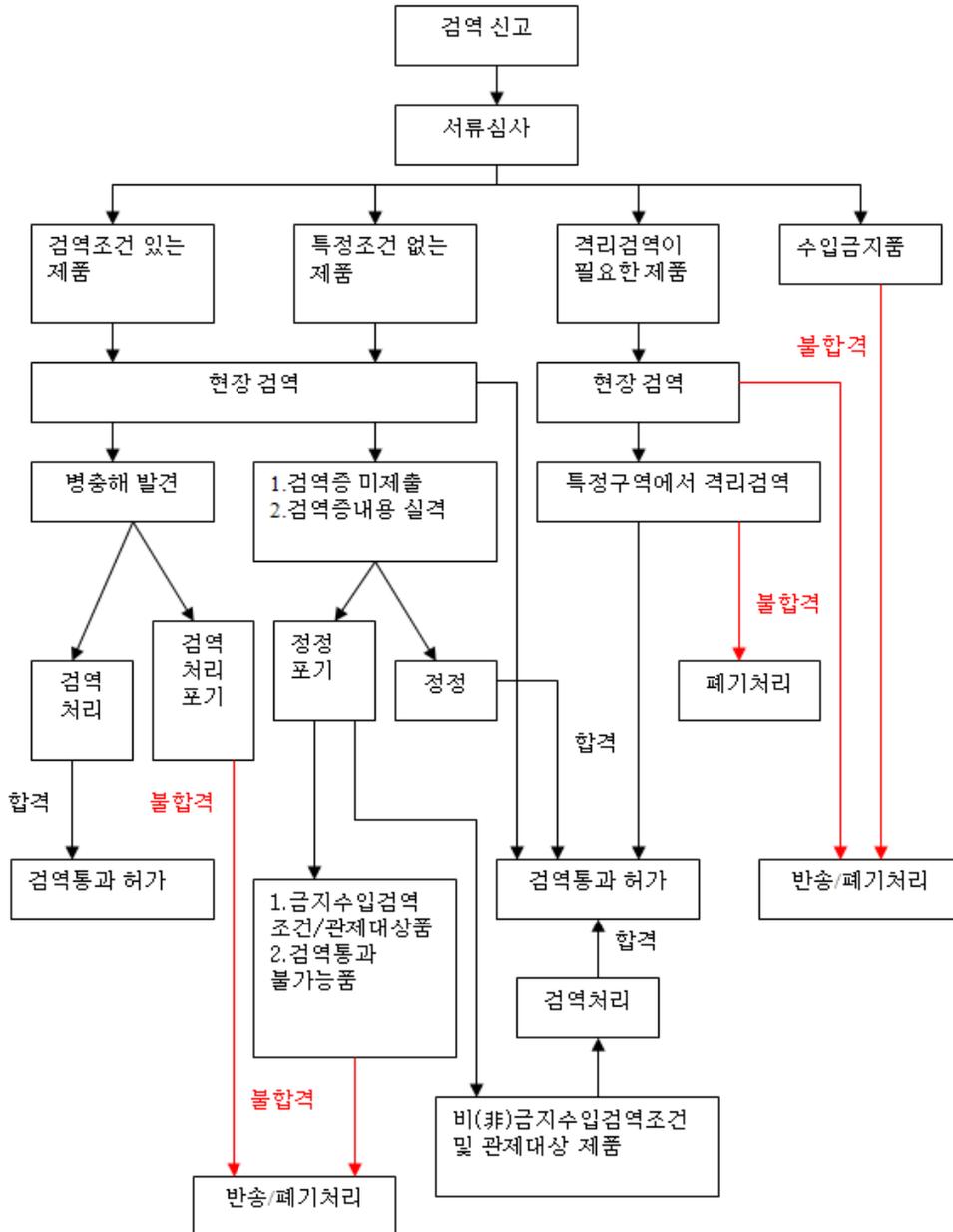
-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 선하증원(B/L)
- 기타서류 : 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영수증, 포장명세서

#### 동물검역 신청 시 요구 서류

- 동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 세관 수입신고서
- 선하증권 복사본
- 기타 서류

## 2. 검역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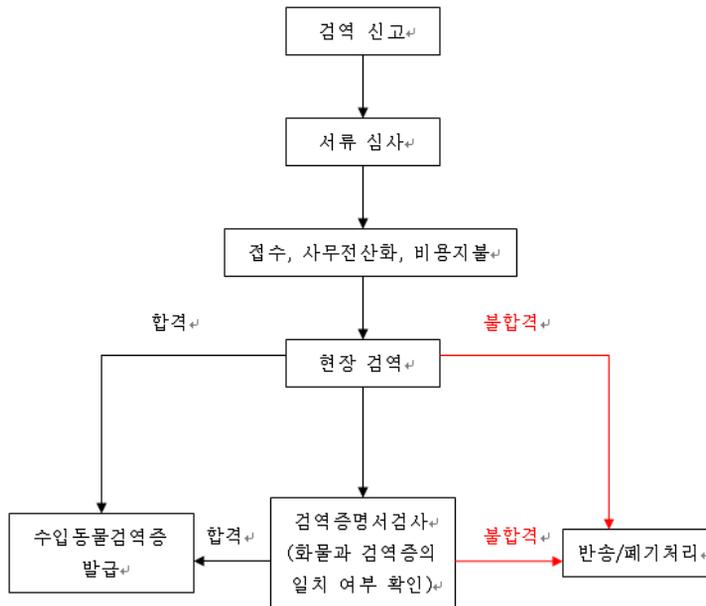
### □ 수입식품 및 신선식품 검역과정 절차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동물검역과정 절차

- 수입 동식물제품의 검역은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지정한 도착 항구, 역, 또는 지정검역소에서 집행. 검역물의 수입자나 대리인은 검역물이 항구나 역에 도착하면 검역을 신청해야 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검역결과가 역병충해의 존재를 알리면 수입은 금지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음
- 신고 대상 검역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이나 승무원도 입국 시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신청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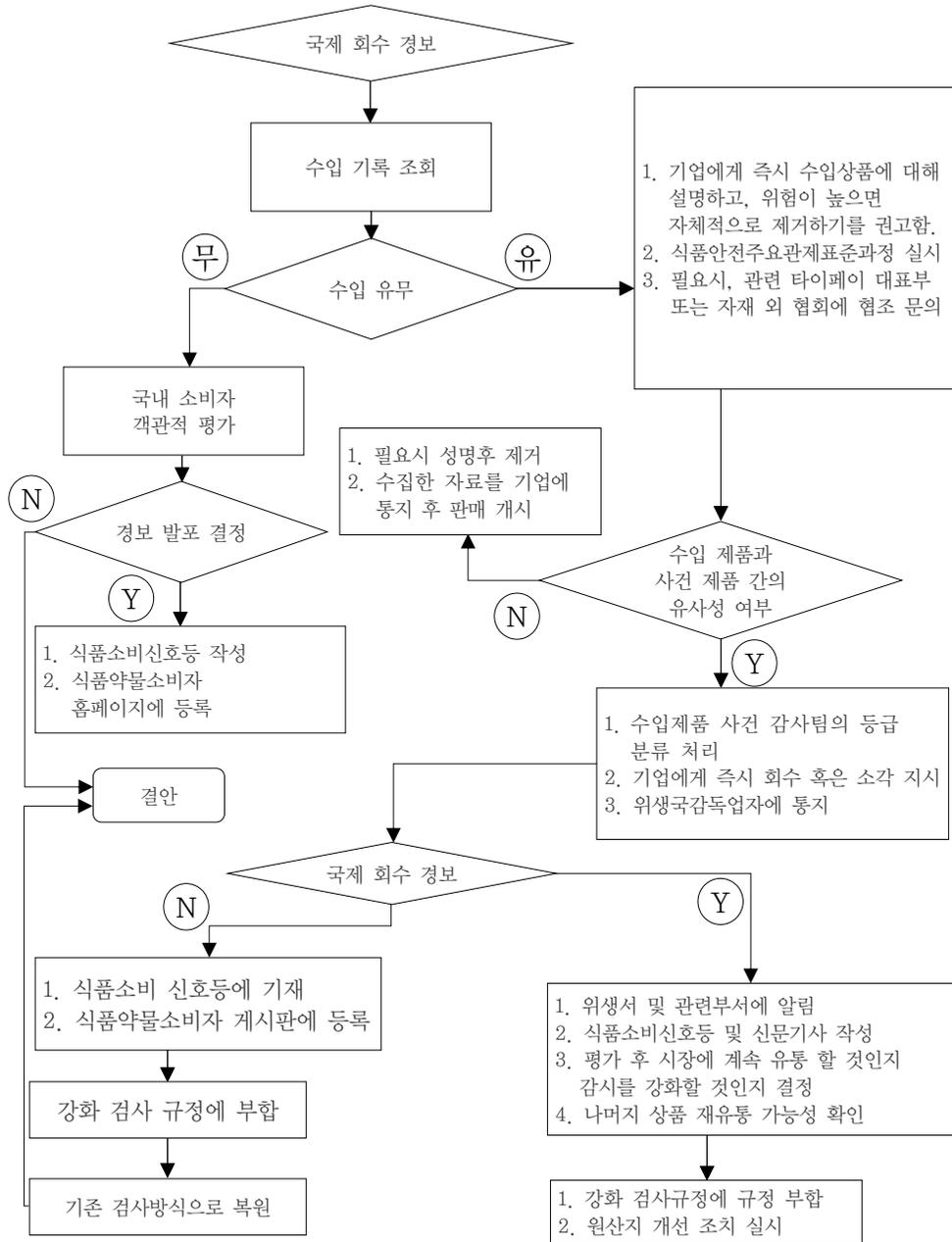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3. 위반 시 재제조치

- 수입식품 검험 검역 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됨

- 위험수입식품의 처리과정

□ 위험수입식품의 처리과정(2012년 12월 19일 수정)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4. 검역규정 변동사항

### □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畜肉加工產品之輸入檢疫條件)」 수정안 발표

#### ○ 주요 내용

- 2004년 7월 28일 신규 제정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
- 2014년 4월 7일 수정안(農授防字제1031481279A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 1. 본 조건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 육류 : 우제류 및 가금류 동물의 식용 부위로 공급 가능한 모든 부위를 가리킨다. 또한 신선, 냉동, 냉장 및 요리 또는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단 동물 유지류, 추출물, 수해물, 정제물, 풍미제(향신료) 및 온실 보존된 육류 건조 분말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 (2) 함육가공제품 : 육류를 포함하고 식용 가능하며 아래 열거된 중화민국 상품분류 코드(CCC Code)의 가공제품을 가리킨다. 단 <고온멸균통조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1902.20.10.10-9 「기타 소를 넣은 쌀국수, 조리 또는 조제 모두 포함, 육류 포함」
  - 2) 1902.20.90.10-2 「기타 소를 넣은 국수, 조리 또는 조제 모두 포함, 육류 포함」
  - 3) 1904.10.20.91-9 「기타 팽윤(澎潤) 또는 배제(焙製)되고, 쌀 함유량 30% 이하의 곡류 조제식품, 육류 포함」
  - 4) 1904.10.90.10-2 「기타 팽윤(澎潤) 또는 배제(焙製)된 곡류 조제식품, 육류 포함」
  - 5) 1904.90.10.10-2 「기타 예비 조리용 또는 기타 조리 방식의 입자형태' 조각형태 또는 기타 가공(분말 및 세립형태 제외)형태의 미 소속곡류(옥수수 제외)상품, 쌀 함유량 30%이하, 육류포함」
  - 6) 1904.90.90.10-5 「기타 예비 조리용 또는 기타 조리 방식의 입자형태' 조각형태 또는 기타 가공(분말 및 세립형태 제외)형태의 미 소속곡류(옥수수 제외)상품, 육류 포함」
  - 7) 1904.40.00.100-4 「건빵류, 베이커리 빵류 및 유사한 베이커리 제품」
  - 8) 2104.10.11.00-6 「액체 형태 곡류 및 그 조제품, 육류」

#### 2. 구제역' 우역' 소접촉전염성페렴 및 아프리카 돼지독감의 비전염구역에서 수입된 감수성 우제류 육류 또는 뉴캐슬병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비전염구역에서 수입된 가금류 육류가 포함된 함육가공제품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제조공장은 수출국 담당 기관의 심사 및 허가 하에서 함육가공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 (2) 제조공장은 육류 원료의 분류' 공급원' 수량' 일자 및 상품가공 제조일자 등의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여 적어도 2년간 보관 한다
- (3) 상품은 신규 용기포장을 해야 한다
- (4) 원료용 육류 뼈 내장은 도축위생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한다
- (5) 수입 시 수출국검역기관이 서명 발부한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 하고, 영문' 중문 또는 중·영문 병합방식으로 아래 사항을 상세 등록 한다

- 1) 제조공장의 명칭과 주소
  - 2) 상품 품명' 수량' 중량 및 제조일자
  - 3) 동물성 성분 원료의 동물 종류
  - 4) 검역증명서 발부일자' 지점기관' 명칭과 서명 발부한 수의사 성명과 인장
3. 구제역, 우역, 소접촉전염성폐렴, 아프리카돼지독감의 전염구역에서 수입된 감수성 우제류 육류 또는 뉴캐슬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전염구역에서 수입된 가금류 육류의 함유가공제품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제조공장은 수출국 담당 기관의 심사 및 허가 하에서 함유가공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해야 한다
  - (2) 원료용 육류 뼈 내장은 도축위생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한다
  - (3) 함유가공제품에 포함된 육류는 제품은 가열처리를 해야 한다. 건조 육류는 건조 전 가열처리를 해야 하며 가열 처리 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감수성 우제류 동물 육류의 중심온도는 섭씨 70도 이상 적어도 30분을 유지해야 하거나 섭씨 100도 또는 그 이상에서 2~3분간 가열 처리함 : 가금류 동물 육류의 중심온도는 섭씨 65도 이상에서 42초 이상 유지해야 하거나 섭씨 70도 이상에서 3.6초 이상, 섭씨 74도 이상에서 0.51초 이상을 유지해야 함
    - 2) 수출입동물검역기관이 허가하고 상기 전술조건과 동등한 살균효과처리의 가열방식으로 처리함
  - (4) 가열처리 후 효과 있는 예방처리방식을 선택하여 동물전염병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5) 상품은 신규 용기 포장되어야 한다
  - (6) 제조공장은 육류 원료의 분류' 공급원' 수량' 일자 및 상품가공 제조일자 등의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여 적어도 2년간 보관 한다
  - (7) 제조공장은 수출국 담당기관에서 행정원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 심사허가증을 전달하도록 하며, 파견원을 보내어 현장심사를 하고 현장심사에 소요된 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 한다
  - (8) 수입 시 수출국검역기관이 서명 발부한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영문' 중문 또는 중·영문 병합방식으로 아래 사항을 상세 등록 한다
    - 1) 제조공장의 명칭과 주소
    - 2) 상품 품명 수량' 중량 및 제조일자
    - 3) 동물성 성분 원료의 동물 종류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공고 사항

- 함유 즉석면류 및 죽류를 해당 수입검역 조건에서 삭제함  
(동물유지류, 풍미제, 정제물, 수해물, 건조 분말 등은 본 수입검역조건에 해당이 안 됨)  
삭제부분 : 1902.30.10.10-7 「즉석 면류, 육류 포함」  
1904.10.20.11-6 「즉석 죽류, 육류 포함」
- 육류와 함유가공제품을 확연히 구분하였고 제한 범위 및 용어 정의를 구체화함

- 감수성 우제류와 가금류에 대한 고온 멸균 처리 방식 및 기준을 구분
- 열거된 전염병과 직접 관련된 동물에 한해 적용되었던 규정이 비전염구역 감수성 동물 또는 전염구역 감수성 동물로 변경 기입함에 따라 감수성 높은 소, 돼지, 양, 산양 등으로 제한 범위가 광범위해짐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의 제3조 내용 일부 수정공고  
(部授食字第1031300872號 2014년 4월 1일 공포)

□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검역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의 첨부 내용 변경  
(農防字第1041481990호, 2015년 7월 10일 공포, 효력발생)

- 조류 및 새끼, 알의 수입검역 조건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조류 및 새끼, 알의 검역 조건 제한사항
  - 조류 및 새끼, 알의 수입 시 청결한 용기에 밀봉 선적,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중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서 환적할 수 없으며, 운송 중 사료 및 기타 조류를 추가 선적할 수 없음. 아울러 세계 동물 위생 조직의 육상 동물위생법전 및 국제 항공협회의 운수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단 밀폐식 컨테이너 운송 동물 상품수입검역작업방법 규정에 따라 밀폐식 컨테이너 운송의 알은 운송 중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의 환적 운송도구를 이용할 수 있음.
  - 미국에서 수입되는 조류 및 새끼, 알 등의 수입 시 상기 사항과 동일

□ 「수입 식물 및 식물제품 방역검역방법(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첨부 내용 변경  
(農防字第1041493547A호, 2015년 6월 5일 공포, 효력발생)

- 식물방역검역법제14조 1항 규정에 의거해 수입 금지 식물 및 식물상품 제한 및 조건성 수입 금지 식물 및 식물상품의 검역 조건을 규정함 (식물의 명칭 및 그 부위, 국가 및 지역, 수입검역국가 및 지역별 규정. 한국을 화상병(Fire blight) 구역으로 추가 규정함)

식물명칭및그 부위	국가 및 지역	병충해 명칭	검역조건
채진목(Amelanchier), 아로니아(aronia), 모과나무(chaenomeles), 섬개야광나무(cotoneaster), crataegomespilus, 산사나무속(crataegus), cydonia, dichotomanthes, docynia, 비파(eriobotrya), 야광나무(malus), 서양모과(mespilus), osteomeles, peraphyllum, 홍가시나무속(photinia), 살구속(prunus), 피라칸타(pyraecantha), 배나무속(pyrus), 다정큼나무(raphiolepis), 나무떨기속(rubus), 마가목(sorbus), 조팝나무(spiraea), stranvaesia	중국,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한국, 리바논, 터키, 베트남, 이집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과테말라 등	화상병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인증의 식물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화상병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각 및 반환 처리됨.

□ 「수출입식물상품 검역 단순화 작업요점(輸出入植物產品檢疫簡化作業要點)」 수정  
 (防檢四字第1041494210A호, 2015년 10월 22일 공포, 효력발생)

- 위험도가 낮은 식물상품의 수출입 시 그 검역 방식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함, 각 30개 당 한 개를 뽑아 현장 검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하여 필요 시 유관기관이 현장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제3절 품목별 검역제도**

**1. 육 류**

가. 「신선육의 안전위생기준(生鮮肉品類衛生標準)」

- 본 기준은 가금류와 가축에 적용되며 아래의 항목을 포함

항목 분류	신선육류	냉동육류	신선내장류	냉동내장류
약물 잔류량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에 의거함			
농약 잔류량	「농약 잔류량 제한 기준(禽畜產品中殘留農藥限量標準)」에 의거함			
특징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이물질, 기타 이상 등이 없어야 함			
라벨 규정	냉동 육류와 냉동 내장류도 식품관리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보관방법과 조건을 명시해야 함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본 기준은 가금류와 가축에 적용됨

나. 「소, 양, 돼지 및 가금류의 중금속 함량 기준(牛羊豬及家禽可食性內臟重金屬限量標準)」

- 근거법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0조

항 목	제한치 (습윤 중량)
납	0.5 ppm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름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시험은 표기에 사용된 마커를 포함하여 그 의약품과 의약품의 대사를 검사함

□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최대 허용치 리스트 외의 의약품은 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2015년 10월 16일 수정된 제 3조 조항에 따르면 명단에 있는 의약품 중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사용을 불허하는 의약품은 수입육류에만 적용됨.
- 수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Eugenol의 생선 잔류 허용량 추가, Flavophospholipol의 소, 돼지, 닭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및 우유와 달걀 등 40여 항목의 잔류 허용량 추가, Levamisole와 Tetramisole의 가금류유 등 항목의 잔류 허용량 추가, Tylosin의 가금류유 잔류 허용량 추가

## 2. 농산물

가. 「농약잔류허용량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2015년 06월 24일 部授食字第1041301616號令 수정)

□ 주요 내용

- 본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함
- 본 기준에서 칭하는 허용량 및 실측 잔류 농약량은 시판형태의 중량을 산출기준으로 하며, 잔류농약의 검역은 농약 자체 및 함유하고 있는 대사산물을 포함함
- 축산·수산품을 제외한 식품의 잔류 농약량은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다. 붙임 1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붙임2에 열거된 농약은 안전성이 높아 허용량 제한이 면제되었으며 잔류량 검사 면제
- 농약 주관기관이 공고한 사용 금지 농약은 별도 규정 외에 잔류량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농약 명칭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4를 참고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표 안의 작물 분류는 붙임5를 참고

○ 본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관련 홈페이지

<http://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 나. 농산물의 중금속 제한 기준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적용대상 : 채소, 과일, 허브류

적용대상의 중금속 제한 허용치

농산물 분류	카드뮴	납
작은 잎 채소류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배추속 채소류 및 브로콜리류	0.05 ppm 이하	0.3 ppm 이하
뿌리채소류	0.1 ppm 이하	0.3 ppm 이하
인경채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박과 및 과실 채소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콩류 및 콩과 채소류	0.2 ppm 이하	0.2 ppm 이하
딸기류 및 소형과일	0.05 ppm 이하	0.2 ppm 이하
감귤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사과 및 배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견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메론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기타 아열대 과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허브 및 향신료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버섯류	3 ppm 이하	2 ppm 이하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2015년 9월 2일 수정 초안 공고  
 쌀의 중금속 허용치 : 수은 0.05ppm이하, 카드뮴 0.4ppm이하, 납0.2ppm이하

### 다. 한국 신선과일 수입검역 조건

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 사항
수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없음
사과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배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복숭아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딸기	Frakliniella occidentalis	없음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참외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포도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레몬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밀감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시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 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사과 : 2010년10월21일 갱신, 사과 외 과일: 2010년10월1일 갱신
  -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삼주벌레
  -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 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 : 화살꼭지벌레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라. 한국 신선 채소 수입검역 조건**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인삼	Bulb mite; <i>Rhizoglyphus echinopus</i>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Potato tuber moth; <i>Ditylenchus destructor</i>	
옥수수	<i>Frakliniella occidentalis</i>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2010年9月6日
배추	<i>Frakliniella occidentalis</i>	2010年8月15日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호박	<i>Frakliniella occidentalis</i>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i>Ditylenchus dipsaci</i>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시금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당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있이 달린 경우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추가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2010年10月1日
브로콜리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오이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마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年5月6日
느타리버섯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09年8月14日
파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마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양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고추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가지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토마토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 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삽주벌레
  -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 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 : 화살깎지벌레
  -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구근진드기
  -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감자나방
  - \*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 감자 역병균 A2타입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3. 수산물

가. 수산물의 위생기준 (2009.11.30 전문 3조 제정, 2013년 8월 20 수정발표)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수산물류의 최대 중금속 허용치는 아래와 같음

중금속 분류	메틸 수은	카드뮴	납
고래, 상어, 황새치, 참치, 심해어	2 ppm	0.3 ppm	0.3 ppm
줄비늘치, 가다랑어, 쌍각류, 대서양 메기, 아귀, 돔, 송어, 가오리, 갈치, 고등어, 참다랑어, 장어, 창꼬치어	1 ppm		
그외 어류	0.5 ppm		
조개류	0.5 ppm	2 ppm	2 ppm
두족류(내장 제외)	0.5 ppm	2 ppm	1 ppm
갑각류	0.5 ppm	0.5 ppm	0.5 ppm

자료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 나. 해조류식품위생표준(藻類食品衛生標準)

- 해조류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조류식품위생표준안 확정(2013년 8월 21일 部授食字第1021350295號令 공포)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판매의 식품, 식품용 세척제 및 그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은 위생안전 및 품질의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표준은 중앙관리기관이 정한다」
  - 기존 「식용 해조류 위생 표준(食用藻類衛生標準)」 규정을 폐지 대체 함
  - 해조류식품의 적용범위 확대  
관리 범주를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남조, 녹조, 갈조 및 홍조류 등 제품으로 확대
  -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 규정, 중금속 제한량 규정
  - 해조류 식품의 페오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 규정
  - 본 표준의 시행일자 : 공포일 기준(2013.8.21.)

■ 해조류(藻類) 식품위생표준초안 조문설명 ■

조 문	설 명									
제1조 본 표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한다.	본 표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2조 본 표준은 식용 가능한 남조류, 녹조류, 갈조류 및 홍조류 등 식품에 적용된다.	본 표준에서 칭하는 해조류 식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3조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은 식품 형태(신선 또는 가공 등)에 따라 「일반식품위생표준(一般食品衛生標準)」 「생식용식품류위생표준(生食用食品類衛生標準)」 또는 「생(生)·숙(熟)식혼합즉석식품류위생표준(生熟食混合即食食品類衛生標準)」으로 적용한다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제4조 해조류 식품 중금속함량은 아래 제한 표준량에 부합해야 한다.	해조류 식품의 중금속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p>제5조 페어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p> <table border="1" data-bbox="215 1093 797 1361"> <thead> <tr> <th data-bbox="215 1093 487 1172">항 목 \ 종 류</th> <th data-bbox="487 1093 643 1172">녹조류</th> <th data-bbox="643 1093 797 1172">남조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15 1172 487 1252">기존 페어포바이드</td> <td data-bbox="487 1172 643 1252">60 mg/100g</td> <td data-bbox="643 1172 797 1252">50 mg/100g</td> </tr> <tr> <td data-bbox="215 1252 487 1361">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td> <td data-bbox="487 1252 643 1361">80 mg/100g</td> <td data-bbox="643 1252 797 1361">100 mg/100g</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표는 수분함량 7% 이하의 녹조류 및 남조류(건조량 기준)에 적용되고 신선식품 및 홍조류, 갈조류 제품은 적용되지 않음</li> <li>「mg/100g」은 100g 당 제품 중 기존 페어포바이드 또는 총 페어포바이드의 함량을 가리킴</li> </ol>	항 목 \ 종 류	녹조류	남조류	기존 페어포바이드	60 mg/100g	50 mg/100g	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	80 mg/100g	100 mg/100g	해조류 식품의 페어포바이드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항 목 \ 종 류	녹조류	남조류								
기존 페어포바이드	60 mg/100g	50 mg/100g								
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	80 mg/100g	100 mg/100g								
제6조 본 표준은 공포일부터 시행 된다.	본 표준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한다.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4. 유아식품 및 유제품

유아식품의 위생기준(嬰兒食品類衛生及殘留農藥安全容許量標準) (2014.07.15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 기존 유아식품위생표준(嬰兒食品類衛生標準)에서 유아식품의 위생기준으로 명칭 변경
- 적용대상 : 분유 및 씨리얼이나 콩으로 제조된 보조식품류
- 영아식품은 그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적 이슈, 기생충이 발견되면 안 됨
- 유아식품의 총 일반세균수는 1g당 50,000을 초과하면 안 됨
- 유아식품에는 대장균류 검출불가
- 영아식품의 중금속 제한량

항목	제한량(ppm)
납	0.02
주석	50

납은 즉시 식용 또는 조제 후의 상태  
 주석은 시판된 후 상태, 캔 포장된 식품, 건조 및 분말 상태 제품 미포함

- 영아식품의 잔류농약은 농약 검사 표준에서 정한 0.01ppm을 초과하면 안 됨 (최대검사정량)
- 최대치가 0.01ppm을 초과하거나 미달일 경우, 최대치를 기준으로 함
- 유아식품은 호르몬, 항생제, 방사능 물질, 농약, 아플라톡신, 또는 다른 오염과 혼합되면 안 됨
-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와 제한기준에 따름

유제품의 위생기준 (2013.8.20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규정됨
-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기준

■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기준 ■

유제품 종류	특징	산도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 대장균수 (MPN/g)	식품첨가물	참고
액상우유	순지방우유	0.18% 이하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첨가 불가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은 검출 불가
	저지방우유						
	탈지방우유						
	살균 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C에서 7일간), 표준 저장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영양 강화 우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영양첨가제-와카세인 첨가 가능		
분유	전지분유	부패, 변색, 약취, 이취가 없어야 함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부합	
	탈지분유						
	조미분유						
	조제분유						
연유	무당 연유	살균우유는 응고나 침전이 있으면 안됨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부합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연유						
가미액상우유	가미우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C에서 7일간), 표준 저장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
	살균가미우유						
크림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버터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5. 음료 및 식수

### 음료류의 위생기준 (2013.08.20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품질은 식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 기준

음료 항목	카페인 함유량 조건
커피	낮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분류된 커피는 카페인 함량 기준치 2 mg/100 mL(20ppm)를 초과하면 안 됨
차와 코코아	카페인 함유량이 50 mg/100 mL (500 ppm)을 초과하면 안 되고 낮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분류된 것은 2 mg/100 mL(20ppm)를 초과하면 안 됨
기타 카페인 함유 음료	카페인 함유량 32 mg/100 mL(320 ppm)을 초과하면 안 됨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 음료의 중금속 최대 허용치

중금속 항목	제한량
비스	0.2 ppm
납	0.3 ppm
구리	5.0 ppm
주석	150 ppm (캔 제품류)
안티몬	0.15 ppm

\*신선/농축 과일주스와 야채주스는 제외됨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미생물 허용치

음료 분류	일반세균수 (cfu/mL)	대장균수 (MPN/mL)	병원선대장균수 (MPN/mL)	살모넬라
탄산음료	10 <sup>4</sup> 이하 (포장 시 100 이하)	10 이하 (포장시 음성)	음성	음성
생과일즙, 생야채즙 (살균처리 무)	-	10 <sup>3</sup> 이하	10 이하	음성
환원 과즙, 환원 야채즙, 퓨레	10 <sup>4</sup>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10 <sup>3</sup> 이하	음성	음성
발효 과즙 또는 야채즙	-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음성	음성
커피, 코코아, 차, 씨리얼, 콩 등을 포함한 음료	10 <sup>4</sup>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음성	음성
유제품을 포함한 산성 음료	-	10 이하 (포장시 음성)	음성	음성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수의 위생기준(2009.09.17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적용대상 : 소비 목적인 포장된 식수
- 포장된 식수의 제조에 사용된 원천수는 「식수를 위한 원천수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함
- 브론산염의 최대 허용치는 0.01ppm임
- 중금속 허용치

중금속 종류	최대 허용치 (ppm)
비소	0.01
납	0.05
아연	5.0
구리	1.0
수은	0.001
카드뮴	0.005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 미생물 허용치

미생물 종류	제한
대장균	음성
분원성 연쇄 상구균	음성
녹농균	음성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6. 주류

### □ 주류 관리법

- 주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7일 「담배 주류 관리법」을 수정 공표하였고 수입주류와 관련한 제39조 3항이 추가됨
- 수입주류는 위생기준에 따라 중앙주요기관이 집행하는 검험에 부합해야 수입이 가능함
- 2005년 7월 27일에 「수입주류검험방법」을 공표, 2015년 5월 1일 「수입주류검험관리방법(進口酒類查驗管理辦法)」으로 명칭 변경, 전문 22조 수정 발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수입주류의 검험은 본 규정에 근거함
- 수입주류의 검험은 담배주류관리법 제 39조 7항 규정에 의거하며, 재정부국고서에서 신고접수를 담당하고 샘플링과 검사작업은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위탁함. 검사항목은 메탄올, 납, 이산화황의 함량을 포함함

### □ 수입주류의 검험·검사

- 법률 근거 : 「수입주류검험관리방법」 2015년 05월 01일 수정
- 검험 방식 : 서류검사, 일반검험, 전수검험
- 서류검사의 조건

- 이전에 위생기준에 부합하여 검침 통과한 기록이 있는 제품. 일반 검침 시 표본으로 채취되지 않은 제품, 원산국 및 수출국의 일정조건에 부합하며, 중앙당국 공고를 거친 주류제품
  - 당국이 인정한 기관에서 실험한 시험성적서, 검역증명서, 또는 관련 검침증명 등을 제출하는 제품
- 검침신청서류
- 검침신청서
  - 세관 수입신고서 복사본
  - 수입제품의 기본자료 보고표
  - 원산지 증명서, 기타 검침 시 필요한 서류
- 검침비 : CIF 가격의 화물가치의 0.1% (각 배치별 적용). 각 배치별 최소 검사비용은 NTD200, 최대 검사비용은 NTD50,000
- 항목별 검침비 기준

항목	금 액(단위: NTD)
메틸알코올	2,500
납	2,000
이산화황	2,000
식염	1,000
방부제(소르빈산, 벤조산)	5,000
방사능	2,000

□ 주류의 위생기준 (2013.09.11 수정)

- 본 기준은 「담배주류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름
- 주류의 첨가물은 다음 규정에 따름
- 메틸 알콜의 용량은 주류에 따라 규정함(소주와 맥주는 리터당 1000mg이하)

잔류 첨가물 분류	내 용
sorbic acid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2g 이하
benzoic acid	알콜도수 15%이하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색소	주류에서 리터당 Lutein잔류량이 10mg 이하
Sulfur dioxide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맥주와 곡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03g 이하 다른 주류에선 검출불가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주류의 리터당 납 허용치는 0.3mg 이하
- 주류의 첨가물은 유독하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것을 포함하면 안 되고, 식품이나 음료에 한 번도 사용한 전례가 없거나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7. 중약재(한약재)

### 관리 기관

- 중약재의 검험은 행정원 위생서와 중의약위원회(이하 중의약위원회) 협의 아래, 경제부 표준검역국에 위탁하여 검험 검역을 집행함
- 중약재의 검험신청은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에서 접수하고 중의약위원회가 발표한 CCC코드, 검험기준, 검험항목 및 검험방법에 따라 표준검역국이 검험을 진행

### 수입 중약재의 상관 검험 규정(2015년 5월 5일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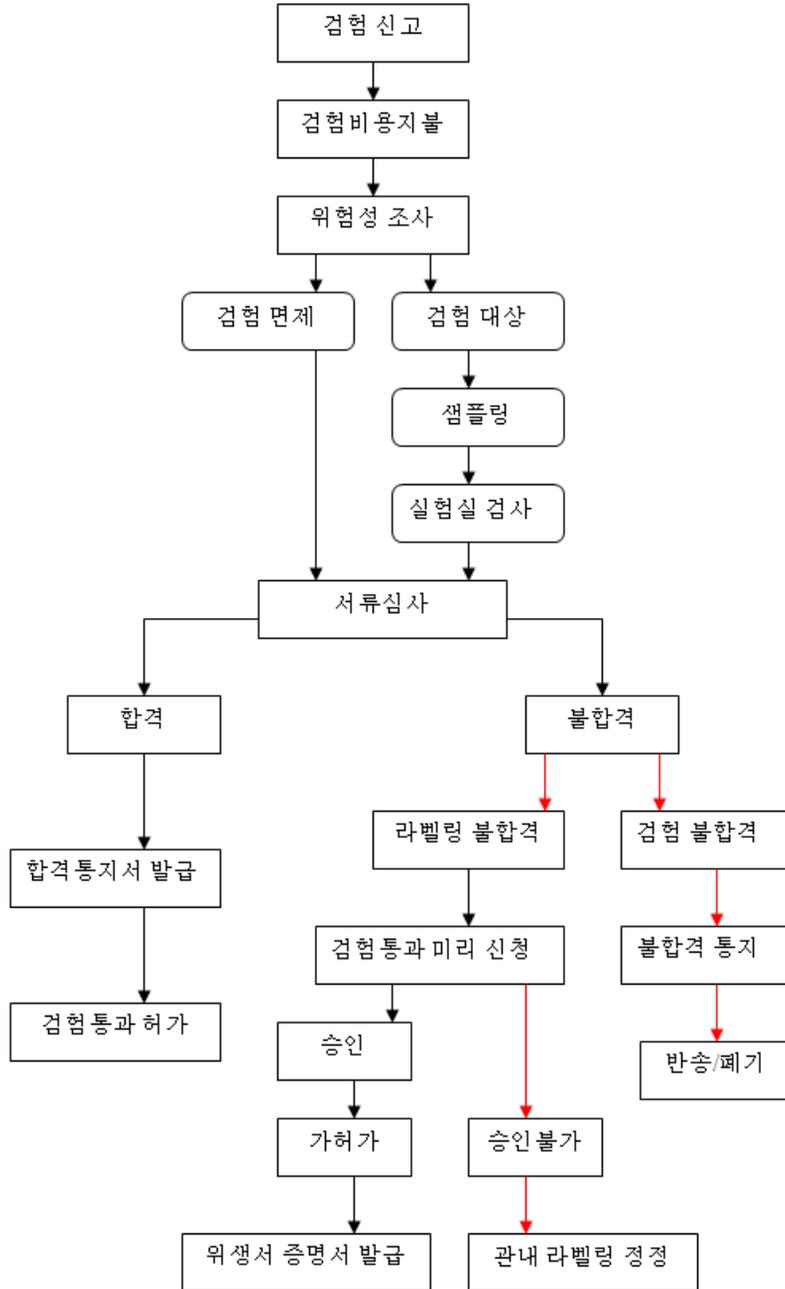
- 법률근거 : 「약사법」 제 71-1조
  - 수입 검역 검사를 적용해야 하는 중약재 품목

HS CODE	품명	검사항목 및 기준	검험 방식	수입규정
0804.10.10.00-4	홍대추 (중약재용포함)	총 BHC 0.2 ppm이하*** 총 DDT 0.2 ppm이하*** 아플라톡신 15ppb이하****	일반검험	H02
1211.90.13.00-9	두충	납 30 ppm이하** 카드뮴 2.0 ppm이하** 수은 2.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20.00-0	복령	총 중금속 10 ppm이하*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21.00-9	복령 절편	총 중금속 10 ppm이하*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22.00-8	방형 복령, 복신, 복령껍질	총 중금속 10 ppm이하*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25.00-5	천궁	총 중금속 10 ppm이하*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30.00-8	백출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44.00-2	백작약	납 5.0 ppm이하** 카드뮴 0.3 ppm이하** 수은 0.2 ppm이하** 구리 20 ppm이하** 비소 2.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49.00-7	지황	총 중금속 10 ppm이하*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50.00-3	황기	납 5.0 ppm이하** 카드뮴 0.3 ppm이하** 수은 0.2 ppm이하** 구리 20 ppm이하** 비소 2.0 ppm이하** 총 BHC 0.9 ppm이하*** 총 DDT 1.0 ppm이하*** 총 PCNB 1.0 ppm이하*** 아플라톡신 15 ppb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54.00-9	당귀	총 중금속 10 ppm이하*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55.00-8	서귀각, 소귀미	총 중금속 10 ppm이하* 비소 5.0 ppm이하**	일반검험	H01

1211.90.56.00-7	박미각편	총 중금속 10 ppm以下* 비소 5.0 ppm以下**	일반검험	H01
1211.90.61.00-0	백작약	납 5.0 ppm以下** 카드뮴 0.3 ppm以下** 수은 0.2 ppm以下** 구리 20 ppm以下** 비소 2.0 ppm以下**	일반검험	H01
1211.90.70.00-9	감초뿌리	납 5.0 ppm以下** 카드뮴 0.3 ppm以下** 수은 0.2 ppm以下** 구리 20 ppm以下** 비소 2.0 ppm以下** 총 BHC 0.9 ppm以下*** 총 DDT 1.0 ppm以下*** 총 PCNB 1.0 ppm以下***	일반검험	H02
0906.19.00.00-4	계피 및 기타 계피	납 30 ppm以下** 카드뮴 2.0 ppm以下** 수은 2.0 ppm以下** 총 BHC 0.2 ppm以下*** 총 DDT 0.2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2
0906.20.00.00-1	계피 (잘게 부순 것)	납 30 ppm以下** 카드뮴 2.0 ppm以下** 수은 2.0 ppm以下** 총 BHC 0.2 ppm以下*** 총 DDT 0.2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2
0906.11.00.00-2	계피 (부수지 않은 것)	납 30 ppm以下** 카드뮴 2.0 ppm以下** 수은 2.0 ppm以下** 총 BHC 0.2 ppm以下*** 총 DDT 0.2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2
1211.90.43.00-3	시호	총 중금속 10 ppm以下* 비소 5.0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90.46.00-0	황금	총 중금속 10 ppm以下* 비소 5.0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90.37.00-1	반하	총 중금속 10 ppm以下* 비소 5.0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90.41.00-5	우슬, 천우슬, 두우슬	총 중금속 10 ppm以下* 비소 5.0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1211.90.23.00-7	대황	총 중금속 10 ppm以下* 비소 5.0 ppm以下**	문서완비 및 규정 부합여부 심사	H01

- 검험신청서류 : 검험신청서, 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중약상 자격증 복사본,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급)
- 검험방식 : 모니터링검사, 견대추, 황기, 당귀, 감초뿌리, 서귀, 귀미 등 5%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포장, 외관, 라벨링을 포함한 일반검사를 하고 그 외 기타 중약재는 서류심사만 함. 단 필요시 일반검사 진행(건조 중약재들은 식물검역면제)
- 검험비용 : 수입화물 CIF가격의 0.15%. 배치별 최소비용은 NTD200. NTD100,000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수입 중약재 검험과정 절차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8. 일반 가공식품

### □ 일반식품의 위생기준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식품은 본 규정에 따름
- 제품은 그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적 이슈, 기생충이 발견되면 안 됨
- 미생물 제한치

제품 분류	대장균 수 (MPN/g)	병원성 대장균 수 (MPN/g)
준비처리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10 <sup>3</sup> 이하	음성
준비처리 후에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	-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 「식품 중 진균독 제한기준(食品中真菌毒素限量標準)」(2013.08.20 수정)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식품 중 아플라톡신(Aflatoxin) 허용치

식품 분류	아플라톡신 허용치 (아플라톡신 B <sub>1</sub> , B <sub>2</sub> , G <sub>1</sub> , G <sub>2</sub> 포함)
식용 기름과 지방	10 ppb 이하
우유	0.5 ppb 이하 (아플라톡신M <sub>1</sub> )
분유	5.0 ppb 이하 (아플라톡신M <sub>1</sub> )
다른 식품	10 ppb 이하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오크라톡신(Ochratoxin A) 허용치

식품 분류	오크라톡신 허용치
로스팅한 커피빈과 커피분말	5 ppb 이하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파툴린(Patulin) 허용치

식품 분류	파툴린 허용치
사과주스와 사과주스를 포함한 혼합 음료	50 ppb 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시트리닌(citrinin) 허용치

식품 분류	시트리닌 허용치
홍국적색소	200 ppb 이하
Red yeast rice	5 ppm 이하
Red yeast rice를 포함한 복합식품	2 ppm 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 냉동 식품류의 위생기준 (1998.06.16 수정)

○ 제품은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적 이슈, 기생충이 없어야 함

○ 식품분류별 위생기준

식품 분류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대장균수 (MPN/g)	VBN 측정치 (mg/100 g)
냉동 어패류 (익힌 것)	300만 이하		10 이하	25mg 이하 (판새류는 50mg 이하)
냉동 즉석제품 (조리 불필요)	100,000 이하	10 이하	음성	
냉동 식품 (조리 필요)	냉동 전 열처리 된 것: 10만 이하	10 이하	음성	15mg 이하
	냉동 전 열처리 안된 것: 300만 이하		50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 제4절 검역사례

### 1. 최근 검역 사례

□ 2014년도 수입식품 검역 불합격 통계

검역 건수	총 중량(N.W)	샘플링 검사수(비율)	불합격 건수(비율)
616,286	7,966,368,291	48,704(7.90%)	663(1.36%)

○ 2014년도 불합격 제품 종류별 상위 5종 및 그 항목

순위	제품 종류	대상 건수	검역 건수	불합격 건수 (불합격율 %)	주요불합격 검역항목	주요 항목	국가
1	채소	24,479	2,660	154 (5.79)	잔류 농약	아스파라거스, 파, 바질 잎	일본, 태국
2	과일	24,989	2,297	91 (3.96)	잔류 농약	밀감, 체리	일본, 미국
3	차 류	9,571	2,338	65 (2.78)	잔류 농약	녹차, 홍차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4	과일,채소 (가공제품)	24,804	1,723	48 (2.79)	잔류 농약, 방부제	염장 고추, 염장 죽순	베트남
5	기타 제조식품	30,032	2,177	32 (1.47)	조미료(첨가제), 방부제	발포비타민, 젤리	독일, 태국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2. 주요 국가별 사례

### 가. 한국산

#### 한국산 배추 농약 검출 사례 급증

- 2015.4.17.~10.17까지 수입강화샘플링 검사가 시행되면서 연속적인 농약검출 발생
- 전체적으로 디니졸나졸, 메트로나졸, 프로미카미드 등 농약 잔류량이 초과 검출됨
- 지속적으로 11건이 발견됨에 따라 대만 당국은 2015.10.5.~2016.4.4.까지 한국산 배추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토록 공고

#### 〈배추관련 대표 반송 사례〉

수입코드	0704.90.10.00-8
불합격 사항	농약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잔류량 0.04ppm 검출
근거 법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농약잔류허용량 표준 규정」에 따라 0.01ppm을 초과 위반
검역 중량	16,170kg
처리 방식	불합격된 상품 반송 또는 폐기
발표 일자	2015. 06. 10
검역 일자	2013. 05. 06

#### 한국산 치킨양념소스 방부제 검출

- 주요 내용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15년 6월 10일 수입변경검사 불합격 상품 40개 항목을 발표, 일본산 망고, 태국산 아스파라거스, 미국산 체리와 더불어 한국산 치킨양념소스에서 미허용 방부제가 검출되었다고 밝힘

- 검출된 방부제는 Ethyl p-Hydroxybenzoate(0.185 g/kg)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기준」에 의거, 식품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안전위생관리법 제 18조 규정을 위반함
- 본 상품은 규정에 따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됨

수입코드	2013.90.90.90-5
불합격 사항	잔류 방부제 Ethyl p-Hydroxybenzoate 0.185 g/kg 검출
근거 법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8조 규정 위반
검역 중량	100kg
처리 방식	불합격된 상품 반송 또는 폐기
발표 일자	2015. 06. 10
검역 일자	2013. 05. 06

○ 2015년 한국산 주요 검역 사례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2/3 (1/5)	신선 배	98180000004	잔류농약 Methidathion 0.06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16,200	반송 혹은 폐기
4/14 (3/17)	고춧가루	09042190003	잔류농약 tebuconazole0.13ppm 검출	0.05ppm	120kg	반송 혹은 폐기
6/23 (5/8)	포도씨유	15159090909	동엽록소 0.15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8조 위반	15kg	반송 혹은 폐기
7/22 (6/23)	신선 파프리카	07096000001	잔류농약 clothianidin 0.08ppm 검출	0.05ppm	15kg	반송 혹은 폐기
7/22 (6/25)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프로니카미드 0.04ppm 검출	0.01ppm		반송 혹은 폐기
8/18 (7/22)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1ppm, 메트코나졸 0.03ppm 검출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20,000	반송 혹은 폐기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8/18 (7/2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프로니카מיד 0.02ppm 검출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8/25 (7/2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4ppm, 메트코나졸 0.12ppm 검출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19,000	반송 혹은 폐기
9/15 (8/14)	배추	07049010008	디니코나졸 0.04ppm 메토코나졸 0.16ppm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16,170	반송 혹은 폐기
9/15 (8/20)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에토펜플록스 0.06ppm 검출	에토펜플록스 검출 미허용	15,750	반송 혹은 폐기
9/22 (8/27)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4ppm, 메트코나졸 0.01ppm, 에토펜프톨스 0.05ppm, 아미설부롬 0.12ppm, 파목사돈 0.02ppm 검출	디나콜나졸, 에토펜플록스, 아미설부롬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파목사돈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9/22 (8/27)	배추	07049010008	메트코나졸 0.06ppm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10/13 (9/16)	신선 멜론	08071910002	잔류농약 Pyridaben 0.02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6,400kg	반송 혹은 폐기
10/13 (9/15)	치킨양념 소스	21039090905	방부제 Ethyl p-Hydroxybenzoate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8조 위반	160kg	반송 혹은 폐기
11/24 (10/23)	간장	21031090001	방부제 p-Hydroxybenzoate 0.11 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885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나. 미국 및 캐나다

### □ 미국 및 캐나다 소고기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규정

#### ○ 주요 내용

- 기존 “미국 소고기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규정(美國牛肉及其產品之進口規定)”을 “미국 및 캐나다 소고기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규정(美國及加拿大牛肉及其產品之進口規定)”으로 변경
- 2014년 2월 27일 수정공포, 효력 발생
- 미국 및 캐나다 원산지 소고기는 수입 시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미국 및 캐나다 국경 내에서 100일 이상 양육을 한 소
  2. 소고기 및 관련 제품은 해당국가의 수출수의사가의 관리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 생산된 제품만 수입가능; 도축하는 과정에서 고압기체를 주입해서는 안되며, Stunning Process와 Pithing Process의 사용을 금지 함
  3. 소고기 및 관련제품 도살과정에서 SRMs, MRM, MSM, 도축 시 30개월 이상의 소, AMR등을 혼합을 금지 함. 또한 미국산 소고기 도축 과정에서 공기총을 사용해 기절시킨 후 도살하는 방식을 금지함
  4. 수입 시 반드시 수출국이 발급한 다음의 증명문서를 첨부해야 함
    - 미국 품질관리 시스템 QSA(Quality System Assessment) 계획에 의한 육류품 공장은 다음과 같은 증명 문서를 첨부해야 함.(본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은 30개월 이하 소를 사용한 품질 인증을 미국 농업부의 허가를 받았음)
    - 캐나다 위생복지부 식품검사서의 허가를 받고, 대만의 육류품 공장 허가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함 (본 소고기는 캐나다 위생부 식품 검사서의 허가를 받아 대만으로 수출이 가능한 육류품 공장에서 생산하였음. 또한 캐나다 위생부 식품검사서의 수의사의 감독 하에 도살 전 및 도살 후 검사를 진행 한 후 생산하였음)
- 상기 규정은 부합하지만 머릿뼈, 뇌, 눈, 척수, 고기 찌꺼기, 내장은 수입 불가 함
- 2월 캐나다에서 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됨에 따라, 2

월 22일부로 대만 내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됨. 식품약품관리서에 따르면, 충분이 안전이 확보되었음이 증명될 때까지 캐나다산 소고기 및 관련 제품의 검역은 잠정적 중단 예정임.

-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금지와 맞물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매년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소고기의 양은 평균 114만 마리로, 이 중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대만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고기의 대만 내 시중 유통 여부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식품약품관리서는 캐나다산 소고기의 미국 수입 시 미국 농업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수입 진행된다고 강조함. 또한 미국산 소고기가 대만에 수입될 때 역시 도축 전후 모두 수의사의 검사 하에 실시 후 관련 위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이 진행되므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발표함

#### □ 골수, 우지 등 6개 항목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 확대 예정

- 대만 위생복지부, 농업위원회, 경제부는 위험평가 및 심사 작업 후 안전 무해함의 전제하에 미국산 및 캐나다산 30개월 이하 소고기의 골수, 식도근육, 머릿살, 볼살, 혈관, 우지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입 개방 확대할 예정임
- 경제부는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신회원국 가입 여부에 직면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미국산 소고기 추가 수입 개방을 계획 중에 있음을 밝힘
- 경제부는 미국은 2013년 OIE(세계동물위생조직)에서 광우병 발생 비위험국가로써 뉴질랜드, 호주와 동일 등급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OIE "해당 국가산 소고기는 연령 및 부위 구분 없이 안전무역이 가능하다" 규정대로 안전평가 이후 30개월 이하 소고기의 골수, 식도근육, 머릿살, 볼살, 혈관, 우지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입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며, 상기 6개 항목은 <非내장>부위가 이므로 「대만식품안전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밝힘
- 스웨덴산을 비롯한 유럽산 소고기 개방 관련하여 이미 현지 품질관리 고찰을 다녀왔으며 향후 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산 돼지고기는 과거 수육정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수입 개방 반대의 의지를 보임

□ 2015년 주요 검역 사례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3/31 (2/24)	미국	신선 감자	07019000003	잔류농약 Difenoconazole 0.26ppm 검출	0.01ppm	15,876kg	반송 혹은 폐기
5/27 (4/23)	미국	신선 블루베리	08104010000	잔류농약 Fenhexamid 0.21 ppm 검출	미허용	1,836kg	반송 혹은 폐기
6/10 (5/5)	미국	신선 양상추	07051100005	카드뮴 0.07ppm 검출	0.05ppm	7,621kg	반송 혹은 폐기
7/29 (6/23)	미국	냉동육 (돼지고기)	02064990006	Ractopamine 1.9ppb 검출	미허용	6,096kg	반송 혹은 폐기
10/06 (8/24)	미국	치즈소스	04069000001	방부제 Sorbic acid 1.1g/kg 검출	1.0g/kg이하	792kg	반송 혹은 폐기
1/23 (14/12/10)	캐나다	카놀라유	15149110005	산화방지제 0.26/kg 검출	0.20/kg이하	14,228kg	반송 혹은 폐기
8/18 (7/23)	캐나다	신선 앵두	08092900000	잔류농약 Metrafenone 0.02ppm 검출	미허용	1,170kg	반송 혹은 폐기
9/29 (5/13)	캐나다	카모마일티	21069099903	잔류농약 Pirimiphos-Methy I 0.18ppm 검출	0.05ppm	48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다. 일본

□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의 강화

○ 사건의 발단

- '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 군마, 치바현 생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해오고 있었음
- 체계적 검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미량이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일 경우 수입이 허용되었고, 수입업자의 자체 식품수입신고 규정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불성실한 신고로 대만 내 일본식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등 식품검

역의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음

- '15년 3월 상기 재난 지역에서 생산된 299 항목의 식품이 수입, 시중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며, 기관의 허술한 검역체계에 대해 반발이 일어남
- '15년 4월 수입변경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일본산 제품 중 콩류 3건의 항목(836kg)이 치바현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 전수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함. 제품에 표기된 제조상의 주소지는 도쿄였으나, 원산지 코드가 검색되지 않아 조사인원을 파견한 결과, 기 제조상 소유의 치바현 내 공장이 확인되어 반송 폐기 처리

○ 수입 규제 사항

- 5월 15일부터 일본식품 수입규제 강화 실시
- '15년 4월 15일 「일본 특정지역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수입 검사 신청 규정」, 「일본 수입식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수입검사 신청 규정」 제정 발표
- 기존 수입금지지역인 5개현에 대해 지속적인 수입금지 대상지역을 지정
- 원산지 증명 : 대만이 허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라벨링 상에는 “일본의 都, 道, 府, 縣 지역명 으로 상세하게 표기”
- 특정지역 / 특정상품에 대한 방사선검측증빙자료 필수 제출
  - 동경(도), 미야기(현), 이와테(현), 에히메(현) : 수산물 대상
  - 동경(도), 오사카(부),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 차류 대상
  - 동경(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 유제품, 영유아식품, 사탕, 과자, 곡류 조제품

방사능 물질	식품 종류	CODEX	대만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	
			기타	일본 식품
131I	일반식품	100	300	300
	유제품	-	55	55
	유아용 식품	100	55	55
134+137CS	일반식품	1000	370	100
	유제품	-	370	50
	유아용 식품	1000	370	50

○ 방사능 물질 검출 일본식품 종류별 건수

종류	누적 검역 건수 (2011/3/15~2015/1/27)	미량 검출 식품 건수	비율
수산식품	18,250	33	0.18
과일	6,421	6	0.09
야채	2,929	2	0.07
유제품	2,267	2	0.09
광천수	519	0	0
유아용 제품	6,591	1	0.02
해초류	1,754	0	0
쌀	150	0	0
가공식품 (차 종류 미포함)	22,226	25	0.11
차 종류	4,106	136	3.3
합계	65,213	205	0.31

□ 2015년 주요 검역 사례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3/31 (2/24)	신선 감자	07019000003	잔류농약 Difenconazole 0.26ppm 검출	0.01ppm	15,876kg	반송 혹은 폐기
5/27 (4/23)	신선 블루베리	08104010000	잔류농약 Fenhexamid 0.21 ppm 검출	미허용	1,836kg	반송 혹은 폐기
6/10 (5/5)	신선 양상추	07051100005	카드뮴 0.07ppm 검출	0.05ppm	7,621kg	반송 혹은 폐기
7/29 (6/23)	냉동육 (돼지고기)	02064990006	Ractopamine 1.9ppb 검출	미허용	6,096kg	반송 혹은 폐기
10/06 (8/24)	치즈소스	04069000001	방부제 Sorbic acid 1.1g/kg 검출	1.0g/kg이하	792kg	반송 혹은 폐기
1/23 (14/12/10)	카놀라유	15149110005	산화방지제 0.26/kg 검출	0.20/kg이하	14,228kg	반송 혹은 폐기
8/18 (7/23)	신선 앵두	08092900000	잔류농약 Metrafenone 0.02ppm 검출	미허용	1,170kg	반송 혹은 폐기
9/29 (5/13)	카모마일티	21069099903	잔류농약 Pirimiphos-Methyl 0.18ppm 검출	0.05ppm	48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라. 중국

### □ 중국산 수입식품 규정

#### ○ 주요 내용

- 중국산 수입 식품은 수입규정 MW0(수입금지)항목과 MP1(조건부 수입허용) 항목으로 나뉨
- 2015년 11월 대만 경제부는 양안무역협약에서 체결된 「양안 화물 통관 가속화 절차」에 따라 향후 양안 간 화물 통관 시 48시간 내 완료가 진행될 것으로 발표함. 다만 식품의 경우 중국산 식품에 대한 검역강화 필요성에 따라 상기 사항이 적용되거나, 수입검사 규제항목 완화 등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중국산 수입식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 및 상관상품의 수입검역방법」 규정에 의거해 샘플링검사 절차를 거쳐 검역을 통과합격한 식품에 대해서만 통관완료 진행될 예정임

#### ○ 2015년 주요 검역 사례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3/4 (1/31)	산약	07143010009	sulphur dioxide 잔여량 1.010 g/kg 검출	0.50 g/kg 이하	9,528kg	반송 혹은 폐기
3/4 (1/24)	구기자	12119091102	잔류농약 0.01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12,498kg	반송 혹은 폐기
3/31 (2/26)	신선 키위	08105000009	잔류농약 Difenconazole 0.04ppm, Procymidone 0.15ppm 검출	0.01ppm	55,756kg	반송 혹은 폐기
5/27 (4/20)	살구씨	08021210004	이산화황 잔여량 0.090 g/kg 검출	0.030 g/kg 이하	13,200	반송 혹은 폐기
6/10 (5/6)	버들벚집 버섯	07123990005	잔류농약 Chlorpyrifos 0.08ppm, Chlorfenapyr 0.02ppm 검출	0.01ppm	1,192kg	반송 혹은 폐기
6/10 (5/4)	보이차잎	09024010009	잔류농약 Indoxacarb 0.03ppm 검출	0.01ppm	6,920kg	반송 혹은 폐기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7/29 (6/29)	냉동 부추	07108090906	잔류농약 Dimethomorph 0.03ppm 검출	0.01ppm	10,920kg	반송 혹은 폐기
8/25 (7/24)	건조 대추	08134031002	잔류농약 Propargite 0.07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재 15조 위반	21,685kg	반송 혹은 폐기
10/6 (9/3)	고추	00960000001	잔류농약 Iprodione 0.34ppm, Flusilazole 0.04ppm 검출	0.01ppm	13,622kg	반송 혹은 폐기
11/17 (10/19)	고춧가루	09042200001	잔류농약 Fipronil 0.04ppm	0.02ppm	23,325kg	반송 혹은 폐기
12/1 (10/27)	밤	08024110009	잔류농약 Trichlorfon 0.08ppm	0.01ppm	25,000kg	반송 혹은 폐기
12/8 (11/9)	식초	22090000005	방부제 p-Hydroxybenzoic Acid 0.15 g/kg 검출	0.15 g/kg 이하	600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마. 기타 국가

- 위생복지부가 2015년 5월 12일자 발표한 수입변경조사 불합격 식품 명단에 따르면, 베트남산 홍차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태국산 아스파라거스 (629.5kg)에서 중국속 카드뮴이 0.3ppm으로 초과 검출됨. 또한 스리랑카산 유기농 흑임자(2,025kg)에서 잔류농약 Indoxacarb이 기준치 0.01ppm의 6배인 0.06ppm이 검출되었으며, 고급 식재료인 프랑스산 냉동 트리플(0.5kg) 역시 카드뮴 4ppm이 검출, 전수 반환 또는 폐기 처리됨

○ 2015년 주요 검역 사례

발표일 (검역일)	품명	국가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2/17 (1/12)	신선 아스파라 거스	태국	07092000206	잔류농약 Difenoconazole 0.08ppm, Propiconazole 0.02ppm	0.01ppm	1,769kg	반송 혹은 폐기
8/18 (7/20)	고수	태국	07099990908	잔류농약 Chlorpyrifos 3.83ppm, Cypermethrin 0.07ppm	0.01ppm	220kg	반송 혹은 폐기
9/1 (7/31)	신선 두리안	태국	08106000007	잔류농약 Metalaxyl 0.04ppm 검출	식품안전위생 관리법 제 15조 위반	17,760kg	반송 혹은 폐기
9/29 (9/3)	신선 코코넛	태국	98120000206	잔류농약 azoxystrobin 0.09ppm 검출	0.01ppm	21,525kg	반송 혹은 폐기
8/11 (7/15)	녹차	인도네시 아	09022000005	잔류농약 Fipronil 0.003ppm 검출	0.002ppm	5,776kg	반송 혹은 폐기
10/13 (9/11)	녹두	인도네시 아	07133110009	잔류농약 Fipronil 0.003 ppm 검출	0.001ppm	48,000kg	반송 혹은 폐기
12/8 (10/30)	샬롯	인도네시 아	0031020004	잔류농약 Chlorfenapyr 0.02ppm 검출	0.01ppm	27,000kg	반송 혹은 폐기
5/12 (4/4)	냉동 트러플	프랑스	07108090906	카드뮴 4ppm 검출	2ppm	0.5kg	반송 혹은 폐기
8/25 (7/24)	프로치니 파우더	프랑스	07123990005	잔류농약 Propoxur 0.45ppm, Permethrin 0.23ppm	0.05ppm	37.5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3. 최근 위생 검사 관련 이슈

○ 식용라드유(돼지기름)위생기준(食用豬脂衛生標準)

- 위생복지부는 部授食字第1041301568호를 발표, 전문 5조 규정에 따라 식용라드유 위생기준을 제정. 발표 즉시 실효됨
- 식용라드유 상품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의거, 제정됨
  - 제 1조 본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7조 규정에 의해 제정함
  - 제 2조 식용라드유의 원료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식

용가능한 건강하고 청결한 돼지의 부위를 사용해야함. 내장 장기, 뇌, 척수 및 굵은 혈관은 포함하지 않음

- 제 3조 식용라드유는 냄새와 색깔이 좋아야 하며, 이취 및 이미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됨
- 제 4조 식용라드유의 산가는 2.0mg KOH/g fat 이하여야 하며, 정제 절차(탈산, 탈색, 탈취 등)를 거친 정제 식용 돼지기름이어야 함. 그 산가는 1.3 mg KOH/g fat 이하여야 함. 위생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기타 상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제 5조 본 기준은 발표 후 즉시 실효

#### □ 아이스크림 및 빙수제품 대장균 검출

- 2015년 8월 대만 전국 시, 현 정부위생국에서 공동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제품 1,409건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함. 검사결과 위생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152건의 제품에 대해 휴업, 재검사 등의 조치를 취함.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24.4%가 생균수 및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식품약품관리서에 따르면 빙수의 일종인 「刨冰」의 불합격률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스무디 47.1%, 아이스크림 40%, 얼음 33.3%, 기타 얼음제품 27.3 순으로 나타남(2015년 8월 27일 nownews 보도)
- 식품약품관리서는 8월 진행되었던 위생검사에서 재검사를 판단을 받은 제품 중 26건의 제품이 또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적발된 鮮芋仙 업체에 NTD 3만원, OK편의점 NTD 4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함 (2015년 10월 13일 華視 보도)

#### 4. 한국·대만 간 검역관련 주요이슈

□ 한국산 배추 잔류농약허용치 초과로 인해 수입전수검사 시행

○ 주요 내용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10월 2일 “한국산 배추에 대한 전수검사” 공고함

관련 품목	한국 배추 전체( 수입분류코드 : 0704.90.10.00.8)
공고 내용	- 한국에서 수입된 배추(0704.90.10.00.8)은 최근 6개월간 잔류 농약허용치 초과 불합격 건이 총 11건 발견되는 등 동 불합격을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산 수입 배추에 한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식품업자는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한다 ; 상품 내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처리를 한다. 관리기관의 통보를 위반한 업체는 동법 제47조에 의거 처분한다
전수검사 실시 기한	2015. 10. 5 ~ 2016. 4. 4(수입일 기준)

○ 시사점 및 대처방향

- 대만은 수입 검역 시 농약잔류허용량 표준 규정량을 초과하였거나 미 규정된 농약이 검출 될 경우 전량 반송 및 폐기처리 되며, 2015.4.17.~10.17 (수입일 기준)까지 한국산 배추에 관한 강화 샘플링 수입 검사율(20~50% 샘플링 검사 확률)이 적용되고 있었음. 그 강화샘플링 기간 내 11건 이상이 밀집하게 적발 되어 대만 FDA는 10월 5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전수검사 시행 공고를 함
- 전수검사 기간 내 지속적인 농약문제 발생 시 한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중단도 될 가능성 높음
- 대만은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해 수요가 높은 시기이나 강화된 수입 검사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최근 수입 기피 또는 감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임. 대만 최근 농약잔류허용치 기준안 내의 상품만을 선별적 수출하는 등의 국가적 수출관리 요망

## □ 한국산 검역 불합격 원인 및 사례

- 2015년 7월 16일 식품약품관리서 발표에 따르면 6월 대만 녹도의 식당에서 식사 후 102명의 여행객이 단체로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산 굴을 수입한 가오슝의 「佳品水產有限公司」及「佳富水產有限公司」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품 전수 폐기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대만 유명 뷔페식당인 饗食天堂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 최종적으로 한국산 생굴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균이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되었으나, 7월 또 다시 한국산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남. 두 업체에서 수입한 한국산 굴의 양은 총 1만 6447.5kg 이며, 벌금은 NTD6만원에서 NTD2억 사이인 것으로 공개됨(2015년 7월 8일 발표)
- 배 화상병 발생, 한국산 과수 기주식물 수입 금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국(이하 방역국으로 칭함)은 2015년 5월 29일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의 17개 배 과수원을 검측한 결과 화상병이 발생하였다는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문에 따라 즉각 현행 규정 상 한국을 화상병 발생구역으로 변경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한 금지 조치 및 한국산 수입식물 및 그 상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발표함
  - 방역국에 의하면 화상병은 국제적으로 엄중히 다루는 과수 세균성 병해로 주로 사과, 배, 자두 등 식물의 꽃, 잎, 가지 등에 병해를 준다. 동 병원균은 최근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발생하였음. 대만은 현재까지는 비발생 구역이나 일단 배 등 과수에 발생할 경우 대만 배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방역국은 화상병 기주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배 접목 등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한국산 배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만약 한국산 배의 수입이 금지된다면 수입산 배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2015. 6. 2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국 공고란〉



# 제3장 라벨링제도

## 제1절 일반사항

### 1. 관리 및 법률체계

#### □ 관리체계

- 위생복지부의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건강식품, 유기농식품, 수입식품, 약물 등을 포함한 시중의 유통되는 식품 및 식품 용기, 식품기기, 세정제 등 국민 건강 및 위생 관련 부분을 관리함
- 수입 식품 검역은 식품약품관리서가 표준검역국에 업무 대행을 위탁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작업은 식품약품관리서 발표한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 및 「수입식품작업요점」에 근거함

#### □ 법적체계

-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檢驗作業要點)」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시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 「수입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 가공품 관리 방법(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品加工品管理辦法)」
-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
-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 함량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시판포장식품영양광고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2. 식품 라벨기준 개황

### 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개요

####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으로 명칭 변경

- 기존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의 명칭을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으로 법규 명칭을 변경(2014년 2월 5일 공포)
  - 2014년 12월 10일 전문 60조로 추가 조항 제정 및 수정 발표, 조항별 공포 후 6개월 후, 1년 후 실효
  - 2015년 2월 4일 總統華總一義字第10400012551호를 공포, 제 8조, 25 및 제 48조 조항이 수정됨

####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 범위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서 일컫는 <용기 및 포장 식품>이란 고정 밀봉된 원 상태로 장기간 보존 가능한 식품을 말하며, <고정 밀봉 포장>은 미 개봉된 포장 식품으로, 이미 개봉된 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별도 표기 관리함
- 식품의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출입 등의 위생관리 부분은 <식품안전관리법>을 기준으로 관리함. 해당범위는 아래와 같음
  - 일반식품 : 음식 및 씹는 음식 상품의 원료(신선 육류, 신선어류, 채소, 과일, 가공식품 포함)
  - 특수영양식품 : 영아 및 유아의 분유, 특정 질병의 처방 식품 및 기타 정부기관에서 허가한 특수한 영양 수요자의 처방 식품
  - 식품첨가물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향산화 혹은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 또는 접촉되는 물질
  - 식품 도구 : 식품제조 도구, 식품 용기, 식품 포장기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용기 및 포장 :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용 세정제 : 소독 및 세정제품, 식품기구, 식품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업자 :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식품기구, 식품용기의 포장, 세척제 제조, 가공, 수입, 수출 혹은 판매업자를 말함.
- 표기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척제, 식품기구, 식품용기 및 포장에 기재하는 품명 및 설명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의 설명서
- 영양표기 : 식품용기 혹은 포장에 기재하는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 및 영양소
- 검사 : 실사 및 검역.
- 유전자 조작 : 유전자 공학 및 분자생물기술을 사용한 것. 유전자 이식 혹은 이식 세포, 생물체의 유전자가 재배합 되는 현상발생. 하지만 전통적인 발육 방식 및 원생물체의 융합, 잡교, 체외수정, 체세포변이, 염색체 증가 기술 등은 포함하지 않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하기 해당 상황인 경우 제조,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명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함

- 변질 및 부패 식품
- 미숙성 또는 인체 건강 위해 식품
- 유독성 및 인체 건강 물질이 발견된 식품 (최근 10년간 발생된 광우병 또는 신종 플루 광우병이 발병된 지역의 쇠고기 및 성장촉진제(베타-아고니스트)가 검출된 육류 등을 포함)
- 전염병에 감염된 생물 혹은 유행성 바이러스에 증독된 것
- 잔류농약 및 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 방사선 오염 물질, 그 함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품
- 위조 식품

- 유효기한 초과 식품
- 인체 무해증명을 거치지 않은 식품

#### □ 수입허가인증

- 위생서가 지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식품기구 및 용기 등은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고, 그 허가증은 5년 기한으로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이전 연장신청이 가능함.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失效)되며, 그 갱신, 교환, 재발급 등은 모두 위생서가 관할함

#### □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명기)

- 식품 및 식품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 상 증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품명
- 내용물 명칭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그 함유량의 적고 많음에 따라 구분하여 내림차순으로 표기해야 함. 내용물의 주성분은 백분비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 상품, 주성분 항목, 표기 내용, 방식 및 각 상품의 실시일자는 중앙주관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 2종 이상의 혼합첨가물이 기능성에 의해 명명되어진 경우, 첨가물의 명칭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함
- 제조상 또는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국내 농산품생산인증을 통과한 경우 식품 이력추적이 가능한 자료를 표기해야 하며, 중앙농업주관기관 공고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기 내용을 표기해야 함
- 원산지(국)
- 유효일자

- 식품영양표기
- 유전자 개조된 식품 원료
-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
- 식품영양표기는 그 준수사항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중앙담당기관 공고에 따름

라벨링 표기 예외사항 별도 규정(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3조 명기)

- 용기 또는 외포장의 면적, 재질 또는 기타 특수 사항으로 인해 전항 규정대로 표기할 수 없는 식품은 주관담당기관이 일부 표기에 대하여 면제를 공고하거나, 기타방식으로 표기함

식품첨가물의 상세화 표기(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4조 명기)

- 식품첨가물 및 그 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 상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품명
-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첨가물원료」 글자 기입
- 식품첨가물 명칭: 2종 이상의 혼합물일 경우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함. 그 표기는 제 18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품명 또는 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의거한 통용 명칭에 따름
- 중량, 용량, 수량
- 제조업체 또는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유효기한
- 사용범위, 용량표준 및 사용제한
- 원산지(국)

- 유전자 개조 식품 첨가물의 원료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식품첨가물의 원료는 상기 조항 제 3, 7목 및 제 9목의 제한을 받지 않음. 상기 조항 제 3목 식품첨가물의 향료성분 및 제 9목의 표기 준수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따름
- 제 1항 제 5목의 국내 담당업체 명칭만을 표기하는 경우, 제조상, 위탁제조상 또는 수입상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관할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함. 주관기관은 기타 주관기관의 공동 조사에 대하여 개방함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관련 상세화 표기(제26조 명기)

- 중앙담당기관의 공고한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 재질 명칭 및 내열온도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관포장 관련 상세화 표기(제27조 명기)

-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 주요성분의 화학 명칭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 표기
- 중량, 용량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 사용대상 및 용도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 식품 표기와 광고성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에 대한 표기, 선전,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됨
- 식품은 의료 효능의 표기, 선전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위생서는 특수 영양식품의 광고범위, 방식 및 장소를 제한하는 공고를 할 수 있음. 권한 위임을 받아 기계 및 방송하는 전파업자는 광고 시작일로 부터 6개월 동안 광고 위탁자의 성명(법인 및 그룹명칭)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거주지 및 전화번호 등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됨
- 사용 금지 식품 표기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 또는 특정 생리적 현상 등의 선정성 표현

- 예)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 체내 질병과 관련된 성분을 감소 및 저하시킨다는 표현
  - 예) 간 해독, 간지방 저하, 혈당 농도 억제 등
- 질병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 예) 갱년기 장애 개선, 예) 신장 기능 보강(한약재 효능에 대한 표현)
- 출판물, 서적 인용 또는 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
- 허위 과장 및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표현
  - 생리기능에 대한 언급
    - 예) 세포 기능 강화 등
  - 한약재 효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장육부 등의 기관에 대한 표현
    - 예) 간 보호 등
  - 신체외관 변화에 대한 표현
    - 예) 가슴풍만 등
  - 본 위생서 관련 규정 번호만을 언급하고, 그 공문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인지하지 않은 경우
    - 예) 위생서자호 880012345등

#### □ 위법 제제 조치

-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범위, 제한 표준량을 초과한 경우는 폐기 및 몰수함. 단, 폐기 및 몰수 이전 소독 및 적당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함
- 중문 라벨링 규정 위반자는 기한 내 회수, 수정 통지하고, 수정 이전에는 판매 금지

## 나.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링 검사

- 수입식품검역은 위생서가 발표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세칙」, 「수입식품검사방법」,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 등에 따라 관리되며, 표준검사국 및 그 직할 분국에서 검역작업을 실시함
  
- 수입식품검역기록표의 <외관검사> 필수상품으로 등록된 물품 외에도 현장검사 필수물품은 검역검험 신청 및 실시 이후 수입 가능. 외관 검사 중 라벨링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관검사 해당 품목은 아래사항을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그 불량사실은 기록을 남기게 됨
  - 포장 및 표기 완전 여부, 청결 여부, 파손 여부
  - 상품 외부 누출 및 부패, 해충 및 이물질 감염 여부
  - 불쾌한 냄새 유출 여부
  - 기타 식품안전에 유해한 현상 여부
  
- 식품첨가물은 수입신고서 상 “물품명칭”란에 「식품용」 「식품첨가물」을 기입하여야 하며, “규격”란에는 「상품생산 LOT NO」 기입 의무화
  - 빠른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는 반드시 행정원 위생복지부의 공고에 따라 실시
  - 행정원 위생복지부 공고 署授食字제1021301656호 (2013년 6월 19일 공고)
  -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 수입식품 라벨링 검사 작업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및 시행세칙, 건강식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
    - 중문표기 미완성 또는 중문원본 표기내용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위반될 시 <표기불합격처리>를 함

## ○ 증문표기 면제품

- 벌크 형태 수입 : 최소단위 포장 중량이 3KG 이상,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수입 후 재포장, 포장 변경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타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표기 면제 동의 물품 :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동의서 복사본 제출

## ○ 수입식품의 유효기간 검사 주의사항 및 그 처리 방식

- 원 포장상에 직접 인쇄 방식 : 인쇄된 유효기간 글자의 탈색 및 불명확함이 없어야 하고, 스티커로 단독 부착해서는 안 됨
- 전체 증문 라벨이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된 물품 : 그 모든 표기 항목이 원포장 인쇄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유통일자는 단독 라벨로 부착해서는 안 됨
- 유통기한 표기 : 년/월/일로 표기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인 경우 년/월만 표기하여도 되나, 그 일자는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를 나타내야 함
- 검험검역 이후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은 검역허가증이 발행되지 않음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 남은 물품은 그 검사 증명의 유효기한도 상품의 유통기한 내로 제한함.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물품은 검사증명 발행 이후 즉시 행정원 위생서로 통지하여 그 물품의 유통과정을 지속 관리함
- 증문표기 부착 시 원문 표기내용이 가려져서는 안 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한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위반으로 간주함
- 수입물품인 경우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 상에 <대만 제조>등과 같은 내용 및 글자를 표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만 국내업체의 명칭, 주소, 전화 등이 표기되어야 함
- 포장 상에 표기 시 표기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 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cm<sup>2</sup>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 유효기한 이외 기타 항목은 2mm 이하로 해도 무방함

## ○ 증문표기라벨 부착면제 심사

- 일반적으로 분리 포장, 포장 변경 또는 기타 가공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식품 원료는 증문라벨 부착이 면제됨

- 분리 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상세 설명
  - 식품가공공장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 식당경영업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가 음식 조리 시 사용하는 경우
  - 수입업체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 기타 위생서의 특별 동의 물품
- 식품가공업체 해당 시 아래 열거된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을 함
  - 중문표기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기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具結書 : 제출된 자료 모두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보증서)
  - 상품의 원포장 및 제조업체 원포장 상의 표기와 관련된 자료
  - 포장 변경 및 분리물품의 최종 상품 외포장을 첨부해야 함
- 식당,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함
  - 중문표기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 원상품의 외포장
- 일반 수입업체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
  - 중문표기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 원상품의 외포장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공장 등기증 복사본, order sheet 또는 인보이스 복사본
- 수입식품의 최소단위 포장은 1KG 이하이고 그 포장을 밀폐 처리한 물품은 포

- 장변경 및 분리 포장 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중문표기 면제신청 상품은 수입 시 포장 상 원료명칭, 제조업체, 내용물, 유효 기한 등 제조관련 사항이 원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것을 검험·검역 작업 근거로 삼음
  - 표준 검역국 및 그 관할 분국이 수입식품 중문표기 면제를 동의한 경우, 그 동의서를 위생서로 통지함
  - 수입식품 중문 표기 면제 대상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그 동의서 일자 기록함)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만기 3개월 전 연장 신청을 함
  - 중문표기가 면제된 수입식품은 표준검역국 및 그 관할국 조사하여 실제 물품 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모든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 수입식품 중문 라벨링 불합격 기준

- 수입 식품 포장 상, 원문 및 중문 라벨링 未표기
- 유효 일자
  - 원문 및 중문 유효기간 未표기
  -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 초과
  - 표기된 기한이 인정할 수 없는 유통일자일 경우
  - 표기된 기한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글자 표기가 모호하여 내용 분별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未표기
- 표기된 수입업체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 10KG 이상 유제품 상 <식용>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거나, 수출국 위생기관 및 농업관련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치료 효능 등 과대 및 허위 표기인 경우
- <경고> 특정 경고표기 식품이나, 표기되지 않은 경우

## 다. 특별 품목

### □ 유기농 농산품

- 유기농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표기된 문자는 중문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및 통용부호는 보조용으로 표기
- 판매 시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 규정
  - 품명 (“유기농” 문자를 표기해야 함)
  - 원료 명칭(품명과 일치하면 생략해도 상관 없음)
  - 수입업자 명칭 및 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여 원산지(국)을 표기한 경우에는 표기 면제
  - 검증기관 명칭
  - 유기농 표기 동의서 일련번호
  - 기타법규로 정해진 표기사항 및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표기사항
- 원료에 관한 표기규정
  - 두 종류 이상 혼합된 원료를 가공할 시 그 명칭과 함량을 표기함. 단 10% 미만일 경우 표기하지 않아도 됨
  - 물과 소금이외 원료에는 “유기농” 문자 또는 기타 수식 부호를 사용해도 되고 유기농 원료 항목에도 추가표기 가능
- 원산지 표기 규정
  - 「수입화물 원산지인정표준」에 의거한 원산국 표기
  - 표기글자의 길이 및 폭이 6mm 이하는 안됨
  - 포장용기의 정면, 중간, 하단 부분에 명확하게 표기
- 검증기관 표기규정
  - 표기 글자 길이 및 폭은 6mm이하는 안됨
  - 포장용기의 정면 중간 하단 부분에 명확하게 표기

- 벌크 형태로 판매 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판매처에서 게시판 또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품명 및 원산지를 표기하고 유기농표기 동의서 사본을 전시해야 함(글자 길이 및 폭은 3cm 이상으로 표기)
- 품명 및 원료 표기 이외에는 현지어 또는 외국어로 된 “유기농” 문자 표기를 해서는 안 됨. 단 유기농 마크 사용제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수입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가공품 사용 마크는 아래 규정에 한함
  -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국가 및 국제인증조직의 유기농 마크
  - 검증기관의 마크

## □ 건강식품

- 건강식품은 건강에 무해함과 보건기능이 증명된 식품으로 그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효능에 대한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음. 단, 질병 치료 및 교정하는 의료적 효능을 말하는 것은 아님
- 「건강식품관리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은 건강식품임을 표기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됨
- 제조 및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그 성분, 규격, 작용, 효능, 제조과정 개요, 검사 규격 및 방법 등의 자료, 라벨 및 샘플을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에 수입허가인증 및 제조허가인증 발급을 신청함. 허가인증을 받은 후 제조 및 허가를 할 수 있음
- 건강식품 포장 및 용기 상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 품명
  - 내용물 명칭 및 그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의 명칭
  - 유통기한, 보존기간
  - 국내 업체명칭, 주소
  - 허가 비준된 효능

- 허가인증번호, <건강식품>글자 표기 및 표준마크표기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기타 필수적인 경고사항
  - 영양성분 및 함량
  - 기타 관련기관이 공고한 표기 사항
- 건강식품의 표기 및 광고는 허위사실 및 과장, 보건기능 허용 기준량 초과, 의 효기능을 표기해서는 안 됨
  - 중앙관련기관이 파견한 건강식품 검사 시 고의적으로 거절 시에는 제조, 가공, 시판 등이 잠정 중단됨
  - 허가증을 통해 수입 및 제조하였으나 중대한 위해함이 발견되었을 시 허가 인증 폐지 및 제조, 수입을 금지시키고 필요 시 식품 몰수 및 폐기됨

#### □ 주류 라벨링 검사

- 주류 브랜드 및 명칭은 크게 표기해야 하며, 기타 문자보다 반드시 더 커야 함
- 수입산 주류의 농도는 섭씨 20도에서 원 내용물 중에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함. 즉 100ml 음료 중 포함된 알코올 농도임. 즉 %, %vol 혹은 % by volume으로 표기함. 오차허용범위는  $\pm 0.5$ 도 이하임
- 중문 표기사항
  - 주류의 상품명 및 종류 표기
  - 성분 및 농도 표기
  - 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주류는 원산지 표기 및 원산지 증명 제출
- 유통기한은 년/월/일 표기, 단 3개월 이상일 경우 년/월로 쓰나 유통기한은 당 월 말일로 함
- 용량 단위 l, ml cl로 표기
- 경고 표기

- “음주 후 운전 안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
  - “과다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해가된다”
  - “미성년자는 음주 금지”
  - “화재 발생 시 분리하여 놓으시오”
  - “눈과 피부 호흡기관을 자극할 시 반드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반드시 마개를 덮으시오”
  - 기타 중앙기관이 지시한 경고를 표기해야 함
- 주류 생산 연도
  - 생산적 지리 표기

#### □ 진균류 식품의 라벨링 관리 원칙

- 사용범위: 진균류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영지버섯, 운지버섯, 동충하초 등)
- 진균류를 포함한 식품의 외포장 상 진균류 원료의 중문명칭 및 라틴학명을 표기해야 함. 비고란에 사용부위 및 배양방식을 표기
- 진균류 자실체를 사용한 원료를 함유한 식품의 품명은 통용명칭 또는 균족명칭에 따름. 예를 들면 영지, 운지와 같음
- 진균류 균사체를 사용한 원료를 함유, 진균류 자실체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품명 및 기타 표기 또는 광고는 00 균사체로 표기해야 함. 글자의 크기는 일치해야 하며, 외포장 상 진균류 자실체의 그림이 표시되어서는 안 됨
- 진균류 균사체와 자실체의 혼합을 함유한 상품은 통용명칭 또는 균족명칭을 품명으로 표기하며, 외포장 상 ‘본 상품은 00균사체와 자실체의 혼합임’ 또는 동의어가 명기되어야 함. 글자의 길이와 폭은 5mm이하여서는 안 됨

### 3. 식품 라벨 표준 내용

#### 가. 중문표기 및 통용부호 사용규정 설명

##### □ 용기나 포장에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기에 대한 세칙 규정

- 포장 상 표기 시, 표기 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 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cm<sup>2</sup>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칭, 유효기한 이외 기타항목은 2mm 이하로 해도 무방함
- 국내 제조업자가 외국어 표기도 함께 할 경우 중문을 주(主)로하고 외국어는 부(輔)로 함. 단, 해외 판매용은 제한 없음
- 수입품은 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어 표기를 해야만 수입 할 수 있고, 포장 변경, 분리포장,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판 전에 반드시 최종 식품 포장 상 중문 표기를 해야 함
- 큰 포장 안에 작은 포장에 있는 식품은 즉 개별 포장으로 소매 할 수 있는 것은 식품 위생 관리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기 하여야 함
- 포장 식품 표기의 관리에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미 규정된 식품은 상품 표기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적용시켜야 함
- 수입업체, 제조일자 등 자료가 불분명하며 세관을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식품은 업체가 명확한 제조업자 및 제조일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 진열 판매를 할 수 없음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의 [중문 및 통용부호]를 표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중문 번체자로 해야 하며, 간체자 표기는 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고 고유의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 할 수 없음. 이는 소비자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식품 가공용의 신선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마대나 편직마대(비닐 실로 짠 부

대)의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중문표기 및 유효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원문 표기항목에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등을 표기해야 함. 이는 통관할 때 화물검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는 확실한 수입품이라는 것만 표기되어지면 원문표기는 그대로 통과 할 수 있음

- 대형 포장식품은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표기는 원문 표기를 해야 함
- 대형포장 원료가 제 22조 항목의 중문표기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사후 관리를 위해 수입업체는 가공업자에게 관련 특정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함. 이 서류들은 검사기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통관 시에 분쟁을 피할 수가 있음
- 신선한 야채류는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통, 윗면을 랩을 씌우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 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포장 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슈퍼마켓 업자가 판매하는 팩이나 랩으로 간편 포장을 하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임시포장은 그 목적이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장 주인이 현장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판매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따라 완전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샷브샷브용 식품표기 관리 : 대형 매장업체에서 스티로폼 통이나 랩으로 싸서 파는 샷브샷브용 재료는 그 목적이 소비자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씩 따로 포장해 놓은 것으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은 아님. 소비자가 직접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다는 행위는 소비자가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이 아님
- 수입 냉동피자를 냉장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 후 저장, 운송, 보관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품질 보증과 유통기한이 재설정되어야 판매가 가능함(해동,

냉장, 유효기한 설정, 포장, 중문표기 등 가공 및 품질보증 절차를 포함)

- 즉석식품류는 냉장과 냉동의 성질을 고려해,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표기의 무화 ; 비즉석식품류(신선농축수산물제외)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 표기 의무화,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은 1cm이상 ;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는 5cm이상,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또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의 글자체와 글자색이 상품의 외관 포장색과 선명하게 다르며, 쉽게 눈에 띄어야함
- 지금까지의 식품위생관련 법령은 제품의 보험책임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만약 업체가 이 항목을 소비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자 하여도 부당하지는 않음. 하지만 허위 및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
- 제품의 속성이 확실히 식품이라면 증정품일 경우에도 그 표기 내용은 식품위생관련법령의 규범에 따라야 함
- 위생서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허가증은 국내 기업의 수출 식품이 국외에서 통관시 사용하는데 협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제품의 표기심사 진행 시 사용해서는 안됨. 업체는 여전히 식품안전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함
- 판매방식이 만약 소비자가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단 후 봉합하는 포장방식이라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식품이 아님. 표기는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 시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품명, 맛, 가격, 유통기한 등 표기)를 제공하여 제품 용기 포장 및 판매의 위생 안전이 식품위생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여전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됨

## 나. 내용물 표기

### □ 내용물 표기 세칙 규정

- 중량, 내용량의 표기는 공식 규정된 표기 단위를 사용함
- 액체와 고형물질의 혼합 식품은 내용량과 고형량(고체의 중량)을 구분하여 표기함
- 내용물 함량은 식품의 성질이라고 보고 함량의 최고, 최저임을 표기함
- 내용물이 2종 이상일 때 함량의 다소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표기해야 함
- 「식품원료사용가능일람표(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를 참고로 원료명칭표기, 중문 명칭 표기, 식품사용 가능원료 확인 후 내용물 표기를 해야 함
- 캔 식품은 캔 겉면에 표기한 내용량 및 고형량의 오차범위는 중국국가 표준 CNS974 식품 캔 검사법(캔 포장)의 규정에 의함
- 식품 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2항은 중량, 용량 혹은 수량의 표기에 관한 규정은 제품의 각 포장물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말하는 것임. 제품에 들어간 원료별 성분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말하는 것은 아님
- DHA는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이 아닌 어류 원료의 일종 성분임. 따라서 직접 DHA를 표기해서는 안 됨
- 최근 원료 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원료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함량을 표기 하여야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다면 표기해서는 안 됨
- 보통 고체 상태의 제품은 중량을 표기하고 액체 상태의 제품은 용량을 표기하고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은 수량으로 표기 함
- 노니 주스(열대과일의 일종) 성분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하나 여전히 중국국가표준 CNS2377의 규정에 따라 그 원료 함량을 표기해야 함

## 다. 식품첨가물

### □ 식품 첨가물 표기 세칙 규정

- 식품 첨가물의 정의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향산화 혹은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 또는 접촉되는 물질
- 식품 첨가물의 종류 : 방부제,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착색제, 살균제, 영양첨가제, 향료, 조미제, 점조제, 결착제, 용화제, 식품공업화학약품, 향산화제, 보색제, 팽창제, 표백제, 유화제 등
- 식품 첨가물의 표기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식품 첨가물 명칭은 본법 제 12조에서 공포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그 규격 및 사용범위의 제한표준은 중앙기관이 정한 것으로 함
  - 조미제(인공감미료, 맛 술, 카페인 포함되지 않음), 유화제, 팽창제, 효소, 두부용 응고제, 광택제에 속한 것은 용도에 따라 명칭을 표기한 것이고, 향료는 향료로 천연 향료는 천연 향료로 표기 함
  - 방부제, 향산화제, 인공감미료에 속한 것은 동시에 용도 명칭과 품명 혹은 통용 명칭을 표기해야 함
- 식품성분에 [식용색소E133] 표기한 것은 검사결과 그 명칭이 법적으로 수록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식품 중 식품 첨가물을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료에 첨가하나, 제품이 완성 될 때까지 그 잔류 함량이 극히 적고 최종 식품에 큰 작용이 없기 때문에 표기할 필요 없음
- 식품 첨가물 명칭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2조에서 공고한 식품첨가물 품명 및 통용 명칭에 따라 사용해야 함. 방부제, 향산화제, 인공 감미료 등에 속한 것은 동시에 그 용도 명칭 및 품명 또는 통용 명칭을 표기해야 함. 상품에 [안식향산(방부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안식향산이 [벤조인]의 통용 명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라. 유효일자

### □ 유효일자 표기 세칙 규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1항 , 제 7항에서 정한 일자의 표기는 용기나 포장지 위에 인쇄 하여야 하며, 습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년, 월, 일을 정확 하게 표기해야 함. 단,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년, 월만 표기해도 되나, 그 일자는 당월 말일로 추정함
- 유통일자의 정정은 업체에서 그 제품에 대한 포장과 보관 상황 등에 따라 자체 결정해야 함. 이 기한 내에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기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 기한 내에 모두 일에 책임져야 함
- 유통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어긋나지 않음
- 생우유, 탈지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 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반드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표기해야 함
- 식품의 제조일자를 기원 년 월 일 (양력)로 표기 할 때는 앞의 두 자리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수입업체는 연도 국력(민국표기) 양력 인지 구분 표기해야 오해의 여지가 없음 예) 西元 年, 月, 日
- 냉동, 냉장제품의 제조일자는 식품의 정상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식품의 제조일자나 보관기한을 [03.12.1991]이라고 표기했을 때 [월. 일]의 순서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월. 일. 년] 또는 [일. 월. 년]을 추가 표기해야 함
- 식품에 [7℃ 이하에서 냉장 30일, -18℃에서 냉동 90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유통기한 단일 방식으로 통합 표기해야 하므로, 제조일자는 유통일자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두 가지 유통일자를 표기하면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냉장·냉동 판매품을 분리 포장하여 별도 유통일자를 관리하도록 함
- 업체가 수입한 제품이 유통일자를 초과하여도 회수되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제조일자나 유통일자가 수정되어 시장에 유입 되었을 경우, 업체나 유입 시킨 자 모두 식품 위생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아야 함

- 식품의 보존 기한은 원료, 가공과정, 살균방법, 포장재질 및 보관조건 등 요소의 영향을 받음. 제조업자는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에 대해 보관 실험을 거쳐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제정해야 함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중문 표기를 직접 原 포장 위에 인쇄할 경우 [유통기한]을 퇴색하지 않는 유성잉크로 날인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유통기한만 별도로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은 안 됨. 만약 중문라벨을 스티커방식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지면에 인쇄하여 표기해야 함
- [유통일자]가 법적 정식표기이므로 [유통기한]을 [유통일자]로 수정 표기해야 함
- 유통일자를 [02MAR02]로 표기한 것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수입식품 유통기한 표기가 원 포장에[DOMAUG2001] 및 [DOEAUG 2004]라고 찍혀 있으면 외국어 날자 밑에 [DOM=제조일자 DOE=유효기간 AUG=8월]이라고 영문해석의 라벨을 붙여야 함. 붙일 때는 쉽게 떨어지는 재질의 것으로 붙이면 안 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따라 용기나 포장이 된 식품에는 반드시 [유효일자]가 표기 되어야 함. [유효일자]와 [보존기한]은 다른 것임
  - [유효기간]은 시간이 표기되어야 함. 예를 들면[유통기한 년 월 일]이 명기 되어야 함
  - [보존기한]은 시간의 범위임. 예를 들면 [보존기한 2년] 이라고 해야 함
- 생우유, 탈지우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우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유효일자] 외에 [보관조건]도 명시해야 함. 유효일자 없이 제조일자와 보존기한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 되며, 제조일자와 유효일자, 보존기한과 유효일자를 동시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됨
- 식품에 동시에 다른 보존 조건과 보존 기한을 표기해서는 안 함
  - 예) [상온에서 30일, 냉장보관 시에 180일, 영하 18도℃에서 365일]같은 경우는 다중 표기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유효기간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제품을

상온에서 냉장 보관 하다가 기한이 지나서도 냉동보관 하여 판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마. 식품영양표기

### □ 포장식품 영양표기공언 준수사항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수정에 의거해,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3일 「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규정을 제정함
- 식품영양표기 방식 : 포장식품의 ‘영양공언’은 포장용기 외면, 눈에 띄는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 함
  - 표기항목
    - 제목 : [영양표기]
    - 영양 필수 표기 항목 :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탄수화물(식이섬유포함), 나트륨 함량
    - 기타 선언된 영양소 함량
      - 예) 고칼슘, 콜레스테롤 zero, 저나트륨, 저당 등 표기
    -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 열량, 영양소 함량의 표기기준 : 고체(반고체)는 100Kg 및 Kg을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기, 액체(음료)는 100ml를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기
  - 열량 영양소 및 트랜스 지방 함량표기 단위 : 식품 중에 함유하고 있는 열량에 대하여는 칼로리(kcal)로 표기하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및 트랜스 지방은 Kg, 나트륨은 mg으로 표기하고 기타 영양소는 kg, mg으로나 마이크로그램으로 표기해야 함
  - 1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 : 각 영양소의 1일 필요 영양소 섭취량의 백분율로 증가하여 표기해야 함. 다음과 같은 항목의 수치를 표기하여 매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로 함

### ■ 1일 필요 섭취량 기준치 ■

열량	2000kcal	나트륨	2400mg	비타민 A	600g
단백질	60g	포화지방산	18g	비타민 B1	1,4mg
지방	55g	콜레스테롤	300mg	비타민 B2	1,6mg
탄수화물	320g	섬유질	20g	비타민 C	60mg
칼슘	800mg	철분	15mg	비타민 E	12mg
포화지방산	18g				

자료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 수치 수정방식 : 영양소는 유효 숫자가 세 자리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매 분량,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나트륨은 정수로 표기하거나 소수점 아래 첫 자리 수까지만 표기 함

#### □ 식품영양 표기 세부 규정

- 소위 <영양선언>은 설명, 은유, 암시의 방식으로 식품의 특정 영양성질(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A, 고 칼슘, 저 나트륨, 무 콜레스테롤, 고 섬유 선식 등)을 표현하는 것이며, 식품 원료성분에 대하여(예를 들면 이 식품 성분이 맥아젤리, 옥수수유, 레시틴, 탄산칼륨, 비타민A 종려산, 비타민 B2, 비타민 D3등) 서술하는 것은 영양 과대광고에 속하지 않음
- <영양선언> 高/低/多/少 등의 표현에 대한 기준 : 적당섭취량필요(需適當攝取), 보충가능섭취량(可補充攝取) 2가지 부류로 나뉨
- 적당섭취량필요(需適當攝取)
  -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등은 적당량을 섭취해야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류임
  - “0” 영양표기 조건,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0”, “없음”, “미포함” 영양표기 가능

열 량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4kcal 미만인 경우
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미만인 경우
나트륨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콜레스테롤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포화지방산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1g 미만인 경우
트랜스 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3g 미만인 경우(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의 합계가 1.5g이하, 포화지방 및 트랜스 지방의 합계 열량이 식품 총 열량의 10% 이하)
당 성분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 미만인 경우
유당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 미만인 경우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低>, <少>, <微>, <略함 ; 약간포함> 영양표기 가능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열 량	40kcal	20Kcal
지 방	3g	1.5g
나트륨	120mg	120mg
콜레스테롤	20mg	10mg
포화지방산	1.5g(1.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0.75g(0.7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당 성분	5g	2.5g
유당(유제품에 한하여 선언 가능)	2g	2g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 저 나트륨 식품의 공언은 나트륨 함량이 기준함량을 초과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영양표기 시 포타슘 함량을 표기하여야 함
- 보충가능섭취량(可補充攝取)
  - 섬유질,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철분 등의 성분은 섭취량 부족 시 인체에 해를 끼침
  -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高>, <多>, <強化>, <富함 ; 풍부>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음



1) 일반

구 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cal당
섬유질	6g	3g	3g
비타민A	180mg	90mg	60mg
비타민B	0.42mg	0.21mg	0.14mg
비타민B2	0.48mg	0.24mg	0.16mg
비타민C	18mg	9mg	6mg
비타민E	3.6mg	1.8mg	1.2mg
칼슘	240mg	120mg	80mg
철분	4.5mg	2.25mg	1.5mg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2) 1~3세

구 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cal당
섬유질	6g	3g	3g
비타민A	120mg	60mg	40mg
비타민B	0.18mg	0.09mg	0.06mg
비타민B2	0.21mg	0.11mg	0.07mg
비타민C	12mg	6mg	4mg
비타민E	1.5mg	0.75mg	0.5mg
칼슘	150mg	75mg	50mg
철분	3mg	1.5mg	1mg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3) 임산부

구 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cal당
섬유질	6g	3g	3g
비타민A	180mg	90mg	60mg
비타민B	0.33mg	0.17mg	0.11mg
비타민B2	0.36mg	0.18mg	0.12mg
비타민C	33mg	16.5mg	11mg
비타민E	4.2mg	2.1mg	1.4mg
칼슘	300mg	150mg	100mg
철분	13.5mg	6.75mg	4.5mg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來源 : 근원〉, 〈供給〉, 〈含有〉, 표기 가능함

1) 일반

구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al당
섬유질	3g	1.5g	1.5g
비타민A	90mg	45mg	30mg
비타민B	0.21mg	0.11mg	0.07mg
비타민B2	0.24mg	0.12mg	0.08mg
비타민C	9mg	4.5mg	3mg
비타민E	1.8mg	0.9mg	0.6mg
칼슘	120mg	60mg	40mg
철분	2.25mg	1.13mg	0.75mg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2) 1~3세

구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al당
섬유질	3g	1.5g	1.5g
비타민A	60mg	30mg	20mg
비타민B	0.09mg	0.05mg	0.03mg
비타민B2	0.11mg	0.05mg	0.04mg
비타민C	6mg	3mg	2mg
비타민E	0.75mg	0.38mg	0.25mg
칼슘	75mg	37.5mg	25mg
철분	1.5mg	0.75mg	0.5mg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3) 임산부

구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al당
섬유질	3g	1.5g	1.5g
비타민A	90mg	45mg	30mg
비타민B	0.17mg	0.08mg	0.06mg
비타민B2	0.18mg	0.09mg	0.06mg
비타민C	16.5mg	8.25mg	5.5mg
비타민E	2.1mg	1.05mg	0.7mg
칼슘	150mg	75mg	50mg
철분	6.75mg	3.38mg	2.25mg

자료 : 포장식품영양표기공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 요오드 염, 요오드염 함유 또는 요오드염 첨가 등의 동의어의 염품의 선언은 요오드 함량이 기준치 또는 백만분의 이십을 초과해야 하며 「식품첨가물사용범위 및 사용량과 규격기준」에 부합해야 함. 비고란에 ‘본 상품은 필수영양소인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으나, 고요오드성 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 및 131방사선 치료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표기해야 함
- 캡슐, 알약 형태에 속하며, 1일 식용 가능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매일 최저 섭취량에 달하거나,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高、多、強化、富含」로 표기

## 바. 중앙관할기관이 지시한 표기사항

### □ 식품 및 4개월 이상 영아용 분유 표기 사항

#### ○ 영아 조제식품 용기 상 표기사항

- 특수영양식품의 「嬰兒配方食品」 영아조제식품 표기 필수
- 100kcal당 철분함량은 1mg 이상인 제품은 <철분첨가 영아조제식품>류의 표기를 함
- 100kcal 당 포함된 철분 함량이 1mg 이하인 제품은 <3개월 이상 영아 섭취 시 철분 보충>류의 표기를 함
- 내용물의 주요 원료는 그 중량의 과분 순서(중량의 크기순서)에 따라 배열함. 비타민과 광물질은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이란 표기를 할 수 있음. 업자는 또한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상세 나열해도 됨
- 중량, 용량 혹은 열량단위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지방, 탄수화물, 수분 및 열량 등 각종 함량 영아조제식품 및 4세 이상 영아식용 완전조제식품 검험수치와 오차 범위를 표기해야 함

항 목		오차허용범위	비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회분, 수분, 열량		+/-20%	영아조제식품 및 성장 영아조제식품검험 수치는 중국국가표준 CNS을 기준으로 함
비타민	비타민 A, D, E, K	80~180%	
	비타민 B1 B2 B6	80~250%	
	비타민C 비타민B12 엽산	80~300%	
각종 광물질		80~150% 80~200%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특수 영양이 필요한 영아식품에는 적용대상 및 상품특성을 표기해야 함
  - 상품의 개봉 전후에 대한 보존 방법을 표기해야 함
  - 액체 상품은 “개봉 전 병을 흔들어 용액이 균등하게 혼합되면 식음하시오”의 표기를 함
  - “조제방식이 적절치 못하면 영아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내용 표기
  - “6개월 이상 영아는 본 상품 섭취 시 보조식품을 첨가하여 섭취한다”는 내용 표기
  - 모유 수유의 우수점을 표기해야 하나, 〈人乳化〉〈母乳化〉 등의 모유와 동등하거나 우월함을 표기해서는 안 됨
  - 용기 및 라벨에는 영아사진 또는 영아 조제식품 섭취가 이상화된 사진을 부착해서는 안 됨
  - “사용자는 의료전문인 영양사의 의견에 따라 영아조제분유 식용 필요성 및 식용방법 여부를 결정한다”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함
  - 몇 통의 영아 조제분유를 담은 상자 외관에도 각 항의 표기를 해야 함
- 조제분유 설명서 상 표기해야 할 사항
- 영양 함량 순서 중 5대 영양소는 100g/ 100kcal당 함량을 표기
  - 1스푼 당 중량을 표기
  - “조제 시 물, 젖병, 젖병 꼭지는 반드시 소독해야 함”의 표기를 해야 함
  - 섭취표 내 영아 체중을 추가 기입해야 함
  - 분말 조제분유일 경우에는 희석 시 필요한 물과 분유량을 표기해야 함
  - 농축상품은 〈음용 전 물 추가〉의 표기를 해야 함

## □ 식품영양표기 포장 준수 사항(신규 제정)

- 공고 ‘식품영양표기 포장 준수 사항(市售包裝食品標示遵行事項)’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제조일 기준)-삭제
- 공고 일자 : 2014년 4월 15일
- 상세 규정 내용
  1. 본 규정은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제 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2. 본 규정의 용어 정의
    - 포화지방산 : 식품 중 비 트랜스 지방의 총합<sup>W</sup>
    - 탄수화합물 : 즉 당류, 탄수화합물의 총칭
    - 당 : 단당과 쌍당의 총칭
    - 식이섬유 : 인체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고분자 탄수화물
    - 권장열량 : 설명, 은유 또는 암시의 방식으로 식품의 특정 열량 또는 영양소 성질을 표기함
  3. 포장식품 영양표기는 반드시 포장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양표기양식1>에 따라 아래 표기 내용을 기입 함
    - 영양표기의 표제
    - 열량
    - 단백질 함량
    -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
    - 탄수화물, 당 함량
    - 나트륨
    - 기타 영양소 함량
    - 업자가 원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 표기항목에 식이 섬유를 표기하고자 한다면 탄수화합물항목의 당성분 뒤에 표기하고, 콜레스테롤은 지방항목의 불포화지방 뒤에 표기함. 식품의 열량 및 영양소 함량 표기는 다음의 규정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4. 포장식품의 열량 및 영양소 함량 표기는 제 2항을 제외하고는 아래 규정 중 1개를 선택하여 표기한다.
  - 매 분량 및 매 100g(또는 ml)의 표기해야 하며, 동 상품의 매 포장 당 분량 수를 추가 기입해야 함
  - 매 분량 및 1일 참고치 백분율을 표기해야 하며, 상품 매 포장 당 분량 수를 추가 기입해야 함. 확정된 1일 섭취 참고치 영양소는 각 항 영양소의 1일 섭취 참고치를 별도 표기해야 함 ; 미확정 1일 섭취 참고치 영양소는 1일 참고치 백분율에 「\*」 부호를 별도 표기하고, 「\* 참고치 미확정」 글자를 기입함
 - 만 1세 미만 유아용 식품은 <영양표기 1> 양식대로 표기해야 함 ; 알약, 캡슐(사탕종류 제외)형태의 제품은 <영양표기 2> 반드시 양식대로 표기해야 함
5. 포장식품 각 제품의 매 분량 당 중량(용량)은 국민 식습관 및 시판 포장식품 형태의 일반 매회 섭취량에 따른다. 캡슐 및 알약(사탕 종류 제외)는 권장 섭취량(반드시 정수)에 따라야 함
6. 식품 영양소 표기 단위는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고체(반고체)는 g으로 표기. 액체는 ml로 표기.
  - 열량은 kcal로 표기
  - 단백질, 지방, 지방산, 탄수화물, 당분, 식이섬유는 g으로 표기
  - 아미노산은 mg으로 표기
  - 비타민, 광물질은 아래 <1일 영양소 및 각 항 영양소 섭취 참고표>의 규정을 따름
  - 기타 영양소는 통용되는 단위로 표기
 - 복수(復水-기체에서 액체로 변환)가 필요한 식품은 복수 과정 후의 영양소 표기를 해야 함 ; 만약 규정이 따로 있다면 복수 전후 영양소 표기를 모두 기입해야하며, 그 복수 방법은 영양표기 양식의 하단부분에 기입해야 함
7. 식품의 1일 권장 열량 및 각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은 <1일 영양 및 각 항 영양소 섭취 참고표>를 참고함
8. 포장 식품 영양표기의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당분함량이 아래 <열량 및 영양소 “0”표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0으로 표기
9. 식품 영양소 표기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매 포장별 분량, 1일 참고치 백분비, 나트륨의 함량은 정수로 표기 함
  - 매 포장별 분량, 열량,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분, 식이섬유는 정수 혹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함
  - 열량, 단백질, 지방, 지방산, 탄수화물, 당분 함량이 제품의 용량이 적어 소수점 한자리로 표기할 수 없으며 또 0의 표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
  - 비타민, 광물질은 3자리 숫자를 벗어나면 안 됨
  - 본 수정규정은 중화민국 국가표준 CNS2925의 극한값의 유효 숫자 표기법 규정에 따름
10. 식품영양소의 산정 방식은 반드시 검사 기관의 분석 혹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오차 범위는 아래 <영양표기 오차허용범위>에 규정되어 있음. 식품의 특정 영양소가 시간 혹은 특성에 따라 변화할 경우 영양소 표기상에 표기를 해야 함
11. 열량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산정 함
- 단백질의 열량은 매g마다 4kcal로 계산 함
  - 지방의 열량은 매g마다 9kcal로 계산
  - 탄수화물의 열량은 매g마다 4kcal로 계산. 그러나 식이섬유를 첨가 한 제품에는 매g마다 2kcal로 계산 함
  - 엘리트티톨(Erythritol)의 열량은 0kcal로 계산, 기타 솔비톨(sorbitol)의 열량은 매g마다 2.4kcal로 계산함
- 유기산은 매 g마다 3kcal로 계산 ; 알콜은 매 g당 7kcal로 계산. 유기산 및 알콜의 영양소 표기 방법은 아래 영양 표기 양식과 같음
12. 시판 영유아식품 및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조제식품은 <시판 영유아 및 특정 질병을 위한 조제식품 관리 준수 사항>의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함
13. 비타민, 광물질의 알약, 캡슐 포장 식품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4. 포장식품은 본 규정 시행 전 제조한 것에 대해 (제조일자기준)는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2015년 7월 1일 이후 영양표기방법 양식은 기존 5종에서 아래 2종으로 변경됨

Ⅱ 영양 표기 양식 Ⅱ

〈영양 표기 방법 양식 1〉

영 양 표 기		
매 1인분량	0g(또는ml)	
본 포장	0인분 포장	
	매분량	매 100g 당 (매 100ml 당)
열량	Kcal	Kcal
단백질	g	g
지방	g	g
포화지방	g	g
불포화지방	g	g
탄수화물	g	g
당	g	g
나트륨	mg	mg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또는 ug	% 혹은 *
기타 영양소 함량	g, mg 또는 ug	% 혹은 *

〈영양 표기 방법 양식 2〉

영 양 표 기		
매 1인분량	0g(또는ml)	
본 포장	0인분 포장	
	매분량	일일섭취량 비율
열량	Kcal	%
단백질	g	%
지방	g	%
포화지방	g	%
불포화지방	g	*
탄수화물	g	%
당	g	*
나트륨	mg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또는 ug	% 혹은 *
기타 영양소 함량	g, mg 또는 ug	% 혹은 *

\* 비고 : 표면적이 100평방미터 이내의 포장 식품에 한하여 적용

\* 영양표기단위

- 매 1인분 0g(또는 ml), 본 포장 0인분 포함
- 매 분량( 매 100g 또는 매 100ml 당) : 열량 0 kcal(0kcal), 단백질 0g(0g), 지방 0g(0g), 포화지방 0g(0g), 불포화지방 0g(0g), 탄수화물 0g(0g), 당 0g(0g), 나트륨 0ml(0ml), 권장영양소(0g, mg 또는 ug), 기타 영양소 함량 (0g, mg 또는 ug)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市售包裝食品標示遵行事項)

\* 포장식품영양표기 양식 2 참고 수치 미확정

- 1일 권장량 기준 : 열량 2000Kcal, 단백질 60g, 지방 60g, 포화지방 18g, 탄수화물 300g, 나트륨 2000mg, 권장 영양소 기준치, 기타 영양소 1일 기준량

### Ⅰ 1일 영양소 및 각 항 영양소 섭취 참고 표 Ⅰ

항목	4세 이상	1~3세 이상	임산부 및 수유부
열량	2000 Kcal	1200 Kcal	2200 Kcal
단백질	60g	20g	65g
지방	60g	*	65g
탄수화물	300g	*	330g
나트륨	2000mg	1200mg	2000mg
포화지방	18g	*	18g
콜레스테롤	300mg	*	300mg
식이섬유	25g	15g	30g
비타민 A	700ug RE	400ug RE	600ug RE
비타민 B1	1.4mg	0.6mg	1.1mg
비타민 B2	1.6mg	0.7mg	1.2mg
비타민 B6	1.6mg	0.5mg	1.9mg
비타민 B12	2.4ug	0.9ug	2.6ug
비타민 C	100mg	40mg	110mg
비타민 D	10ug	5ug	10ug
비타민 E	13mg	5mg	
비타민 K	120ug	30ug	
니코틴산	18mg NE	9mg NE	
엽산	400ug	170ug	
판토텐산	5mg	2mg	
비오틴	30ug	9ug	
콜린	500mg	180mg	
칼슘	1200mg	500mg	
인	1000mg	400mg	
철	15mg	10mg	
요오드	140ug	65ug	
마그네슘	390mg	80mg	
아연	15mg	5mg	
불소	3mg	0.7mg	
셀렌	55ug	20ug	

### Ⅰ 영양표기 오차 허용 범위 Ⅰ

항 목	오차 허용 범위
단백질, 탄수화물	표기치의 80~120%
열량,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 표기치의 120%
아미노산, 비타민(A, D 불포함), 광물질(나트륨 불 포함), 식이섬유, 기타 자원 표기 영양소	≥ 표기치의 80%
비타민 A, D	표기치의 80~180%

### Ⅱ 열량 및 영양소 “0” 영양표기 조건 Ⅱ

열량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4kcal 미만인 경우
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미만인 경우
나트륨	
콜레스테롤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1g 미만인 경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1.0g 미만 또는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3g 미만인 경우
당 성분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 미만인 경우

#### ○ 영양표시 면제 대상 식품 포장 규정

- 2014년 6월 10일 部授食字第1031301291號令 공고

1.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하 본법) 제 23조 규정에 의함

2. 다음의 식품은 영양표시 면제 대상으로 정함

- 식용수, 광천수, 얼음
- 기타 성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신선, 냉장, 냉동의 과일, 야채, 가축, 계란, 수산물
- 기타 원료 및 식품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티백, 커피, 식물 등
-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미 향료, 조리백.
- 조미 향신료
- 소금 및 소금대체품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식품 원료

3. 상기 전술한 식품에 대한 영양표기를 하고자 할 경우 본 법 2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함

## 4. 라벨링 규정 변동사항

### □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 신규 제정

#### ○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 신규 제정

-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

#### ○ 공고 사항

- 시판되는 용기 또는 포장 제품은 아래 열거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했을 경우 그 용기 및 외 포장 상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포함에 대한 경고 표기를 해야 함

1. 새우 및 그 제품 : 각 종 새우류 및 새우류에서 추출된 키토산(chitosan), 글루코사민(glucosamine) 등 성분, 새우 전병, 새우 소스, 새우 완자 등 그 제품
  2. 게 및 그 제품 : 각 종 게류 및 게류에서 추출한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 성분, 게맛살, 게 완자 등 그 제품
  3. 망고 및 그 제품 : 망고건조식품, 망고잼,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젤리, 망고케익 등
  4. 땅콩 및 그 제품 : 땅콩기름, 땅콩 캔디, 땅콩분말, 땅콩잼, 땅콩소스, 땅콩전병, 땅콩즙 소스류 등
  5. 우유 및 그 제품 : 우유에서 추출한 유당, 카세인, 유청단백질(whey protein), 락토페린(lactoferrin) 등 성분을 포함한 제품, 치즈, 버터, 크림, 마가린, 분유, 요거트, 요플레, 유산음료, 우유과자, 우유캔디 등 그 제품, 단 우유 추출 성분 중 락티톨(lactitol) 포함 제품은 제외됨
  6. 알류 및 그 제품 : 계란, 오리알, 거위알, 타조알 등 각종 알류 및 알류에서 추출된 알부민(albumin) 성분 등, salted egg(짠계란), 피판, 달걀말이, 계란과자, 계란 노른자 소스, 계란 샐러드, 계란 분말 등 그 제품
- 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6가지 항목의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및 그 제품은 상기 1~6번까지 열거된 모든 제품에 해당하며, 또한 상기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품업자의 실제 상품에 따라 동 표기 규정은 적용됨
- 상기의 경고 표기는 “본 상품은 OO이 포함됨”, “본 상품은 OO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레르기 체질자가 식용 시 부적합함”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

□ 「시판 과채즙의 포장음료 표기 규정」 수정안 발표

○ 주요 내용

- 2013년 10월 2일 신규 제정되었고 2014년 3월 3일 수정안 발표
- 시행일 변경 : 2015년 7월 1일 => 2014년 7월 1일(제조일 기준)부터 시행
- 외포장 표기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함

규정	품명 표기 규정										
시판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규정 (「宣稱含果蔬汁之市售包裝飲料標示規定」)  (2014년 3월 3일)정정 署授食字第103 1300643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함</li> <li>2. 본 규정은 상품 외관 포장 상 “과채” 라는 명칭(품명 포함) 또는 과채류 도안이 표기된 직접 음용하는 포장 음료에 해당됨</li> <li>3. 과채즙 함량 10% 이상 첨가된 음료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품 외관 정면에 명확한 원액 함량을 표기해야함</li> <li>(2) 2종 이상 과채즙을 혼합한 음료는 품명이 사용된 과채즙이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상 과채 명칭 전체를 기입하고 그 명칭은 함량의 고저 순서대로 표기함</li> <li>㉡ 품명 상 과채명칭 전체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품명 또는 외포장 정면에 “종합과채즙”, “혼합과채즙”으로 표기해야 함</li> </ul> </li> </ol> </li> <li>4. 과채즙 함량 10%에 미달한 음료는 내용물 명칭 외에도 과채즙 등의 동일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서는 안 되며, 상품 외관 정면에 “원액 함량 10% 미달” 또는 동일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하며, 실 원액 함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li> <li>5. 과채즙이 미첨가된 것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품 외관 정면에 “과채즙 무함유”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li> <li>(2) “과채” 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품은 품명 상 “맛”, “향”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함</li> </ol> </li> <li>6. 외포장 정면에 원액 함유율을 표기해야 하며, “종합과채즙음료”, “혼합과채즙음료”, “과채즙 총 함량 10% 미달”, “과채즙 무함유” 또는 동일 의미 글자인 경우 그 글자체 및 색깔은 포장 바탕색과 확연히 달라야 하며 글자크기는 아래 규정을 따라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품 체적(ml)</th> <th style="text-align: center;">글자 크기(cm)</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각 0.3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1~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각 0.5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1~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각 0.8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1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각 1.2 이상</td> </tr> </tbody> </table> </li> <li>7. 시행 일자 : 2014년 7월 1일 시행</li> </ol>	상품 체적(ml)	글자 크기(cm)	150이하	각 0.3 이상	151~300	각 0.5 이상	301~600	각 0.8 이상	601 이상	각 1.2 이상
상품 체적(ml)	글자 크기(cm)										
150이하	각 0.3 이상										
151~300	각 0.5 이상										
301~600	각 0.8 이상										
601 이상	각 1.2 이상										

## ○ 광고 사항

- 과채즙 총 함량 10% 이상인 것 : 원액 함유율 표기 의무화, 과채즙명을 품명으로 하고, 종합 과채즙 일 경우 품명 또는 포장 정면에 본 상품이 “종합”과채 음료임을 표기
- 과채즙 총 함량이 10% 이하인 것 : 외포장 정면에 “과채즙 함량 10% 미달” 표기 또는 원액함유량을 직접 기입
- 과채즙 미함유 인 것 : 상품 외포장 정면에 “과채즙 무함유” 표기 의무화, 품명 내 과채즙 명칭을 포함할 경우 ~맛 ~향 등으로 표기

## ○ 위반 시 제재조치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47조에 의거하여 제 22조 규정 위반 시 NTD3~300만 불(한화 약 1~100백만원)의 벌금 구형 가능
- 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동법 제 47조에 의거 NTD400만불 이하 (한화 약 140백만원) 구형 가능
- 동법 제 52조 규정에 의거 회수 수정조치, 수정 전 시판 금지, 폐기 등의 조치 가능

## □ 1회용 식품 용기 적정 온도 표기 실시

- 반복사용 가능한 식품용기를 포함하여 1회용 식품용기에 대해서도 표기를 실시함
- 「PPT재질의 용기이므로 85도 이하에서 사용해야함」이라고 표기해야 함
- 식품용기 제조업자 또는 대만 관련 수출입업자는 식품약품관리국 플라스틱 식품용기 선도 웹사이트 참고(<http://plasticpackage.pidc.org.tw/>)
- 관련 업자들은 플라스틱재질과 적용온도에 대한 표기를 반드시 해야하며 위반 시 식품안전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최고 NTD3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짐

## □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표기 준수사항

- 2014년 12월 22일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포장식품의 표기 준수사항(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의 표기 준수사항(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벌크식품의 표기 준수사항(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이 각 전문 4조, 4조, 5조 제정, 발표됨.
  - 2015년 5월 29일 部授食字第1041301628호 공고에 의해 세 규정 모두 수정 발표
  -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포장식품의 표기 준수사항(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유전자변형식품원료는 본 법규 제 21조 2항의 허용 가능 유전자변형식품원료임. GMO함유 식품은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을 표기해야함.
    - 1) GMO원료를 직접 사용한 포장식품이 최종 단계에서 이미 그 유전자 복제를 포함하지 않거나 단백질 복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함.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 ‘유전자변형00사용’,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00을 가공하여 제조, 단 유전자변형성분 불포함’, ‘본 상품은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00 유, 단 유전자변형성분불포함’,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성분을 불포함하나, 유전자변형00을 가공하여 제조’,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성분을 불포함하나,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00 유’
    - 2) 비유전자변형식품원료의 수확, 저장 또는 기타 요소로 인하여 비고의적으로 소량의 유전자변형식품원료가 섞였을 때 그 함량이 본 원료의 0.03이하의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원료로 간주함.
    - 3) NON-GMO원료를 함유한 포장식품이 국제적으로 이미 복제가 통용되거나, 유전자변형을 사용한 식품원료로 변형되었을 경우 ‘비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이 아님’의 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 아울러 비고의적 투입량을 ‘국가00기준에 부합’으로 표기하거나, 실제의 비고의적 투입량을 표기함
    - 4) 품명, 원료명칭 원칙, 기타용기 및 외포장상의 표기 위치, 글씨체의 길이와

넓이는 다음 규정에 따름.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 ‘유전자변형00 사용’ 등 표기는 기타 문자와 구별되어야 하며, 길이와 폭은 2mm 이하여서는 안 됨. ‘비유전자변형’, ‘비유전자변형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상기 규정 제한을 받지 않음

-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의 표기 준수사항(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상기규정과 동일
-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벌크식품의 표기 준수사항(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본 규정의 표기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표기의 방식은 진열 판매되는 장소에서 마크 또는 표지판 등의 형식으로 입식, 현추식, 부착 또는 기타 명확한 방식에 의해 행해져야 함 (2) 마크(라벨)로써 표기할 경우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 ‘유전자변형00사용’ 등의 표기 시 글자의 크기는 2mm 이하여서는 안 됨 (3) 기타 표기방식의 경우 글자의 크기는 2cm이하여서는 안됨 (4)‘비유전자변형’, ‘비유전자변형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상기 규정 제한을 받지 않음. 나머지 조항 상기 규정과 동일

□ 포장 비타민 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

- 2015년 1월 23일 「시판포장 비타민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의 영양표시방식 및 내용기준(市售包裝維生素礦物質類之錠狀膠囊狀食品營養標示方式及內容標準)」이 폐지되고, 「포장 비타민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包裝維生素礦物質類之錠狀膠囊狀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이 변경·제정됨
  - 영양 표시 격식

		영양 표시	
매 1인 분량	알 (개)	매 분량	일일 섭취량 비율
본 포장	분		
비타민		mg or ug	%
무기질		mg or ug	%
선언의 영양소 함량		g, mg, ug	%
기타영양소함량		g, mg, ug	%

□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2015.7.10 폐지

- 2001년 9월 10일 발표, 2007년 1월 1일 규정 강화, 2013년 9월 10일 수정 공고 및 시행(部授食字 제1021350370호)
- 제4조 : 정부기관에서 공포하지 않은 ‘필요한 적당한 섭취량’ 및 ‘보충 가능한 섭취’의 영양소는 표기할 수 없음
- 제5조 : 정부기관에서 공포한 ‘보충 가능한 섭취’의 영양소 중, 생리기능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영양표기는 ‘보충 가능한 섭취영양소 방법’중 상기 표의 3번 및 4번의 규정에 부합해야함
  - 영양 성분 표기 규범 상 보충 가능한 섭취영양소 표기 시 매 30g을 기준 중량으로 함

■ 보충 가능한 섭취 영양소 표기 매 30g당 기준 식품 ■

- 치즈, 치즈가루, 크림, 휘핑크림
- 고기가루, 미트소스, 훈연육, 육포
- 생선가루, 생선소스, 염장생선류, 김소스
- 두부, 비빔밥재료
- 과일잼, 땅콩잼, 참깨소스, 땅콩가루, 염장채소류
- 서양식 제과류(케이크, 빵, 피자제외)
- 중식 케이크
- 기타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 매 1g당 (건조식품) 기준 중량으로 하는 식품

■ 보충 가능한 섭취 영양소 표기 매 1g당 기준 식품 ■

새우깡질, 해초, 이끼, 미역, 김, 한천, 해파리, 기타 정부기관이 지정한 식품

- 高(높은), 多(많은), 強化(강화), 豐富(풍부), 起源(기원), 供給(공급) 및 含有(함유) 등의 단어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단어 제한 식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디저트류 식품의 식품첨가제사용
  - 쌀과자, 팽창류(예 : 설탕, 김과자, 콘과자, 치즈봉, 감자칩, 새우칩, 빵등의 상품)
  - 꿀과자, 탈수 야채류(예 : 무화과, 파파야 절편및 기타 동류의 상품)
  - 종자류 (예 : 단호박종자, 참깨,해바라기종자등 기타 동류의 상품)
  - 견과류 (예 : 땅콩, 아몬드, 하와이언콩, 캐슈넛등 기타 동류의 상품)
  - 두부제조품
  - 수산물 (예 : 생선조각, 오징어 절편, 오징어 머리, 다시마, 새우절편, 조개, 생선뼈 등 기타 동류의 상품)
- 탄산음료, 콜라
- 식품첨가제를 사용한 사탕 종류
  - 하드 사탕, 소프트사탕(예 : 캐러멜, 솜사탕, 씹을 수 있는 사탕 등)
  - 초코렛, 방향사탕
  - 기타 사탕
- 조미료류
  - 전분류(예 : 전분, 빵가루, 튀김 가루 등 동류상품)
  - 된장, 두시(豆豉, 노란 콩이나 검은 콩을 불려 찌거나 끓인 후 발효 시 만든 조미료 일종)
  - 식용유류(예 :참기름, 매운기름 등 유사 상품)
  - 장류(대용량)(예 : 케첩, 불고기소스, 스테이크소스, 간장 등 동종 상품)
  - 소스류(소용량)(예 : 와사비, 고추장, 간장, 식초 등 동종 상품)
  - 버섯소스, 검은 후추소스, 스파게티소스
- 당류
  - 고체(예 : 각설탕, 설탕 등 유사 상품)
  - 액체(예 : 꿀 등 동류상품)
  - 소금
  - 조미료, 발효조미료
  - 마늘가루, 붉은 파머리
  - 팔각 등 향신료(예 : 후추, 바닐라가루 등 유사상품)
  - 계피가루
  - 기타 조미료
- 기타 중앙기관이 지정한 식품

○ 주요 변경 내용

- <당>함량의 강화 표기 항목 추가
- 트랜스지방산의 정의 : 현재 정의된 “식용유가 일부 수소화되는 과정 중 형성된 비공액식 트랜스 지방산”을 “식품 중 비공액식 트랜스지방산의 총합”으로 수정

- 현행 영양표기방식 총 5종을 2종으로 간소화시키고, 3번 방식 <매분량 매 100g>당 표기를 별도 기입, 4번 방식 <매분량 및 매일섭취영양소수치 백분율> 표기는 포장식품 열량 및 영양소 함량 표기 규정으로 삽입함

#### □ 식품 품명 표기 규범 정리(食品品名標示規範彙整)

○ 2014. 3. 18 수정공포

○ 근거법안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용기가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는 식품은 반드시 용기 혹은 포장에 품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식품 판매업자 중 회사등기 혹은 상업등기를 완료한 자가 벌크식품<sup>1)</sup>을 판매 할 경우 반드시 품명을 표기해야 하며, 단 구운 식품이나 기타 즉석 요리 식품의 경우는 제외함
- 동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식품 품명은 반드시 국가표준이 정한 명칭으로 하되, 국가표준이 없어 그 자체적으로 명칭을 정할 시 그 명칭과 식품 본질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킬만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됨

○ 시판되는 각종 식품의 품명 표기 규범 정리

- 시판 식품은 국가표준(CNS)에 지정된 명칭에 따라 명칭의 품명을 사용함
- 시판 신선 농·축·수산물은 식품의 분류 및 통용명칭에 따라 그 품명을 정함
-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품명 표기 규정

1) 비포장 또는 포장 개봉이후 원래 포장상태로 복귀 가능한 식품을 말함

규정	품명 표기 규정
<p>시판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규정                      (「市稱含果蔬汁之市售包裝飲料標示規定」)</p> <p>(2013년 3월 3일)                      署授食字第1031300643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함</li> <li>본 규정은 상품 외관 포장 상 “과채”라는 명칭 또는 과채류 도안이 표기된 직접 음용하는 포장 음료에 해당됨(명칭 포함)</li> <li>과채즙 함량 10% 이상 첨가된 음료, 2가지 이상의 과채즙으로 혼합된 것 품명표기도 과채즙인 것은 아래 규정을 따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명은 전부 과채명칭이 표기되어야 하고, 그 명칭은 함량의 고저가 표기되어야 함</li> <li>품명 상 과채즙 명칭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품명 또는 외포장에 &lt;종합과채즙&gt; &lt;혼합과채즙&gt; 혹은 동일 의미의 글자가 표기되어야 함</li> </ol> </li> <li>과채즙 함량 10%에 미달한 음료는 내용물 명칭 외 과채즙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 해서는 안 됨</li> <li>과채즙 미함유 인 것 : 상품 외포장 정면에 “과채즙 무함유”표기 의무화, 품명 내 과채즙 명칭을 포함할 경우 ~맛 ~향 등으로 표기</li> <li>실행 일자 : 2014년 7월 1일 실행</li> </ol>
<p>시판혼합유의 외포장 품명표기 관련 규정                      (「市售包裝調合油外包装品名標示相關規定」)</p> <p>(2010년 9월 20일)                      署授食字第0991302553호                      (2013년 9월 10일)                      部授食字第1021350359호 수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판되는 식용유의 외관 포장에 품명을 반드시 표기해야하고, 2종 이하(2종 포함)일 경우 유지(油脂)명칭을 품명으로 함</li> <li>시판되는 식용유의 외관 포장에 1종 유지류 명칭만 표기한 경우 반드시 그 유지류가 내용물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li> <li>시판 되는 식용유의 외관 포장 상 표기된 혼합 유지류가 2종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각각의 유지류의 내용물 함유량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함유량이 높은 것부터 표기해야 함</li> <li>시판되는 식용유 중 유지류 함유량으로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 할 수 없음                      예 : 「○○○스타일(風味)」, 「○○○비법(配方)」 등</li> <li>땅콩기름은 대만의 특산품이며 다른 식물성 기름과 합성을 해도 독특한 맛을 유지하므로 대만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땅콩기름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명칭에 「땅콩 맛 혼합유(花生風味調合油)」 명칭을 허용함</li> </ol>
<p>즉석라면 표기관련 규정                      (「包裝食品宣稱為素食之標示規定」)</p> <p>(2010년 5월 28일)                      署授食字第0991301488호                      (2013년 9월 10일)                      部授食字第1021350360호 수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면 내용물 내 분말 조미료 스프는 포함되어있으나 식자재 스프가 불포함 된 경우 분말 조미료 스프의 본질과 부합하도록 「○○맛면(味麵), ○○향면(風味麵) 또는 ○○탕면(湯麵)」상품 품명 사용</li> <li>라면 내용물 내 분말 조미료 스프와 식자재 스프가 포함된 경우 그 품명은 직접적으로 식자재 스프의 본질과 부합하는 「○○면(麵)」으로 상품 품명 사용</li> </ol>

규정	품명 표기 규정
<p>시판저염소금 표기 관련 규정(「市售包裝減鈉鹽應標示事項」)</p> <p>(2013년 11월 17일)                      署授食字第1001303012호                      (2013년 9월 10일)                      部授食字第1021350352호                      수정</p>	<p>1. 염화나트륨 함량이 65% 미만의 시중판매 포장 식염 제품은 「칼륨소금(鉀鈉鹽)」 또는 「저염소금(減鈉鹽)」으로 상품 품명 사용</p>
<p>동충하초 균사체 식품 표기 관련 규정(「冬蟲夏草菌絲體食品標示相關規定」)</p> <p>(2012년 2월 9일)                      署授食字第1001303885호                      (2013년 9월 2일)                      部授食字第1021350319호                      수정</p>	<p>1. 동충하초 균사체 식품의 표기(이하 본 식품)는 다음의 규정으로 함                      (1) 상품 외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본상품은 한약재의 동충하초로 제조한 것이 아님”을 표기해야 함 : 글자체 및 크기는 4mm보다 커야함                      (2) 상품의 외포장에는 세균의 중문명과 라틴어의 학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3) 상품 표기 또는 광고 시, “동충하초 균사체 식품”임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동충하초”만을 표기할 수 없으며, 모든 글자의 크기는 동일해야 함                      2. 식품의 품명을 “동충하초 균사체”로 표기 할 경우 사용하는 균은 반드시 <i>Hirsutella sinensis</i>(중문 : 中華被毛孢)으로 표기하거나 동충하초의 층층에서 분리된 균임을 표기해야 함                      3. 실시일자 : 2014년 2월 9일 시행</p>

원칙	품명 표기 원칙
<p>곡물상품 명칭 및 표기 관련 원칙(「全穀產品宣稱及表示原則」)</p> <p>(2013년 4월 30일)                      FDA食字第1021301154호                      수정</p>	<p>1. 고체 상품 중 곡물성분이 총 중량의 51% 이상이어야 전체곡물성분(全穀商品)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상품의 총량 중 51% 이상인 곡물유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명명 가능 함                      [全麥(전체보리)○○, 全橋麥(전체메밀)○○ 등]                      2. 곡물성분이 51% 이하일 경우 전체곡물성분상품이라 명명할 수 없고 “본 상품은 부분적인 원료를 전체 곡물 분말로 제조” 등의 방식으로 표기 할 수 있음                      3. 상품의 명칭을 전체곡물성분 원료사용 이라 명명하려면 반드시 100% 곡물성분을 사용해야 함</p>

원칙	품명 표기 원칙
<p>신선, 장기보관 및 조미유제품 음료 품명 및 분말 유제품 품 명 표기 원칙 (「鮮乳, 保久乳及調味乳乳飲品 乳粉品名及標示原則」)</p> <p>(2014년 2월 19일) 部授食字1031300193제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선 유제품 품명 표기법은 &lt;신선유(鮮乳)&gt;, &lt;신선유(鮮奶)&gt;, &lt;소/양유(牛/羊乳)&gt;&lt;소/양(牛/羊奶)&gt;</li> <li>2. 장기보존(멸균)유제품 품명표기법은 &lt;장기보존유(保存乳)&gt;, &lt;소/양유(牛/羊乳)&gt;또는 동일의미의 글자로 표기. &lt;장기보존유(保存乳)&gt;의 경우 외포장에 &lt;장기보존유(保存乳)&gt; 중문 표기가 되어야 함, 또한 표기 글자체는 길이/폭 모두 4mm보다 커야 함</li> <li>3. 조미유제품 품명 표기법은 &lt;조미유(調味乳)&gt;, &lt;소/양유(牛/羊乳)&gt;또는 동일의미의 글자로 표기. 상품 외포장에 &lt;조미유(調味乳)&gt;로 중문 표기가 되어야 함, 또한 표기 글자체는 길이/폭 모두 4mm보다 커야 함</li> <li>4. 장기보존 조미유제품 품명 표기법은 &lt;장기보존 조미유(保久調味乳)&gt;, &lt;소/양유(牛/羊乳)&gt;또는 동일의미의 글자로 표기. 상품 외포장에 &lt;장기보존 조미유(保久調味乳)&gt;로 중문 표기가 되어야 함, 또한 표기 글자체는 길이/폭 모두 4mm보다 커야 함</li> <li>5. 유제품 음료 품명 표기법은 &lt;유제품음료(乳飲品)&gt;, &lt;소/양유(牛/羊乳)&gt;또는 동일의미의 글자로 표기. 상품 외포장에 &lt;유제품음료(乳飲品)&gt;로 중문 표기가 되어야 함, 또한 표기 글자체는 길이/폭 모두 4mm보다 커야 함</li> <li>6. 유제품 장기보관 음료 품명 표기법은 &lt;유제품 장기보관 음료(保久乳飲品)&gt;, &lt;소/양유(牛/羊乳)&gt;또는 동일의미의 글자로 표기. 상품 외포장에 &lt;유제품 장기보관 음료(保久乳飲品)&gt;로 중문 표기가 되어야 함, 또한 표기 글자체는 길이/폭 모두 4mm보다 커야 함</li> <li>7. 분말 유제품 품명 표기법은 &lt;분말유제품(乳粉)&gt; 또는 &lt;분말유제품(奶粉)&gt;으로 표기</li> <li>8. 조제분말유제품 품명 표기법은 &lt;조제분말(調製乳粉)&gt;으로 표기 상품 외포장에 &lt;조제분말(調製乳粉)&gt;로 중문 표기가 되어야 함, 또한 표기 글자체는 길이/폭 모두 4mm보다 커야 함</li> <li>9. 실행 일자 : 2014년 7월 1일 실행</li> </ol>

- 일반식품의 품명 표기 원칙

유형	설명
<p>함유된 원료성분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p>	<p>식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에 따라 품명을 정할 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고구마 분말(地瓜粉)」 식품은 고구마 가루로 만들고 「고구마 분말(地瓜粉)」이라 명명함                      (2010년 7월 26일 FDA食字제0991302303호)</p>
<p>원료 품종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p>	<p>식품원료의 품종에 따라 식품명을 정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화우(和牛)」는 그 혈통 및 사육 방식이 타국가 품종의 소들과 달라, 화우의 맛과 육질은 독특함을 나타냄 ; 업자는 품종 및 원산지 증명을 구비하여 제공해야 함</p>
<p>식용 부위 통용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p>	<p>식품원료의 식용가능부위의 통용명칭으로 품명을 정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돼지갈비(松阪豬)」는 돼지고기 경부의 통칭으로, 그 비계의 분포는 「소갈비(松阪牛)」와 유사하여 명칭을 얻게 됨</p>
<p>생산지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p>	<p>원산지의 원료 및 제조 과정이 독특하여 식품 품명을 원산지에 따라 정할 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신주 쌀국수」는 대만 신주에서 생산되는 쌀국수 또는 그 지역의 특수한 가공법으로 제조한 것을 「신주 쌀국수」라고 명명함</p>
<p>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거나 국제 통용어를 중문 직역한 품명인 경우</p>	<p>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어 소비자가 이미 그 식품에 그 원료가 함유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 또는 국제 간 통용어가 중문으로 직역된 품명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                      예 : 「태양빵」에는 태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함</p>

- 특정식품의 품명 표기 원칙

유 형	설 명
미생물 및 원료로 제조한 식품	1. 미생물 및 그 원료 식품은 시판 통용 명칭을 품명으로 사용함 예 : 효모균 및 유산균 등 2. 유산균 계열은 당(醣)을 발효한 뒤 생성된 세균으로 비피더스균, 유산균, 건구균 등이 포함 됨
식용 가능한 버섯균류를 원료로 식품 품명을 명명한 경우	1. 식용 가능한 버섯균을 원료로 하여 통용 명칭 또는 분류 명칭으로 품명을 정함 예 : 영지, 상항버섯 등 2. 「영지(靈芝)」 계열은 영지(Granoderma)속의 버섯균류를 말하며 나무영지(樹舌靈芝), 노루뿔영지(鹿角靈芝), 적지(赤芝) 및 송삼(松杉靈芝) 등을 포함 3. 버섯균사체를 원료로 첨가한 경우, 「○○균사체」 글자로 표기를 해야 하고, 그 글자 크기는 일정해야 하며 통용 명칭이나 종류별 명칭만으로 품명을 표기해서는 안 됨 예 : 「영지(靈芝)」식품은 원료에 노루뿔영지(鹿角靈芝)가 함유되어 있다면 노루뿔영지(鹿角靈芝), 영지 등의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
식용 가능한 중약재로 식품 품명을 정한 경우	1. 식품 중 식용 가능한 중(한)약재를 첨가하고, 그 함유된 중(한)약재 원료로 품명을 표기할 시에 중(한)약재 명칭이 행정원 위생서 중약위원회 규정에 부합해야 함 2. 중(한)약 고유 성분을 식품 품명으로 할 경우 식품 내용물은 반드시 그 성분의 중약재가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식품 원료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어야 함 (예 : 영양첨가제) 기타 식품의 성분 비율은 중약재 성분과 동일해서는 안 됨 중(한)약재 고유 성분 및 그 성분 가감(加減) 방식을 품명으로 할 경우 그 품명은 중약재 고유의 단일 성분 또는 가감된 성분을 직접 명칭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중(한)약품으로 오해가 없도록 함 예 : 「사물탕(四物湯)」과 비율이 다른 경우, 식품 표기는 「딸기사물탕(草莓四物湯)」, 「철분 함유 사물탕(含鐵四物湯)」 또는 「○○사물 음료수(四物飲)」 등으로 표기함

- 기타 식품 품명 표기 원칙

유형	설명
<p>식품 내용물(원료) 및 그 성분을 식품 품명으로 정할 경우</p>	<p>식품 내용물(원료) 및 그 성분이 동일하게 식품 품명이 되는 경우, 그 순수 성분이 행정원 위생서 공고의 「식품첨가물 사용규범 및 제한량 표준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규정에 부합하거나 식품 사용이 가능한 원료에 속해야 함; 만약 식품 내용물에 직접 첨가한 원료의 순도나 공고한 식품첨가물이 규정 표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식품 원료 추출물 성분 중 일부이므로 순도 100% 성분 명칭을 직접 사용할 수 없음</p> <p>예 : DHA는 식품 원료나 식품 첨가물에 속하지 않으며 어유(魚油)의 한 성분이므로 품명은 DHA라고 명칭 할 수 없고, 「어유 DHA」 혹은 동일한 의미의 글자로 명칭해야 함</p>
<p>식품의 영문품명 표기방식</p>	<p>식품의 영문 품명은 공급자가 제공한 영문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함</p> <p>의료효능이 있는 상품 혹은 공급자가 영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 함</p> <p>중문 품명은 반드시 위생관리법의 상관 규정에 부합해야 함</p> <p>예 : 상품 원래 영문명이 「SOY BEAN EXTRACT TABLET」일 경우 중문명 「大豆萃取錠」을 사용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하며, 의료 효능 입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영문 명칭을 써야 함</p>

-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 상의 원산지 표기 규정 (含牛肉及牛可食部位原料之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規定)」 제정
  - 시행 : 2013년 10월 02일
  - 주관 : 위생복지부 식품과(衛生福利部食品組)
  -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21350501호
  - 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제1항 제7호
  - 내용 : 원산지 표기 규정
    1.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에 대하여 소고기 또는 소의 식용부위 원료 대한 원산지(국) 또는 대표성이 있는 문자는 중

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2. 소고기 및 소의 식용부위는 우유 및 소기름을 포함하지 않음
3. 식품의 소고기와 소의 식용부위 원료는 그 도살한 원산지(국)를 의미함

○ 「용기 혹은 포장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相關規定)」 폐지

- 주관 : 위생복지부 식품과(衛生福利部食品組)
- 공포 및 시행 : 2013년 10월 2일
-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21350503호
- 근거 : 중앙법규표준법(中央法規標準法) 제21조
- 사유 : 폐지 사유는 아래와 같음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이하 본법이라 칭함)「용기 혹은 포장된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相關規定)」의 부분 내용은 본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 상의 원산지 표기 규정 (含牛肉及牛可食部位原料之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規定)」와 중첩되므로 규정을 폐지함

제2절 품목별 표기 방법

1.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 라면류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농심 안성탕면(4개입)																											
원료	면: 소맥분, 감자가루, 향산화제(비타민E), 간장가루(콩), 오일 스프 : 향신조미료(대두, 후추, 붉은고추유, 마늘, 생강, 붉은고추)식용 소금, 미원, 설탕, 수해성 콩단백질, 콩가루, 건조해초, 파가루, 붉은고추가루, 카라멜가루 등																											
중량	면 125g																											
보존기한	10개월																											
제조업체	(주)농심																											
수입업체	****有限公司 新北市 泰山區 XXXX 電話: XXXX																											
원산지	台灣																											
영양표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영 양 표 시</th> </tr> <tr> <th>영양성분</th> <th>매 분량</th> <th>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th> </tr> </thead> <tbody> <tr> <td>열량</td> <td>422kal</td> <td>21,10%</td> </tr> <tr> <td>단백질</td> <td>8,1g</td> <td>13,50%</td> </tr> <tr> <td>지방</td> <td>14g</td> <td>25,45%</td> </tr> <tr> <td>포화지방</td> <td>7g</td> <td>38,89%</td> </tr> <tr> <td>불포화지방</td> <td>0g</td> <td></td> </tr> <tr> <td>탄수화물</td> <td>66g</td> <td>20,63%</td> </tr> <tr> <td>나트륨</td> <td>1420mg</td> <td>59,17%</td> </tr> </tbody> </table>		영 양 표 시			영양성분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422kal	21,10%	단백질	8,1g	13,50%	지방	14g	25,45%	포화지방	7g	38,89%	불포화지방	0g		탄수화물	66g	20,63%	나트륨	1420mg
영 양 표 시																												
영양성분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422kal	21,10%																										
단백질	8,1g	13,50%																										
지방	14g	25,45%																										
포화지방	7g	38,89%																										
불포화지방	0g																											
탄수화물	66g	20,63%																										
나트륨	1420mg	59,17%																										
보존방법	상온보존, 직사광선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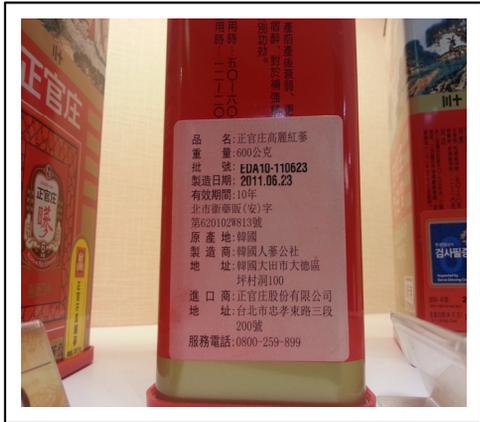
□ 과자류

표기항목	표기 내용																						
품명	롯데 과자류 Anytime																						
성분	감미제(맥아당), 비타민E, 유산, 밤향료, 사과향료, 박하향료, 물, 밤추출물, 유화제, 식용천연색소																						
중량	74g																						
유효일자	본 포장 별도표기																						
제조업체	Lotte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xxxx																						
원산지	한국																						
영양표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영 양 표 시</th> </tr> <tr> <td>매1 분량</td> <td>11g(3개)</td> </tr> <tr> <td>본 포장 포함량:</td> <td>7분량</td> </tr> <tr> <th colspan="2">매 분량 당</th> </tr> <tr> <td>열량</td> <td>25 kcal</td> </tr> <tr> <td>단백질</td> <td>0g</td> </tr> <tr> <td>지방</td> <td>0g</td> </tr> <tr> <td>포화지방</td> <td>0g</td> </tr> <tr> <td>불포화지방</td> <td>0g</td> </tr> <tr> <td>탄수화물</td> <td>11g</td> </tr> <tr> <td>나트륨</td> <td>0mg</td> </tr> </table>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1g(3개)	본 포장 포함량:	7분량	매 분량 당		열량	25 kc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불포화지방	0g	탄수화물	11g	나트륨	0mg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1g(3개)																						
본 포장 포함량:	7분량																						
매 분량 당																							
열량	25 kc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불포화지방	0g																						
탄수화물	11g																						
나트륨	0mg																						
보조기간	12개월																						
보존방법	상온보존, 직사광선피할 것																						



## 2. 인삼 등 건강보조식품

### 홍삼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정관장 고려홍삼	
중량	600g	
lot no	EDA10-XXXXXX	
유효일자	10년 北市衛藥販(安)字 第XXXXXXXXXX號 (약품판매업체인증번호)	
제조업체	한국인삼공사	
수입업체	*****유한공사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주소	대전시 대덕구 XXXX	
수입업체주소	台北市 忠孝東路 XXXX	
전화번호	12개월	

- 뿌리 홍삼은 중약재에 속하므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중문 라벨링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홍삼 가공 식품은 식품에 속하므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대로 표기를 해야 함

## 3. 사과, 배 등 과일류

### 한국산 신선과일

- 신선한 야채류 및 과일은 BOX포장 수입,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통, 윗면을 랩을 씌우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정에 제한 받지 않음

- 단, 원산지 표기, 품명, 수·출입업체, 중량, 유효일자 등 원문 라벨링 보존
- 도매시장 판매용 BOX 원문 라벨링 : 품명, 수량, 출하지, 수출업체

#### 4. 배추, 김치 등 채소류

##### □ 김 치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종가집 맛김치		
성분	배추, 무우, 고춧가루, 마늘, 액젓, 파, 소금, 설탕, 다시마 가루		
중량	750g		
유효일자	포장상 표기(서기 년/월/일)		
제조업체	대상 FNC 주식회사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新北市XXX, 전화번호: XXX		
원산지	한국		
영양표기	영 양 표 시 매 100 g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33kal
	단백질		2.2g
	지방	0.2g	
	포화지방	0.2g	
	불포화지방	0g	
	탄수화물	5.6g	
	나트륨	880mg	
보조기간	5개월		
보존방법	냉장 0~4도, 개봉후 냉장보관		

## 5. 건조 표고버섯 등 버섯류

### □ 표고버섯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대만 특급 표고버섯		
내용물	건조표고버섯		
중량	100g+/- 4.5g		
유효일자	포장 윗면 표기		
제조업체	****有限公司		
원산지	대만		
영양표기	영 양 표 시		
	매 100g분량		
	열량		45kal
	단백질		3.4g
	지방	0.4g	
	탄수화물	7g	
나트륨	2mg		
보존조건	냉장 보관		

## 6. 맥주 등 주류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金牌台灣啤酒	
원료	맥아, 옥수수, 맥주화, 알코올 5.0도	
중량	500ml	
보존기간	12개월	
제조업체	대만담배주류유한공사	
원산지	B우르(烏日)맥주공장 : 台中市 XXX C산화(善化)맥주공장 : 台南市 XXX 소비자상담번호 0800-xxx-xxx	
영양표기	주류 표기하지 않음	
제조일자	하단 별도 표기(서기 년/월/일)	
원산지	대만	

## 7. 가금육류

### □ 한국산 삼계탕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한국 삼계탕(원산지: 한국)	
성분	한국산 닭 50%, 고려수삼 0.7%, 찹쌀, 밤, 대추, 마늘, 소금	
중량	570KG	
유효일자	포장상 표기(서기 년/ 월/ 일)	
제조업체	교동식품주식회사 주소: XXXX	
수입업체	****유한공사	
원산지	한국	
영양표기	<b>영 양 표 시</b>	
	매 100g 당	
	열량	
	단백질	6g
	지방	2.5g
	포화지방/불포화지방	0.8g/ 0g
	탄수화물	5g
	나트륨	160mg
보조기간	12개월	
보존방법	냉장 1~10도, 개봉 후 즉시 식음.	

## 8. 유제품

### □ 우유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瑞穗신선 우유	 																			
원료	생우유																				
중량	930ml																				
보존기간	미개봉 시 냉장 7도이하 13일																				
제조업체	統一企業(股)公司																				
원산지	台灣																				
영양표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영 양 표 시</th> </tr> <tr> <th colspan="2">매 310ml분량 본 포장 3회 분량 제공</th> </tr> </thead> <tbody> <tr> <td>열량</td> <td>202 kal</td> </tr> <tr> <td>단백질</td> <td>9.9g</td> </tr> <tr> <td>지방</td> <td>11.5g</td> </tr> <tr> <td>포화지방/불포화지방</td> <td>8.1g/0g</td> </tr> <tr> <td>탄수화물</td> <td>14.9g</td> </tr> <tr> <td>당분</td> <td>14.9</td> </tr> <tr> <td>나트륨</td> <td>130mg</td> </tr> <tr> <td>칼슘</td> <td>341mg</td> </tr> </tbody> </table>		영 양 표 시		매 310ml분량 본 포장 3회 분량 제공		열량	202 kal	단백질	9.9g	지방	11.5g	포화지방/불포화지방	8.1g/0g	탄수화물	14.9g	당분	14.9	나트륨	130mg	칼슘
영 양 표 시																					
매 310ml분량 본 포장 3회 분량 제공																					
열량	202 kal																				
단백질	9.9g																				
지방	11.5g																				
포화지방/불포화지방	8.1g/0g																				
탄수화물	14.9g																				
당분	14.9																				
나트륨	130mg																				
칼슘	341mg																				
살균처리	초고온 살균처리(130도±3도, 3~5초 처리) CNS3055 생우유 규정에 부합																				

## 제3절 라벨링 이슈사례

### 1. 라벨링 이슈사례

#### □ 7/31부터 음료업 차, 커피 원산지 표기 의무화

- 대만 차 잔류 농약 검출 사건으로 인해 금년 7월 31일부터 차 수입 및 제조 판매 관련업은 3급 품질관리 강제검사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음료제조> 매장은 반드시 메뉴, 간판 또는 컵 위에 차, 커피의 원산지 의무화가 실시된다. 그 중 커피는 반드시 카페인 함량을 표기해야 하고, 과일주스에는 과즙함량이 10% 이상인 것만 과일주스로 표기해야 함
- 식약서 자료에 의하면 대만 내 요식업의 50% 이상이 프렌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에 있어 본점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 본점에 식품 안전의 책임이 있으며 특히 음료업은 최근 문제가 된 英國藍, 五十嵐, 天人名茶 등을 비롯해 대부분 대형 프렌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정식 사업 등기를 한 매장에서 <현장음료제조> 형태로 음료를 판매할 경우 차와 커피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 혼합음료인 경우 함량 고저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며 커피인 경우 홍, 황, 녹색 삼색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홍색은 201mg 이상, 황색은 101~200, 녹색은 100이하일 경우)
- 또한 과일 주스도 과즙함량 10% 이상일 경우 과일주스로 표기할 수 있고, 10% 이하인 경우는 ~향, ~맛 등으로만 표기가 가능하다. 장미차 등 식품류 화차(花草茶)인 경우 수입신고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최근도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연합보, 2015.5.12.>

#### □ 포장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사항 수정 발표

- 2015년 5월 29일 포장식품의 GMO 표기 사항이 전문 4조에서 5조로 수정·발표됨.
  - 제 5조 본 규정이 정의하는 표기는 품명, 원료명칭, 기타 용기 혹은 포장상의

- 명확한 위치, 글자의 크기 및 폭이 하기 규정에 부합해야 함.
- 1)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원료 함유’ 또는 ‘유전자변형원료00사용’의 표시는 기타 글자와 구별되어야 하며, 글자의 크기와 폭은 2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 2)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00을 가공하여 제조, 단 유전자변형성분을 함유하지 않음’, ‘본 상품은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00포함, 단 유전자변형성분을 함유하지 않음’,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나, 유전자변형00을 가공하여 제조’,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나,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00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그 길이와 폭이 2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 3) ‘비유전자변형’ 또는 ‘비유전자변형 원료 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제한 적용 없음
-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식품의 GMO 표기 관련 샘플링조사 결과 314건의 포장식품에서 26건의 불합격 식품이 적발됨. 분자생물실험을 거친 결과 두부, 두부피, 두유 등 제품에 GMO 대두가 사용되었으며, 표기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포장 상 NON-GMO 제품으로 표기, 판매한 것이 적발됨 (2015/5/19 nownews)
  - 2015년 6월부터 함량이 3%를 초과하는 GMO식품에 대해 상기 사항을 표기해야 함. 적발된 업체들 중 오 표시한 업체에 대하여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의거해, NTD 4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NTD 3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 일정 부분 정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표기한 경우 한시적으로 개선 권고함

#### 대만 식약서 7.1부터 실시되는 신규·수정 규정 공고

-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7.1일부터 지난 신규 및 수정 실시되는 규정에 대해 요약 발표하였음.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항목	신규, 수정 규정 명칭	실시 일자	중심내용
1	포장식품영양표시준수 사항	2015.7.1	<p>현행 규정 비교 시 수정 내용의 중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성분의 함량을 강화한 항목</li> <li>2. 강제표기양식 2종 명확히 규정</li> <li>3. 열량 및 각항 1일 영양소 섭취량 참고 수치 및 1~3세 및 임산부 양중 부류의 매일 참고 수치 기입</li> </ol>
2	유전자변형식품표기 규정	2015.7.1. ~ 12.31 (단계별 실시)	<p>현행 규정과 비교 시 수정 내용의 중점 :</p> <p>범위 확대, 현행 포장 식품을 식품첨가물 및 벌크 식품으로까지 범위 확대</p> <p>비유전자변형식품원료는 유전자변형식품원료가 3%를 초과하지 않은 것임</p> <p>정밀가공식품(예: 대두, 간장, 옥수수과당 등)은 표기 면제에서 &lt;유전자변형&gt;으로 표기의무화 됨</p> <p>&lt;비유전자변형식품&gt; 또는 &lt;유전자식품 아님&gt;이라는 식품범위 문구를 명확히 기재</p> <p>표기 글자는 기타 문자와 구별되어야 하며, 글길이, 폭은 2mm를 넘지 않아야 함</p>
3	알레르기식품표기	2015.7.1	<p>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6가지 항목은 알레르기성 원료 및 그 제품으로 &lt;본 제품은 00가 포함 됨&gt; 또는 &lt;본 상품은 00 포함되어, 알레르기 체질자에게는 적당하지 않음&gt; 등 동일 의미의 글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p>
4	진균류식품표기관리 원칙	2015.7.1	<p>진균류 원료의 중문명칭 및 라틴학명을 표기해야 하고, 그 사용 부위(자실체, 균사체 또는 자실체 추가 균사체) 및 그 배양 방식 표기</p> <p>&lt;진균류 균사체&gt; 사용하였으나 &lt;진균류 자실체&gt;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lt;00균사체&gt;를 표기하고 외포장에 자실체 도안을 표출해서는 안 됨</p> <p>&lt;진균류 균사체와 자실체의의 혼합&gt;인 상품은 &lt;본 상품은 00 균사체와 자실체 혼합 임&gt; 또는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p>

<2015. 6. 30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란>

## 제4절 자료출처

### 1. 통관제도

#### 가. 웹 사이트

- 관무서(關稅總局) : <http://www.customs.gov.tw>
- 지룽관세국(基隆關稅局) : <http://keelung.customs.gov.tw>
- 타이베이관세국(台北關稅局) : <http://taipei.customs.gov.tw>
- 타이중관세국(台中關稅局) : <http://taichung.customs.gov.tw>
- 까우슁관세국(高雄關稅局) : <http://kaohsiung.customs.gov.tw>
- 관정사(關政司) : <http://doca.mof.gov.tw>
- 전국법규자료사이트 : <http://law.moj.gov.tw/>
- 행정원 정보 공고 사이트 : <http://gazette.nat.gov.tw/egFront/index.jsp>

#### 나. 관련 법률 및 규정

- 「관세법(關稅法)」, 「관세법실행세칙(關稅法施行細則)」
-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貨物通關自動化實施方案)」
- 「국제택배간의통관방법(快遞貨物通關辦法)」
- 「관세쿼터제 실시방법(關稅配額實施辦法)」
- 「수입화물세칙심사실시방법(進口貨物稅則預先審核實施辦法)」
- 「평형세 및 반덤핑세 징수 실시방안(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 「세관징수비용규칙(海關徵收規費規則及特別監視費, 押運費之徵收標準, 繳費義務人及核准文件表)」

- 「밀수단속규칙(海關緝私條例)」
- 「유기 농산물 수입 규정(有機農產品輸入規定)」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查驗作業要點)」
-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통관, 라벨링 제도 공통)

## 다. 참고 서적

- 「화물통관자동화수첩(貨物通關自動化報關手冊)」

## 2. 검역제도

### 가. 웹 사이트

- 행정원위생서 : [www.doh.gov.tw](http://www.doh.gov.tw)(검역, 라벨링 공통)
- 행정원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 : [www.fda.gov.tw](http://www.fda.gov.tw)(검역, 라벨링 공통)
- 행정원위생서중의약위원회 : [www.ccmp.gov.tw](http://www.ccmp.gov.tw)
-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 : [www.baphiq.gov.tw](http://www.baphiq.gov.tw)
- 경제부표준검험국 : [www.bsmi.gov.tw](http://www.bsmi.gov.tw)
- 재정부국고서 : [www.nta.gov.tw](http://www.nta.gov.tw)

### 나. 관련 법률 및 규정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대만수입식물/식물제품 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隻五或中華民國植品檢驗規定)」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進口檢驗作業規定)」
- 「수입식품검사작업규정(輸入食品檢驗作業規定)」(검역, 라벨링제도 공통)

### 3. 라벨링제도

#### 가. 관련 법률 및 규정

-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查驗作業要點)」
- 「식품안전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시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 「수입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 가공품 관리 방법(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品加工品管理辦法)」
-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 함량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시판포장식품영양광고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주류 표기 관리 방법(酒類表示管理辦法)」

# 제4장 통관 보류 및 억류사례

## 제1절 한국산 통관 거부사례

### Ⅰ 2015년 對 대만 한국산 통관 거부사례 Ⅰ

- 총 15건 (농식품 · 농산가공 : 15건)
- 라벨 및 포장 불합격(0건), 기준치 초과(15건)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2/3 (1/5)	신선 배	98180000004	잔류농약 Methidathion 0.06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16,200	반송 혹은 폐기
4/14 (3/17)	고춧가루	09042190003	잔류농약 tebuconazole 0.13ppm 검출	0.05ppm	120kg	반송 혹은 폐기
6/23 (5/8)	포도씨유	15159090909	동엽록소 0.15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8조 위반	15kg	반송 혹은 폐기
7/22 (6/23)	신선 파프리카	07096000001	잔류농약 clothianidin 0.08ppm 검출	0.05ppm	15kg	반송 혹은 폐기
7/22 (6/25)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프로니카미드 0.04ppm 검출	0.01ppm		반송 혹은 폐기
8/18 (7/22)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1ppm, 메트코나졸 0.03ppm 검출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20,000	반송 혹은 폐기
8/18 (7/2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프로니카미드 0.02ppm 검출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8/25 (7/2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나콜나졸 0.04ppm, 메트코나졸 0.12ppm 검출	디나콜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19,000	반송 혹은 폐기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 CODE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표준	중량	처리
9/15 (8/14)	배추	07049010008	디니코나졸 0.04ppm 메트코나졸 0.16ppm	디니코나졸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0.01ppm	16,170	반송 혹은 폐기
9/15 (8/20)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에토펜플록스 0.06ppm 검출	에토펜플록스 검출 미허용	15,750	반송 혹은 폐기
9/22 (8/27)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디니코나졸 0.04ppm, 메트코나졸 0.01ppm, 에토펜플록스 0.05ppm, 아미설부롬 0.12ppm, 파목사돈 0.02ppm 검출	디니코나졸, 에토펜플록스, 아미설부롬 검출 미허용. 메트코나졸, 파목사돈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9/22 (8/27)	배추	07049010008	메트코나졸 0.06ppm	0.01ppm	15,750	반송 혹은 폐기
10/13 (9/16)	신선 멜론	08071910002	잔류농약 Pyridaben 0.02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6,400kg	반송 혹은 폐기
10/13 (9/15)	치킨양념 소스	21039090905	방부제 Ethyl p-Hydroxybenzoate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8조 위반	160kg	반송 혹은 폐기
11/24 (10/23)	간장	21031090001	방부제 p-Hydroxybenzoate 0.11 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 법 제 15조 위반	885kg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통관보류, 역류 등 부적합 사례

제6장 수출현안



# 제1장 통관제도

## 제1절 통관 일반사항

### 1. 개요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법안 Act No. 7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으로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핵심 법안이다.
  - 식품법안(Food Act)에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식품은 생물학적 또는 물을 원천으로 하는 모든 가공 및 미가공 제품으로 인 간이 섭취 또는 복용하도록 된 제품으로, 여기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조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초 식품재료 이외에 식품 첨가물도 포함이 된다.”
  - 또한 식품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식품과 관련된 안전, 품질, 영양 등과 같은 기술적 기준, 그리고 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을 생산, 보관, 운송 그리고 유통하는 업자의 책임 및 그 결정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제재조치
    - 소비되는 식품의 다양성 및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역할
    - 내수소비 및 수출되는 식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식품수입 규정은 식품법안의 제5장에서 다루며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법안 및 그 시행규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입면허의 주관부서는 무역부이지만, 의약 및 일부 식품과 같은 특별한 제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정부부서의 특수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모든 수입제품들이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 2. 농림 및 식품 수입절차 흐름도

### □ 수입절차

- 인도네시아는 수입업자가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수입절차가 복잡하다.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무역면허)를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수입업자들은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관세청등록번호) 및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수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식품 및 음료 수입업자들은 추가적으로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IP/IT) 면허, 그리고 필요시 별도의 Registered Importer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 다음은 수입절차의 요약이다.

파트터십 형성	기업이 수입업자가 되기 위하여 정부에 등록한다		수출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관계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공한다
	SIUP		
	NIK		
	API		
수입허가 신청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의 정부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제품수입허가를 신청한다		제품 등록 ML 번호
	ITPT	수산물 수입허가	
	IP/IT 원예 제품	IT 동물 제품	
제품의 운송	통 관		
	식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제품의 인도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 무역면허)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 무역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SIUP에는 회사의 활동범위 및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SIUP 발급부서인 산업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letter of good conduct (적정시민인증서)를 요구할 수가 있다.
- SIUP는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One Stop Shop Service (간편 업체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SIUP의 사례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의 신청	
요구 서류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사본) 2. 업체 주소 및 위치에 대한 확인서 3. 업체 대표자 혹은 이사의 신분증 (사본) 4. 공증된 문서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5-9 근무일
신청 비용	비용은 협상이 가능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IDf 400,000-IDR500,000, 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IDR 600,000-IDR700,000, 대형기업의 경우 최소 IDR750,000-IDR1,000,000에서 출발한다

□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NIK : 관세청 등록번호)

- NIK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이다.
- “관세청 등록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GCE)으로부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nduk Kepabeanan, NIK)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
- NIK 신청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서비스이용자의 내용, 임원 및 담당자의 신원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약 14일이 소요된다.
- NIK는 관세청이 취소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하다.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NIK를 취소할 수 있다.
  - 수입업자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청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업자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 수입업자의 사업면허가 만료가 된 경우
- 취소 된 NIK는 취소결정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복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NIK를 회복 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활동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등록 자료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동 변경내용이 관세청에 의해 이미 승인이 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형사위반 사안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의 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 수입업자 등록번호)

- NIK와 더불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규정에는 API가 있는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관측제품, 연구개발목적의 제품, 자가 섭취의 제품, 일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제품 또는 빈도가 적은 수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API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다.
  -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API의 취득이 필수적이다.
- API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신청하며, 수입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갱신 신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 API는 API-U, API-P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하나의 API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API-U는 무역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되며,
  - API-P는 원재료, 부재료 혹은 가공공정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된다.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의 신청	
요구 서류	1.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 (설립취지서) (사본) 2. 소재 지역 관할청에서 발급한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 (사본) 3. 투자 등록서 (사본) 4. 투자 Approval in Principle (기본승인서) (사본) 5. BKPM에서 발급한 사업면허 (사본) 6. 납세자 ID 번호 (NPWP) (사본) 7. 기업 등록 증명서 (TDP) (사본) 8. 이사회 임원의 주민 ID 카드 혹은 여권 (사본) 9. IMTA (사본) 10. 이사회 전원의 붉은색 바탕의 3x4 사진 2매
신청 처리	5 근무일
신청 비용	IDR6,000
유효 기간	5년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는 문서형식으로 API 번호가 통지가 된다. 한국의 수출자들은 인도네시아 업체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협력하려는 수입업자의 API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API 통지문서의 사례는 부록에 포함이 되어 있다.
-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무역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API는 취소가 될 수가 있다.
  - API가 2회에 걸쳐 효력정지를 당했을 경우
  - API가 효력정지를 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API 신청서에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기재하였을 경우
  - 수입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관련 규정 및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입 및 수입관련 서류를 악용한 경우
  - API의 악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 특수 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NPIK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품목은 항구에서 억류조치된다.
- 특수품목에는 옥수수, 쌀, 대두, 설탕, 섬유 및 관련제품, 신발, 전자 및 완구가 포함되며, 동 조치는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해당 제품들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NPIK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MoT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의 신청

요구 서류	1. API-U를 취득한 업체 - API-U - 최근 5년간 사이의 2개년 연속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차기 1년간 해외 교역 파트너와의 구매계약서 2. API-P를 취득한 업체 - API-P - 산업활동 허가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10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5년

- 수입업자의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수입업자에게 NPIK가 발급이 된다.
- NPIK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매월 15일에 국제무역협력국에 수입활동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NPIK는 취소될 수가 있다.
  - NPIK의 내용에 변경, 추가, 대체를 하는 행위
  - NPIK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불가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 제2절 통관 서류

## 1. 서류

-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양식(PIB)을 준비해야 한다. 세관 신고양식의 유형은 수입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양식	
물품 수입 신고서 (PIB 양식)	BC 2.0
특정 물품 수입 신고서 (PIBK 양식)	BC 2.1
승객 혹은 운송수단 승무원의 물품 수입 신고서	BC 2.2
보세구역 보관예정 물품 수입신고서	BC 2.3

수입 신고 양식	
관세지역 (DPIL)을 출발하여 보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의 이전 신고서	BC 4.0
수출용으로 수입시설에 도착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정산 신고서	BC 2.4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 신고서	BC 2.5
보세구역 보증부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서	BC 2.6.1
보세구역 보증부인도된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재진입 신고서	BC 2.6.2
보세구역간 물품이전을 위한 신고서	BC 2.7

-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관세청신고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지역 진입 시에도 구비해야 한다.
  - 선하증권 (B/L)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 (AWB)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권
  - 원산지 증명서 (C/O)
  -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양식 사본
  - 관세 및 제세 납부 증명 (영수증)
  - 특정물품에 대한 관련 증명서
  - 통제되는 물품에 대한 유효한 관련 허가서
-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다.
  - 매매 계약
  - 구매서
  - 송금전표
  - 제품 카달로그
- 서류의 정정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2일 전에 모든 수입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권장된다.

### 제3절 통관 절차

#### 1. 일반 통관 절차

관세청의 역할

○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DGCE : 관세청)은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강제,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해외의 출발지로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의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서류 및 실물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관세청 확인이 이루어진다.

○ 많은 기업들은 관세청 사안을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만, 관세 및 세제의 책무가 빠르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고 500%에 달하는 행정적 벌과금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관세청 통관절차

도착전	관세항구 에의 도착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	화물 검사	인도	인수
도착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	관세신고서 제출	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	관세청지역 으로 물품인도	관세청으로 부터 물품인수

○ 도착전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운송사의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의 운송수단의 식별번호
- 운송수단의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진입직전의 최종 기착지
- 목적항
-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일
- 하역예정의 포장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물품의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관세 항구에서의 도착

-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선박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항공기 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육로운송의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세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하는 치료용 의약품의 목록

○ 수입물품의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가 있다.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물량의 수기 또는 전자목록을 관세청에게 제출한다.

○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

(PIB)를 준비한다. 수입신고서 제출시 관세청이용자요금(Penerimaan Negara Bukan Pajak)을 내는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접속이용료로, 수출입 활동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의 전송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 수입업자는 PIB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관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제세이다.

- 수입관세 :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0% - 170%의 요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VAT) : 요율은 0% - 10%이다.
- 사치품 판매세 (STLG) : 제품의 유형에 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 적용된다
- 소득세 (PPH) : 등록된 수입업자는 2.5%, 미등록된 수입업자는 7.5%

- 위에 열거된 수입관세 및 제세는 PIB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해서 혹은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서 납부한다.
- EDI 시스템이 전면시행 되고 있는 Tanjung Priok 항구 및 Soekarno-Hatta 공항에서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는 전자결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 ○ 화물 검사

- 수입업자가 PIB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들을 검토한다.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 수입물품의 인도

-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 된다. 수입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순서 분류에 따른다.
- 공식규정에는 MITA 일반(5 근무일)이외에는,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3 근무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이 보다는 빠르다. 실제로 녹색통로의 경우 화물을 인도받기까지 일반적으로 30분이 걸린다.

1. 적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M)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2. 황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K)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3. 녹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PB)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4. MITA 일반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일반 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된다.
5. MITA 우선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우선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된다.

### ○ 물품의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함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원산지 규정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규정의 발표를 관할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관세율과 관련된 특혜대우의 시행을 주안점으로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른 특혜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ASEAN 물품교역 협약 (ATIGA)
- ASEAN-중국 FTA (ACFTA)
- ASEAN-한국 FTA (AKFTA)
- ASEAN-인도 FTA (AIFTA)
- ASEAN-호주 및 뉴질랜드 FTA (AANZFTA)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파트너협약 (IJEPA)

#### □ ASEAN-한국 FTA (AKFTA)

- 동 특혜관세협약은 한국 및 다른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품에 적용이 된다. 수입업자는 관세율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KCCI)로부터 원산지증명서 (C/O) 양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현재 KCCI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한다. 한국과의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무역에는 FTA C/O가 발급이 된다.
-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출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세관에 도착하기 이전에 KCCI로부터 C/O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 3. 제품별 수입 및 통관절차

#### □ 포장식품

-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제품의 수입 관련”에 따라 무역부는 2010년 가을에 188개 식품 및 음료 항목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10자리 HS 관세코드의 505개 항목에 대한 수입제품의 요구조건을 강화하였다.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 및 음료 제품, 완성된 의류, 신발류, 전자류, 완구류, 전통의약품, 화장품 등이 포함이 된다. 동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구체적 목록은 부록에 있다.
- 동 규정에 따라 포장식품의 수입은 등록된 특정제품 수입업자 혹은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ITPT)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가 있다.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ITPT: 특정제품 수입업자) 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사본) 2. 기업 등록번호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 (NPWP) (사본) 4. NPIK에 특수제품의 수입허가가 표시된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사본) 5. 관세청 등록번호 (NIK) (사본) 6. 물량, 제품의 종류, 관세분류/HS 10자리 번호, 도착항 등이 포함된 1년간의 수입계획
신청 처리소요기간	7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 ITPT에 수록된 제품들은 전국의 국제공항 및 5개의 항구(Medan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 Hatta) 등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Dumai 및 Jayapura 항구는 식품 및 음료제품의 선적항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 ITPT 수입업자들은 매 3개월마다 익월의 15일까지 <http://inatrade.kemendag.go.id> 를 통해 수입제품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ITPT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업자 부담으로 선적항에서 제품을 확인 또는 기술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TPT가 철회 된다.
  - 수입업자가 제4조에 요구되는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수입업자가 특수제품을 연속된 6개월 동안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 재무부산하 관세청에서 수입업자가 관세 사안에 대한 위반을 하였다고 보고할 경우
- 수입업자는 ITPT가 철회된 6개월 이후에 새로운 ITPT를 위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입 포장식품의 경우, BPOM은 최소유통기간이라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의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1.5년 이상

-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6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3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 수산물

- 수산물 관할부서는 해양수산부(DKP)이며, 수산양식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 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이 관할부서이다. 수산물의 인도네시아 수입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규정은 해양수산부 규정 No. PER.15/MEN/2011 -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이다.
- 인도네시아에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API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산물 제품의 수입허가(Suratalzin Pemasukan Hasil Perikanan)도 의무사항이다. 수입허가의 발급은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관할이다.

수산물 수입허가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의 사유 및 목적 2. 학명 및 교역명 3. 유형 (10자리 HS 번호) 4. 전체 금액 혹은 물량, 그리고 규격 5. 원산지 국가 6. 운송 수단 7. 도착 항구 8. 수입 일정 9. 수산물 원산지 10. 지역 정부기관의 추천서 11. API-P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HACCP 적용 증명서 ; API-U 수입업자의 경우 SKP (사본)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6개월

- 수산물 수입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가 된다. 수산제품 수입허가 (Surat I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의 예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 학명 및 교역명
  - 유형 (10자리 HS 번호)
  - 수량 혹은 용량
  - 운송 수단
  - 원산지 국가
  - 입국 항구
  - 수입 일정
  - 수입 사유 및 목적
- 수입업자는 수산제품의 도착에 대하여 관세청에 사전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활어수산제품은 도착 최소 2일 전에, 선어수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도착 1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검역의 목적으로 수산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 국가의 위생 증명서
  -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시험기관으로부터의 수산제품이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잔류량,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 등의 오염이 없으며, 냉동제품의 경우 제품의 순중량이 95% 이상이며, 수산제품이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시험 성적서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설명서
  - Good Aquacultural Practice (GAP) 인증서
- 2010년 이후 무역부 규정 No.52/M-DAG/PER/12/2010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특정 품종의 새우의 수입금지 관련”에 따라, 특정 품종의 새우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 냉동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 (HS번호 : 030613), 그리고 활어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 (HS번호 : 030623).

-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모든 수산제품은 다음의 항구들을 통해서만 반입될 수가 있다.
  - 모든 국제 공항
  - 해항 : Medan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Hatta
  - Entikong의 국경 검문소
- 수산 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규정 No.KEP.025/DJ-P2HP/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산 제품들은 인도네시아에 반입될 수가 없다.
  -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수산 제품
  - 계절의 영향을 고도로 받는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에 양식되지 않은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 어민 또는 농민에 의해 역외에서 생산되는 수산 제품

#### □ 신선 과일 및 채소

- 가장 최근의 신선 과일 및 채소 관련 규정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의 수입조례 관련”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원예는 과일, 채소, 채소재료 및 채소, 채소재료 및 화훼류를 총칭하며 진균류, 이끼류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규정에는 딸기 및 버섯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무역부로부터 원예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IP-원예제품) 혹은 원예제품의 등록 수입자(IT-원예제품)의 면허를 취득한 수입업자만이 원예제품의 수입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다.
- IP-원예제품의 취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무역부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P/IT - 원예제품의 신청	
요구 서류	<p>IP-원예제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발급된 원예제품 원재료의 취급을 허용하는 사업면허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li> <li>2. 사업자등록증 (TDP) (사본)</li> <li>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li> <li>4. 생산자/수입자 등록 번호 (API-P) (사본)</li> <li>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li> <li>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li> <li>7. 농림부 장관 혹은 그 위임을 받은 관리로부터의 원예제품 수입 추천서(RIPH)</li> </ol> <p>IT-원예제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사업영역이 원예를 포함하고 있는 무역사업면허 (SIUP)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li> <li>2. 사업자 등록증 (TDP) (사본)</li> <li>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li> <li>4. 일반 수입업 등록 번호 (API-U) (사본)</li> <li>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li> <li>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li> <li>7. 최소 3개 유통업자와 각기 최소 1년 기간의 원예제품 매매계약 증빙자료</li> <li>8. 최소 1년 원예제품 유통경험 증빙자료</li> <li>9. 원예제품이 소비자 혹은 소매상에 직접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공증된 문서</li> </ol>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2년

- 인도네시아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따라,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 사전통보는 의무사항이다. 동 규정의 목적은 신선 과일 및 채소가 병충해로부터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수입하기 위해 사전통보 되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로부터의 식물검역 증명서 (Phytosanitation Certificate)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원산지국가로부터의 무해충 생산지역 확인서
- 가장 최신의 농림부 규정 No.42/Perma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을 위한 식물검역 행위 관련”은 신선 과일 및 채

소는 다음 4개의 진입항구로만 수입이 될 수가 있다.

- Surabaya, Tanjung Perak 해항
- Medan, Belawan 해항
- Jakarta, Soekarno-Hatta 공항
- Makassar, Soekarno-Hatta 해항

○ Jakarta, Tanjung Priok 항구는 WTO CRA(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협정에 합의한 미국, 캐나다, 호주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며 기타 국가는 불가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우 Surabaya, Tanjung Perak 항구를 이용해야 한다.

- '14년 1월부터 충청남도산 배는 자카르타 탄중쁘리옥(Tanjung Priok)항구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관련법규:No.13/kpts/OT.140/L/01/2014)

\* 탄중쁘리옥항구 반입시 식물위생증명서 필요.

○ IT-원예제품 수입업자는 농림부 산하 농림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에 매월 15일에 월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월간보고서에는 원예제품 수입실적에 대한 보고, 관세청 직원이 서명한 수입실적 관리카드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인삼

- 인도네시아는 인삼수입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 혹은 법규가 없다. 인삼의 형태 및 분류에 따라, 인삼은 포장식품 또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절차를 따른다.
- 인삼이 전통식물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포장식품을 관할하는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인삼이 뿌리삼의 형태라면, 신선 과일 및 채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삼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 수입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 신선, 뿌리 건삼(벌크)을 제외하면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인니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만 수입유통이 가능하다.

- 등록서류는 수입업체가 제조수출업체에 필요서류를 협조 받아 수입업체가 식약청에 직접 등록을 한다.
- 특히, 인삼은 전통약재로 분류가 되어 등록이 더 까다로우며, 최근에 2~3년 동안 인니 식약청이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업체가 다수이다.
- 따라서, 인삼등록은 대단한 능력 있는 수입업체가 식약청과 친밀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충족해야 하고, 비공식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의 등록서류이며 수출업체가 준비하여 인니 식약청의 기준에 충족 되어야 만이 가능한 사항이다.
-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요구하는 등록 서류
  - = 수입 =
  - 1. 업체의 대표 싸인이 들어간 업체 및 제품 설명서
  - 2. 무역 라이선스
  - 3. 자유 판매(CFS) 증명서 /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로부터 인정받은 제약제품의 인증(CPP)
  - 4. 우수제조설비인증(GMP)
  - 5. 제조업체의 약정문서
  - 6. 제품 등록 책임자로서 대표의 위임장
  - 7. 협력 약정서 (계약 / 라이선스 / 유통)
  - = 기술적 요구사항 =
  - 1. 세부 데이터
  - 2. 생산 방법
  - 3. 제품 코드 / 코드의 의미와 일치하는 배치
  - 4. 포장과 뚜껑 설명서
  - 5. 원재료 분석 증명서(CoA)
  - 6. 제품 분석증명서(CoA)

7. 안정성 테스트 방법과 결과
  8. 인도네시아에 승인된 보안테스트 실험실
  9.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에 대한 알코올 테스트
  10. 독성 시험
  11. 꿀을 포함하는 제품 및 파생 상품에 대한 클로람페니콜 테스트
  12. 캡슐 출처 설명서, 젤라틴 분석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할랄인증서, 회사측 설명서
- = 샘플과 포장 디자인 =
1. 원래의 라벨이 붙어 있는 샘플 (현지 OT 또는 전통약재만, 필요시)
  2. 계획된 패키지 디자인
  3. 효능/유효성 설명서, 사용규칙, 유효기간, 경고/주의, 부작용, 금기사항, 약물 상호작용

□ 유아용 조제분유

- 2011년 10월에 무역부 규정 No.24/M-DAG/9/2011 -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수출입조례 관련”이 발효가 되었으며, 동 규정에는 HS 번호 01, 02, 04 및 16류의 제품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유아용 조제분유는 - HS번호 040210, 040221, 040229 및 040290으로 분류가 되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등록 수입업자-Importir Terdaftar Hewandan Produk Hewan(IT-동물 및 동물성제품)-로 등록하여야 하며, 동 등록서는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기 위한 인가면허가 된다.
- IT-동물성제품 면허 발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INSW)를 통하여 국제무역협력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T -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신청	
요구 서류	1. 무역 등록 면허 (SIUP) 혹은 동물 및 동물성제품 분야 사업면허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 (NPWP) (사본) 4.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사본) 5. 법령에 따른 번식장 소유권 증빙자료 및 동물 보호소 소유권 증빙자료 또는 동물보호소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보호소와의 계약서 6. 냉장 저장시설 소유권 증빙자료 및 동물성제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의 소유권 증빙자료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2년, 연장 가능

- IT-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수입업자 등록 후, 수입업자는 수입계획을 가진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국제무역협력국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은 원산지국가에서의 건강증명서 발급의 근거가 되며, 검역과정에서 제출되는 건강증명서에 명시 되어야 한다.

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승인의 신청	
요구 서류	1. IT-동물 및 동물성제품 허가서 (사본) 2. 6개월에 걸친 동물/동물성제품의 수입 계획 3. 동물성제품 및 신선 동물성제품의 수입에 대한 농림부 추천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 수입승인 신청은 연간 2회(5월, 11월)의 기간에 걸쳐 접수가 된다. 수입승인서는 원산지국가에서의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건강증명서의 근거가 된다. 수입승인을 받은 IT-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입업자는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입실적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국제무역협력국, BPOM 및 농림부 축산 및 축산 건강국 등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동 월간보고서는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입승인서 사본 및 관세청 직원이 서명한 수입실적관리카드 사본 등으로 구성이 된다.

- 우유제품 수입시 검역의 목적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 원산지국가의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제품이 위생표준, 그리고,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HACCP/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요구조건의 충족 등에 관한 수의학기준의 기술조건 등의 표준을 충족한다는 건강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 위험요인분석 증명서
  - 제품원산지, 생산공정, 구성내용, 생산자/제조자 상호, 제품 유형, 유통기한, 생산관리번호, 목적 등이 명기된 제품 등록 서류
  - 벌크상태의 우유의 경우, Halal 인증서 혹은 선언서가 요구된다.

#### 제4절 **통관 제도 특이사항**

##### Product Registration (ML Number : **제품등록번호**)

- 소비자보호법 (1999) 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 (BPOM) : 국가 의약품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는다.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 ML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불만접수에 따라, BPOM은 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미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BPOM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식품제품에 대하여 임시 ML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200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1999) 시행에 들어가 수입 식품제품의 제품등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모든 수입 식품제품들은 BPOM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Makanan Luar (제품등록) 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식품의 견본 2. 해당할 경우, 라벨 (10매) 및 카타로그 3. 재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재포장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생산공장의 추천서 4. 라이센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라이선스를 보유한 해외공장의 추천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생산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법규에 따른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6. 완성된 제품등록 서류 7. 다음과 같은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 A : 식품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li> <li>- 양식 B :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그리고 포장방법</li> <li>- 양식 C :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봉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과정</li> <li>- 양식 D :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li> <li>- 양식 E :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견본의 내용</li> </ul>
신청 처리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제품은 매 5년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 BPOM에서 제품등록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Form M8을 발급한다.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신청내용은 Form M9과 함께 반려가 된다.
- 모든 제품은 BPOM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거친다. 시험검사 비용은 품목당 IDR 50,000 - IDR 2,500,000, 제품당 IDR 1,000,000 - IDR 10,000,000 에 이른다.

-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BPOM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한다.
  - Form M1 :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
  - Form M2 :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경우
  - Form M3 :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

#### □ 농수산물식품 쿼터

- 원예작물의 경우 수입 전에 먼저 쿼터 신청을 해야 한다. 쿼터 신청은 1년에 반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쿼터 신청 대상품목은 “부록”에 있다.
  - 수입업체의 쿼터 신청 기간은 년 2회로 1월 ~ 6월수입(쿼터 신청 전해 11월 1일 ~ 15일), 7월 ~ 12월수입(쿼터 신청은 당해 5월 1일 ~ 15일)으로 구분한다. \* '12년 57개 이던 쿼터 대상품목은 '13년 마늘 등 18개 품목이 축소되어 현재 39개 품목 해당
- 신청절차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 후, INATRADE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다.
- 신청서류
  - 원예품목 수입등록서 (무역부에서 발급)
  - 원예품목 수입추천서 (농업부에서 발급)
  - 수입 승인서 (무역부에서 발급)
  - 무역판매업허가증(SIUP)
  - 세무번호(NPWP)
  - 수입허가서 (API)
  - 창고허가증 (Sertifikat Gudang)
  - 차량운행증 (STNK)·차량등록증 (BPKB)
    - 원예작물의 경우, 유통된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 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유통계약서
- 어류 및 수산물 쿼터 신청 절차
  - a. 신청 서류를 지방 수산부(Dinas Provinsi Perikanan)에 신청하여 추천서 발급

- b. 해당 추천서를 해양 수산부(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에 쿼터 신청
  - \* 쿼터 신청 시에 생선 그림과 수입량을 기재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 c. 신청서류
  - 시장(구장)의 추천서
  - 무역등록증(TDUP), 생선 임시 검역증(IKIS), 세금공제서(SKP)  
무역판매업허가증(SIUP), 세무번호(NPWP)
  - 레스토랑 및 호텔에서의 주문내역서
  - 자카르타 주정부 추천서
  - 해양수산부에서의 수입승인서
- d. 대상품목
  - 어류 및 수산물 모든 품목
  - \* 특히 한국에서 수출유망품목인 김, 미역 등이 쿼터에 묶여 있다.
- e. 쿼터 허가 후 6개월 내에 쿼터를 받은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

#### □ 신선농산물 수입 시 필요서류

##### ○ 관련 법령

- 신선농산물 수입에 대한 무역부장관령 2013년 제 16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6/M-DAG/PER/4/2013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hortikultura (nomor 16/M-DAG/PER/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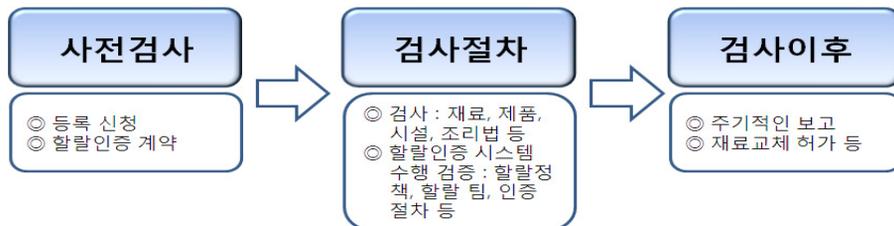
##### ○ 주요 내용

- 수입 작물에 대하여, 작물을 신선 과일, 야채, 약재, 수생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작물 수입은 무역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 기술적 검증기준에 따라 원산지의 선적항에서 확인 된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가능.
- 필요서류
  1. 원산지 와 선적항
  2. HS코드
  3. 종류와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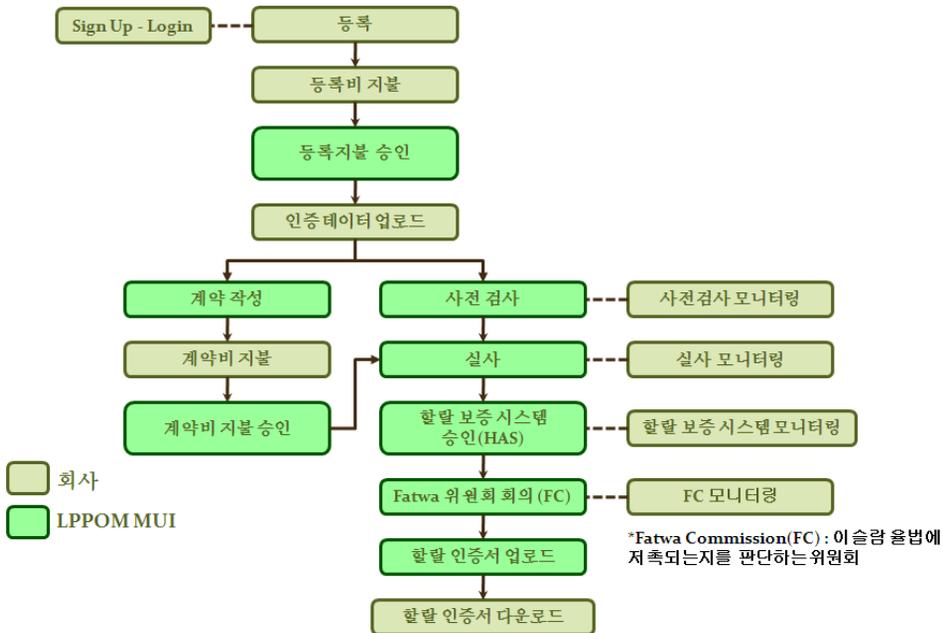
4. 선적시간
5. 선하장소
6. (포장된 경우) 식품정보 와 포장재질 정보
7. **위생증명서 (Sertifikat kesehatan ) (수출국에서 발급)**
8. 신선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
9.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10. 실험증명서

**□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비정부기관인 MUI의 부속기관인 LPPOM MUI에서 발급
  - LPPOM MUI는 중앙기관과 33개의 지역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할랄 인정 범위
  -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완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MUI 할랄 부착만 허용하고 있다.
  - 원재료의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관(LPPOM MUI)에서 인정하는 해외 41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이어야 한다.
    - \* 한국이슬람중앙회(KMF)의 LPPOM MUI 인정 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다.
  - 그 할랄 인증을 발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인정한다.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에 할랄 라벨 부착은 권고사항으로 할랄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 58-4에 의거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 할랄인증 절차



- 온라인 할랄인증 절차



- 할랄인증 필요서류

- 할랄보증시스템 자체 매뉴얼
- 할랄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 차트
-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
-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  
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
- 제조공장 정보
- 제품 및 원료 정보
- 원재료 공급업체 정보

- 할랄인증 비용 및 기간

- 제품/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품목별 1~5 백만 루피아 (약 1십만원~5십만원)

\* 할랄인증 실시단 교통/숙박비도 할랄인증 신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 할랄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또한 제품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1 ~ 2개월 소요된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랄인증 등록시 약 2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할랄인증을 받을 경우 신청비 및 컨설팅 비를 포함하여 약 2천만원 ~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 MUI할랄 로고 및 인증서

 <p>XXXXXXXXXXXXXXXXX (할랄인증번호)</p>	
<p>MUI 할랄 로고</p>	<p>MUI 할랄인증서</p>

□ LPPOM-MUI가 인정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 등록요건 및 절차

- 1 WHFC(세계할랄식품위원회)의 회원(멤버)이 되어야 한다.
- 2 ISLAM SOCIETY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 3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관리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 Syariah(이슬람율법)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 6 할랄인증을 위한 전문 감사가 있어야 한다.
- 7 사기업이 아닌 한국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는 공식기관이어야 한다.

## 제5절 기타 관련 법규

### □ 우유 및 유제품 수출요건

#### ○ 유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요건

- 인도네시아로 유제품 수출 시, 제품시험 테스트, 인수공통감염병(예: 구제역), 검역, 식품안전인증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함.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사업체로 HACCP 및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 1) 기술적인 요건

- a. 브루셀라증,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무해한 축산에서 생산된 원료이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b. 최소한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에 따라 미생물 및 찌꺼기 오염에 대한 시험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c. 미생물균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d.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방부제 및 중독성 약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e. 우유 및 유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HACCP 및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함.

#### 2) 수출업자의 요건

- 우유 및 유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회사 및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a. 법인설립허가증(SIUP) 사본
  - b. 법인납세번호(NPWP) 사본
  - c. 사업자등록증(STDP) 사본
  - d. 일반업자수입인증번호(APIU) 사본
  - e.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 f. 회사 정관 사본 및 변경사항
  - g. 축산, 검역, 수의과, 국민건강 분야 지방정부기관의 추천서 사본
  - h. 축산물이력번호(NKV) 사본

- I. 건강안전 증명서 사본
- j. 원산지 증명서 사본
- k. 검사분석결과 증명서 사본
- l. 할랄인증서 사본
- m. 청구서 사본
- n. 작성한 현황문서 (이전에 수출경험이 있는 경우)

#### □ 유제품 수입업체 요건

- 가공식품(축산물의 부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동봉하여 전자 행정 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함.
  - a. 회사정관;
  - b. 사업승인서 (SIUP) 또는 축산 위생 사업허가
  - c. 사업자 등록증 (TDP);
  - d. 수입등록번호 (API);
  - e. 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장의 소유 혹은 도축장과의 계약 증명
  - f. 창고 (냉장창고) 와 가공식품 운송 수단의 소유·임차의 증명

#### □ 유제품 분류에 대한 정의

- 01.0: 카테고리 02.0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유제품
- 01.1: 우유 및 우유를 원료로 한 음료
- 01.2: 발효 우유 및 Produk Susu Hasil Hidrolisa Enzim Renin (카테고리 01.1.2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 01.3: 연유 및 이와 유사한 것
- 01.4: 생크림 및 동종제품
- 01.5: 우유분말가루, 생크림분말가루 및 이와 유사한 것
- 01.6: 치즈 및 이와 유사한 것
- 01.7: 우유를 원료로 한 디저트 식품 (예, 푸딩, 요거트, 과일첨가 요거트)

01.8: 유장\* 및 유장 제품 (유장 치즈 제외)

\*유장: 젓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빼고 남은 맑은 액체

- 유제품으로 우유, 생크림, 버터밀크, 치즈, 유장 등이 있으며, 유제품은 젓소, 물소, 말, 염소, 양 등 가축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원료로 합니다.
- 보통, 우유를 함유하는 음료는 우유 함유량이 5% 미만으로 음료로 분류됩니다.
- 일반적인 유제품 분류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제품	유지방 함량(%)	탈지유 총 밀도(%)	기타
일반 우유	3% 초과	8% 초과	
무지방 우유/탈지우유	1.25% 미만		단백질 함량 2.7% 미만
저지방 우유	1.25~3% 미만		단백질 함량 2.7% 초과
합성착향료 성분을 함유한 우유	2% 초과	12% 초과	
우유성분을 함유한 음료	0.3% 초과		
요거트	3% 초과	8% 초과	젓산 0.9% 초과
저지방 요거트	1.25~3% 미만	8% 초과	젓산 0.9% 초과
무지방 요거트	1.25% 초과	8% 초과	젓산 0.9% 초과
연유	8% 초과		
크리머 음료(非우유)-액상 형태	3.25% 초과	8.25% 미만	
크리머 음료(非우유)-분말 형태	26% 초과		액상함량 5% 미만
휘핑크림	35% 초과		

## 제6절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 □ 인증 개요

- 인증명칭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 법적근거 : 대통령령 2000년 제 102호
- 분류
  -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한다.
  - 품목의 SNI 리스트 포함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 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 SNI 인증 마크



### □ 인증 절차 및 기준

- 인증 절차
  - 1) SNI 인증 신청
    - LSPro(Product Certification Bodies)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인증 비용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함. 단, 인허가 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2) LSPro의 심사
    - 우선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고 관련 서류가 완비됐는지 서류 심사 후, LSPro

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한다.

-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된다.
- 신청 회사가 해외에 소재할 경우 실사 담당관의 교통비와 체류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 3) Sample Test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SUCOFINDO 등과 같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한다.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 4)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된다.

#### ○ 인증기준 : 국제표준 ISO 9000과 유사하나 품목별로 상이

- SNI인증 필요서류
  - 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
  - 타 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서(있는 경우)
  - 기타 인증기관 요구서류

#### □ 소요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된다.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 소요비용
  - 신청 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만약 2명의 검사관이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박 3일 기준 순수 행정비용 (항공료, 일당, 식대 등 제외)만 약 5,000만 루피아(약 500만원)가 소요되며 실사 담당관의 교통비(항공료)와 체류비용 또한 신청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 Ⅰ SNI인증 비용 Ⅰ

구분	유형	단위	금액(루피아)
1	신청비	Per request	1,350,000
2	타당성 검사를 위한 평가자 비용		
	a. 일반 품목(특정 품목 이외)	Per request	1,800,000
	b. 특정 품목(열간압연 강재, 냉간압연 강재)	Per request	3,600,000
3	타당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자 비용		
	1. 샘플링을 위한 평가자 비용		
	a. 평가 팀장	Per person/day	5,400,000
	b. 평가자	Per person/day	4,050,000
	c. 전문가	Per person/day	3,600,000
	d. 샘플링 직원(SNI 마크와 제품 인증)	Per person/day	2,700,000
	2. 평가팀장, 평가자, 전문가, 샘플링 직원 일일 서비스 비용	Per person/day	1,800,000
4	인증 처리비		
	a. 기술 위원회	Per request	1,125,000
	b. 평가 위원회	Per request	1,575,000
	c. 인증 처리	Per SNI	1,800,000
5	제품 인증 기관(LSPro)		
	a. Package A(유효한 ISO9000인증을 보유)	Per company	10,000,000
	b. Package B(ISO 9000인증 미보유)	Per company	13,500,000
	c. 감시	Per company	4,500,000
6	SNI 주선을 위한 상담비	Per arrangement	4,500,000

출처 : LSPro

## □ 시행배경 및 경과

- 당초 SNI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해 생산자의 품질 혁신을 도모하고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 대통령령 2000년 제 102호 12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Mandator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007년 7월 1일부터 총 39개 품목에 대해 동 통관 강제제도를 시행한 이래, 2008년 8월 13일에 4개 제품군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으로 늘렸고, 2009년 1월 7일에는 열연코일과 갈바륨 합금강 등 철강재 제품군을 추가해 총 44개 제품군으로 확대하였다.
- 식음료 제품군 중 밀가루는 2008년 산업부장관령 제49호(이후 2011년 산업부장관령 제35호 발효), 카카오가루는 2009년 산업부장관령 제45호(이후 2010년 산업부장관령 제60호 발효), 펄트병생수와 미네랄워터는 2012년 산업부장관령 제49호, 백설탕은 2013년 농업부장관령 제68호에 의해 의무인증 등록 제품군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산업부 및 농업부장관령)
- 2014년 4월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 2015년 6월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인스턴트커피를 강제인증 리스트에 추가 적용할 예정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 인스턴트커피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인스턴트 커피 수입은 2012년 대비 15.01% 증가한 8천 백 만 달러를 기록했다.

□ **관련기관**

- 1)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한다.
  - 주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floor, Jl. Jend. Gatot Subroto,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 팩스: +(6221) 5747045
  - 이메일: tbt.indonesia@gmail.com, tbt.indonesia@bsn.go.id
- 2)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8개에 이르며 인증기관 목록은 <http://sisni.bsn.go.id/index.php/?lembsert/inspeksi/publik/1/X9/X9/1/X9/X9>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각 기관마다 인증 가능한 품목들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다.

실험인증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62-21-798-3666 / Fax: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62-21-5794-4579 / Fax: 62-21-5794-4575

## □ 최근동향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2014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강제인증 리스트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이 포함.
-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SNI 인증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 수출/수입 기업 애로사항 및 시사점

-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해 실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신청업체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 강제인증품목의 경우 SNI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입이 불가하고 인증 취득 후 수시검사에서 SNI 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 사업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 SNI 강제인증제도는 자국산 생산제품의 보호를 위해 품질기준이라는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선 현지 진출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가장 신속하게 표준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시간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므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SNI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 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제7절 통관실무 우수사례

- 식품의 수입절차는 대체적으로 간단명료하나 수입절차 전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규정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모두 자료내용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작은 누락 혹은 오류들이 수입절차의 상당한 지연 또는 물품의 통관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올바른 파트너의 선정
  - 인도네시아 수출희망업체들이 경험 있는 인도네시아 수입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비-인도네시아의 수출자들이 원활한 수입절차를 수행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지적이 된다. 수입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영어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 경험 있는 인도네시아 수입자들은 초기 등록 및 통관 등의 과정에서 수입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 해줄 수가 있다. 이미 등록된 수입업자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수입절차는 최대 1개월 정도 단축 되며 통관절차도 신속하다.
  
- ML 번호의 조기 등록
  - ML번호 등록의 과정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수출자 모두 최대한 단시간 내에 ML 번호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BPOM의 관리에 따르면, ML 번호 등록이 전체 수입절차의 가장 큰 병목사안이며, 인도네시아에 제품이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관세청 지역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한 ML 번호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업자들은 ML 번호의 등록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제품의 속지
  - 수출자 및 수입업자가 자신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하여 고도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을 기재하면 상당한 금액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 제품신고를 잘못하여, 수입관세의 납부에 오류를 일으킨 수입업자/수출자에 대하여서는 전체수입관세의 최소 100%, 최대 500%에 달하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 제8절 자료 출처

### 1. 법안

관계 법령	
UU 03/1982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3 (1982) - 기업 의무 등록제
UU 05/1984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5 (1984) - 산업 전반
UU 10/1995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0 (1995) - 관세 법령
UU 07/1996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7 (1996) - 식품
UU 08/199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8 (1999) - 소비자 보호
UU 31/2004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31 (2004) - 수산업
UU 17/2006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7 (2006) - 인도네시아 관세 법령 개정
UU 25/2007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25 (2007) - 투자
UU 36/200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36 (2009) - 건강
UU 18/200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8 (2009) - 축산

### 2. 규정

#### □ 관세청 발표

- 관세청장 조례 No.KEP-22/BC/1997 - 관세 신고금액 산정 양식 및 절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32/BC/1997 - 관세청 수입신고서 (PIB) 제출 이전의 관세 신고금액의 승인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68/BC/2003 - 수입분야의 관세업무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14/BC/2005 - 우선순위 통로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01/BC/2006 - 수입분야 관세절차 지침서 조례 No.KEP-07/BC/2003에 관한 3번째 개정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SE-06/BC/2007 - 수입제품의 실물검사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36/BC/2007 - 수입업자 등록절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03/BC/2008 - ASEAN-한국 자유무역지대 (FTA) 의 틀 내에서의 수입관세율 표시에 관한 기술지침서
- 관세청장 조례 No.P-01/BC/2009 - 수입제품의 인도에 대한 지침서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05/BC/2009 - 관세청 등록번호의 시행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30/BC/2009 - 관세청에의 수입통보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ER-50/BC/2011 - 보세창고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ER-57/BC/2011 - 보세구역 관련

#### □ 무역부 발표

- 무역부 규정 No.54/M-DAG/PER/10/2009 - 수입산업분야의 일반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46/M-DAG/PER/9/2009 -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 무역부 규정 No.17/M-DAG/PER/3/2010 -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규정 No.45/M-DAG/PER/9/2009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141/MPP/KEP/3/2002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관련
- 무역부 규정 No.07/M-DAG/PER/3/2008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규정 No.141/MPP/KEP/3/2002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28/M-DAG/PER/6/2009 - 인도네시아 National Single Window (국가단일창구) 내 INATRADE를 이용한 전자시스템을 통한 수출입허가 서비스와 관련

- 무역부 규정 No.56/M-DAG/PER/12/2008 - 특정 제품의 수입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23/M-DAG/PER/5/2010 - 특정 제품의 수입조례 규정 No.56 /M-DAG/PER/12/2008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 제품의 수입 관련
- 무역부 규정 No.52/M-DAG/PER/12/2010 - 인도네시아 영내로의 특정 종류의 새우의 수입금지와 관련
-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의 수입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24/M-DAG/PER/9/2011 -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출입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 46 / M-DAG / PER / 6/2013 - 동물 및 동물제품의 수출입 관련

기타 정부기관 발표

- 해양수산부 장관령 No.PER.15/MEN/2011 - 인도네시아에 진입하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 관련
- 해양수산부 장관령 No. 46/Permen-KP/2014
- 해양수산부 규정 No. 52A/KEPMEN-KP/2013
-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 - 인도네시아에 과일 및 신선 채소과일을 수입하기 위한 식물검역행위에 관한 기술요구서 관련
- 식약청 규정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5 Tentang Kategori Pangan

## 제2장 검역 제도

### 제1절 검역 일반사항

-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입,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이다.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이다. 추가로,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 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반입 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의 검역절차 ■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한다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되어질 수가 있다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된다
처리	검역대상의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처리가 된다 : 1.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역류	인도네시아에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역류가 된다.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한다.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은 거부가 된다 : 1. 검사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3. 역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폐기	다음의 경우, 제품은 폐기가 된다 : 1.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3.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4. 운송수단에서 하역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인도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가 된다.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 발급이 된다.

○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제출 또는 작성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른다. 일부의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1.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2.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3. 화물하역 승인서

4. 훈증 증명서
5. 소독 증명서
6. 식물 검역 증명서
7.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8.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 제2절 품목별 검역정보

### 1. 일반 포장 식품의 검역절차

- 일반 포장 식품에 대한 검역제도는 없다.

### 2. 수산물의 검역절차

- 해양수산부는 산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산제품의 검역제도를 관장한다. 가장 중요한 법안은 인도네시아 법안 No. 15 (2002) - “수산물의 검역”의 법안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법안 및 규정에 따라, 수산제품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다.

#### Step 1

- 도착 후, 수입업자는 선적된 화물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서류들을 진입항의 검역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tep 2.

-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게 검역검사를 요청한다.

####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의 완벽성을 검토한다 :

1. 수산제품의 수입허가
2. 검역청장 명의로 발급된 수산물 검역내용의 지시서 (사본)
3. 원산지의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수산검역분야의 건강 증명서 또는 수산품질분야의 건강 증명서
4. 원산지 국가의 적법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C/O)
5. 수입되는 수산제품이, 수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미생물 오염, 잔류물질, 오염물질, 유해물질 등의 오염이 없고, 냉동상태에서 순중량이 최소 95%를 충족하고 있다는 원산지국가의 시험성적서.
6.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설명서
7. 수산제품 양식에 관한 GAP 증명서

#### Step 4.

- 서류가 구비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담당관은 서류보완지시와 함께 관세지역에서의 실물조사의 기일을 최대한 3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수입제품에 대한 서류확인 및 실물조사가 완료된 이후, 진입항구로부터 운송을 인도한다는 승인서가 발급 된다.

#### Step 5.

- 검역담당관은 검역행위를 검역시설에서는 3일간, 인가된 실험실에서의 품질시험은 10일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한다. 검역담당관은 수산제품 견본이 검역시설에 입고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료채취를 하여 검역행위를 수행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인증협약 (MRA) 혹은 양해각서 (MoU)에 따라 한국 수출자에 대한 임상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1%이다.

#### Step 6.

- 검역담당관이 진입항구로부터의 화물인도증명서 (KI-D15)를 발급하는 것으로 검역절차는 종료가 된다.

### 3.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검역절차

-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절차는 인도네시아 법안에 설명된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하다. 인도네시아 법안 No.14/2002 - “식물 검역”이 현재 까지 가장 종합적인 지침서이다.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된다 :

#### Step 1.

-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7일 이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입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들은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체 금액
  2. 제품의 유형
  3. 생산지역 및 상표
  4. 운송수단
  5. 목적적/경유지 항구
  6. 포장재의 종류
  7. 컨테이너 번호

#### Step 2.

- 수입업자들은 진입항구의 검역담당관에게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도착을 보고하고, 실물을 인도한다. 농림 검역담당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 (KT 2)를 발급한다.

####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확인 한다.
  1. 식물, 종자 진입 허가서
  2. 식물 건강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서
  4. 운송수단의 도착 계획
  6. 화물 목록

7. 선하증권 (B/L)
8. 항공화물운송장 (AWB)

#### Step 4.

검역담당관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식물방해생명체 (OPTK) 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물의 상태에 대한 의료검사 및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OPTK가 인도네시아 영내에 진입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Step 5.

검역담당관은, 수입된 신선 과일 및 채소가 OPTK 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 장의 section 1에 나열된 표준 검역통관절차를 수행한다.

#### Step 6.

수입업자는 검역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 Step 7.

검역담당관은 미-감염/미-오염 증명서 (KT 9)을 발급하여, 제품을 인도한다.

## 4. 인삼의 검역절차

신선 인삼의 검역절차는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하다.

## 5. 유아용 조제분유의 검역절차

유아용 조제분유의 검역절차에 관한 규정은 농림검역사무소장 조례 No.436.a/KPTS/PD.670.320/11/07 - “우유 및 우유제품의 동물성제품에 관한 검역항목 및 절차”를 따른다.

#### Step. 1

수입업자는 화물도착 최소 2일 이전에 검역담당관에게 화물의 도착을 알리는 통보서를 제출한다.

**Step. 2**

화물도착 통보서와 함께,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서 검역조사 요청서를 제출한다.

**Step. 3**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1.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기관에 의하여, 제품이 위생과 관련된 표준요건을 충족하고, 건강한 동물을 확인하는 축산의 기술요건을 충족하고, HACCP/GMP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강 증명서 또는 위생 증명서
2. 원산지 증명서
3. 위험요인 분석 증명서
4. 동물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API 및 IP 수입 허가서
5. 원산지, 생산공정, 성분, 생산자/제조자의 상호, 제품 유형, 유통기한, 생산번호, 목적 등이 표시된 제품 등록서
6. 우유 또는 크림이 인가된 처리공장에서 이슬람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었다는 Halal 증명서 (또는 유사 증명서)

**Step. 4**

검역담당관은, 서류상의 하자 또는 위반 내용이 없으면, 실물조사를 수행한다. 실물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우유 수송의 codex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송수단의 검사
2. 포장 검사
3. 포장 온도 검사
4. 적재 방법
5. 봉인 및 라벨
6. 분유의 실물 조사

**Step. 5**

검역담당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실험실 분석을 수행한다 :

1. organoleptic (감각기관) 시험

2. 우유의 원산지국가가 희귀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검역담당관은 실험실 분석을 수행한다.
3. 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의 잔류량 시험

**Step. 6**

모든 시험과 분석들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검사관들이 이상없음 소견을 내면, 검역담당관은 물품인도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절 자료 출처**

법안

근거 법령	
UU 16/1992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UU 10/1995	인도네시아 법안 No.10 (1995) - 관세법

농림부 규정

- 농림부 규정 No.469/KPTS/HK.310/8/200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식물 및 종자의 수입과 관련된 검역행위 기준 관련 규정 No.38/KPTS/HK.310/1/1990의 부속서 III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206/KPTS/TN.530/3/2003 - 동물 검역 질병의 분류 및 병원체 전달경로의 분류
- 농림부 규정 No.103/KPTS/HK.060/M/2/2004 - 식물검역행위의 양식 및 서류의 종류
- 농림부 규정 No.508/KPTS/PD.520/8/2004 - 식물검역항목 해충의 종류 및 전염경로

- 농림부 규정 No.38/KPTS/HK.060/1/2006 - 식물검역 분류 A1 및 A2의 Group I 및 분류 A1 및 A2 의 Group II의 방해 생명체의 유형 및 숙주 식물, 전염 경로, 분포지역 등
-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 - 인도네시아 영내로의 과일 및 신선 과일채소의 수입에 관한 식물검역행위의 기술표준
- 농림부 규정 No.05/Permentan/HK.060/3/06 - 개인 및 기관의 소유인 식물 검역소의 설치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271/KPTS/HK.310/4/2006 - 제3자에 의한 식물검역행위의 수행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34/Permentan/OT.140/7/2006 - 동물 검역소의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5/2006 - 진입 및 진출 장소 이외에서의 식물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52/PERMENTAN/OT.140/10/2006 - 식물 검역항목의 추가
- 농림부 규정 No.51/KPTS/OT.140/10/2006 - 검역된 동물의 질병의 검사, 관찰 및 치료에 관한 내부적 업무관계도에 관한 지침서
- 농림부 규정 No.62/Permentan/OT.140/12/2006 - 병원균 물질 및 축산의학 생물학시료 유형의 진입에 관한 관찰 및 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알뿌리)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
- 농림부 규정 No.09/PERMENTAN/OT.140/2/2009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해충 전염경로 식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12/Permentan/OT.140/2/2009 - 인도네시아 역내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행위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37/Permentan/OT.140/7/2009 - 식물검역처리 및 선적전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 취화메틸을 함유하고 있는 살충제의 사용 관련
- 농림부 규정 No.46/Permentan/HK.340/8/2010 - 검역 동물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물체의 전염경로 해충 및 질병의 진입 및 확산위치 관련
- 농림부 규정 No.56/Permentan/OT.140/9/2010 - 진입 및 확산위치 이외의 장소에서의 식물검역조건의 수행 관련
- 농림부 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89/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에 관한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94/Permentan/OT.140/12/2011 - 검역 동물 질병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명체의 전염경로 진입 및 확산위치
- 농림부 규정 No.16/Permentan/OT.140/3/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 대한 개정규정인 농림부 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15/Permentan/OT.140/3/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대한 개정규정인 농림부 규정 No.89/Permentan/OT.140/12/2011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43/Perme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layer 뿌리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42/Permentan/OT.140/6/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신선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

## □ 해양수산부 발표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7/MEN/2003 - 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 분류, 감염경로, 전파방법 등의 확인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6/MEN/2003 - 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의 진입 및 진출 항구의 지정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8/MEN/2003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검역항목 해충 및 수산물 질병 전염경로의 수입 및 역내의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34/MEN/2003 - 수산물 검역의 건강증명서 및 수산제품의 품질 및 위생 건강증명서의 발급 인가 기관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55/MEN/2004 - Sumatra지역의 일반 Carp 및 Koi (잉어류) 검역대상지역 선포서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4/MEN/2005 - 수산물 검역행위의 서류 양식, 형태, 발급방법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3/MEN/2005 - 제3자에 의한 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5/MEN/2005 - 검역항목 해충 및 수산물 질병 감염경로의 수출과 관련된 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10/MEN/2012 - 수산물 검역 추가 의무사항

## □ 기타 정부기관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82/2000 - 동물 검역 관련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14/2002 - 식물 검역 관련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15/2002 - 수산물 검역 관련
- 무역부 규정 No.51/M-DAG/PER/12/2007 - 검역 및 선적전 사용을 위한 취화메탈의 수입 관련 조례



## 제3장 관세제도

### 제1절 제품별 관세율

-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일반 관세율 평균은 37.1%이었으며,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평균은 6.8%이었다.
- 인도네시아는 수시로 적용 관세율을 변경한다. 2009년 및 201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경쟁하는 여러 유형의 제품에 대한 적용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여기에는 화학, 전자제품, 전기 및 비-전기 밀링기계, 화장품, 의약품, 철선, 와이어못 이외에 우유제품,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과일 주스, 커피, 홍차 등의 다양한 농산물들이 포함 되었다.
- 농산분야에서는 1,300여 제품들은 40% 이상의 고정관세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 감자의 관세율은 고정관세율이 50%이며, 적용관세율이 20%이다. 이러한 고정 및 적용 관세율의 큰 편차 그리고 적용 관세율의 임의성 등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려는 많은 외국기업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 □ 포장 식품

- 포장식품에 관한 HS분류체계의 상이성으로 포장식품에 대한 통일된 관세율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코렛 및 사탕류에 대한 평균 MFN 관세율은 가장 높은 7.1%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제품들은 약 5%대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AKFTA의 존재로 많은 한국계 포장식품 업체들은 수출제품에 대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다음은 주요 포장식품 제품에 대한 관세율 표이다.

■ 표1 : 포장식품 관세율 ■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70490	설탕 사탕류, 코코아 미포함	10%	0%
190230	즉석 면	10%	0%
220290	기타 비알콜성 음료, 포장	5%	0%

#### □ 수산물

- 수산물은 2011년도에 MFN 평균 관세율이 5.8%이었으며, 최고 관세율은 15%이었다. AKFTA에 따라 대부분의 HS번호 03류의 수산제품들이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정어리, 참치, 랍스터 등의 일부 제품들은 5%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 다음은 일부 수산제품의 관세율 예시이다.

■ 표2 : 수산제품 관세율 ■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21220	해조류, 신선 또는 건조, 분말 또는 생	5%	0%
200899	과일 및 식물의 기타 식용가능 부분	5%	0%

(주 : Euromonitor 담당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분류법에 따라 해조류는 “식물의 식용가능부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조류는 HS번호: 2008류에 해당이 된다.)

#### □ 신선 과일 및 채소

- 2011년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MFN 평균 관세율은 5.9%이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장 높은 MFN 관세율은 25%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 다음은 주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관세율 표이다.

【 표3 : 신선 과일 및 채소 관세율 】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081110	딸기	5%	0%
080810	사과	5%	0%
080830	배	5%	0%
080610	포도	5%	0%
080590	감귤류, 신선 또는 건조	5%	0%
070959	버섯, 신선 또는 건조	5%	0%
0703102900	기타 골파류	20%	0%
0706101000	당근	20%	0%
0804502000	망고	20%	0%
0805200000	만다린 귤	20%	0%

□ 인삼

【 표4 : 인삼 관세율 】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21190	제약, 향수,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식품 및 식물부분 (씨앗 및 과실 포함)	5%	0%
121120	기타 건조 인삼뿌리, 절단 및 미절단, 분쇄 혹은 분말	5%	0%
200599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	5%	0%
300490	중국식 의약품, 기타성분, 소매를 위해 일정 분량으로 권장 또는 포장되는 제품	5%	0%
130219	기타 식물 즙 또는 엑기스	5%	0%

□ 유아용 조제분유

다음은 유아용 조제분유의 관세율 표이다.

【 표5 : 유아용 조제분유 관세율 】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90110	유아용 식품, 소매용	5%	0%
040210	분말, 과립 및 기타 고체형태, 지방분이 전체중량의 1.5% 미만	5%	0%

□ 주 류

- 2015년 7월 23일 부터 알코올도수 80%미만의 수입주류의 관세를 150%로 일괄 적용하였다.

-이 전-

종 류	도 수	리터당 관세	
		국내산	수입산
A	~ 5 %	13,000RP	13,000RP
B	5 ~ 20 %	33,000RP	44,000RP
C	20 % ~	80,000RP	139,000RP

- 한국산 소주의 경우는 단가가 낮아 오히려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제2절** 수입관세 인상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발표하였다.
- 식료품을 중심으로 미용제품, 옷, 가방, 냉장고,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등 국내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상되었다.
- 인도네시아의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기록으로, 정부는 이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가계소비 위축 때문이라 판단, 따라서 수입품 관세를 인상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커피의 수입관세는 기존 5%에서 20%로 15%p 증가하고 가공육은 5%에서 30%로, 의류와 장신구는 10%에서 12.5%~15%로 인상되었다.
- 가장 큰 변화는 수입주류 제품군으로,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는 기존(30%)의 5배인 150%로 인상됨. 즉, 알코올도수 80%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를 적



용하였다.

- 이번 수입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11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0호’에 근거하며, 7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 품목별 인상된 관세항목 부록 4) 참조

### 제3절 자료 출처

#### 1. 법안

관계 법령	
UU 10/1995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0 (1995) - 관세 법령

#### 2. 규정

##### 관세청 발표

- 관세청장 조례 No.KEP-22/BC/1997 - 관세 신고금액 산정 양식 및 절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32/BC/1997 - 관세청 수입신고서 (PIB) 제출 이전의 관세 신고금액의 승인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03/BC/2008 - ASEAN-한국 자유무역지대 (FTA) 의 틀 내에서의 수입관세율 표시에 관한 기술지침서

##### 재무부 규정

-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5년 제10호





## 제4장 라벨링제도

### 제1절 일반사항

- 식품 라벨링은 규정 No. 69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2010년에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BPOM은 관세청 회람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1999)에 따라, 식품 라벨링은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품의 명칭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등록번호 성분표 혹은 성분 목록
  - 제품의 유통기일
  - 생산일자 혹은 생산번호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이 된다.
  
- 식품 라벨링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 소비자 보호법(1999)은 오해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일반 금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동 금지조항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기업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관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halal”을 표기하고자 하면 동 내용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halal인증기관이 발급한 Halal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 목록은 halal-인증기관을 3개의 분류로 구분 한다.
    - 소 도축 halal 인증
    - 가공산업 halal 인증
    - 향신료 halal 인증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어가 포함이 된 라벨링 견본을 국내교역국에 제출하고 라벨링 견본이 승인이 되면, 5 근무일 이내로 라벨링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

## 제2절 표시방법 유의점

- 포장식품 라벨링 요구조건
  - 식품라벨링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여 제품의 유형에 따라 라벨링 요구조건이 상이하다. 라벨링 요구조건은 소매목적의 포장식품에만 해당 되며 다량 구매 혹은 업소/기관용 식품제품은 방사선조사 및 식품첨가제의 규정만 적용 받는다.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제품의 영양소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소 라벨링은 규정 No.62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의 적용을 받는다.
  - 영양소 정보표시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제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에 기초한 전체 에너지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

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총량

- 건강혜택에 관한 주장은 제품의 성분 및 일상적 일일 섭취량에 근거해야 하며, 암시적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영양 및 건강 홍보 문구는 영양소 주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영양 내용 : 제품의 1회 섭취량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최소 5%를 포함할 경우
- 낮은 칼로리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저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40kcal 이하인 경우
- 무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5kcal 이하인 경우
- 단백질 증강 : 제품의 칼로리량 중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1회 섭취량에 최소 10 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 낮은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3 그램 이하이거나, 1회 섭취량이 50 그램 이하일 때 총 50 그램의 경우
- 무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포화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1 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5% 미만일 경우, 또는, 스넥 혹은 음식제품의 100 그램당 포화지방이 1 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0% 미만의 경우
- 적은 포화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무 포화지방 : 제품이 100 그램/100 ml 당 포화지방 함량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콜레스테롤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25% 이상 적고,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 그램 이하일 경우
- 저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0 밀리그램 이하 이고, 포화지방 함량이 2 그램 이하이거나, 또는, 1회 섭취량이 50 그램 이하일 때 총 50 그램의 경우

- 무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 밀리그램 이하일 경우
- 건강홍보문구는 적절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가능성 주장만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건강 표시 사례	
허용되는 표현 칼슘은 튼튼한 뼈 및 치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신체조직의 발달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 철은 적혈구 형성의 요인이다 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허용되지 않는 표현 자연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은 건강 및 활력을 향상 시켜준다 아동 및 유아용 DHA 함유 식품은 뇌세포 및 지능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 간장은 IQ를 향상시킨다

-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품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돼지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 (돼지고기 함유) 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가당 연유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붉은 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 (주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 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알콜 음료의 경우, 라벨링에 “MINUMAN BERALKOHOL,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 (21세 미만 및 임신부에 의한 사용 금지)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 방사선 조사된 포장식품은 “RADURA: PANGAN IRADIASI” (방사선조사 식품)의 문구, 방사선조사의 이유 및 해당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방사선시설의 상호 및 주소, 방사선조사의 년월 및 방사선조사가 실시된 국가 등의 정보도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식품이 재-방사선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라벨링에는 “TIDAK BOLEH DIRADIASI ULANG” (재-방사선조사 불가) 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 유전자 조작으로 발생된 식품은, 라벨링에 “PANGAN REKAYASA GENETIKA” (유전자조작식품)의 문구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 식품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표준을 충족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포장재에 “Halal”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 수산물의 라벨링 요구조건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산제품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다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라벨링 요구조건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다

#### 인삼의 라벨링 요구조건

인삼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조건은 없으나 생산자가 인삼제품의 영양소내용을 표시하고 싶다면 영양소 정보 라벨링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요구조건

유아용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이 모유를 대체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추가적으로, 영아용, 5세 미만의 아동, 임신 혹은 수유 중인 여성, 특수 식단, 노인,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 등을 위한 가공식품에는 1회 섭취량의 크기, 사용 방법, 지시 사항 및 식품의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으나 생산자가 인삼제품의 영양소내용을 표시하고 싶다면 영영소 정보 라벨링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올바른 라벨링 사례

라벨링 사례 : 과일 주스

1. 제품 명칭
2. 성분
3. 용량
4. BPOM 등록번호
5. 수입자
6. 영양소 정보
7. Halal 인증
8. 유통기한



## 제3절 포장

## 1.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 HK.00.05.1.55.1621

- 동 규정은 식품포장에 허용 또는 금지되는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BPOM 청장은 2009년 4월에 식품 포장 재료의 수입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승인된 식품 포장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 포장의 규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산업규정 혹은 실무지침은 없으며 중량 및 척도의 단위로는 미터법이 사용된다.
- 식품법(1996)에서 규제되는 포장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자는 금지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2. 판매를 위한 식품의 포장에는 부패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식품의 포장에서 금지되는 포장재료 및 방법 등을 정의한다.
  4. 포장 재료의 인체건강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의 포장 재료는 안전검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재질의 포장 재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식품의 포장 재료로 사용 될 수가 있다.
  5. 소형포장을 목적으로 하는 벌크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의 개봉 및 재포장은 금지가 된다.

## 제4절 자료 출처

### BPOM (의약식품관리청) 발표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3.1.23.06.10.5166 - 의약, 전통의약, 보조식품, 식품의 라벨링에의 특정 물질, 알콜 함량 및 유통기한 정보의 표시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2.6291 - 식품제품 영양소 라벨링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2.4321 - 식품제품 라벨링 일반 규칙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1142 - 식품제품 라벨링에 영양소 충분성, 백분율 표시의 표기

### 관세청 발표

- 관세청 규정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의 확인
- 관세청 규정 No.P-35/BC/2007 - 면세점 판매제품의 관리 등록 라벨링 규정 No.P-23/BC/2007의 1차 개정
- 관세청 규정 No.P-23/BC/2007 - 면세점 판매 제품의 관리 등록 라벨링

### 무역부 발표

- 무역부 규정 No. 22/M-DAG/PER/5/2010 - 제품 라벨링 의무 규정 No. 62/M-DAG/PER/12/2009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 기타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69/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제5장 통관보류, 억류 등 부적합 사례

### 제1절 과실류 수입 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제출 요구

- 현재 수라바야 항구에 한국산 배가 위생증명서 미제출 문제로 통관보류 되어 있음. 기존에는 식물위생검역서(Phytosanitary Certificate)와 분석증명서(CoA)만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하여 왔으나
- 작년 하반기부터 위생증명서를 제출 요구. 현재 식약청은 신선농산물 위생증명서는 식약청 소관이 아니라 하여 문제 해결이 어려움
- 농업부 검역청 산하 수라바야 농업 검역본부 검역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음
  - 원산지로부터의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중계국가로부터의 재수출을 위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원산지/중계국가로부터의 Certificate Treatment
  - 사전 통지서
  - 식품안전 서류 : 분석증명서(CoA),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제2절 전통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학약품 함유 적발

- 건강, 효능,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통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약청은 정기적으로 시중의 화학약품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전통약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조사함. 2014년 11월~2015년 8월, 조사기간 동안 화학약품을 함유한 50개의 전통약품 및 남성 정력 건강보조식품

을 적발했다. 이 중 25개 제품은 미등록 인한 불법식품임.

- 이와 같은 이슈는 비단 인도네시아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임. Post-Marketing Alert System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약품을 함유한 18개의 전통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이 아세안지역, 호주, 미국에서 적발됨.
- 이에 식약청은 국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불법 전통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아래 첨부와 같이 적발업체를 공개함. 조사기간 동안 적발된 전통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에서 실데나필과 이와 비슷한 성분이 검출됨. 실데나필은 보통 비아그라 및 남성 성기능 약품의 성분으로 쓰이며, 오용 시 시력 및 청력 저하, 심장마비,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적발된 제품 중 완제품은 598억 루피아, 원료는 635억 루피아 상당이며, 25개 제품은 제품허가가 취소됨.

\* 출처 : 인도네시아 식약청 홈페이지([www.pom.go.id](http://www.pom.go.id))



## 제6장 수출현안

### 제1절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및 실험실 등록

-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아야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가능
  - ①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 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 수출국가가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에 대해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았을 경우 (수출업체)는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수출하면 됨
  - ①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 사전신고서만 제출
  - ② 식품안전성 검사실험실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 사전신고서 / 분석증명서(COA)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2016년 2월 17일까지 위 두가지 중 한가지를 승인 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이 가능
  - \*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은 부록 5) 참조

## 제2절 소고기 수입관련 법규

-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인니 수입에 대한 2014년 농업부 장관령 제 139호에 의거하여 호텔, 식당, 케이터링, 산업용 그리고 특수목적에 한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가능하다.
- 특수목적이란 ①선물용, 사회적, 종교적, 재난 대비 목적, ②대사관 등의 정부기관의 내부소비 목적 ③연구목적의 조사 개발용도, ④전시목적의 샘플 (200kg)임.
- 위의 언급된 목적 이외의 수입은 시장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조달청만 (Bulog - Badan urusan Logistik) 수입, 유통 가능함. (Art. 23)
- 소고기 수입을 위해서는 하기의 5가지 서류가 필요함.
  1. 수입자등록
  2. 관세청등록번호
  3. 축산물수입자 등록
  4. 농림축산부(Kesmavet) 장관의 추천서
  5. 무역부장관의 허가
- 축산물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 a. 수입 가능한 고기의 종류는 193호 2014년 법령 별첨 1호에 언급되어있는 종류에 한함.
  - b. 원산지 규정(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국가의 검역서,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 c. 포장, 라벨링 그리고 수송 관련 : 포장재료는 인체건강에 무해한 재료와 방법으로, 라벨링은 인도네시아어로, 수송수단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 □ 구제역 발생 여부에 따른 수입 허가 관련

- 인도네시아는 구제역 발생국가 제품을 수입허가 하지 않으며, 육류와 유제품의 수입은 Free FMD(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국가 또는 지역(Zone) 과,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FMD 안전국가로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Zone)에 한함.
- 관련 법령 2014년 41호 36조 E에 의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zone) 내에서 수입을 하고, 요건은 동 법령 59조 2항에 따라 법령 2014년 제 139호 에 언급되어 있음.
- 법령 2014년 139호에 의거,
  - Article 7, Article 8 육류와 유제품은 Free FMD 국가 또는 지역(Zone) 으로부터 수입함
  - Article 12 WOAH / OIE에서 FMD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수입함
  - Article 13 인도네시아는 구제역발생국가의 제품수입을 허가하지 않음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쇠고기 가격 상승, 쇠고기 자급자족 목표달성 실패, 축산물 수입에 있어 호주 의존 심화 등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일본으로부터 냉동육을 수입하기 시작했음. 한편 일본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하였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을 고려 중이며, 가격과 위생을 기준으로 수입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제3절 자료 출처

법안

근거 법령	
UU 41/2014	인도네시아 법안 No.41 (2014) - 가축 및 동물위생에 관련

농업부 발표

-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농업부 장관령 2015년 4호
-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인니 수입에 대한 농업부 장관령 2014년 139호

# 부 록

## 1) 포장식품 ITPT 대상 목록

무역부 규정 No. 57/M-DAG/PER/12/2010에 의거 규제가 되는 포장식품 목록

1	하얀 초코렛을 포함한 설탕 사탕류 (HS번호 : 1704100000, 1704901000, 1704902000, 1704909000)
2	초코렛 및 기타 코코아가 함유된 식품 (HS번호 : 1806100000, 1806201000, 1806209000, 1806311000, 1806319000, 1806321000)
3	맥아 추출물; 밀가루, 귀리, 전분 혹은 맥아 추출물의 식품재료, 코코아 미함유 또는 무지방으로 계산하였을 때 코코아 중량이 40% 미만, 기타에 미언급; 분류 04.01에서 04.04의 식품재료, 코코아 미함유 또는 무지방으로 계산하였을 때 코코아 중량이 5% 미만, 기타에 미언급 (HS번호 : 1901101000, 1901102000, 1901103000, 1901109000, 1901201000, 1901202000, 1901203000, 1901204000, 1901901000, 1901902000, 1901903100, 1901903900, 1901904100, 1901904900, 1901909010, 1901909090)
4	파스타, 조리 또는 속이 채워진 (고기 또는 기타 재료) 또는 준비된,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그누치, 라비올리, 카넬로니, 쿠스쿠스, 미조리 상태 포함 (HS번호 : 1902110000, 1902192000, 1902199000, 1902201000, 1902209000, 1902301000, 1902302000, 1902309000, 1902400000)
5	시리얼 또는 시리얼제품의 부풀림 또는 구이를 통해 얻어지는 조리식품 (예, 콘후레이크) ; (옥수수 수가 아닌) 낱알 또는 후레이크 형태의 시리얼 및 (밀가루, 귀리 등이 아닌) 조리된 곡물, 기타에 미언급 또는 미포함 (HS번호 : 1904100000, 1904200000, 1904300000, 1904901000, 1904909000, 1905100000)
6	코코아 함유에 관계없이 모든 빵, 페이스트리, 케익, 과자류 및 빵집 제품; 미사용 웨하스, 의약품의 속이 빈 과자류, 웨하스, 쌀과자 및 유사 제품 (HS번호 : 1905200000, 1905311000, 1905312000, 1905320000, 1905400000, 1905901000, 1905902000, 1905903000, 1905904000, 1905905000, 1905906000, 1905907000, 1905908000, 1905909000)
7	과일 주스 (포도 포함) 및 채소 주스, 미숙성, 알콜 미포함, 설탕 및 감미료의 첨가여부 무관 (HS 번호 : 2009.12.00.00, 2009.21.00.00, 2009.31.00.00, 2009.41.00.00, 2009.50.00.00, 2009.61.00.00, 2009.71.00.00, 2009.80.10.00, 2009.80.90.00, 2009.90.00.00)
8	커피, 홍차, mate 등의 추출물, 에센스 및 엑기스 및 커피, 홍차, mate에 기초한 식품재료; 볶은 치커리 및 기타 커피 대용품 및 그 추출물, 에센스 및 엑기스 (HS번호 : 2101111000, 2101119000, 2101120000, 2101201000, 2101209000, 2101300000)
9	자연, 인조미네랄 및 탄산화된 물, 설탕, 감미료, 향료 등 미첨가; 얼음 및 눈; 미네랄수, 탄산수를 포함한 물, 설탕 및 감미료 첨가 (HS번호 : 2201100000, 2202101000, 2202109000, 2202901000, 2202902000, 2202903000, 2202909000)

## 2) 쿼터신청 대상품목

No	HS CODE	품목
1	0701.90.00.00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	0703.10.19.00	양파(신선)
3	0703.10.29.00	붉은 양파(신선)
4	0706.10.10.00	당근(신선 또는 냉장)
5	0709.60.10.00	고추 ; 캡시컴(고추를 의미하는 식물의 종류)중에서 나온 열매
6	0710.10.00.00	감자(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7	0803.10.00.00	바나나 (과일로써 즉시 섭취 불가능한 것)
8	0803.90.00.00	바나나 (신선 또는 건조한 것)
9	0804.30.00.00	파인애플 (신선 또는 건조한 것)
10	0804.50.20.00	망고 (신선 또는 건조한 것)
11	0805.10.10.00	오렌지 (신선)
12	0805.20.00.00	만다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클레멘타인·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13	0805.40.00.00	포도(포멜로우를 포함한다)
14	0805.50.00.00	레몬(시트루스 레몬 및 시트루스 리머눔)과 라임(시트루스 오란티폴리아 및 시트루스 라티폴리아)
15	0805.90.00.00	기타
16	0806.10.00.00	포도 (신선)
17	0807.19.00.00	멜론 (신선)
18	0807.20.10.00	파파야(Mardi와 Solo의 교배종)
19	0807.20.90.00	기타
20	0808.10.00.00	사과 (신선)
21	0810.60.00.00	두리안 (신선)
22	0810.90.10.00	렝겅 (신선)
23	2001.90.10.00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양파, 붉은 양파
24	2004.10.00.00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
25	2005.20.11.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밀봉 포장된 감자(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HS 코드 2006호의 물품은 제외)
26	2005.20.19.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밀봉 포장된 기타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HS 코드 2006호의 물품은 제외)

No	HS CODE	품목
27	2007.91.00.00	감귤류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28	2008.20.00.00	파인애플
29	2008.30.10.00	감귤류(설탕이나 단성분 또는 알콜 등이 포함된 것)
30	2008.99.20.00	렝겅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31	2009.29.00.00	그레이프프룻 주스 (Pomelo 포함)
32	2009.39.00.00	감귤류 주스
33	2009.41.00.00	파인애플 주스 (당도가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34	2009.69.00.00	포도 주스
35	2009.71.00.00	사과 주스 (당도가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36	2009.79.00.00	기타 (사과 주스)
37	2009.89.99.00	한 과일 또는 기타 야채로부터 생성한 주스(망고, 과일즙)
38	2009.90.90.00	기타 혼합주스(포도, 잠부,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사과, 배 등)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39	2103.90.10.00	고추 소스

## 3)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강제인증 식품 목록

구분	No. SNI	품목		관련법규	관련부서
		영문	한글		
1	SNI 7709:2012	Palm cooking oil	야자 식용유	87/M-IND/PER/12/2013	산업부
2	SNI 01-6242-2000	Natural mineral water	천연 광천수	49/M-IND/PER/3/2012	산업부
3	SNI 01-3553-2006	Bottled drinking water	병에 담긴 식수		산업부
4	SNI 3751:2009	Wheat Flour For Food Ingredient	밀가루	35/M-IND/PER/3/2011	산업부
5	SNI 01-0219-1987	Codex Indonesian food		HK.00.05.5.00617 tahun 2002	식약청
6	SNI 01-0222-1995	Food additives	식품첨가제	722/Menkes/PER/XI/1988	식약청
7	SNI 01-6993-2004	artificial sweeteners	인공감미료	HK.00.05.5.1.4547	식약청
8	SNI 3140.3:2010 /Amd1:2011	Sugar crystals - Part 3 : White	백설탕	68/Permentan/OT.140/6/2013	농업부
9	SNI 01-4856-2006	Packaging crabs live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 운송된 포장 게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0	SNI 01-2711-1992	frozen lobster	냉동 랍스타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1	SNI 01-2714-1992	prawn crackers (Kerupuk)	인도네시아 새우과자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2	SNI 01-2713-1999	fish crackers (Kerupuk)	인도네시아 생선과자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3	SNI 01-2721-1992	Dried salted fish	건어물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4	SNI 01-2732-1992	dried sea cucumber	건조 해삼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5	SNI 01-3229-1992	Fresh frozen shark fins	신선 냉동 상어 지느러미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6	SNI 01-3460-1994	Frozen scallop meat	냉동 가리비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7	SNI 01-3917-1995	Prawns in cans	캔 새우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8	SNI 01-3918-1995	Snails in cans	캔 달팽이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19	SNI 01-3919-1995	Clams in can	캔 조개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0	SNI 01-6163-1999	Frozen breaded shrimp	냉동 튀김 새우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1	SNI 01-2706.1-2006	Thigh frog(Rana spp) freeze	냉동 개구리(종) 허벅지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구 분	No. SNI	품 목		관련법규	관련부서
		영문	한글		
22	SNI 01-4853-2006	Packaging eels or eel life through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 운송된 생장어 또는 포장 장어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3	SNI 01-4855-2006	Packaging of live fish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 운송된 포장 활어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4	SNI 01-4857-2006	Packaging turtle (tortoise or turtle or labi - labi live)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 운송된 포장 거북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5	SNI 01-4858-2006	Packaging of fresh fish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 운송된 포장 신선 생선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6	SNI 01-4859-2006	Packaging snake alive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 운송된 포장 뱀(살아있는)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7	SNI 01-4103.1-2006	Fillet of tilapia (Tilapia SP) Frozen	냉동 Tilapia (민물고기) 필레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8	SNI 01-2693.1-2006	Fresh tuna for sashimi	참치 회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29	SNI 01-2694.1-2006	Frozen surimi	냉동 연육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0	SNI 01-2696.1-2006	Frozen snapper fillet	냉동도미 필레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1	SNI 01-2705.1-2006	Frozen shrimp	냉동 새우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2	SNI 01-2710.1-2006	Frozen Tuna	냉동참치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3	SNI 01-2712.1-2006	Tuna fish in can	캔참치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4	SNI 01-2728.1-2006	Fresh Shrimp	신선새우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5	SNI 01-2729.1-2006	Fresh Fish	신선생선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6	SNI 01-2733.1-2006	Frozen Skipjack	냉동 가다랑어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7	SNI 01-3457.1-2006	Frozen raw peeled shrimp	냉동 간새우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8	SNI 01-3458.1-2006	Frozen boiled peeled shrimp	냉동 간새우 (삶은 것)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39	SNI 01-4104.1-2006	Frozen tuna loin	냉동 참치 허릿살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0	SNI 01-4110.1-2006	Frozen Fish	냉동 생선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구 분	No. SNI	품 목		관련법규	관련부서
		영문	한글		
41	SNI 01-4485.1-2006	Frozen tuna steak	냉동 참치 스테이크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2	SNI 01-4871.1-2006	Meka frozen steak	냉동 황새치 스테이크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3	SNI 01-7259.1-2006	Fresh whole snapper	신선 도미 (손질 안한 것)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4	SNI 01-7261.1-2006	Frozen whole snapper	냉동 도미 (손질 안한 것)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5	SNI 01-7262.1-2006	Frozen whole grouper	냉동 능성어 (손질 안한 것)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6	SNI 01-7263.1-2006	Marlin loin frozen	냉동 청새치 허릿살 (손질 안한 것)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7	SNI 01-7264.1-2006	Marlin frozen steak	냉동 청새치 스테이크 (손질 안한 것)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8	SNI 01-7265.1-2006	Cuttlefish in can	캔 오징어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49	SNI 01-7266.1-2006	Frozen fish balls	냉동 생선 볼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50	SNI 01-3140.2-2006	Sugar crystals - Part 2 : Refined	정제 설탕	83/M-IND/PER/11/2008	산업부
51	SNI 3747:2009 amended to SNI 3747:2013	Cocoa powder	코코아 가루	60/M-IND/PER/6/2010	산업부
52	SNI 01-3556-1994	salt consumption	소금	29/M/SK/2/1995	산업부
53	SNI 01-3140.1-2001	Raw crystal sugar (raw sugar)	원당	03/Kpts/KB.410/1/2003	농업부
54	SNI 01-3548-1994	Media sardines in a tin of tomato sauce	토마토 소스 활용 정어리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55	SNI 01-4225-1996	Crab meat in a can with a sterilization process	살균 처리한 게 고기 캔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56	SNI 01-2690-1998	Dried seaweed	건조된 해초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57	SNI 01-6929.1-2002	Meat crab (Portunus pelagicus) in cans is pasteurized	저온 살균한 게(청색 꽃게) 고기 캔	KEP.61/MEN/2009	해양수산부
58	SNI	Instant Coffee	인스턴트 커피	55/M-IND/PER/6/2015	산업부

4) '15년 7월 23일 인상된 관세율

번호	HS코드	항목	관세 인상률 (기존 관세율)
1	0901	커피, 로스티드, 디카페인 여부 불문, 커피를 포함한 제품	
		-로스티드 커피 :	20%(5%)
		--디카페인 아닌 :	20%(5%)
		----원두를 갈지않은	20%(5%)
2	0902	차, 가향 여부 불문	
		-녹차(발효하지 않은)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함)	20%(5%)
		-기타 녹차(발효하지 않은) :	20%(5%)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함) :	20%(5%)
		--잎	20%(5%)
		--기타	20%(5%)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20%(5%)
		--잎	20%(5%)
--기타	20%(5%)		
3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5%)
4	1602	-기타	30%(5%)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균질화한 조제품	30%(5%)
		--돼지고기 포함,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5%)
		--기타	30%(5%)
		-동물 간의 것	30%(5%)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함):	
		----칠면조의 것	30%(5%)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5%)
		----기타	30%(5%)
		-----뼈 제거 및 분리한 것	30%(5%)
		-----기타	30%(5%)
--닭의 것 :			
----치킨커리,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5%)		
----기타	30%(5%)		
--기타	30%(5%)		

번호	HS코드	항목	관세 인상률 (기존 관세율)
		-돼지의 것: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어깨살과 그 절단육: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혼합물을 포함): ----런천미트: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소의 것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 --양고기커리,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5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 --연어: --청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정어리 · 사르디넬라 ·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 ----정어리: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기타: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다랑어 · 가다랑어 및 버니투우(사르다 종) ----밀폐용기에 넣은 것 ----다랑어 ----기타 --기타 --고등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10%) 15%(5%) 15%(10%) 15%(5%) 15%(5%) 15%(5%) 20%(10%) 20%(10%) 20%(5%) 15%(10%)



번호	HS코드	항목	관세 인상률 (기존 관세율)
9	1902	-기타 조제식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함):	
		--초콜릿 과자(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	15%(10%)
		--기타	
		-기타(블록형·슬래브형 또는 바형):	15%(10%)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초콜릿과자	20%(10%)
		----기타	20%(10%)
		--속을 채우지 않은 것:	
		----초콜릿과자	20%(10%)
		----기타	20%(10%)
-기타:			
--초콜릿과자(태블릿형 또는 캔디형)	20%(10%)		
--밀가루,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품(코코아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40%이상 50%미만인 것)	10%(5%)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조제식품, (코코아 함유량이 중량기준 5%이상 10%미만인 것, 유아용의 조제식품, 소매용의 것에 한함)			
--기타	15%(5%)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20%(5%)
		--조란 넣은 것	
		--기타:	20%(5%)
		----쌀 버미첼리	20%(5%)
		----투명 버미첼리	20%(5%)
		----면	20%(5%)
		----기타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20%(5%)
		--고기 또는 고기내장으로 속을 채운 것	20%(5%)
		--생선,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20%(5%)
		--기타	
		-기타 파스타:	20%(10%)



번호	HS코드	항목	관세 인상률 (기존 관세율)
		--인스턴트 쌀 버미첼리 --투명 버미첼리 --기타 인스턴트 면 --기타 -쿠우스쿠우스	20%(10%) 20%(10%) 20%(10%) 20%(5%)
10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 제외)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코코아를 넣은 것 --기타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기타 -불거소맥 -기타: ---즉석밥을 포함한 쌀 조제식료품 ---기타	10%(5%) 10%(5%) 10%(5%) 10%(5%) 10%(5%) 10%(5%)
11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귀리빵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스위트 비스킷: ---코코아를 넣지 않은 것 ---코코아를 넣은 것 --와플과 웨이퍼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설탕, 꿀, 계란, 지방, 치즈 또는 과일 첨가하지 않은 것 ---빵가루 ---기타 --기타 -기타: ---설탕첨가하지 않은 유아용 젓니 비스킷	20%(5%) 20%(5%) 20%(10%) 20%(10%) 20%(10%) 20%(10%) 20%(10%) 20%(5%) 20%(5%) 20%(5%) 20%(5%)

번호	HS코드	항목	관세 인상률 (기존 관세율)
		--기타 설탕첨가하지 않은 비스킷 --케이크 --파이 --밀가루 사용하지않은 베이커리제품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성찬용웨이퍼, 실링웨이퍼, 라이페이퍼와 그 밖에 유사한 물품 --짹짹하고 바삭한 스낵 --기타	20%(5%) 20%(5%) 20%(5%) 20%(5%) 20%(10%)
12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5%)
13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인스턴트 커피 ----기타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잘게 갈은 볶은 커피를 기제로 한, 식물성 지방을 포함한 반죽형태의 혼합물 ----기타 -차나 마태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혼합차, 우유파우더, 설탕을 넣은 차 조제품 --기타 -볶은 치커리,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20%(5%) 20%(5%) 20%(5%) 20%(5%) 20%(5%) 20%(5%) 20%(5%)
14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간장 -토마토케첩과 기타 토마토소스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기타: --칠리소스	15%(5%) 15%(5%) 15%(5%)
15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5%)



번호	HS코드	항목	관세 인상률 (기존 관세율)
16	2106	<p>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p> <p>-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p> <p>-기타:</p> <p>--건조유부 또는 유부스틱</p> <p>--착향 또는 착색 시럽</p> <p>--비유제크리머</p> <p>--자기소화효모엑스</p> <p>--음료제조용 무알콜 조제품</p> <p>--음료제조용 알콜 조제품</p> <p>--식품보충제</p> <p>--건강보충제</p> <p>--기타:</p> <p>----음식가공을 위한 영양성분을 포함한 화학혼합물</p> <p>----홍삼제품류</p> <p>----유당불내성 유아를 위한 조제품</p> <p>----유아용 조제품</p> <p>----카야</p> <p>----기타 의료식품</p> <p>----기타 조미료 조제품</p> <p>----기타:</p> <p>-----템페</p>	15%(5%)
17	2202	<p>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 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p> <p>-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p> <p>--향미를 첨가한 광수 또는 탄산수</p> <p>--기타</p> <p>-기타:</p> <p>--향미를 첨가한 UHT 우유</p> <p>--두유</p> <p>--기타 탄산을 첨가하지 않은 음료</p> <p>--기타</p>	<p>10%(5%)</p> <p>10%(5%)</p> <p>10%(5%)</p> <p>10%(5%)</p> <p>20%(5%)</p> <p>20%(5%)</p>
18	2204	<p>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p> <p>-발포성 포도주</p> <p>-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함)</p> <p>--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p> <p>----포도주:</p>	<p>90%</p> <p>90%</p>





## 5)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농업부 장관령 2015년 4호

## 요약

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UMBER 04 OF 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농업부 장관령 2015년 4호

이 개정된 법규는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No.88/Permentan /PP.340/12/2011의 대안이다. 해당 법규는 2015년 2월 17일에 발효되었고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해당 법규의 목적은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리스크기반 검사 방법을 바탕으로 수출입측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더 나은 접근방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법규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1. 신선농산물(FFPO)의 정의

Fresh Food of Plant Origin(신선농산물, 이하 FFPO)는 가공되지 않고, 즉석 식품이 아니며, 최소한으로 가공되지 않고 또한 가공식품을 위한 원재료가 아닌 식물성 식품이다

## 2. 해당 법규에서 FFPO의 종류:

해당 법규에서 규정된 FFPO의 103가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 a. 과일 : 포도, 아보카도, 사과, 살구, 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무화과, 보이즌베리, 칸탈루프(멜론), 체리, 크랜베리, 유자, 커런트, 듀베리, 두리안, 구

스베리, 자몽, 오렌지, 령깁, 레이진, 키위, Dates, 리치, 레몬, 라임, **굴**(만다린), 망고, **멜론**, 칸탈루프(멜론), 파인애플, **천도복숭아**, 파파야, **복숭아**, **단감**, 바나나, **배**, **자두**, 포멜로, Prunes, 라스베리, Squash, Custard Apple, **딸기** 등 43 종류

- b. 야채 :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양파**, **마늘**, 작은 양파, 시금치, Beetroot, 사탕무, 브로콜리, 꽃양배추, 고추, 치커리, 대파, 배추속 식물, Gherkin(작은오이), 사탕 옥수수, **버섯**, **감자**, 케일, 콜라비, 양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배추**, 강낭콩, **무**, 순우무, 오이, 파프리카, 파슬리, 오크라, 상추, 셀러리, **토마토**, 가지, **고구마**, **당근** 등 36 종류
- c. 곡물 : 보리, 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수수 등 7종류
- d. 견과 : 아몬드,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땅콩, 피칸 등 6종류
- e. 두류 : 대두, 녹두, 잠두, 동부콩, 완두콩 등 5 종류
- f. 지역 농작물 : 카카오 콩, 커피 콩, 후추, 사탕수수, 차, 올리브 등 6종류

### 3.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의 종류:

- a. 화학적 오염물질 : 잔류농약, 중금속과 진균독 (Aflatoxin and Ochratoxin A)
  - b. 생물학적 오염물질 : 살모넬라균, 대장균
- \* 신선농산물(FFPO)의 위 리스트와 해당법규에서 규정한 각각의 오염물질 기준은 부록 1(Annex1)에 명시되어 있다.

### 4. 인도네시아로 신선농산물(FFPO) 수입시 요구사항:

- a. 신선농산물(FFPO) 수입은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요구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 b. 신선농산물(FFPO)은 아래 국가로부터만 인도네시아로 수입된다.
  - 1)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 또는 2)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
- c.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신선농산물(FFPO)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 d.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의 신선농산물(FFPO)의 수입은 아래의 사항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
  - ✓ 사전신고서
  - ✓ 분석증명서(CoA)
- e. 사전신고서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직전 수출업체 또는 수출국가의 그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f. 사전신고서는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IAQ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된다
 

http://www.karantina.deptan.go.id/ (접속후 Layanan Interaktif (Interactive Service) 클릭, 사전신고서(PSAT)찾기) 또는 다음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 : https://notice.karantina.pertanian.go.id/.
- g. 신선농산물(FFPO)이 경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신선농산물의 종류 또는 물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수출업체 또는 그 경유 국가의 대리인에 의해서 사전 신고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h. 분석증명서(CoA)는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IAQA)에 등록된 실험실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 i. 분석증명서(CoA)는 인도네시아 식품 안전성 요구조건들을 준수하는 신선농산물(FFPO)의 부류 ; FFPO의 소유주 ; 배송물 ; 실험날짜 ; 실험방법 ; 분석결과 ; 그리고 FFPO가 인도네시아 식품안전 요구조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명시적인 문구

**5. 인도네시아에서 타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요구조건**

- a. 신선농산물(FFPO)의 수출은 수출국가의 요구조건들에 부합하고 승인된 검사 실험실, 승인된 인증기관 또는 신선농산물(FFPO) 안전관리 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인증서 또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 b. 수출 출하지점에서 식물 검역직원은 수출국가의 요구조건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문서의 유효성과 완전성에 대해 서면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c. 서면검사의 결과물이 요구사항들에 부합되어야만, 목적지로의 신선농산물 (FFPO) 수출이 허가된다.

## 6. 수출국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

- a.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만일 그 국가가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처리기준(GHP ; Good Handling Practices) 그리고/또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인정(승인) 될 수 있다.
- b. 원산지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절차
- 1) 원산지 국가의 국가 식품안전 담당기관(NFSCA)이 인니 농업부 검역청을 위한 사본과 함께 서면 신청서를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해당 신청서는 같이 원산국의 신선농산물(FFPO)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영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또는 규정(영문)
    - 제안된 신선농산물(FFPO)에 대한 설명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시행하고 있는 생산지 목록
    - 우수처리기준(GHP ; Good Handling Practices) 시행하고 있는 처리시설 목록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시행하고 있는 가공시설 목록
    - 신선농산물 식품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 최소 최근 3년동안의 식품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 신선농산물(FFPO) 안전성검사 실험실 목록
    -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입법기관, 모니터/조사 기관과 인증기관을 포함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 정보
    - 생산자와 수출업체 목록

- 신선농산물(FFPO)의 수출을 위한 검사와 인증 시스템;
  - 신선농산물(FFPO)의 수입을 위한 검사와 인증 시스템;
  - 수출지점 목록
- 3)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의해 지정된 전문가 팀이 제출된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문서의 부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시행한다.
  - 4) 모든 요구사항들이 부합되어야 하고, 한 팀이 원산지 국가의 현장 **검증을 시행할 것이다**. 현장검증의 목적은 원산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신청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와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5) **현장검증을 통한 결과를 평가하여 현장검증의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날 때**
    - a. **사소한 미부합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국가식품관리기관(NFSCA)이 미준수 사항에 통지를 받은 후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중대한 미부합의 경우**, 신청서는 거절될 것이다;
    - c. **모든 요구사항들이 부합될 경우**, 해당 신청서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 6) 원산지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기간 3년과 추가 연장은 농업부 장관에 의해 규정된다**.
  - 7) **승인 연장 신청서는 승인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8)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의 발효와 연장을 위한 완전한 절차는 부록(Annex2)에 명시되어 있다.

## 7.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검사 실험실 등록

- a.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IAQA)에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실험실이 등록되었을 경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없이 해당 국가는 그들의 신선농산물(FFPO)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 b. 인도네시아 검역청(IAQA)에 등록된 식품안전 검사 실험실은 아래의 요구조건이충족되어야 한다.
  - 1) 담당기관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 2) 해당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출국가에서 사용된 농약 종류 평가와 다른 관련 검사(중금속, 진균독, 미생물학적 오염물질) 기준치에 따른 검사 범위를 포함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c.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검사 실험실 등록 절차
- 1)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담당기관(NFSCA)이 농업부 검역청을 위한 사본과 함께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그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직의 기관명; 주소; 담당자 ; 조직도; 기능/업무; 권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 식품안전성 주무기관(NFSCA)의 프로필
    - 조직의 기관명, 주소, 담당자, 조직도, 기능/업무, 권한, 식품안전 검사 실험실 승인 권한을 포함한 담당기관의 프로필
    - 실험실명, 주소, 조직도, 담당자,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결과 기록(최소2년), 주요 분석장비 목록(장비 세부사항 포함), 사무실과 실험실 배치, 실험실 연구원(실험실 분석가들의 훈련기간 포함), 실험수행 평가결과 문서 사본을 포함한 검사 실험실 프로필
    - 원산지 국가에서 허가받고 사용된 농약성분 종류 목록과 사용된 적이 없는(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을 포함한 금지된) 농약성분 종류 목록
    - 살충제 또는 농약(만약 이용 가능하다면)관련 규정 목록
    - 분석 인증 권한이 있는 직원명과 서명 견본
    - NFSCA에 의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관리 메커니즘  
Format 8에 규정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 신청
  - 3) 농업부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 팀이 인도네시아가 요구하여 제출된 내용의 부합성과 유효성 그리고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 4) 모든 요구사항들이 부합되면, 만약 필요하다면, 한 개 팀이 원산지 국가에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현장검증**의 목적은 검사실험실의 역량과 인도네시아의 요구사항들이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 5) 현장검증의 평가결과가 아래와 같을 시
  - a. 미부합시, 그 신청서는 거절될 것이다;
  - b. 모든 요구사항들과 부합시, 그 신청서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 6) 수출국가 식품안전 검사 실험실의 등록은 농업부 장관을 대신하여 검역청장에 의해 3년동안 효력을 가지며 더 연장될 수 있다.
- 7) 승인 연장 신청서는 승인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8) 수출 국가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의 등록 발효 및 연장의 완전한 절차는 해당 법규의 부록(Annex3)에 명시되어 있다.

### 8. 수출입 시점의 식품 안전성 검사

- A. 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에서 신선농산물(FFPO) 수입시 식품 안전성 검사 절차
  - 1. 소유자 또는 신선농산물(FFPO)의 대리인은 수입시점 이전에 해당 신선농산물의 사전신고서를 검역본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만약 사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4-e&f 참고) 수입이 거절 될 것이다.
  - 3. 만약 신선농산물(FFPO)이 사전에 신고되었다면, 검역본부 직원은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사전신고서의 유효성에 대한 서류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부적합할 경우에는 수입이 거절 될 것이다.
  - 4. 만약 사전신고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검역본부 직원은 사전 신고된 정보와 패키징 되어 있는(또는 실물의) 정보를 비교하여 검사를 할 것이다.
  - 5. 검사 결과에 따라서
    - a. 규정 미준수 → 신선농산물(FFPO)은 거부될 것이다.
    - b. 규정 준수 → 신선농산물(FFPO)은 추가적인 식물검역을 받게 될 것이다.
- B.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에서의 신선농산물(FFPO) 수입시 식품 안전성 검사 절차
  - 1. 소유자 또는 신선농산물(FFPO)의 대리인은 수입 시점 이전에 해당 신선농

- 산물(FFPO)의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COA)를 검역본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선농산물(FFPO)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신고서 출력된 문서와 분석증명서 (CoA)**를 제출해야한다.
  3. 만약 신선농산물(FFPO)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4-e&f 참고) 수입이 거절된다.
  4. 만약 신선농산물(FFPO)의 분석증명서(등록된 실험실에서 발행)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될때까지 최장 14일간 (근로일 기준) 보류 된다.
  5. 역류된 제품은 검역본부 직원의 책임과 통제하에 관리된다.
  6. 역류 기간 동안에 분석증명서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입이 거절된다.
  7. 신선농산물(FFPO)의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가 제출되면 검역본부 직원은 제출된 서류/문서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8. 사전신고서의 유효성은
    - a. 원산국가 코드와 바코드가 일치해야 한다  
=> **사전신고서를 발급받으면 오른쪽 상단에 바코드가 있음.**
    - b. 분석증명서의 번호와 날짜가 동봉된(제출한) 분석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9. 분석증명서의 유효성은
    - c. 분석증명서는 등록된 실험실에서 발행되어야한다
    - d. 잔류농약 및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실험은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어야한다.
    - e. 실험 결과는 AnnexI에 명시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기준과 일치되어야 한다.
  10.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으면 수입이 거절된다
  11.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가 유효하면, 검역본부 직원은 사전 신고된 내용과 패키징 되어 있는(또는 실물의) 내용을 비교 검사를 할 것이다.
  12. 검사 결과에 따라서
    - a. 규정 미준수 → 신선농산물(FFPO)은 거부될 것이다.
    - b. 규정 준수 → 신선농산물(FFPO)는 추가적인 검역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 C. 경유국에서의 신선농산물(FFPO) 수입 시의 식품 안전성 검사 절차
1. 신선농산물 대리인은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 a.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 (수출업체 및 경유국에서의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함)
    - b. 원산지 국가에서의 사전신고서
    - c. 원산지 국가에서의 분석증명서 (만약 원산지 국가의 식품안전성 관리시스템이 승인받지 못하였지만 실험실이 등록된 경우)
  2. 경유에 필요한 사전신고서와 원산지 국가에서의 사전신고서가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선농산물은 거부될 것이다.
  3. 분석증명서가 없으면 수출업체 및 그 대리인이 제출 할 때까지 최장 14일간 (근로일 기준) 보류 된다.
  4. 역류된 제품은 검역본부 직원의 책임과 통제하에 관리된다.
  5. 역류 기간 동안에 분석증명서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입이 거절된다.
  6. 신선농산물(FFPO)의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와 원산지 국가에서의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가 제출되면 검역본부 직원은 제출된 서류/문서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7. 경유에 필요한 사전신고서의 유효성은:
    - a. 경유국 코드와 바코드가 일치해야 한다.
    - b. 원산지 국가에서의 사전신고서 번호가 동봉된 사전신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 c. 분석증명서의 번호와 날짜가 동봉된 분석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10. 원산지 국가에서의 사전신고서의 유효성은
    - a. 원산지 국가코드와 바코드가 일치해야 한다.
    - b. 분석증명서의 번호와 날짜가 동봉된 분석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11. 원산지 국가에서의 분석증명서의 유효성은
    - a. 분석증명서는 등록된 식품 안전 실험실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b. 잔류농약 및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실험은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 c. 실험결과는 AnnexI에 명시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 12.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 원산지 국가에서의 사전신고서, 분석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으면 수입이 거절된다.
- 13.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가 유효하면, 검역본부 직원은 사전 신고된 내용과 패키징 되어 있는(또는 실물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사를 할 것이다.
- 14. 검사 결과에 따라서
  - c. 규정 미준수 → 신선농산물(FFPO)은 거부될 것이다.
  - d. 규정 준수 → 신선농산물(FFPO)는 추가적인 검역검사를 받게 된다.

## 9. 모니터링

- a.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신선농산물의 식품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와 등록된 실험실이 있는 국가에서 실시될 것이다.
- b.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출국이 인도네시아의 식품 안전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c.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아래에 기반을 둔다.
  - a) 신선농산물의 부피와 종류
  - b) 원산지 국가
  - c) 수입자 / 수출자의 적합성
  - d) 실험실
  - e) 원산지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상태
  - f) 수입시기
  - g) 수입빈도
  - h) 규정 준수 기록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반)
- d.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수입 신선농산물은 해당 신선농산물은 부록1(Annex I)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화학/생물학 오염물질에 대한 샘플링 및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 e. 실험실 테스트 중에는 해당 신선농산물은 검역 본부 직원의 책임과 관리하에 있다.
- f. 실험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 a) 화학/생물학적 오염이 최고치를 초과하면, 해당 신선농산물은 거부되며, 원산지국가의 담당기관(NFSCA)에 통보가 될 것이다.
  - b) 화학/생물학적 오염이 최고치보다 낮거나 동일하면, 해당 신선농산물은 추가적인 검역 검사를 받게 된다

## 10. 정지, 해지, 또는 승인/등록의 갱신(연장)

### A. 원산지 국가의 식품관리시스템의 정지, 해지, 또는 승인/등록의 갱신(연장)

- 원산지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험실 테스트 중 3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승인이 정지 된다.
- 승인 정지는 원산지 국가의 담당기관(NFSCA)에 보고되며,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 원산지 국가의 승인이 정지된 후 최소 6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해야한다.
- 만약 원산국이 6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 되며, 해당국가에서의 신선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 시정 조치 결과는 농업부 장관 c.q.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IAQA) 사무총장에 보고 된다
-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검역청(IAQA)은 인도네시아 식품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생산국에서 올바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재검증을 실시한다.
- 시정 조치 재검증 결과에 따라서
  - a) 인도네시아 식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하면 승인은 취소된다.
  - b) 인도네시아 식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면 승인 정지가 취소된다.

- B.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의 정지, 해지, 또는 승인/등록의 갱신(연장)  
수출국의 식품 안전성 실험실의 등록은 3개 이상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승인이 취소될 것이다.
- a. 필요 서류에 대한 부적합 판정
  - b.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부적합 판정

### 11. 식품 안전 위급 상황

- a) 원산지 국가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국의 신선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 b) 금지되는 사항은 장관령에 명시될 것이다.

### 12. 비용과 수수료

- a) 실험실 승인 및 등록에 필요한 심사/평의 모든 비용과 수수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한다.
- b) 모니터링 실험실 테스트 비용은
  - 1) 식품관리시스템이 승인이 된 국가 : 인도네시아 정부
  - 2) 등록된 실험실이 있는 국가 : 신선농산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
- c) 해당 신선농산물의 억류, 수입거부, 폐기에 따른 비용은 신선농산물의 소유주 또는 대리인/수입자

### 13. 경과 규정

- 1) 원산지 국가의 식품관리시스템의 승인은 승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2) 제출되거나 진행중인 승인신청서는 농업부 장관 규정 2011년 88번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다.
- 3) 수입시점에서의 신선농산물의 식품안전관리는 2016년 2월 16일까지 농업부 장관 규정 2011년 88번에 근거하여 시행될 것이다.
- 4) 새로운 등록 신청은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 5)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1년 후)
- 6) 이 규정이 시행되면, 농업부 장관 규정 2011년 88번은 취소될 것이다.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베트남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관세정책 및 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 제1장 통관제도

##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1. 통관제도

#### 가. 통관관리

##### □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의 원칙

- 수출, 수입, 국경통과 되는 물품 및 출경, 입경, 국경통과 하는 운송수단은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하며 법률규정에 따른 올바른 경로, 국경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세관검사는 관세관련 국가관리를 보장하고 수출입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정보분석, 화주의 법규준수도 평가, 관세법률 위반에 관한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 화물, 운송수단은 세관절차를 이행한 후 통관하게 된다.
- 통관절차는 법률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인력 배치 및 업무 시간은 수출, 수입 및 입국, 출국, 국경통과 활동에 부합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 세관 신고

- 세관신고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된다.
- 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자가 전자신고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 □ 통관절차 대리인

- 통관절차 대리인은 수입·수출화물에 관한 통관절차 업무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관신고인이다.
- 통관절차 대행인은 관세법률과 세관신고 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통관절차 대행인의 등록과 활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나. 통관수속

### □ 통관절차

- 통관절차 시 세관 신고자의 의무
  - 세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통관서류에 속한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전자통관 절차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의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를 작성 및 전송한다.
  -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위해 규정된 장소로 물품, 운송수단을 이동한다.
  - 법률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다.
- 통관절차 시 세관 직원의 의무:
  -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전자통관 절차시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 통관서류 심사 및 화물, 운송수단을 실제로 검사하고
  - 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비용 징수하여
  - 화물, 운송수단의 통관을 결정함

### □ 통과절차 장소

- 통과절차를 하는 장소는 국경관문 세관지국과 국경관문 외에 세관지국이다. 전자통관절차 시 통관서류 접수 및 처리장소는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의 관세사무소가 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장소에서 수출 및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검사가 실시할 수 있다.

## □ 세관신고 및 서류제출 기한

-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기한내에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하기 전, 또는 국경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간 통관절차를 위한 효력이 있다.
  - 수출물품의 경우, 늦어도 운송수단이 출경하기 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간 통관절차를 위한 효력이 있다.
  - 출국 및 입국자의 휴대수하물의 경우, 운송수단이 국경관문에 입국하는 시점 및 출국 운송수단이 승객수속을 완료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입국자의 이동 전 후 위탁수화물의 경우, 이 조1항의 규정에 따른다.
  - 국경통과 화물 및 운송수단의 경우, 화물과 운송수단이 최초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화물과 운송수단이 마지막 국경관문을 지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출입국의 경우, 항만관리공단이 해당 운송수단이 도선장소에 도착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 이내 및 운송수단의 출국 1시간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항공운송수단을 통한 출입국의 경우 운송수단이 국경관문에 도착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운송업체가 승객에 대한 출국수속, 화물에 대한 수출수속을 완료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철도, 육로, 수로를 통한 출입국의 경우 운송수단이 최초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운송수단이 출국을 위한 마지막 국경관문을 지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 관세공무원의 통관절차 기한

- 관세공무원은 세관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직 후 법률규정에 따라 이를 접수, 등록, 검사한다. 통관서류의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세관신고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세관신고인이 법에 정한 통관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관세공무원이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 비율에 근거한 일부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늦어도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 물품전체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늦어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물품전체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중 수출, 수입 물품의 수량이 방대하고 검사가 복잡한 경우, 검사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기준 8시간을 넘지 않는다.
  - 출국, 입국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의 경우, 수출, 수입물품의 하역과 승객의 출입국 수속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은 이 법 25조 규정에 따른다.

#### □ 통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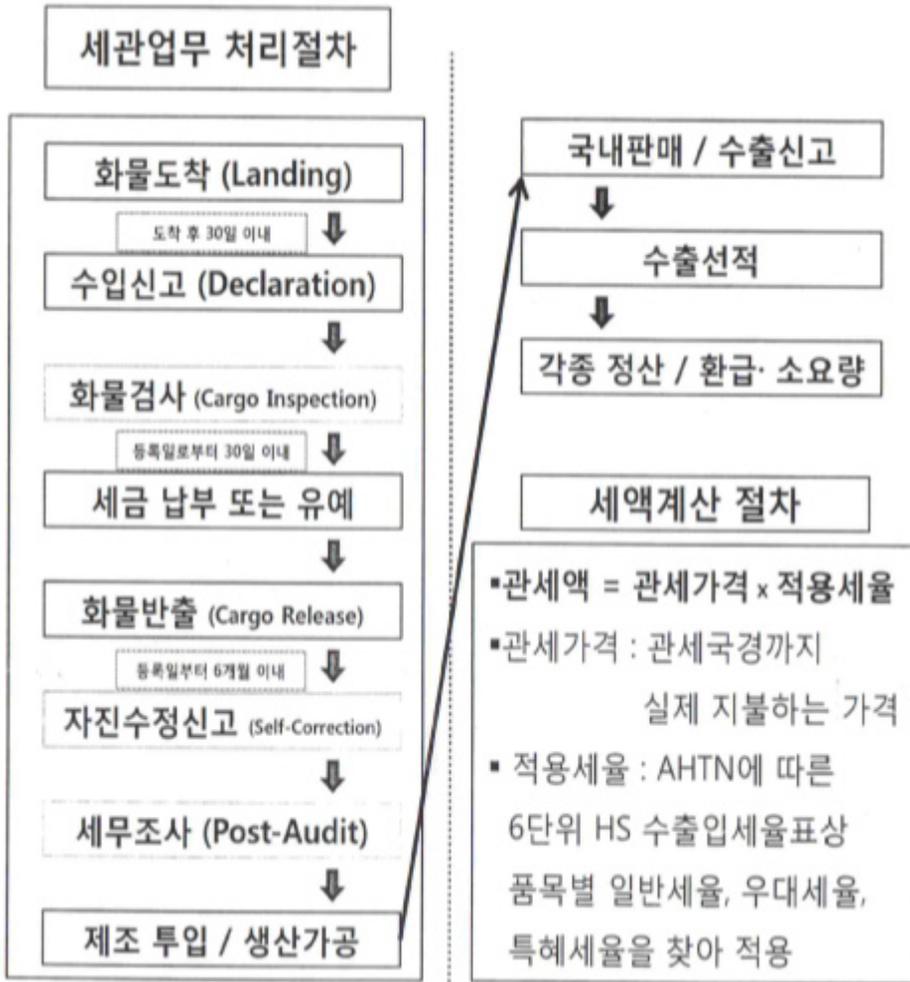
- 통관서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세관신고서
  - 상업영수증
  - 물품매매계약서
  - 법률에 허가서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과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서
  - 세관신고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하는 물품별 증명서류
  - 통관서류는 문서서류 또는 전자서류가 될 수 있다. 전자서류는 법률규정에 따른 완전성과 형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에서 제출,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관세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된 경우, 통관서류에 속한 일부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검사 시점 변경 또는 물품 실물검사 면제결정 시점 이전의 세관신고서의 보완, 수정, 교체; 잠정 세관신고서의 제출 및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완료;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다수 수출입 건에 대한 일회 신고가 허가된다.

#### □ 물품 및 운송수단의 통관

-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된다.
- 다음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물품, 운송수단도 통관될 수 있다.
  - 통관서류 중 증명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으나 관세기관이 기한내 추후 제출에 동의한 경우
  - 규정된 기한내에 세액은 완납하지 못하였으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관세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세액납부의 유예가 허가된 수출입 물품 제외
- 화주, 운송수단주가 관세관련 행정처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했거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 수출 및 수입 허가여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물품이나 화주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수출,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 산정을 위해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가 필요한 경우, 화주가 이 조 제2항 제b호, 제3항 규정에 따른 자진신고, 자진산정에 근거한 세액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통관될 수 있다.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은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 긴급한 요구가 있는 수출, 수입 물품의 통관은 이 법 제35조 규정에 따른다.

□ 처리절차



- 수입업자, 수입업체의 경우
  - 통관절차 시 세관에 관련 서류 제출
- 국가 행정기관의 경우
  - ※ 1 단계 : 서류접수, 서류심사, 실제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화물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 서류 접수
  - 세무코드 입력 세관신고서 조건 심사 (품목별 정책, 위반, 강제)

- 신고정보 입력이나 웹사이트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접수번호를 발급하고 진행 상황 프로필
- 신고서 등록 (접수번호 작성)
- 세관 검사형식 및 검사수준양식 통보
- 서류 심사
- 화물을 실제 검사 형식 및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
- 부서 리더가 승인후 시스템에 검사 형식 정보를 입력 및 검사 결과 처리
- 세관절차 완료 상태 인증 후 실제 검사 면제된 화물의 경우 3 단계로 이동 또는 실제 검사 받아야 하는 화물 경우 2단계로 이동
  - ※ 2 단계 : 화물 실제검사 및 통관 (실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화물 경우)
- 화물 실제검사 이전 신고자가 보충신고 요청시 재심사
- 실제 검사결과 기록 및 통보
- 검사 결과 처리
- 세관절차 완료 상태 인증
  - ※ 3 단계 : 세관비용, 세금 납부, 세관절차를 완료상태로 인증 도장을 찍고 세관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반납
  - ※ 4 단계 : 세관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 심사

## □ 진행방법

- 세관기관에 직접 제출
  - 필수서류
    - a) 세관신고서 - 원본 2부
    - b) 상업영수증 - 원본 1부
    - c) 물품매매계약서
    - d) 법률에 허가서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과 출국, 입국,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서
    - d') 세관신고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하는 물품별 증명서류

- 통관서류는 문서서류 또는 전자서류가 될 수 있다. 전자서류는 법률규정에 따른 완전성과 형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에서 제출,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관세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된 경우, 통관서류에 속한 일부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검사 시점 변경 또는 물품 실물검사 면제결정 시점 이전의 세관신고서의 보완, 수정, 교체, 잠정 세관신고서의 제출 및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완료,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다수 수출입 건에 대한 일회신고가 허가된다.

####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

- 세관신고인은 충실하고 기한내에 신고, 세액 산정, 납부를 하고 본인의 신고, 산정에 책임진다.
- 세액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에 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액신고인은 이를 통관절차를 진행한 관세기관에 통보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와 수수료 납부과정에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 세액과 수수료 관련 관세기관의 결정을 이행한다.

#### 과세시점, 납부기한

-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시점, 납부기한은 세액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 관세기관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처리를 기다리는 일시보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납부기한은 처리결정일로부터 산정된다.

#### 과세가격

-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 정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 수입관세 산정방식

- 제품수입 납부금액 =  $A + IT + (SCT) + VAT$ 
    - $A$  = 제품가격,  $IT$  = 수입관세 =  $A * \text{수입세율}$ ,
    - $SCT^*$  = 특별소비세 =  $(A+IT) * \text{특별소비세율}$
    - $VAT$  = 부가세 =  $(A+IT+(SCT)) * \text{부가세율}$
- 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자동차, 담배, 주류 등)에 따라 적용됨

#### □ 수출, 수입물품 품목분류 및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

- 수출, 수입물품 품목분류는 물품분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은 현행 세율표에 근거한다.
  - 세관신고인의 품목분류 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기관은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 분류, 세율확정을 위해 수출, 수입물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물품의 견본을 추출할 수 있다. 세관신고인이 관세 기관의 분석, 분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민원제기, 민원해결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 정부는 수출, 수입 물품 품목분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 수입식품 검사절차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관리국에 상품의 분석증명서(C/O)와 기타서류를 제출하고 ‘식품 안전기준부합공포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상품 통관시에는 그전의 인증서상의 성분과 부합하는지 통관상품 검역후 결과에 따라 통관이 된다. 세부적인 수입식품검사절차는 아래의 ①~⑥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 ① 수입식품 신고

- 베트남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확인(식품상품인증서, 식품안전기준부합공포인증서-2014년 개정양식을 부록1에 첨부함)이 있어야함

## ② 신청서류

- 식품상품인증, 식품안전기준부합공포인증 신청서 1부
- 기업의 기초 기준서 2부 : 식품수출기업의 직인, 인정기준, 생리화학기준, 미생물기준, 중금속기준, 식품첨가물기준,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관방법, 제조 공정 등을 포함
- 원산지 국가의 검사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해당식품의 주요성분 및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서 또는 베트남에서 지정하는 기술기관의 검사결과인증서
- 식품수출기업 직인이 포함된 식품표시내용서 또는 상품표시제안서
- 원산지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취득한 자유판매인증 및 보건인증
- 특수식품(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영양식품, 중환자 영양 공급을 위한 식품, 필수 영양소 보조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신고서류에는 연구 및 임상 실험 결과 기타 관련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당국의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분석 결과가 첨부되어야 함(베트남에서 분석이 불가능 할 경우 원산지 국가나 제 3국 검사당국의 검사결과도 인정)

## ③ 신고서류 심사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에서 서류접수 후 법규 준수여부 심사
-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기관은 서류 검토
-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품질기준신고를 한 경우는 서류심사 종료 후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관리국의 직인이 첨부된 기업의 기초기준서 사본 1부 반환
- 신고기준이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통보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품질기준신고를 재작성토록 함

## ④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

- 수입식품이 반입된 지역의 검사당국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등록을 위한

검사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요건 관리규정에 기초하여, 안전·위생 및 품질에 대한 강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기간동안 적용되는 수입식품목록 공표
- 베트남 정부와 외국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국제기구 감독하에서 허가 받은 조직·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수입식품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관련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아니면 검사대상에서 제외
  - ※ 베트남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검사 책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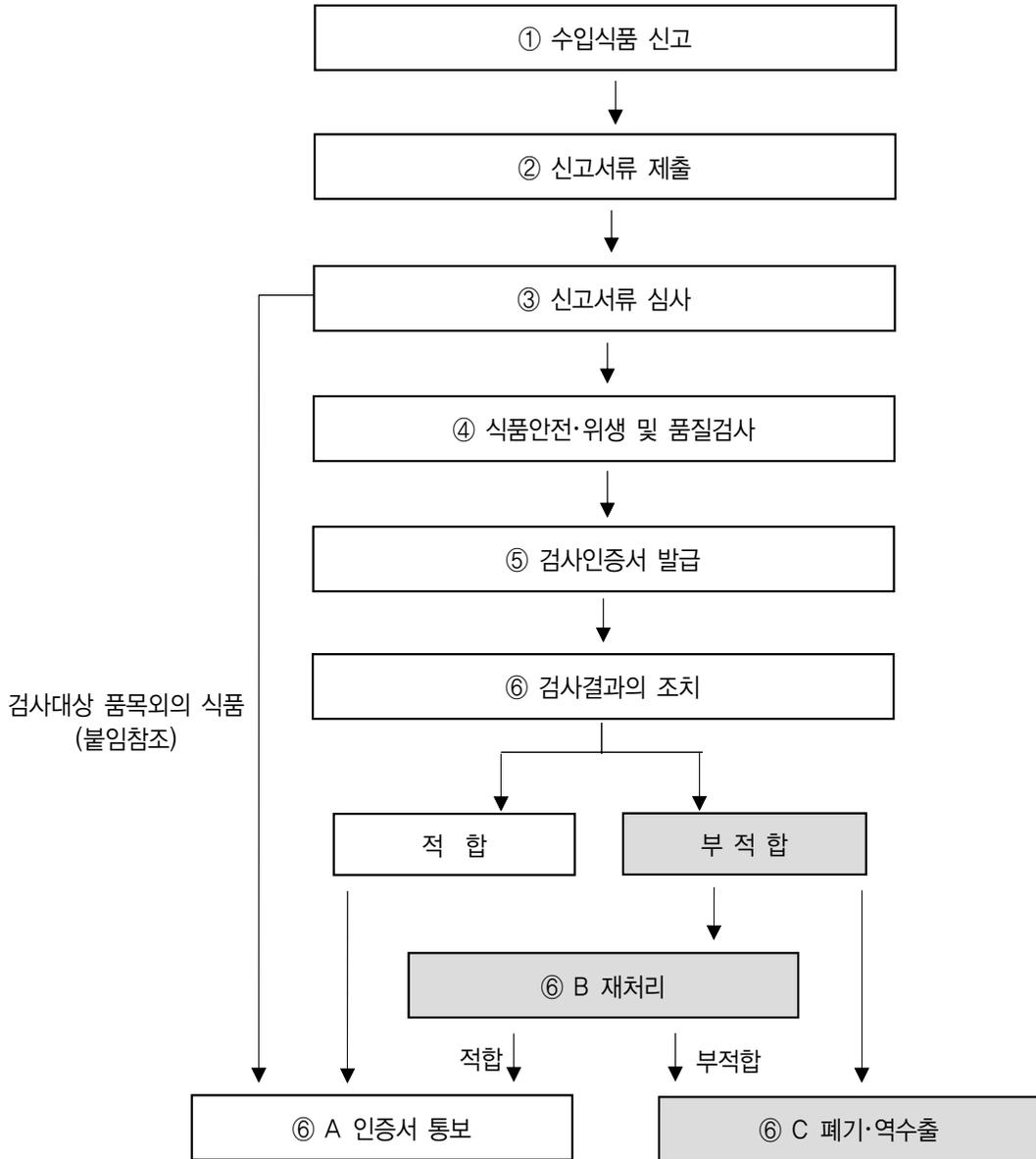
#### ⑤ 검사인증서 발급

- 국가 품질관리대상 수입식품일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시하는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인증서를 받아야함
-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서 정하지 않는 수입식품은 식품위생·안전 및 품질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검사를 받음

#### ⑥ 검사결과의 조치

- 위생·안전 및 품질 요건을 만족한 경우, 인증서가 세관에 통보되고 만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함
- 베트남 식품관리청에서 재처리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하여 검사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수입식품검사 과정 ■



## 제2절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규정 일반제도

#### 가. 우대 원산지증명서 규정

국제 조약에 따라 원산지 우대 규칙

- 수출,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세금에 대한 우대 및 비관세를 받는 것은 베트남이 서명이나 가입된 국제 조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일반관세 환경 설정 및 기타 일방적 특혜에 따라 원산지 우대 규칙

- 수출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하여 보급 세관 우대 및 기타 일방 우대를 받는 것은 해당 우대에 대한 수입국의 기원의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 나. 우대없는 원산지 증명서 규정

원산지가 있는 화물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있는 화물이라고 한다.
  - 완전한 원산지
  -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화물 확인

-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화물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로 인증
  - ① 해당국가나 지역의 나무나 나무에서 수확된 제품
  - ②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키우는 동물
  - ③ 상기 조건에서 수속된 동물의 제품

- ④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사냥, 텃 설치, 어업, 채집과정을 통하여 받은 제품
- ⑤ 상기 1번 항목부터 4번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광산이나 해당국가나 지역의 땅, 물, 해저 자원에서 생성된 것이다.
- ⑥ 국가 및 지역의 주변에 있는 물, 대양이나 대양 밑에서 받은 제품입니다. 다만 해당국가, 지역은 국제법에 따라 그 물, 대양, 해저에 대한 개척 권한이 있다.
- ⑦ 대양에서 해당 국가에게 등록된 배로 사냥 받은 어업과 타 해산물이다. 그 배는 해당국가의 국기를 걸을 수 있다.
- ⑧ 상기 7번 항목에 있는 제품에게서 배에서 직접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이다. 이것도 해당국가 및 지역에서 등록되고 해당 국가의 국기를 걸을 수 있다.
- ⑨ 해당국가 및 지역에 있는 물품은 기초 지능을 사용 못하며 수리나 복귀할 수 없고 버리거나 재활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⑩ 해당국가 및 지역에서 상기 제1항목부터 제9항목까지 언급된 제품에 생산된 화물이다.

#### □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화물 확인

- 제6조의 2항목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화물은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최종 생산 공정을 통하여 화물의 기본 특징이 되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가 있다고 확정된다.
- “화물 코드 전환”은 상기 1번 항목에서 화물의 기본 특징 변경하기의 확정 기준이다.
- “가치의 퍼센트 비율” 기준과 “화물 가공이나 조조 공정” 기준이 추가로 참조로 화물 기본 특징 변경하기를 확정한다.
- 상공부는 상기 2번 항목에서 “가치의 퍼센트 비율” 기준과 “화물 가공이나 조조 공정” 기준을 사용된 화물 리스트를 발행한다.

## 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화물 원산지 검정 수속

### □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서 규정

- 수입 화물의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 경우에는 통관절차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베트남과 특혜 세율 및 비관세의 적용된 국가 또는 국가집단에서 수입한 화물 경우(수입자가 해당 특혜 관세율을 받고 싶은 경우)
- 상호의 기초 또는 일방적 기준으로 베트남이 정한 최혜국대우 관세가 있는 국가에서 원산지가 있는 화물 경우
  -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가 있는 화물에 대한 보증하며 그 보증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베트남과 국제 조직들이 사회안전, 공중 보건 또는 환경 위생을 위한 검사 실시 기간에 통보된 수입화물 경우
- 덤핑방지관세, 반차별 관세, 반보조금 관세, 보호관세조치, 할당량 관세 조치를 적용되는 국가들에서 수입 화물 경우
- 수입 화물은 베트남법이나 베트남을 회원으로 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인증

- 수입자는 수입 화물의 대한 원산지를 사전 인증 받고자 하면 수입할 화물에 대한 세관 확인된 관련 공문이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 수입화물의 원산지 확정 및 검사 수속

- 수입자의 통관 신고서를 받은 후에 세관기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 진행한다.
- 수입한 화물이 원산지 사전인증에 언급된 화물과 같으면 세관이 원산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없다. 수입된 화물이 원산지 사전인증에 언급된 화물과 같지 않으면 세관이 법적 근거로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재확인한다.

- 원산지 및 관련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갈 경우 세관이 검사 요청 및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검사 요청할 때 검사이유, 원산지 증명서와 화물의 원산지의 정확도에 대한 의심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 검사 업무는 수입자가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0일 초과하지 않고 완료해야 한다.

### 제3절 통관부서 연락처

#### 1. 관세총국

- 주소: Block E3, Yen Hoa Urban, Cau Giay Dist, Hanoi
- 전화: (+84-4) 4452 0606
- 이메일: webmaster@customs.gov.vn

#### 2. 호치민 관세국

- 주소: 02 Ham Nghi Str, Ben Nghe Ward, Dist 1, Hochiminh.
- 전화: (+84-8) 38. 291. 422
- 팩스: (+84-8) 38. 290. 096
- 웹사이트: www.haiquan.hochiminhcity.gov.vn

### 3. 관세행정조직

□ 조직구조

- 본청(해관총국)-지방청(시·성 해관국)-일선세관(공단 해관지국)의 3층구조
- 전국 63개 시·성중 33개에 해관국 설치





## 제2장 관세정책 및 제도

### 제1절 관세정책

#### 가. 수출입 세법

##### 적용범위

- 이 법률은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규정이다. 국경지대 거주민의 국경을 통한 매매, 교환물품 및 기타 교환물품은 수출입물품으로 간주된다.

##### 과세대상

- 이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과세대상이다.
  -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
  - 국내시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

##### 비과세대상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비과세대상이다.
  - 베트남 국경, 국경관문을 빌려 이동되는 물품, 정부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물품
  - 인도적 원조물품, 무상 원조물품
  -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 수출시 국가자원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석유가스 물품
  - 식품 가공계약서가 있을 시 (과일 수입 후 가공해서 수출 시): 무관세
  - C/O form AK: 무관세

## □ 납세대상

- 이 법률의 제2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속한 수출, 수입 물품이 있는 법인, 개인은 수출세, 수입세 납세대상이다.

## □ 용어 해석

- 이 법률에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보세구역’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구역으로 지리적인 구역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다. 보세구역과 외부 구역간의 매매, 교환관계는 수출입 관계로 간주된다.
  - ‘자위를 위한 관세조치’는 국내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에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이다.
  -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의 수량 또는 가액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또는 유사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직접 경쟁물품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한 물품이다.
  - ‘종량세’는 수출, 수입 물품 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되는 세액이다.
  - ‘이동재산(이사화물)’은 베트남 내 또는 외국에서 거주를 종료하고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개인, 가정, 법인의 생활,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칭한다.
  -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은 국경지대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다.

## □ 국제조약의 적용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이 법률에 규정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조항과 상치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세액

-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기별로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적용을 규정한다.

##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과세방법 및 과세통화

-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 백분율에 따른 세율이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세관 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이다
-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가격 및 과세 시점 세율표에 기재된 품목별 세율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종량세 적용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 시점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절대세액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통화는 베트남 통화며, 외화납부가 허가된 경우 교환이 자유로운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

### □ 과세가격 및 과세환율

-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다.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트남 통화와 외국통화간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과세 시점에 발표한 교환환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과세가격의 확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 세율

- 수출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포함한다.
  - 우대세율은 무역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정부 규정에 상응하여 각 품목별 우대세율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 제2절

## 관세제도

### □ 관세의 종류

- 199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개정수출입관세법에서는 일반관세, 특혜관세, 특별 특혜관세가 있음
  - ① 일반관세율(Ordinary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
    - 특혜관세율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 우대관세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② 특혜관세율(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

에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본, 미국, EU 등 163개국이 적용대상

- 개념상 특별특혜관세율 적용국가 포함

### ③ 특별 특혜관세율(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물품에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협정관세,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협정관세가 이에 해당
    - ※ 특혜관세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필요
- 이외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특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음

## □ 관세 부과대상 및 세율

- 세금부과 대상은 정부허가로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이며 세율은 품질, 성격,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 수출품은 FOB가격, 수입품은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가격은 베트남 화폐를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임
  - 인보인스가 없는 경우와 정부 또는 관세총국이 정한 최저가격표 금액의 7할을 밑도는 경우, 수입관세는 최저가격표 금액에 기인하여 과세됨
- 일정품목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함
  - 상품판매 결제가 현금이거나 바터형태이거나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
  - 농산물 수입관세는 30~50%정도이며 주류, 담배 등은 100~120%로 높음
- 수입관세인하를 위한 제품의 UNDER VALUE
  - 수입관세 인하를 위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 UNDER VALUE 적발시 세관에 비치된 자체 TARIFF기준으로 과세
  - 자체 TARIFF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
  - 시장가격조사 및 가격산정까지 소요기간 예측불가로 많은 피해발생

## □ 관세 면제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반입
  -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EPZ(수출가공구)에서 수출입되는 물자, 단 EPZ가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제외
  - 인도적 원조, 교육, 연구기관의 연구 및 과학탐구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 □ 관세 환급

-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외국인의 상호 사업협력계약하의 상품 수출입, 기타 투자장려가 필요한 경우
  - 재수출을 위해 항구에 보관된 기관세금과 수입상품 중 수출이 이행된 경우
  - 수출관세를 납품한 상품 중 수출허가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품
  - 관세율표보다 수출관세가 많이 부과된 수출상품

## 제3절 분쟁해결제도

### □ 분쟁해결 절차

- 베트남은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조정우선주의를 채택
  - 외자기업의 기업활동 관련하여 베트남측 경제주체와 발생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타협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함
  - 협상과 화해에 의해 양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베트남 경제중재기구나 다른 중재기구에 회부할 수 있음
  - 외자법상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베트남 중재기관, 제3국 중재기관, 혹은 국제중재기관 및 당사자간에 의해 선정된 중재기구를 이용할 수 있음
- ※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중재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제중재제도를 많이 이용

- 외자기업과 베트남기업과의 국제경제분쟁은 중재에 의한 베트남 법에 근거하는 피고주의 채택
  - 외국출자자가 원재료와 기자재를 본국에서 조달하여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수출한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회사가 있는 베트남의 제도와 법률적용

## □ 국제중재센터

- 베트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으로는 1993년 4월에 설립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가 있음
  -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은 93년 8월 발효되었고 중재영역은 무역, 투자, 관광, 수송, 국제보험, 기술이전, 국제금융, 국제간의 대금결제 등
  - 중재심리는 3인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인 중재도 가능
  - 일반적으로 중재심리는 하노이에서 열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베트남내 다른 곳에서도 개최가능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중재심리 취하는 원고의 중재취소, 그 외 원고가 필요한 행동을 6개월 이상 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고 중재판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결석자에게도 중재판정서가 송부됨
  - 사용언어는 베트남어나 자기부담으로 통역과 번역을 구하는 것 가능
  - 중재판정은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의견도 중재판단서에 명기됨



## 제3장 검역제도

### 제1절 품목별 검역제도

#### 가. 신선농산물

- 농업농촌개발부가 발행한 39/2012/TT-BNNPTNT 시행령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신선식품은 수입하기 전에 검역 검사 받아야 한다.
  -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된 나무 종자
  - 신선 과일
  - 잔디 및 잔디 종자 종류
  - 유용한 생물 및 식물 자원에 해로운 기타 생물
  - 목재 및 검역 받지 않은 자른 목재
-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Pest Risk Analysis: PRA): 베트남에서 정한 병충해, 혹은 관리가 필요한 병충해인지 확인하고 검사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 □ 범위 및 적용 대상

- 대상 :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할 식물
- 범위 : 국내 및 외국 수입업체와 수입개인업자

#### □ 신청서류접수

- 필수서류:
  - 수입식품 검역 신청서 (부록1에 양식 첨부)
  - PRA 분석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한 서류를 제출 (부록2)

- 농수산 식품은 수입 시 농업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partment)로 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2015년부터 시행.

□ 검역검사 및 결과 통보기간

- 검역기관은 수입품목을 바로 검역검사 한다. PRA 분석 과정은 2006년 12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096/QĐ-BNN-KHCN인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4096/QĐ-BNN-KHCN 규정은 식물 및 수입식물제품 대상 검역 검사 과정으로 식물 검역 기준을 첨부하여 발급된다.
- 세부 결과 통보 기간은 부록3 참고

□ 검역 안전증명서를 발급

- 검역 검사결과에 따라 식물검역원은 아래와 같은 검역안전증명서를 발급한다.
  - 병충해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입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한다.
  - 병충해 위험성이 발생 가능하지만 검사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수입 조건 및 식물 검역방법과 첨부된 수입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한다.
  - 병충해 위험도가 높고 국내 농업생산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식물 검역안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 수입허가증 효력 기간 및 양식

- 수입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비슷한 품목 또는 동일한 종자가 있는 품목은 한 번만 검역을 받고 그 결과는 다음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적용된다.
  - 수입허가증 양식은 부록4 참고
  - 수입 후 (Post Import) 검역 시에는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 제출이 필요하며 검사가 요구된다.
- 수출 시 검역:
  - 검역 양식서는 Annex IV에 의해 작성
  - 위생검역증 원본 제출



- 검역 시작 후 24시간 내에 검역증 발급
- 경유 식물 검역:
  - 위생검역증 제출
  - 2항 7조에 의한 검역에 책임을 진다
    - \* 2015년부터 모든 검역 시 농업지역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partment)의 국립기술규제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를 따른다.
    - \* 검역기간이 끝난 후 agency는 식물 보호 부서(Plant protection department)에 보고한다.





## 제4장 라벨링제도

###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 가. 일반조항

##### 적용 범위

- 정부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들의 라벨에 대한 관리 및 작성하는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한다.
- 다음 물건들은 이 법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동산
  - 상품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상품 또는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국경 게이트에서 전송하는 상품
  - 선물, 기부금, 출국·입국하는 사람들의 수하물 이동자산.
  -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에 시장의 발전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추가 제안한 것

##### 적용 대상

- 라벨링 법령은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 및 상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된다.

##### 라벨링 의무사항

-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은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 라벨 필요 없는 상품:

-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신선식품으로 포장없이 가공하게 되는 식품
- 소비자와 협정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포장 없는 연료, 원재료 (농산물, 수산물, 임산), 건축 재료(벽돌, 타일 석회, 모래, 돌, 자갈, 시멘트, 흙, 유발, 상업 혼합 콘크리트), 스크랩 (생산, 판매).

## ○ 베트남 상품을 수출입하는 외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상품 판매 계약에 의해 상품의 라벨링 요구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베트남 법률 및 수입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 라벨링 위치

- 상품의 라벨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며,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라벨에 모든 필수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상품의 라벨에 내용, 상품명,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의 이름,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해야 한다.
  - 다른 요구 내용은 상품에 첨부된 서류에 기록하고, 상품의 라벨에 그 내용을 적는 장소도 기입해야 한다.

## □ 라벨링 크기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는 상품의 치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법령의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전체 필수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하고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라벨링 형태

- 상품의 라벨에 기록된 문자의 색깔, 숫자, 그림, 사진, 손짓, 기호가 뚜렷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필수 내용들에게 문자, 숫자의 색깔이 상품의 라벨 배경색상과 대조해야 한다.

## □ 라벨링 표기언어

- 상품의 라벨에 필수 내용들은 베트남어로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제 4 조에 규정된 경우 제외.
- 이 조항의 1항에 있는 규정 외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상품의 라벨에 외국어로 표시 가능하다. 외국어 표시내용은 베트남어 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글자의 치수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의 글자의 치수보다 더 크면 안 된다.
- 베트남에 수입된 상품으로 라벨에서 베트남어로 필수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는 별도 라벨을 추가해야 하며, 오리지널 라벨을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어 표시내용은 오리지널 라벨링 내용과 상응해야 한다.
- 다음 내용에서 오리지널 라틴 알파벳이 있는 외국어로 쓸 수 있음:
  - 인체용 의약품의 베트남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나 과학 이름
  - 국제 이름이나 화학물질의 화학공식, 구성공식 첨부된 과학 이름
  -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 이름이나 성분, 양적 성분의 과학 이름
  - 외국 제조업체, 상품 프랜차이즈의 이름 및 주소

##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

- 상품의 라벨 및 부가 라벨의 내용은 성실성, 뚜렷함, 정확함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 제조, 가공, 포장해서 유통하는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수출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존 라벨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령의 제9조 3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개인 및 단체는 기존 라벨을 잘 보관하고, 유통하기 전에 부가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

## 나.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처리

### 상품 라벨링에 대한 위반 처리 재판권

- 인민 경찰 기관, 항구에 설치되는 세관사무소, 시장관리, 상품의 품질관리, 전문화된 검찰관 및 기타기관은 할당하게 되는 직능, 책임, 권한 범위 중에서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행위를 탐지할 시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권한이 있다.

### 생산유통 및 수출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상품의 라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개인, 단체는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 국가 관리기관 소속에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해서 상품의 라벨에 대해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과 형사 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의 규칙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 □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상품의 라벨에다가 다음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상품의 이름
  -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성함 및 주소
  - 상품의 원산지
- 이 조항의 1번에 규정된 내용 외에 상품의 특징에 따라 이 법령의 제12조에 반드시 명시된 내용, 법률 문서 및 관련된 전공 법령 규정에 표시해야 된다.

### □ 상품의 특징에 따라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곡물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식품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성분이나 중량 성분
  - 위생,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사용법, 보관 안내
- 음료수(술 제외)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성분이나 중량 성분
- 위생, 안전에 대한 경보 및 안내
- 사용법, 보관 안내

○ 술

- 중량
- 에타놀 (etanol) 함량
- 보관 안내 (와인 경우)

○ 담배

- 중량
- 제조 일자
- 위생, 건강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식품의 첨가물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중량 성분
- 사용법, 보관 안내

○ 사료

- 중량
- 제조 일자
- 유통기한
- 중량 성분
- 사용법, 보관 안내

□ 상품명

- 생산 및 사업 개인, 단체가 스스로 라벨에서 적는 상품명을 정하고, 상품의 효능 및 특성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상품명을 정확하게 지어야 한다.

- 상품 성분에 있는 물질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품 이름이나 상품 이름의 일부분을 짓는 경우에는 그 성분의 용량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 법령의 제 18 조 4목에서 지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이름 및 주소**

-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성함 및 주소를 적는 것은 다음 자세한 경우에 따라 지정한다.
  -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 : 그 상품을 생산하는 단체,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해 수입하는 상품 : 생산하는 단체, 개인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수입 단체나 수입 개인의 이름 및 주소
  - 베트남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 상인의 직접 판매 대리점인 개인, 단체의 상품은 생산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그 상품을 판매 대리점인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 다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거나 허락을 받게 된 상품이라면 이 조항의 1,2와 3목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거나 허락하는 개인, 단체의 이름하고 주소를 추가해야 한다.

**□ 상품의 중량**

- 측정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베트남 법에 따라 측정단위를 표시한다.
- 수량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숫자로 써야 한다.
- 동일 포장에 여러 상품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단위 별로 중량 및 상품 총 단위의 중량을 써야 한다. 또한 상품 단위별로 중량 및 상품 단위의 수량을 써야 한다.
- 상품의 중량을 쓰는 방법은 이 법령의 부록 I에 규정을 하게 되다.

### □ 제조일자, 유통기간, 보관기간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기한은 양력 연도에 따라 일, 월, 년으로 순서대로 쓴다.
  -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표시하고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네 자릿수로 표시 가능하다. 그리고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같은 줄로 표시해야 한다.
  - 생산 시간을 월(달)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월 및 년의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 생산 시간을 연으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숫자 4 개를 표시해야 한다.
- 이 법령에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및 보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상품인데 상품의 라벨은 이 조항의 1목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를 작성하게 되었으면 상품의 유통기한이나 보관기한은 제조 일자부터 기간으로 표시 가능하다.
- 이 조항에 1목에 있는 규정과 다른 시간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 상품이라면 이 법령의 부록II에서 지정한다.

### □ 상품의 원산지

- 원산지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게 된다. “어디에서 생산”이나 “어디에서 제조”나 “원산지”와 상품의 생산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기록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록한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기록할 필요없다.

### □ 성분, 중량성분

-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원재료 및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완제품에서 존재하는 첨가물을 의미한다. 또한 변경된 원자재의 형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품에 관심을 끌기 위해 라벨에 나와 있는 원재료 성분의 이름을 표시할 시 그 원재료 성분의 중량도 표시해야 한다.
- 중량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성분 및 성분별로 하나씩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상품의 특성 및 상태에 따라 표시된 중량 성분은 상품 한 단위에서 그 성분의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혹은 다음 비율 중 하나에 의해 표시: 용량 및 체적; 용량의 퍼센트; 체적의 퍼센트.
- 일부 상품 종류에게 성분, 중량 성분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성분은 첨가물이라면 첨가물 그룹 이름, 첨가물 이름, 국제 코드 (있는 경우)를 써야 한다. 또는 첨가물은 감미제, 색소가 포함되며, 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하는 것 외에 “자연” 물질이나 “합성” 물질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 인체용 의약품, 백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 기원의 제품, probiotics 생물 제품, 동물용 의약품, 식물보호 의약품이라면 활성 화합물의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성분 및 첨가물을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 금속 가구, 사용 가치를 결정하는 메인 재료로 만든 도구라면 메인 원재료 성분의 이름 및 상품명을 표시해야 하고 성분 및 양적 성분으로 표시할 필요 없음.
- 상품의 성분, 중량 성분은 이 조항의 3목에 있는 규정과 다른 경우에 이 법령의 부록III에서 지정하게 된다.

#### □ 기술정보, 위생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 장비에 기본 기술정보를 써야 한다.
- 인체용 의약품, 백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생물 수의사 제품, 식물 보고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 의약품의 지정, 사용법, 금기(있는 경우)
  - 등록번호, 생산 일괄번호, 조제형태, 포장규격
  - 현재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종류별로 주요 증상

- 특별한 방부제가 있는 인간, 동물, 환경에 유독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리스트에 있는 사용량을 지정하게 된 상품이라면 상품의 성분이나 혼합 성분에 있는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증명서에 방부제의 이름을 추가해야 한다.
- 상품이나 상품의 성분은 방사선에 노출되었거나 유전자 변형기술을 적용한 것인 경우에는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 상품의 기술명세와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안내 및 경고는 이 조항에서 2번 및 3번의 규정보다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 법령의 부록 IV에서 지정하게 된다.

**□ 라벨링에 표시하는 기타 내용**

- 상품의 라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는 라벨에다가 기타 내용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내용은 법을 위반하면 아니되고 정확하게 상품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라벨에서 쓰는 필수 내용과 다르거나 위조하면 아니된다.





### 제3절 자료출처

#### 가. 웹사이트

1. [www.customs.gov.vn](http://www.customs.gov.vn) (베트남관세총국)
2. [www.moh.gov.vn](http://www.moh.gov.vn) (보건위생부)
3. [www.omard.gov.vn](http://www.omard.gov.vn) (농업농촌개발부)
4. [www.vfa.gov.vn](http://www.vfa.gov.vn) (식품안전위생검역원)
5. [www.cucthuy.gov.vn](http://www.cucthuy.gov.vn) (수의검역원)
6. [www.most.gov.vn](http://www.most.gov.vn) (과학기술부)

#### 나. 관련법규

1. 관세청법: 42/2005/QH11 (2005.6.14)
2. 화물의 통관철자 안내 시행규칙: 194/2010/TT-BTC (2010.12.6)
3. 원산지 규정: 19/2006/NĐ-CP (2006.2.20)
4. 수입식품 위생안전 검역 감사 규칙: 23/2007/QĐ-BYT (2007.3.29)
5. 수입동물식품 위생안전 검역 검사 규칙: 25/2010/TT-BNNPTNT (2010.4.8)
6. 수입식물식품 위생안전 검역 검사 규칙: 13/2011/TT-BNNPTNT (2011.3.16)
7. (신선 농산물) 수입 식물 병충해 위험 검역 48/2007/QĐ-BNN (2007.5.29)
8. 식품품질기준(성분분석): 2027/2001/QĐ-BYT (2001.5.30)
9. 라벨링 시행령: 89/2006/NĐ-CP (2006.8.30.)

부록1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대한 통지서

- 발급기관: 보건부
- 발급일자: 2014.5.11

보건부  
식품안전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1114TB-ATTP

하노이, 2014년 5월 11일

보건부의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대한

식품 상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국은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별첨파일이 있음)
  - 기준 적합 공포 인증서
  - 식품안전 기준 적합 공포 인증서 양식
2. 이 통지서의 1호에 제시한 문서양식은 14년 6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통지서의 1호에 제시한 14년 6월 9일전 발급한 인증서 양식은 해당 인정서의 효력 기한 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식품안전국은 관련기관, 식품 취급 단체 또는 개인, 소비자 등이 이해하게 통보한다.

수신처:

- Nguyen Thanh Long 차관
- 식품 취급 단체 또는 개인
- 관세총국 등

국장  
Tran Quang Trung



### 부록1-1

보건부  
식품안전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  
번호: ATTP-CNCB

-----  
하노이, 20 년 월 일

### 기준 적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국은 다음과 같은 대상의 규정적합 공포를 확인한다.

단체, 개인명:

주소:

연락처:

팩스:

Email:

상품대상:

.....상품은 베트남 보건부의 번.....베트남기준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인증서는 상기 업체의 서약을 인정하며, 상당 기술기준을 접합한 상품 인증가치가 없다.

상기 업체는 공포한 상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기적으로, .....년마다 단체 또는 개인은 기준 적합 공포를 등록해야 한다.

수신처:

국장

- 단체 또는 개인

- 내부 저장





**부록2**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수입 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

번호:.....

수신:.....

수입업체/수입개인업자:.....

주소:..... 전화:.....

저희 회사의 수입품목의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품목명:.....

과학명:.....

중량:.....

수량:.....

포장방식:.....

생산구역:.....

수출국:.....

운송수단:.....

수입국:.....

사용장소:.....

수입시간:.....

첨부

서류:.....

접수번호:...../년.... 월.... 일

접수자

년.... 월.... 일

신청자

### 부록3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D-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 PRA 분석하기 위한 필수 관련 서류

제출할 서류는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수출국에서 사용이 효력이 있는 서류여  
야 한다.

#### 1. 식물 및 식물 제품

1.1 과학명:

1.2 일반명:

1.3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 또는 병충해를 극복할 수 없는 종자

1.4 이 품목을 수입한 적이 있는 나라:

#### 2. 생산지

2.1 생산 지역: ...동/....구..../성(시)

2.2 지도에 생산 지역 위치(국가):

2.3 수출 능력 (ton/년)

#### 3 재배법

3.1 일반적인 검사 관리 프로그램 및 병충해 검역 관리

3.2 전염되지 않은 지역 정보

3.3 수확 기간 및 수확 방법

3.4 지방에서(수출국) 식물 보호-검역 방법

#### 4 병충해 List

4.1 과학명호

4.2 분류 위치

4.3 기타명호

4.4 일반명호

4.5 병충해에 걸린 종자

4.6 병충해에 걸린 나무 부분

- 4.7 병충해 증상
- 4.8 분배
- 4.9 병충해 상태 (보편적이거나 적절히 나온 병충해)
- 4.10 관리 방법
  - 4.10.1 재배 (병충해에 걸린 나무뿌리를 뽑거나 밭에 살충제로 청소하거나 곤충을 잡는 기구를 쓰거나 윤작...)
  - 4.10.2 생물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를 고르거나 한 철에 농작을 하지 않거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물적 방법 사용...)
  - 4.10.3 물리
  - 4.10.4 화학 (농약 종류, 사용방법, 시간, 복용...)
- 4.11 병충해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한 참고 자료
- 4.12 위에 대한 관련한 자료
  
- 5. 포장
  - 5.1 포장법
  - 5.2 검사 방법 및 검사 비율
  - 5.3 수확 이후 처리 방법
  - 5.4 보관 창고의 안전도 및 조건
  
- 6. 수출 프로그램
  - 6.1 사업 파트너
  - 6.2 적용되어 있는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절차 (기준으로 하거나 특별한 경우, 관련한 보충 서류)
  
- 7. 관련한 자료 사본

**부록4**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 병충해 위험성에 대한 검역기간 (서류심사) ■**

순서	식물 품목	기간
1	<b>나무 종자</b>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이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2	<b>과실</b>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3	<b>생물적인 병충해 예방 약물</b>	30일
4	<b>기타 수입 생식물</b>	30일
5.	<b>기타 높은 위험도가 있는 식물 품목</b>	60일

### 부록5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 ■ 병충해 위험성에 대한 검역기간 (서류심사) ■

순서	식물 품목	기간
1	<b>나무 종자</b>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2	<b>과실</b>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할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3	<b>생물적인 병충해 예방 약물</b>	30일
4	<b>기타 수입 생식물</b>	30일
5.	<b>기타 높은 위험도가 있는 식물 품목</b>	60일

**부록6**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농업농촌개발부  
식물검역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BVTV-KD

**수입허가증**

베트남의 식물 검역 및 식물 보호에 대한 법과 아래와 같은 서류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의 수입허가 발급 신청서:

검역 결과 보고 번호:....., 년.....월.....일:

식물보호원은 아래와 같은 수입업체 또는 수입 개인업자가 베트남에 수입할 수 있도록 동  
의한다.

상호:.....

주소:.....

수출국:.....

검역을 받은 품목:

.....  
.....

과학명:.....  
.....

아래와 같은 식물검역절차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1/ 수출국에서 적용된 처리 방법:

살충: 살충제:..... 복용량:..... 시간:.....

방사선 처리: 처리 근원:..... 정량:..... 시간:.....

베트남의 조정해야 하는 병충이 없는 구역에서 생산되다: 유  무

(베트남의 금지 및 관리된 병충인지 검사하는 것임)

기타 방법:

2/ 수출국에서 발급된 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첨부:

3/ 이 수입식품품목은 아래와 같은 지정된 해관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  
.....  
.....

식물 검역 수속은 .....에서 완료해야 한다.

4/ 운반 일정:.....

5/ 사용 장소:.....

6/ 지정된 장소에 도착 시 수입업체나 수입개인업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수입 이후 지속적 검사하기 위하여 재배할 지방의 식물검역원에 통보한다.

수입 이후 식물검역센터에 통보한다.

식물검역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생산된다.

기타 식물검역 요청:.....

.....  
.....  
.....  
.....

7/ 이 수입허가증은 .....년.....월.....일까지 유효가 있다.

Hanoi, .....년.....월.....일  
식물검역원 장관  
(sign and stamp)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태국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관세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 제1장 통관제도

##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1. 통관수속

#### 가. 수입통관 절차

- “태국 내로 물품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 철도, 도로, 배관, 반입로,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태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임
- 수입통관 절차

① 수입농산물은 선적화물이 통관 항에 도착하고 Thai Customs Department의 허가가 있기 전까  
지 태국 내 반입이 불가



② Customs Department는 수입업자에게 선적물 도착통보를 하지 않으며, 도착여부는 운송업자가  
통보함. 수입업자는 선적물 도착여부를 바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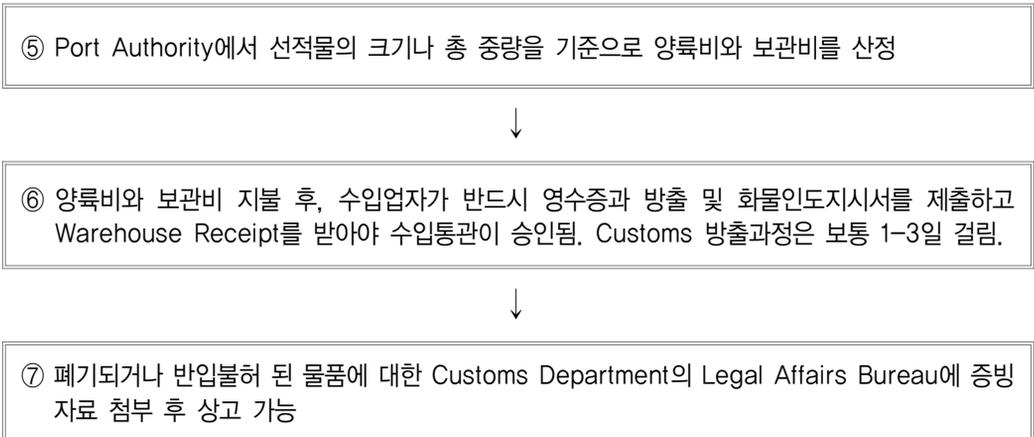


③ 해상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는 반드시 통관서류와 함께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선하증권, 수입  
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를 Customs House에 제출하고 관세 및 Business Tax 지불



④ 총 관세가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방출이 요구되는 경우, Deposit을 낼 수 있음. 관련서류는 반드시  
창고로 보내져 검열관이 통관서류에 기록을 해야 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은 추가적 세  
금이나 벌금이 지불될 때까지 보관됨.





- 수입신고 : 관세청과 연계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 수동으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함
- 관련서류 제출 :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수입신고서 및 필요시 수입허가서, 외환거래양식, 원산지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등을 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제출함
- 관세 등 제세 납부 : 관련세금 또는 예치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직접 납부, 전자이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물품검사 및 반출 : 수입자가 해당 보세창고에 납세영수증과 확인 받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관검사직원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검사. 검사한 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수입자에게 물품반출을 허락함
- 태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항만이나 지역 또는 공항 세관에서 전자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작업, 보세창고에의 장치, 무역자유지역이나 수출 가공지역으로의 반출입 등 통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통관 업무는 하역 또는 위탁이 이루어지는 세관(항만, 지역 또는 공항)에서 이루어져야 함

## 나. 수입신고서의 전자 제출

- 수입자는 관세청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 해야 함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이를 관련법과 적하목록 등 참조 파일과 대조하여 해당 자료의 1차 정확성을 검증한 후, 승인/허가 여부를 결정
  - 1차 정확성 검증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에러 메시지”를 발송. 이 경우 수입자는 자료가 수정된 수입신고서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다시 전송해야 함
  -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14자리로 된 전자신고 서류번호를 발급하며 “세금 및 관세 납부 준비완료” 상태로 전환함. 여기에서 유형을 나타내는 한 자리 숫자 “0”은 수입신고를 의미함. 이 경우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자 자료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미리 전송한 경우
  - 선박이 일정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참조 파일과 비교해서 해당 자료의 1차 정확성 검증작업을 시행하며, 추가로 관련법에 따른 승인/허가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선박 도착보고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
  - 선박 도착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적하목록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적하목록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 이 경우 수입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선박 대리인에게 적하목록을 수정할 것을 통지해야 함.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 신고서와 일치하는 정확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지 않으며 수정자료 접수 후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수입신고 번호를 발급
  - 세관 컴퓨터시스템이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기 전, 수입자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는 과태료 없이 자료를 수정할 수 있음

- 번호가 부여된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서비스부서에 수정 신청할 수 있음

■ 전자수입신고서류번호의 숫자 별 의미 ■

X<sup>1</sup> X<sup>2</sup> DD<sup>3</sup> X<sup>4</sup> YY<sup>5</sup> MM<sup>6</sup> NNNNN<sup>7</sup>

1. A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A9DD-1-YYMM-99999]를 초과하면 다음 알파벳 (B,C) 등으로 변경
2. 한자리 (1-9) 0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999를 초과할 때 다음숫자(1,2)로 변경
3. 일자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4. 서류유형을 나타내는 코드
  - 0=수입신고, 1=수출신고, 2=월경신고, 3=화물 선취득 요청, 4=사전 하역 신청, 5=화물 수입신고, 6=특별 월경 신고, 7=특별 원경 수입신고, 8=환적신고
  - A=내국 이동 수입신고, B=국내 이전 수출신고, C=무역 자유지역에서 이전된 수입신고, D=무역 자유지역으로 이전한 수입신고
5.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6.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
7. 0001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

다. 관세 등 제세 납부

- 수입자는 관세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함
  - 은행보증이 필요한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관세청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은행보증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
  -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해당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세금 및 관세 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

- 수입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면세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 면세 신고”로 자동 전환
- 수입관세는 높은 쪽을 적용하여 지불
  - 예를 들어 한국 김치의 경우 - 관세 ①30% or ②25THB/KG
  - \* 10톤을 수입하고 CIF VALUE 가 20,000USD일 경우
  - 1) 관세 30% -  $20000 * 30\% = 6000\text{USD} = 198,000 \text{ THB}$   
Rate (1USD=33THB)
  - 2) 25THB/KG -  $10000\text{KG} * 25 \text{ THB} = 250,000\text{THB}$
  - 이 경우 250,000THB를 지불해야 함.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 또는 관세면제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

## 라. 반입물품의 검사 및 양도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해상 적하목록, 항공 적하목록, 육상 적하목록을 입력내용과 대조해서 수입신고 및 진행상황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청의 리스크 관리원칙에 의거하여 위험도(프로필)를 확인하게 된다. 신청인이 세금과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물품의 검사명령 또는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
  - 수입신고서가 “검사 면제”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 관세 가액 및 물품검사 면제 대상”(그린 라인)임을 입력하고, 수입신고 현황을 “수입신고필 인도준비 완료”로 자동 전환.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세관창고에 해당 물품을 수입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보하고, 신청인에서 세관 관할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
  - 수입신고서가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과세가액 및 물품검사 대상”(레드 라인)임을 입력하고, 세관창고에 해당물품에 대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신청인이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인수받도록 통보

## 마. 세관창고에서의 물품검사 및 반출 절차

### ○ 검사 면제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항공 선하증권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
- 수입자가 단일창구통관시스템 상에서 통관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관련서류(관련법에 따른 면제대상 확인서류, 관련면허/등록/허가를 입증하는 서류 등)를 세관 서비스부서에 제출한 후 통관절차 종료에 따라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
- 세관 서비스부서는 해당 서류의 수령사실을 기록하고 검사공무원이 세관 컴퓨터 시스템의 수입신고에 따라 1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접수한 서류가 수입신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안 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 검사대상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내륙 컨테이너항만을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받을 준비 함
- 물품검사는 관세율 및 과세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세관 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신청인에게 물품의 양도 통지.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을 수령

### ○ 관세율, 과세가액, 물품검사 대상에 대한 인도 전 검사

-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 목록에 있는 물품으로서 리스크 관리대상인 물품은 관세 및 관련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함
  - 다음 사유 등으로 인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관세율 및 과세가액에 대한 검사를 희망한 경우

- ① 종전 수입한 물품과 동일유형 및 범주의 물품에 대해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②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 등 제 세액이 높게 책정되어, 동 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입신고서 “비고” 란에 입력한 경우

- 관세율, 과세가액,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설명자료, 서류 또는 전자자료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과세가액의 산정자료로 제출된 서류나 신고서 내용의 진위 및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상기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수입신고서는 보장된 처리 완료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세관공무원은 수입자에게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수입자는 상기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과세가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제출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은 ‘과세가액 산정 방식 1=수입물품의 구입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 과세가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접수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은 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과세가액 산정을 완료해야 함
  - 신고가액이 ‘과세가액 산정방식 1=수입물품의 구입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관세법 B.E. 2469 규정에 따른 관세청 132호 (B.E. 2543) 및 그 수정 145호 (B.E. 2547) 2장에 명시된 대로 신고가액이 구입가액인 경우, 신고가격을 해당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으로 간주함
  - 수입자가 신고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경우

- ① 수입자는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에 따라 신고 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세관공무원에 통보해야한다
- ② 세관 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서 각 항목별 증가액을 기록하고, 세관 서비스부 서장 및 책임자에게 방식 1에 따라 과태로 없이 과세가액 증액의 승인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에 따른 과세가액 범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과 관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④ 수입자는 수입항,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추가 세액 및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추가 세액 및 관세가 납부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검사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 신고가액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유 등으로 수입물품의 가액을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의 방법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됨

- ① 수입자가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 세액의 최고금액 까지 추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세관은 당해 물품의 견본, 사진, 또는 설명 자료 등을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는 추가 조사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한 후, 물품을 반출시킬 수 있다.
- ② 세관공무원은 재 사정된 과세가액과 신고품목 통관에 사용된 예치 보증금의 산출근거 등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해당 재평가 가액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하는데 요구되는(추가 보증금 예치에 필요한) 세금 및 관세액을 통보한다.
- ④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차후 물품반출을 위한 예치금 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물품가액의 증가에 대한 자료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동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항 항만, 지역, 공항의사건조사 담당공무원은 세금 및 관세 벌과금, 부과세 벌과금 및 기타 과태료 부과 등 조사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며, 수입자가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는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 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신청인에게 관세 등 제 세액과 과태료 등을 통지한다. 신청인은 금융 부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 ⑥ 수입자는 물품의 반입 항만,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세금 및 관세 보증금과 부가세 및 기타 과태료 등 부족분을 추가로 예치한다. 추가 보증금을 예치한 후에는 동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할 수 있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검사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⑦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하고, 사안에 따라 향후 관세율 산정에 필요한 견본, 사진 및 기타 증거 자료 등을 채취한 후, 물품 반출을 허가한다.
- ⑧ 세관공무원이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자료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사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결과 관세법 등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된 경우
  - 관세 EH는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되어 물품반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
  - 수입자가 물품을 검사하고 조기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 ①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서의 신고가액 등을 검토하여 관세율 및 제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산정세액이 승인을 요청한다.
- ②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서 정보를 물품이 반입된 항만이나 공항의 법무 부서에 통보하여 사건파일을 작성토록 하고, 물품의 조기 반출 전에는 과태료, 부가세 과태료 및 기타 과태료가 차질 없이 예치될 수 있도록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다. 단, 관련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로 예치해야 할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④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예치금을 예치하게 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납부 영수증 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서 상황을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로 자동 전환 시킨다.
- ⑤ 세관공무원은 향후 문제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의 사진, 또는 기타 증거자료 등을 채취하고 난 다음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 ⑥ 검사결과에 따라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정보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창고에서 물품 인수

-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된 수입신고서 상의 정보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
-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창고에서 물품이 인출되기 전에 세관 서비스부서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수정절차를 수행
- 세관 서비스부서가 이를 수정토록 한 경우, 수입자는 자신이 동 수정작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정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

## 사.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

- 통관절차 완료 후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당해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과세가액 또는 관세율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봄
- 수입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상세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한 후 면세지역이나 수출지역으로 이송할 때 역시, 당해 수입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자세한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 아. 보세창고에서의 수행절차

- 검사 면제 대상인 경우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물품이 통관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 물품인지 확인
  - 물품이 통관허가증과 다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세관서비스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검사 등 조치를 취함
  - 창고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물품반출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 수입자가 물품수령을 위해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할 경우, 창고관리인은 동 물품이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창고로부터 동 물품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터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배정하여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세관공무원은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창고 관리인에게 통관허가증을 발급하여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함
- 창고에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면 창고는 인도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자.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 후, 검사대상물품을 공항만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가 검사면제대상인 경우도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는 여타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함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 지시가 있는 경우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에게 “관세율, 가격 등에 대해 세관검사”를 받도록 통지하고 창고에 대상물품을 준비하도록 관련 자료를 전송
  - 창고는 당해 물품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
  - 창고는 검사를 위해 수입자에 해당물품을 인도한 후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함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서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과세가액 확정 후 물품을 반출토록 지시
  - 수입항만이나 공항, 면제지역, 수출지역 또는 보세창고에 RFID가 도입·운영되는 경우, 출입차량은 코드확인을 위해 RFID 판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 차. 수입자의 자료 수정

- B/L 일련번호가 부착된 인도지시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품이 수입되는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

- 관세청에서 피드백을 받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가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는, 동 사실을 물품을 수입한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통보하여 사안별 검토를 받아야 함. 이 경우는 검사 부서에 당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물품검사와 반출이 완료된 후 수입신고서 상의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공항만 세관이나 검사장소 또는 반출지 세관의 관리 부서에 별도 수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2절 원산지 규정

### 가. 원산지 판정의 일반 원칙

- 수출국가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건
  - 식물 및 식물이 성장한 후 식물로부터 수확되거나 모아진 산물
  - 해당지역에서 가축되거나 태어난 동물
  - 해당지역에서 가축되거나 태어난 동물에서 얻어진 물건
  - 광물 등 천연자원
  -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서 잡은 수산물 등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RVC(Regional Value Content)를 고려해 FOB 금액의 40% 이상의 가치를 생산한 제조,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Build-Up Method :  $RVC = VOM/FOB \times 100\%$ 
    - ※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가격, 직접노동비, 직접경상비, 운송비, 이익을 포함한 가치
  - Build-Down Method :  $RVC = (FOB - VNM)/FOB \times 100\%$ 
    - ※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CIF 가격 또는 해당지역에서 원료를 최초로 지불한 가격

- 사용된 원재료의 HS코드와 다른 HS코드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앞자리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함)

## 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인 AK Form 발급 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태국의 경우 상무부이며, 한국은 세관(47개)과 상공회의소(67개)에서 실시함
- 제3국 송장을 발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3자의 회사명, 국적 등을 기재해야 함
- HS Code는 수입국의 HS Code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 파악이 중요함. 참고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원산지 효력을 인정함
-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HS Code로 AK Form 발급해야 함. 오탈자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사용 불가
- 원산지 증명서 사용 불가 제품 파악이 중요. 사용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음.
  - AK예외 여부 영문판 파일 이메일상 첨부.

## 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 서명등록 구비서류

- 서명등록서 (등록서명 1부 포함) 원본 1부 (양식 다운로드)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는 회원 무료, 비회원 55,000원

■ AK Form 양식 ■

<p>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and country)</p>		<p>Reference No.</p> <p style="text-align: center;">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p> <p style="text-align: center;">FORM AK</p> <p style="text-align: center;">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p>			
<p>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and country)</p>		<p>4. For Official Use</p> <p><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p> <hr/> <p><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p> <hr/> <p>.....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p>			
<p>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p> <p>Departure Date</p> <p>Vessel's name/Aircraft etc.</p> <p>Port of Discharge</p>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p>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p>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p> <p style="text-align: center;">..... (Country)</p>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for the goods exported to</p> <p style="text-align: center;">..... (Importing Country)</p> <p style="text-align: center;">.....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p>			<p>12. Certification</p> <p>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p> <p style="text-align: center;">.....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p>		
<p>13.</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p>					

##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

BRUNEI DARUSALAM	CAMBODIA	INDONESIA
REPUBLIC OF KORE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VIETNAM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K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the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and
- (iii) must comply with origin criteria in the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the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CTH" or "RVC 40%"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li> <li>-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li> <li>- Regional Value Content</li> <li>-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li> <li>- Specific Processes</li> </ul>	"CTC" "WO-AK" "RVC"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Name of manufacturer,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HARMONISED SYSTEM NUMBER: The Harmonis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7. EXPORTER: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9.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e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0.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1. BACK-TO-BACK-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 제3절 LPI 등록제도

#### 식품 59개 품목에 대해 LPI등록제도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 초콜렛 가공품, 인스턴트 커피와 차, 토마토케첩, 아이스크림, 생수, 식초 등

#### License per invoice (LPI)

##### ○ 신청절차

- ① <http://lgt.fda.moph.go.th> 들어감
- ② lpi다운로드
- ③ 셋업
- ④ 프로그램 접속 / username/password->tfda에서 받아야 함
- ⑤ CI PL Shelf life ISO/HAPPC/GMP IMPORT PERMIT FDA PERMIT 첨부, FDA LPI SYSTEM에 등록해야 함

##### ○ 유의사항

- 통상적으로 등록 후 4-7일 후에 승인 코드가 부여되며 승인코드가 없으면 통관 진행 못함. 서류가 전부 구비되어 있더라도 이 코드 없으면 통관 할 수 없음. 제조업체에서 서류 제출 느리거나 미비하거나 하면 통관이 지연됨
- 영문사이트가 없고, 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서류 미비하거나 틀리면 모두 거절 됨
- 선적이 들어오고 서류를 모두 충족해도 승인코드 없으면 통관진행하지 못함
- 시스템에 등록해도 되고 서류 준비해서 FDA에 가서 제출해도 됨

## 제2장 관세제도

### 제1절 관세정책

-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198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
- 태국은 통일상품분류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 HS)가입국으로 2008. 7월에 개정된 관세율 표는 HS 8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 관세율표는 총 8,301품목으로 구성
-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성됨. 기본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세율과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협정세율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있으며,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
-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 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별도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함
- 태국 관세청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th)에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이 사이트에는 품목분류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감면세 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장제품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가. 법정관세율

- 2003년 이후 태국의 법정 기본세율 체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태국에서는 법정(기본)관세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과정을 거쳐야 함. 반면 태국의 실행관세율(일시 또는 조정세율)은 국회의 비준 없이 재무부 장관이 내각의 승인과정을 거쳐 적용하며 재무부 장관은 필요 시 내각의 승인과정을 통해 관세율 표 상에 게시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각종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태국의 법정관세율 구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관세율 표는 총 31개 등급의 품목별 종가세율(0~80%)과 19등급의 특별세율, 158개의 대체세율(Alternative duty)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율의 종가세 적용 품목 군에는 민감 품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차, 마른 양파, 오토바이 등 12개 품목(60% 적용)과 65% 적용의 고체형태의 설탕, 80% 적용의 자동차류 15개 품목 등이 포함됨

## 나. 실행관세율

- 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MFN) 품목으로 양허 함. 이에 는 모든 농산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비 농산품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69.5%가 종가세, 특별세, 대체세 등의 형태 임. 그리고 태국은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원국으로서 일부 IT 생산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 계상을 2005.1월에 이미 마무리 함
  -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에는 소금, Mineral fuels, Chemicals, Fertilzer, 펄스, 운송장비, 고무생산품, 철장 등이 있다. 실행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

우 또는 실행세율이 특별세율이고 기본세율이 증가세율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 우선 적용. 실행관세율은 내각의 승인 하에 언제든지 기본관세율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어 이는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② 비증가관세율(Non-ad Valorem Duties)

- 특별세율과 대체세율로 구성되는 비증가관세율은 전체 대상품목의 16.5%를 차지. 비 증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품, 식료품,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섬유, 가죽제품 등이고 이는 태국 관세율 상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 ③ 특별관세율(Special Duties or Surchares)

-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특별 부과금을 징수함.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 톤당 180Baht의 부과금을 징구하고 Flour, Meal, Pellets of fish, Crustaceans, Mulluscs 등에 대해서는 5%의 증가세율을 부과.

## 다. 한-태 협정관세율 체계

### ○ 한-태 협정관세율 개요

- 한-태 협정관세율은 기본적으로 한-ASEAN 협정관세율에 근거하며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2004.11월 최초 협상개시 이후 총 24회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6.8월은 상품협정에 서명을 하였으나 당시 태국은 우리나라 쌀,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내 정치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서명에 불참함. 이후 태국 측 요구에 따라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7.12월에는 최종타결 되어 그 결과 2009.2.27일 태국 후아힌에서 양국대표가 정식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0.1월부터 발효됨
- 2015.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6.1월부터 발효됨

## 제2절 비관세장벽

### 1. 주요 비관세 장벽

#### 가. 표준 및 품질표시

- 태국의 독자적 인증제도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용품 등 10개 카테고리 85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이 정한 표준 공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TISI의 규격을 따를 때만 정부조달 상 특혜를 주고 있음. 다만, TISI에서 인정한 CE마크 등 일부 외국 인증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 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태국의 Labeling(Mark) 제도
  - 태국은 공산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며 11개 산업 74개 품목이 해당 됨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나. 식품안전

- 농산물 및 식품
  - 태국으로의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 수입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까지 요구함. 식품 수입허가에는 통상 3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함



## 제3장 검역제도

### 제1절 식물검역 규정

#### 1. 법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
-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은 장관 규칙 또는 공고를 통해서 규정

#### 2.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 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 3.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s)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싹,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및 코코넛
- Saccharum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Aleurites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 4. 감귤류 과실의 수입요건

- 수출국은 태국 농업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함

- 감귤병해충의 목록, 효과적인 감귤소독방법
- 태국과 수출국 간에 다음 사항을 합의해야 함
  - 소독처리, 처리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태국의 반입항에서의 검사방법

## 5. 금지품 수입

- 금지품은 방콕항, 방콕공항 및 방콕우체국을 통해서만 수입하여야 함
- 농업국장이 발부한 수입표찰을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금지품은 농업국장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사전 수입허가 필요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 6. 제한물품 수입

- 식물검역장을 통해서 수입하여야 함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 7. 비 금지물품 수입

- 비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통보해야 함

## 8. 수수료

- 식물검역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 또는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일정 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부과함

## 제2절 동물검역 규정

### 1. 동물 수입 검역

####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태국으로 동물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로부터 수입 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동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동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수입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입자와 수입자 대리인의 신원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
-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이 포함된 수입 승인 발급 전에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 조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의 동물 건강 요건에 따라 수입할 동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의 수의청으로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 함
- 수입 동물과 관련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정확한 도착 날짜를 도착 전 최소 3일 전에 확증해야 함

####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 시에 임시 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

- 입 동물이 도착한 후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육종을 목적으로 한 수입동물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공제받기 위한 동물 혈통 증명서 혹은 다른 증서를 수입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제출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할 동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 리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바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수입동물은 동물 검역 시설로 이동됨
- 검역 기간 동안, 질병에 대한 규정된 검사와 조회를 위해 모든 수입 동물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이동시 혹은 검역 시 수입될 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 모든 관계자 및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규제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함
- 최종 수입증서는 모든 수입 동물의 규정된 심사를 통과한 후,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동물들이 풀어질 시점에 발급될 것임

## 2. 축산물 수입 검역

####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축산물을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태국 가축 개발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의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축산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축산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태국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 사항이 포함된 수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의 동물 건강 요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에서 제정한 동물 건강 요건에 준수하여 수입 축산물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수의청에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장비 필요시, 정확한 도착 날짜를 수입 전 최소 3일 전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확증해야 함

####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시에 임시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 동물이 도착되는 대로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수입자는 수입할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리스트, 패키징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축산물은 승인된 검역 시설로 이동됨. 검역 기간 동안, 적합한 실험을 거친 검사와 조회를 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최종 수입증서는 수입하려는 축산물이 심사를 통과하고,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축산물이 방출할 시점에 발급될 것임

### 3. 동물 혹은 축산물 수송 시

#### ○ 절차

- 동물 혹은 축산물을 태국 환승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송하려는 자는 이동하기 최소 3일 전 항만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함
-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신청서에 첨부된 공식 건강 증명서, 청구서, 가격리스트, 패키징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이동 승인을 위하여 확인하여야 함
- 세관 수속을 위한 수송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의 일반적인 건강 검사와 필요시 소독을 진행하여야 함
-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은 검역 시설 이동시 소유자는 모든 비용을 내야함
- 소유자는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태국 내각 규정에 명시된 수송비를 지불 함

### 4. 동물/축산물 수송 및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 개 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대리자 임명에 대한 공문과 대리자의 신원확인증 사본 (수입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임명해야함)
- 주택 등록증 사본

#### ○ 법 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법인 등기 증명서 사본
- 대리인 임명 공문
- 대리인 신원증명서 사본

#### ○ 상업용 목적이 포함될 경우

- 동물무역허가증 (이 허가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축부에서 적용임)



## 제4장 라벨링제도

### 제1절 관련 법 및 규정

- 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법과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규정한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허가와 함께 규격화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태국법에 규정되어 특별 관리 대상 식품에 대해서 식품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육류, 과일류 및 채소와 같이 중요한 식품에 대하여 일부 농산물 관리청과 협력 관리 기관에서 수입허가와 함께 열처리 위생처리 증명서를 요구함

### 제2절 식품분류

#### 1. 구체적인 관리식품(Specifically - Controlled Food)

- 식품 등록이 필수이며 품질규격, 세부항목, 포장, 라벨링 필수요소 등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4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됨
  -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follow-up formula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Infant food and follow-up formula food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Supplementary foods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Sodium Cyclamate and food containing Sodium Cyclate
  - Food additives

- Weight-control foods
- Stevioside and food containing Stevioside
- Beverages in sealed containers
- Foods in sealed containers
- Flavored milk
- Yogurt milk
- Cow's milk
- Other milk products
- Ice cream

## 2. 규격 식품(Standardized Food)

- 규격 식품의 경우, 제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제품의 특성과 라벨은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하며 다음의 32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됨

Electrolyte drinks	Tea
Herbal tea	Coffee
Soybean milk in sealed container	Ice
Drinking water in sealed container	Natural mineral water
Peanut oil	Coconut oil
Palm oil	Fat and oil
Butter oil	Butter
Cheese	Margarine
Ghee	Iodized table salt
Vitamin fortified rice	Alkaline-preserved eggs
Cream	Chocolate

Some types of sauces	Vinegar
Fish sauce	Honey
Food seasonings derived from the hydrolysis or fermentation of soybean protein	Jam, jelly, and marmalade in sealed containers
Food supplement	Royal jelly and royal jelly products
Semi-processed food	

### 3. 표준 라벨이 요구되는 식품

- 위의 두 가지 분류보다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매자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식품이 이에 해당되며 12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됨
  - Special purpose foods, Irradiated foods
  - General food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
  - Processed gelatin and jelly, Chewing gum and candy, Bread
  - Sauces in sealed containers, Brine for cooking, Brown rice flour
  - Meat products, Flavoring agent, Ready-to-cook and ready-to-eat foods

### 4. 일반적인 식품

- 식품등록은 요구되지 않으나 위생상태, 안전성, 라벨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감독된다. 일반식품은 태국 정부고시 표준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함

### 제3절 라벨링 표기사항

#### 1. 표준라벨

-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식품, 규격 식품, 라벨 부착이 필수로 분류된 수입 식품 또는 국내 식품은 표준라벨을 부착해야 함
  - 태국 라벨은 수입되어 반입되기 전과 수매상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착돼 있어야 함. 반입 이전에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태국 FDA에 의해 압수됨
  - 스틱 라벨은 태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승인된 라벨과 식품 포장 크기는 단일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함

####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은 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의 알파벳이 약간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FDA로부터 일부 내용의 생략을 허가 받는 경우는 가능함
  - 식품명, 식품의 시리얼 번호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 식품의 정량(고체제품의 실중량, 용액제품의 실용량, 반고체제품의 실 중량과 실 용량, 기타 식품은 실 중량 표시)
  - 봉인된 용기에 있는 식품은 실 내용물을 표시하며 용액부분을 제외한 고형량을 표시함. 식재료에서 용액부분만 나눌 수 없는 제품은 제외됨. 기본적으로 내용물의 리스트는 전체 퍼센트로 나타내며 주요 내용물부터 시작함. 농축된 제품 또는 사용전 희석·용해가 필요한 제품은 희석·용해 제품의 비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은 “방부제 사용”을 표시
  - 색소 사용 시 “천연색소 첨가” 또는 “인공색소 첨가”를 표시

- 조미료 사용 시 “----- 조미료 첨가” 표시
- 감미료 사용 시 “----- 감미료 첨가”를 글자크기 2mm 이상과 글자색은 배경의 보색으로 표시
- 향신료 사용 시 “천연향” 또는 “인공향”을 표시
- 제조일자(연/월/일 또는 연/월), 유통기한(연/월/일), 최적 상태의 제품 품질 보증 기한(연/월/일) 표시. “제조”, “만료”, “사용 전”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내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적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상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적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FDA에 의해 지정된 특정 제품의 유통기한(연/월/일)

### 3. 제조업체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

- 영어 알파벳이 일부 포함된 수입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은 태국어 라벨을 사용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함
  - 식품종류와 이름, 식품의 시리얼 번호
  - 미터법으로 표시된 제품용량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 4. 일부 가공식품의 라벨링 변경공시

- 2009년 8월 30일 태국 FDA는 식품 라벨링 필요조건의 측정과 스낵 식품에서 사용되는 라벨링 로고 필수조건을 철회하였으며 가공식품의 보존유지 필수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공시하였음
- 하지만 태국 FDA는 스낵식품에 관련된 문제들은 보건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야할 것을 제안하여 라벨링 경고 메시지를 “적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 합시다.”로 변경하였음

- 라벨링 부착 대상제품 : 감자칩, 옥수수 칩, 스낵 식품, 비스킷/크래커, 와플 제품

## 5. 유아용 우유제품 라벨

- 모유의 중요성과 유소아를 위한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태국 FDA는 아래의 내용을 라벨에 포함되도록 보건부 공시를 변경하였음
  - 모유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진 유아의 최고의 식품이다
  - 변형된 우유는 의사, 간호사에 의해 추천된 것이어야 한다
  - 정확하지 않은 조제와 혼합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
- 위의 3가지 내용은 가로로 바탕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표기해야 하며 첫 번째 내용은 읽기 쉽게 굵은 글자로 표기해야 함

## 6. 영양 정보 라벨링(Nutrition labeling)

-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식품은 의무적으로 영양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특정한 영양분이 요구되는 식품
  - 영업촉진을 위한 영양적 가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 FAD에 의해 지정된 식품
- 영양분 라벨링 규정에서 제외된 식품은 유아용 식품과 유소아를 위한 보충식품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식품들은 제외됨
- 영양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 사용은 선택임

## 7. 영양 성분표시(Nutritional Claims)

- 영양 성분표시는 식품이 가진 특정한 영양분의 상태 및 내포한 것의 표현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유량,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 등을 표현한 것임

- 태국 FDA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Low in cholesterol”, “less”, “reduced”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good source of”, “rich in” 등 조금은 다른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 아울러 영양성분의 크기, 참고량, 나 라별 일일섭취량을 표현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가. 영양성분 주장

- 영양성분 주장은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수준을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칼슘의 원료”, “저지방 고섬유질”로 표기할 수 있음
- 식품의 본연의 성질을 잃거나 영양성분이 전혀 없는 식품이 “free” 또는 “low” 라는 용어를 식품명에 포함해서는 안됨. 한편 가공, 변환, 일정한 공법을 이용 해서 식품에서 영양분을 제거하거나 영양분의 양을 낮추는 행위는 영양분 청구에 의해서 규제됨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	
Servings Per Container: .....	
<b>Amount Per Serving</b>	
<b>Total Calories</b> .....kcal (Calories from Fat .... kcal)	
<b>Total Fat</b> .....	% Recommended Daily Intakes *
Saturated Fat .....	.... %
<b>Cholesterol</b> .....	.... %
<b>Protein</b> .....	.... %
<b>Total Carbohydrate</b> .....	.... %
Dietary Fiber .....	.... %
Sugars .....	.... %
<b>Sodium</b> .....	.... %
% Recommended Daily Intakes *	
<b>Vitamin A</b> .....	<b>Vitamin B1</b> .....
<b>Vitamin B2</b> .....	<b>Calcium</b> .....
<b>Iron</b> .....	.... %
* Percent recommended daily intakes are based on a 2,000 kcal diet for Thais aged six and upwards.	
Individual calorie needs may differ. Based on a 2,000 kcal daily diet, the nutrient intakes shall be as follows.	
Total Fat	Less than 65 g
Saturated Fat	Less than 20 g
Cholesterol	Less than 300 mg
Total Carbohydrate	300 g
Dietary Fiber	25 g
Sodium	Less than 2,400 mg
Calories(kcal) per gram: Fat = 9; Protein = 4; Carbohydrate = 4	

## 나. 상대적인 주장

- 상대적인 주장은 2가지 이상의 식품에너지 또는 영양성분 기준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며 “less than”, “fewer”, “more than”, “reduced”, “lite/light”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함
- 하지만 이미 “low” 또는 “very low”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분 성분 또는 에너지 값을 표시한 경우 상대적 주장이 허용되지 않음

## 다. 영양분 기능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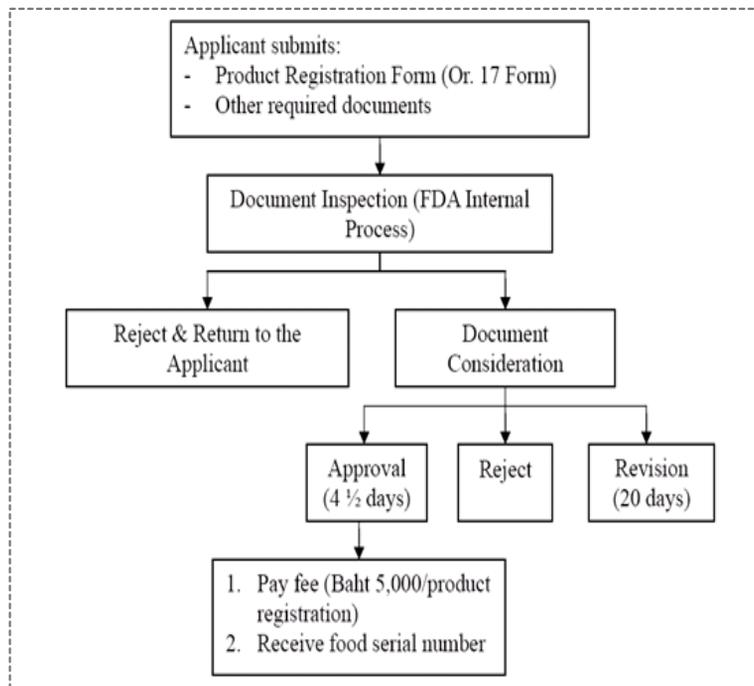
- 영양분 기능 청구란 인체에 미치는 영양성분과 관계가 있으며 “칼슘은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 성분은 적혈구 조성의 요소이다”라고 표기하는 것임
- 영양분 기능 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표기되도록 허가되었으며 모든 조항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태국 RDI에 등재된 필수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의 대상이 됨
  - 식품의 주요 재료가 되는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를 표시해야 함
  - 특별한 식품 성분이 아니더라도 영양성분 청구를 만드는 데 참조되어야 함
  - 영양성분 청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영양성분 주장은 질병 치료 또는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내포해서는 안 됨

## 라. 유전자 변형식품

- 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하는 농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가공업과 사료용인 경우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라벨링 법에 의해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식자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식품들이 라벨링 법에 관리대상 품목임

- 콩, 조리된 콩, 구운 콩,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콩, 낫도(Fermented soybean), 미소, 두부 또는 튀긴 두부, 냉동 두부, 콩 글루텐, 두유, 콩가루, 조리된 콩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옥수수, 팝콘, 냉동/냉장 옥수수,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옥수수, 옥수수 가루 및 전분,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식품
- 라벨링은 주요 3가지 원료를 무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원료들이 최종 식품의 5% 이상 구성되고 유전자 변형 원료들에서 추출한 원료들이 5% 이상 된 식품들은 라벨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 라벨링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식품이 압수되면, 태국 정부 조사관에 의해 유전자 변형식품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식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와 수입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

## 8. 라벨링 승인절차



## 〈참고자료〉

- 태국 관세청 : [www.customs.go.th](http://www.customs.go.th)
- 관련법규
  - 식품법(The Food Act)/ 식품 라벨링규정(Labels)
  - 즉석식품 라벨링규정(Labeling of some kinds of ready-to-eat foods)
  - 잔류농약 기준(Food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관세법(The Customs Act) / 검역법(The Quarantine Act)
  - 식물검역법(The Plant Quarantine Act)
- 참고문헌
  - 태국의 관세제도 및 무역정책(한-태 상공회의소, 2009.06)
  - 태국의 통상환경 연구(한국 조세연구원, 2011.12)

---

##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일본

---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5. 12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전 화 061-931-1114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수출정보부(061-931-0875)

---

-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

##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중국

---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5. 12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전 화 061-931-1114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수출정보부(061-931-0875)

---

-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

##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미국

---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5. 12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전 화 061-931-1114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수출정보부(061-931-0875)

---

-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

##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동남아시아

---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5. 12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전 화 061-931-1114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수출정보부(061-931-0875)

---

-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

##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 유럽·러시아

---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5. 12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전 화 061-931-1114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수출정보부(061-931-0875)

---

-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